



KOREA ASSOCIATION OF REGISTERED ARCHITECTS

LUXALON®

룩사론으로 空間藝術을 創造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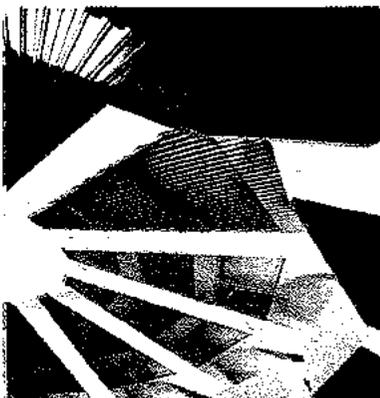
룩사론 칼라알미늄은 세계적인 기업 HUNTER-DOUGLAS GROUP의 특허 공법으로 헌터·더그라스의 기계와 기술 라이선스에 의하여 합작 생산 판매되고 있습니다.

모든 원·부자재가 가볍고 견고한 특수칼라 알미늄기 것으로 되어있어 현대건축의 조림미를 이상적으로 표현한 혁신적인 공법입니다.

룩사론 칼라는 케인팅(후기)이 아닙니다. 알미늄 제조시에 에나멜 베이킹 크롬마이즈 공법으로 알미늄에 완전히 색상이 친식되어, 내열, 내식, 내습, 내염, 방청 및 내화성을 보장하며, 어떠한 악천후에도 색상의 퇴색이나 알미늄의 부식이 발생 되지 않는 영구적인 재질입니다.

특징

1. 12가지 색상
2. 우수한 흡음효과
3. 간단한 조립식
4. 우수한 환기 기능
5. 다양한 패턴
6. 경량성
7. 저렴한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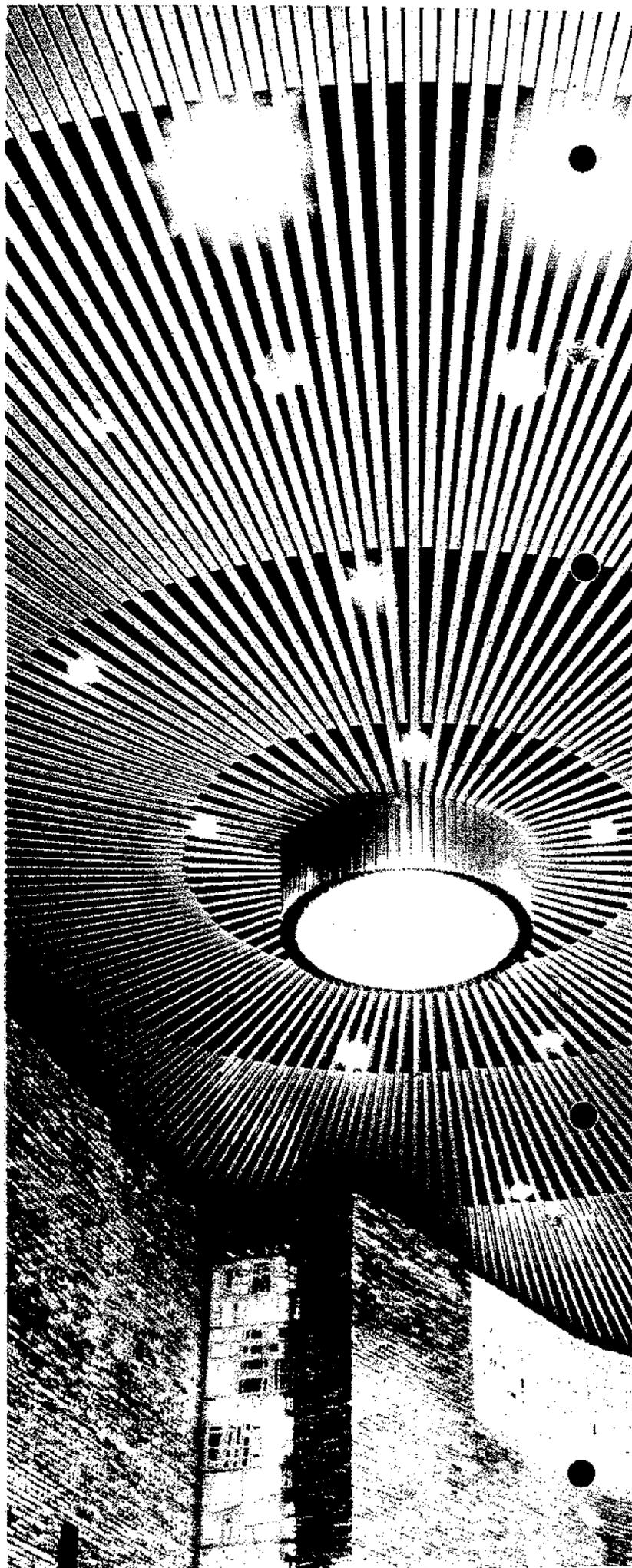
룩사론 생산품목

- 천정재
- 내외벽 마감재
- 선루버
- 알미늄 가린



株式会社 太 松

本社：서울특별시 江南区 駅三洞 259-3 TEL 555-5535, 2595
第一工場：仁川市 北区 山谷洞 409-10 TEL 132-92-1783





表紙說明 / 忠北大學校教育館、設計 / 洪淳寅 · 攝影 / 林王養

龜裂發生으로 인한 構造物의
 耐力低下에 關한 檢討(I)..... 鄭日榮.....12
 太陽熱住宅의 造形設計..... 李廷德.....19
 韓式木造 建築時代に 使用된
 建築道具 및 器械..... 趙勝元 · 趙英武..... 22
 人間化의 空間..... 崔宗鉉.....32
 農村住宅 및 聚落構造 改善에
 關한 問題點과 方向..... 田耕培.....40

特輯(大型建築工事 一括入札에 對한 小考)..... 6

會員作品.....43

- 教育館 · 洪淳寅(大宇建築研究所)
- 教育館 · 金仁錫(綜合環境研究所一建)
- 郡庁舍 · 朴成圭(合成建築技術公社)
- 病院 · 金鍾敏(B·K 建築設計事務所)
- 百貨店 · 柳根洙 · 鄭寅協(柳根洙 · 鄭寅協建築)
- 教會 · 李載成(CNU協同建築研究所)
- 住宅 · 吳英治(技美建築設計事務所)

協會記事..... 2 月間建築情報.....64
 會員動靜..... 5 建築行政相談.....70
 元老建築家探訪(姜奉辰)..... 54
 讀者의 소리.....74

支部巡訪(忠清南道編).....58

海外作品.....88

● Multi-family House

建築計劃과 省에너지.....75
 住宅建築基準에 關한 規則.....78
 建築關係法 運用에 따른 質疑 · 応答.....85
 全國建築許可統計..... 100

- 發行所 大韓建築士協會 / 서울特別市 鍾路區 瑞麟洞 89 / 郵便番号 110
 光化門郵遞局 私書函 第795番 / 電話 73-9491~2, 73-4287, 74-1045
 發行人 兼 編輯人 具 琬 會 登錄番号 第4-1251 登錄 1967.3.23
 發行 1981. 4. 1 非売品 印刷人 郭得龍 / 三文印刷所 / 261-7676

분류번호	建築士誌
도서번호	통권 제 145 호
구입년월일	
대한건축사협회 제주도지부	

編纂委員會

- 委員長 金正澈
 委員 金奉勳
 " 吳昌熙
 " 尹道根
 " 尹鳳源
 " 李文輔
 " 張錫雄
 " 洪淳寅
 " 黃一仁

協會記事

自律淨化 決意大會 및 81年度 第1回 臨時總會 開催

本協會는 지난 3月 31日 엠버서더 호텔 2層 會議室에서 會員 및 任職員 自律淨化決意大會 및 1981年度 第1回 臨時總會를 開催하였다.

재적 代議員 112名 中 97名이 參席한 가운데 開催된 이날 決意大會 및 總會는 “우리는 새로운 時代의 建築文化 創造者로서 矜持와 使命感으로 맡은 바 任務에 忠實한다” 等 4個項의 決意文을 採択하고 本協會 尹鉅 監事의 先唱으로 決意文의 口號提唱에 이어 第1回 臨時總會 附議案件 審議에 들어갔다.

案件 審議에 들어간 全國 代議員은 具旣會 會長의 유모어 취인 會議進行에 始終一貫 和氣靑靑하고도 秩序整然한 가운데 1980年度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決算案과, 1981年度 追加更正予算案承認을 비롯 其他 案件을 前에 없이 迅速하게 異議없이 處理하여 全會員의 團結된 一體感과 協會의 健全을 誇示하고 午後 4時頃 成功裡에 總會를 閉했다. 主要決議內容은 다음과 같다.

1. 慶北支部 鄭壽永 幹事 感謝牌 授與

慶北支部 鄭壽永 幹事は 當支部 支部長 공석중 약 5個月동안 職務代理에 재직하는 동안 어려운 與件下에서 諸般難題들을 슬기롭게 克服하고 円滿하게 支部業務를 處理하여 慶北支部의 發展에 寄與한 功勞가 認定되어 協會長의 感謝牌가 授與되었다.

2. 서울支部 朴商浩 會員外 14名을 推載 會員으로 推載

本協會 定款 第7條 2項의 規程에 따라 朴商浩 (서울) 林憲彦 (서울), 金正吳 (서울), 崔鳳容 (釜山) 朴允彩 (釜山), 洪大鉉 (京畿), 吳世英 (江原), 黃基禎 (江原), 沈命澤 (江原), 金二東 (忠南), 李漢圭 (全北), 丁玉鎮 (全南), 金仁模 (全南), 金慶鎮 (慶北), 金斗燮 (서울) 會員이 推載 會員으로 推載되었음.

3. 80年度 執行決算額 524,758,253 원을 原案承認

当初 564,000,000 원으로 編成된 一般會計 予算을 全國會員의 業務萎縮으로 歲入 低調를 予想하여 歲出予算額에 比하여 115,528,178 원을 節約 執行한 448,471,822 원의 決算을 原案대로 承認하였으며 当初 73,000,000 원으로 編成된 特別會計 予算은 歲入 予想額보다 55,703,720 원이 超過 歲入되어 128,703,702 원으로 決算하여 3,286,431 원을 超過 執行한 特別會計 決算을 原案대로 承認하므로써 1980年度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決算을 原案대로 承認하였음.

4. 會員福祉年金會 一段 廢止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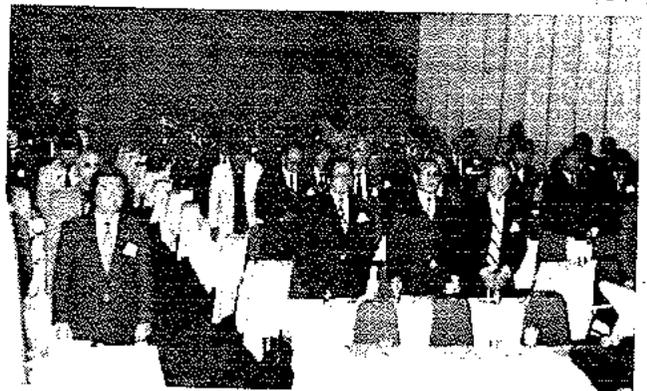
1980年 5月 1日부터 施行한 會員福祉年金會 持續與否를 금번 總會에 附議하였는바 一段 廢止키로 하고 清算委員會를 構成하여 그동안 造成된 基金 (1980年 12月 31日 現在) 339,988,424 원을 換拂키로 하였다.

그러나 同年 年金會는 去般實施한 會員 양케트 分析 結果

◎ 81年度 第1回 臨時總會 光景



◎ 自律淨化決意大會 光景



에서 圧倒的 多数會員이 存續되기를 希望하는 事實로 이루어 不可避 1981年 10月 定期總會에 福祉年金制度의 合理的 方案을 강구하여 議案으로 附議키로 決議하였음.

5. 81年度 追加 予算額 44,000,000원을 月定 會費 10,000원 정도 인상조정으로 充當

81年度의 当初 予算額 676,000,000원에서 繼續되는 建築景氣의 不況으로 인한 會員業務 萎縮으로 歲入源의 차질을 감안하여 필요불가결한 予算額 54,000,000원을 增額한 730,000,000원의 81年度 追加 更正 予算(案)을 月定會費 月10,000원정도로 수정 통과 됨에 따라 44,000,000원의 增額. 總規模 720,000,000 원으로 조정 承認되었음.

6. 監理團 構成의 件을 全面 廢止

80年度 第15回 定期總會의 決議에 따라 研究 起案 된 監理團 構成에 對한 會則(全章 24條 63項)을 全面 廢止 하기로 決議하였음

建築士業務 繼續적으로 沈滯

稅率引下로 對策이 時急

建築景氣의 沈滯는 會員의 生業에 一大危險이 아닐 수 없으며 大部分의 會員이 零細性을 免치 못하는 實情에서 더욱 深刻한 問題가 아닐수 없다.

本協會는 그 對策에 腐心하고 있으며 早速한 時日內에 景氣 回復을 期待하는 實情에서 于先 協會에서는 此際에 制上의 問題點等을 政府次元의 立場에서 配慮있기를 간곡히 希望하고 있다.

이와 같은 建築景氣 沈滯속에서 會員의 事務所 開設은 逆調的 現象을 보이고 있어 會員의 數는 加增되는 奇現象으로 會員相互間의 過多競爭等 으로 若起되는 倫理問題等 會員 業務의 減退는 그야말로 致命的인 것으로 會員의 自制를 呼訴하고 있는 實情이다.

前年度(1980年度) 對比는 1981年度의 3月末 現在의 圖書 登錄狀況은 다음과 같이 39%의 減少率을 나타내는 實情이다.

圖書登錄年度別(延面積) 對比表

年度 月別	80 年 度		81 年 度	
1 月	1,903,761	(+) 53%	888,005	(-) 53%
2 月	2,124,465	(+) 10%	1,632,724	(-) 23%
3 月	3,544,904	(+) 6%	2,093,098	(-) 40%
計	7,573,130	(+) 16%	4,613,827	(-) 39%

※ 註：會員圖書登錄의 漸減趨勢가 建築景氣의 不況을 立證하고 있음.

建築士 特別練修教育實施

本協會는 2級建築士 特別練修教育을 例年과 달리 지난 4月 1日 부터 4月10日間에 걸쳐 2期로 나누어 實施하였다.

受講 建築士의 大部分이 數年에 걸친 受驗經歷과 피나는 努力을 바탕으로 오는 4月18日 부터 2日間에 實施될 特別 銓衡을 받게 되는데 担当講師陣의 綜合的인 意見으로 이루어 大體的으로 無難하리라는 앞날의 幸運을 期待하면서 全國 400余名의 受講者들은 熱意있는 受講에 臨하였다. 特別 이번 教育은 本協會 2級 建築士들의 特別 補充教育으로서 이의 產婆役으로 同委員會 安箕泰 委員長이 東奔西走하며 渾身의 努力을 傾注하여 同 教育의 成果가 至大 하였으며 10余日 동안 手胼하신 講師陣은 다음과 같다.

学 校 名	講 師	課 目
東國 大 学 校	吉 正 大	建築構造
国民 大 学 校	鄭 在 哲	構造力学
漢陽 大 学 校	金 光 文	建築計劃原論
国民 大 学 校	조 영 민	建築設備(機械)
漢陽 大 学 校	송 영	建築設備(電氣)
高麗 大 学 校	李 廷 德	建築計劃各論
仁德 實業工專	蔣 東 燦	鉄筋콘크리트構造
高麗 大 学 校	李 廷 德	設 計

◎ 特別練修教育光景



李元均氏 建築研究委員 委嘱

本協會 具玠會 會長은 지난 4月 8日 在美建築上 李元均氏를 本協會 建築研究委員會 美州地域委員으로 委嘱하고 韓國 建築界 發展을 爲하여 더욱 힘써 달라고 당부하였다.

本協會 安箕泰 理事를 비롯하여 金枝泰 서울支部長, 俞景哲 前 理事가 參席한 이 자리에서 李委員은, 이같은 깊은 配慮에 感謝하다고 전제하고 韓國建築士의 權益擁護와 建築界 發展에 最善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였다.

美國 AIA會員이기도 한 李委員은 그동안 本協會 發展을 爲하여 많은 功을 세운바 있으며 더구나 海外 研修次 旅行하는 會員들을 爲하여 獻身的인 協助에 感謝하고 있다.

◎ 委嘱狀授受光景



第3回 編纂委員會 開催

本協會는 지난 3月 8日 本協會 會議室에서 第3回 編纂委員會를 開催하고 全國 會員의 意見에 따라 4月号 建築士誌 編輯計劃을 一部 變更하고 編輯에 다른 問題點을 研究 補完토록 決議하였다.

全國支部長 公議 및

慶北支部 臨時總會 開催

本協會는 지난 3月23日 各地域間의 紐帶強化와 會員間의 友誼增進을 爲하여 異例의으로 慶北支部에서 第2回 支部長 會議를 開催하고, 이어 다음날인 24일에는 本協會 會長과 安箕泰, 閔榮基 理事 朴成丰 監事가 臨席한 가운데 慶北支部의 1981年度 第1回 臨時總會를 開催하여 支部長 및 代議員 5名을 改選하였는데 그名單은 다음과 같다.

職 位	性 名	事 務 所 名
支 部 長	金 在 佑	한남建築設計代表
代 議 員	金 重 培	서부建築設計事務所
"	李 然 億	포항세진建築設計事務所
"	梁 壬 洙	경산建築設計事務所
"	張 相 賢	영림建築合同設計事務所
"	林 斗 鉉	삼성建築設計事務所

本協會 事務處職員 公開採用 公告

應募者 무려 125名

本協會 具玠會 會長은 "지금이야말로 本協會 事務處에 有能한 職員이 切實히 要求될 때"라고 전제하고 協會 創立 以來 처음으로 公開 採用을 實施키로 하고 그야말로 名實相符한 有能하고 誠實한 職員을 公開採用하고자 新聞(東亞日報 '81. 4. 8日字)에 公告하였다.

이번 職員採用은 技術部, 出版事業部, 企劃調查室의 幹部職으로 資格所持者 및 該當 經歷者로 採用하게 되며, 그外 技術職 및 庶務職 中堅社員도 아울러 採用하며 磨勵日인 15日 現在 125名이 應募하였다.

會員動靜

■ 서울支部新入會員

本 籍 : 서울
 姓 名 : 李 仁 世
 名 称 : 서울건축구조연구소
 所 在 地 : 중구 무교동 6 번지
 (광남 B. D. 707)
 電 話 : 777-5500
 免許番号 : 합동 272
 登録番号 : 2043
 月 日 : 2. 12



本 籍 : 서울
 姓 名 : 洪 性 一
 名 称 : 흥건축종합사무소
 所 在 地 : 강서구 목동 408-103
 電 話 : 602-2660
 免許番号 : 2028
 登録番号 : 종합 23
 月 日 : 3. 6



■ 釜山支部新入會員

本 籍 : 서울
 姓 名 : 金 榮 守
 名 称 : 조광건축실계사무소
 所 在 地 : 부산시 중구 중무동 3-
 電 話 : 23-4535
 免許番号 : 1843
 登録番号 : 단독 66
 月 日 : 3. 14



■ 忠南支部新入會員

本 籍 : 서울
 姓 名 : 韓 賑 澤
 名 称 : 서울합동설계사무소
 所 在 地 : 서산읍 읍내리 472-1
 電 話 : 4464
 免許番号 : 2-101
 登録番号 : 합동 39
 月 日 : 1. 27



■ 釜山支部登録事項變更

성명	명칭	주소	계	전화	면허	등록	월일
정진영	부산종합설계사	남구 광안동 50-7	72-6518	1877	종합 6	2.28	
박영순	부산종합설계사	남구 광안동 50-7	72-6158	2-1606	종합 6	2.28	
심죽남	이성종합건축설계사	북구 구로 2동 1186-23	92-4605	1822	종합 12	3.4	
이경석	이경건축연구소	중구 중앙동 2가 3	49-9934	1657	단독 67	3.12	
김만석	미진건축기술공단	부산진구 전포동 608-1	45-4477	196	단독 61	3.12	
정희선	신용설계사	부산진구 부전동 401-9	88-4621	1563	합동 48	3.18	

■ 全南支部登録事項變更

성명	명칭	주소	계	전화	면허	등록	월일
김형수	김형수건축설계사무소	순천시 동의동 75-6	2-4430	2-256	단독 13	3.2	
박무진	대광건축연구소	광주시 동구 광산동 41	2-1743	1288	종합 2	3.9	
박재형	국도건축연구소	광주시 동구 광산동 41	7-0518	2-1781	단독 15	3.9	

■ 京畿支部登録事項變更

성명	명칭	주소	계	전화	면허	등록	월일
이민규	경택원대합동건축설계	평택군 평택읍 비전리 633-16	2-2843	226	합동 57	3.9	
강성	경택원대합동건축설계	평택군 평택읍 비전리 633-16	2-4460	1438	합동 57	3.9	
최명상	대림삼기합동설계공사	수원시 보동 20-2	2-9290	203	합동 14	3.12	
이학규	문화공무소	인천시 중구 중앙동 2가 14	72-0926	141	단독 9	3.12	
김순혁	경진종합건축	시흥군 군자 1단지 48브릭 3-7	3931	768	종합 11	3.16	
제용운	금호건축연구소	인천시 남구 주안동 200-23	82-1383	479	단독 77	3.17	
유영석	유석종합건축사무소	인천시 남구 주안동 200-23	82-1383	769	종합 10	3.17	
심광섭	동화건축의견	인천시 남구 주안동 216-15	82-4055	1774	종합 12	3.20	
김근배	고려건축연구소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170-4	4240	2-1183	단독 17	3.20	

■ 慶北支部 登録事項變更

성명	명칭	주소	계	전화	면허	등록	월일
임윤상	동인건축	대구시 중구 동문동	44-8098	1917	합동 4	2.19	
김기봉	세대건축연구소	대구시 중구 덕산동 124-41	44-1008	1435	합동 13	3.12	
강정공	세대건축연구소	대구시 중구 덕산동 124-41	44-1008	1518	합동 13	3.12	
박천일	세대건축연구소	대구시 중구 덕산동 11 124-41	44-1008	1948	합동 13	3.12	
박정규	신일건축사무소	대구시 수성구 수성 4가 1186-60	44-7648	148	단독 17	3.11	
임정중	동방건축연구소	대구시 중구 삼덕동 2가 208-4	44-4460	1945	합동 86	3.16	
이거려	동방건축연구소	대구시 중구 삼덕동 2가 208-4	44-4460	1942	합동 86	3.16	
백천근	거림건축연구소	대구시 중구 남산동 21동 595-6	22-0913	154	합동 85	3.14	
김상태	거림건축연구소	대구시 남구 남산동 21동 595-6	22-0913	1515	합동 85	3.14	
이윤동	삼익건축연구소	대구시 남구 대명동 6동 1141-2	67-5738	2-1773	단독 35	3.14	
김용태	태화건축설계연구소	대구시 남구 대명동 8동 2107	45-5883	320	단독 5	3.23	
김종규	주식회사 대아기술공사	대구시 중구 배봉동 55-68	44-8457	929	단독 60	3.23	

大型建築工事 一括入札에 對한 小考

※ 本 小考는 1975年度에 制定되고 1980年 11月 24日 (77, 78年度에도 改正) 崔昌奎 · 金斗燮 · 金正澈 · 姜錫元 에 改正 公布된 予算會計法 施行令 特例規程에 關한 件임.

崔昌奎
(新進建築代表)

去 二月 十七日 協會에서는
上記 題目에 關해 會合을 가
진일이 있다. 參席한 모든

會員들은 한결같이 被害意識과 建築士의 業務 萎縮을
걱정했고 興奮도 했으나 무엇보다 이렇다 할 對策을
세우지 못했다. 아무런 結論도 못내린 것은 當然한
일이라 생각된다.

그것은 이 問題가 우리 建築士들에게는 至極히 衝
擊적인 것과 아울러 우리 建築士들의 힘으로 解決하
기에는 너무도 複合적인 內容이 介在되고 있기 때문
이라고 생각된다.

먼저 우리 社會에서 이런 特例規定이 왜 생겨났나
하는 그 原因과 背景을 생각해 볼 必要가 있다고 본
다. 이러한 原因과 背景을 正確히 把握함으로써 이
問題를 解決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過去 日本의 境遇 各 大型建設業會社들이 各自의
設計部를 가지고 著名한 建築家를 雇傭해서 大規模設
計 TEAM을 길러내고 自身들의 莫強한 經濟力과 情
報力을 動員해서 먼저 設計를 受注받아 消化시키고,
거기서 얻어지는 情報로서 工事施工入札에 有利한 高
地를 占領한다는 事業戰略인 것이다. 莫強한 經濟力
으로 設計TEAM에게는 充分한 報酬와 施設과 資料와
情報 및 消耗品에 이르기까지 支援해주고 工事落札에
專力한다면 設計에 投資된 資金은 工事金額의 百分의
三以內에서 充當시킬 수 있다는 計算이고 그 一例로
서 去年 어떤 統計에서 보면 大成建設의 境遇 1年間
建設工事를 消化한 70%가 大成設計TEAM에서 設計
한 工事라는 놀라운 統計가 나타났다는 것은 各 大型
建設業들이 다투어 設計 TEAM을 竝設할 만한 充分
한 事業戰略일 수 밖에 없다. 이때 그 設計 TEAM에
雇傭된 建築士(建築家)는 設計受授에 神經을 必要도
없고 設計資料나 情報는 勿論 完壁한 施設에서 DR-
AFTMAN 들에의 神經도 쓰지않고 設計에만 專念 할
수 있으니 日本의 境遇 國內 公開 懸賞設計에서 建
設會社所屬 設計TEAM이 當選하는 率이 漸高해 가는
現實에 있다. 이러한 이웃의 事情을 探知한 우리 建
設業體(大型)들도 앞을 다투어 設計部를 가지게 된 것
이고 아울러 이란, 사우디, 中東等의 建設에 介入하

게되자 그들이 所謂 TURNKEY BASE라는 SYSTEM을
願하나 一石二鳥으로 便利하게 自體內에서 解決할 수
있다는 利點을 가지고 実績을 올리고 있는 現實이다.

이러한 周邊事況에서 우리 建築業體들은 國內의 建
設工事に 對해서도 이러한 所謂TURNKEY BASE 式을
한다면 하는 생각이 간절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되
며 그들이 가진 莫強한 經濟力이 政治나 行政에 주는
影響力을 利用해서 違法하지않고 特例規定같은 것
을 만드는데 影響을 주었을 것이라는 憶測은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러한 特例規定을 提案 推進시킨 公
務員은 그들 나름대로 必要性和 名分을 내세우고 公
務員이 마땅히 해야할 創意的인 것이라고 할 것이나
現存 建築士法이 (建築設計는 建築士만이 하는 것으
로 되어있다) 嚴存하고 있는 마당에 法도 아닌規定
으로서 法의 精神이나 趣旨을 超越해서 그 法을 無
効化시킨다면 그야말로 重大事態가 아닐 수 없다.

무릇 法이란 制定할 時에 그만한 理由가 있고 또
立法精神이나 立法의 趣旨가 있는것인데 施行令이
나 細則 其他 規定이나 特例規定 등은 그 法을 施
行하는데 생겨난 것으로 認定되나 母法의 範疇을 넘
어서 行政의 便利나 特定 團體나 特定人에게 有利하
게 하는 結果가 온다면 그것은 法도 아니고 行政도
아닌것이 되고 말 것이다.

우리는 歷史的으로도 이러한 事例는 많이 알고 있
고 近者 우리社會에도 이에 類似한 일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러한 일의 該當 關係자들은 大概 主觀的으로 行
政의 能率이나 便利에 기울게 마련이다. 그러나 行政
을 感情이나 情實이나 主觀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더우기 外面上의 大義名分이나 必要성을 強調한다하
더라도 幕後에 利權이 介入된다는지 壓力이 作用되
었다든지해서 特例規定이나 指示, 命令, 示達等이
(母法의 精神이나 趣旨을 넘어서) 亂舞한다면 그 社
會는 올바른 社會가 될 수 없고 그러한 行政이나 政
治는 民主的인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는 今般의 特例規定의 作態를 非民主的이라는 確定的인 資料나 情報을 못가지고 있기에 오직 昨今의 諸狀況에서 그렇게 推測할 뿐이다.

그러면 今般 事況이 正當하다고 할때 果然 우리 建築士들이나 建築士協會는 병어리닝가슴얇듯 만 하고 있어야 할 것인가, 여기서 우리들의 業務가 萎縮될것 이라는 杞憂나 被害意識을 갖는 것은 時期尙早 라고 보는 것이다.

建設部나 市는(政府) 國家的인 大規模設計를 発注함에 있어 零細의인 現在の 建築士事務所의 能力을 過少評價해서 어느 規模 以上の 設計는 合同事務所이 어야만 한다고 規定짓고 있고 또 現在 그렇게 實施하고 있다. 아울러 小規模의 住宅設計도 이 規定에 包含시키고 있다는 데는 設計 能力評價보다는 行政의 立場이 더욱 作用된 것이 아니나하는 疑心이 드는 것이다. 그것은 大部分의 零細設計事務所가 小規模住宅의 設計를 많이 하고 있다는 現況에서 볼 때 到底히 理解가 가지않기 때문이다.

너우기 近者에 와서 우리 建築界에 4名內至 5名 程度로 指名 設計가 大流行 인것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指名되는 建築士가 거의 指定되어 있는 느낌이 있고 設計能力을 知名度나 事務所 規模나 実績으로 決定지어 진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것 亦是 監査院監査에 의 辯名할 口實이나 不正의 疑心을 防止한다는 明分에서 인것 같지만 建築設計는 隨意契約할 수 있는 데도 不拘하고 구태여 指名 設計를 하는데는 오직 몇 개의 案中에서 選擧할 수 있다는 點은 내세우지만 官의 発注設計에서 建築士: 案대로 實施된 件이 몇 件이나 있을지?

決定權者의 趣味나 嗜好 또는 狹窄한 建築知識이나 見解가 얼마나 作用되고 案이 마음대로 改造되는 例를 우리는 많이 보고 있는데도 서슴치않고 強行함은 特殊한 官公吏의 生理라고나할까, 何如間 야릇한 狀況下에서 作業은 着着 進行해가고 있는 大勢이다.

建築士나 協會의 微弱한 힘은 이러한 大勢에 抗斗할 수는 없다. 오직 沈黙으로 自己充實을 할 뿐이라고 생각된다. 따지고 보면 結局 設計를 하는 사람은 建築士이거나 建築을 專攻한 設計能力을 가진 建築人임은 틀림없고 設計報酬의 多寡나 月給이거나 또는 그 所屬이나 方便如何를 莫論하고 合同이나 單獨이나 間에 建築士가 하게 되기 때문에 個人的인 競争이나 被害意識은 있을지 몰라도 全体 建築界로서는,

아무런 被害도 없는것이 된다고 본다. 指名된 特定한 몇 名의 建築士도 建築士協會의 會員이고 보면 自己가 못하니까 배가 아프다는 생각은 말아야 하겠다. 다만 法에 어긋나고 社會秩序에 混亂이 오고 구태어 問題를 複雜化시킨다는데 若干의 意義가 있으나 原來公務員이란 問題는 複雜化 多岐化시켜서 생색을 내는것이 行政技術이고 能熟한 行政家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 말이다.

筆者는 今般 特例規定은 어떤 意味에서는 建築의 純粹한 作品活動에는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도 생각된다. 完璧한 設計施設과 充分한 報酬와 豊富한 資料와 情報, 高級의 消耗品으로 오직 建築創作에만 專念할 수 있는 組織속에 들어간다면 前記한 日本의 懸賞設計當選이 建設業體 所屬의 設計TEAM이 많아진다는 事實에서 더욱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美國의 著名한 建築家 PAUL RUDOLF도 『차라리 帝王의 專屬 建築家가 되고 싶다』라고 實吐한 바와 같이 建築設計事務所가 果然 對人關係, 補助士問題 事務所 運當問題, 各種 行政問題, 또는 設計件을 얻는 問題等에 沒頭해야만 하는지?

이런 일에 時間과 精力을 消費하지 않고 오직 設計에 專念할 수 있다면 얼마나 幸福할까 하는 생각이 가끔 드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 建築士들이 今般特例規定은 못마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이 規定을 死文化시키는 方法은 두 가지 程度가 있다.

첫째는 建築士 모두가 團結해서 어떠한 巨額의 報酬를 提供받아도 建設業體의 要求에 應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나 이 方法은 可能性이 거의 없다고 본다. 理由는 說明할 必要조차 없겠다.

둘째로는 一切 沈黙을 지키고 各自의 業務에만 充實하고 時期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면 利潤追究의 窮極的 目的인 建設業體는 自己네들에 不利해지면 그들의 武器인 莫強한 經濟力이 作動해서 손쉽게 그런 規定을 廃棄시킬것이다. 이 方法은 至極히 戰略的으로 可能한 方法이라고 생각된다. 卽 그들 内部에서 自滅하는것을 기다린다는 뜻이다.

우리는 이러한 時点에서 몇가지 學論되어야 할 다른 問題들이 있다. 卽 合同事務所 廢棄, 納稅組合의 構成, 設計와 監理報酬의 分離, 各支部의 自治와 協會의 連合制, 設計의 隨意契約實踐 等等 今般의 特例規定보다도 더 重要한 우리들 앞에 가로놓여 있는

当面問題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問題를 부급하게 다루지 말고 會員全體의 利益과 아울러 國家나 社會에 有利한 方向으로 研究檢討해서 解決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金斗燮

(極東綜合建築公社代表)

몇일 전 오랜만에 協會에 들렀더니 大型工事は 앞으로 設計와 施工을 建設業者에게 一括하여 入札한다는 內容으로 財務部令으로 이미 改正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建築設計를 業으로 하는 우리 建築士에게는 너무나 뜻밖의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令을 改正하는 過程에서 누가 무슨 生覺으로 建築界의 公聽會나 一言半句의 協議도 없이 狹地에 一括入札制度化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問題는 建築界에 큰 衝擊을 안겨주었고 波紋을 일게함으로써 建築不在라는 公論마저 자자하게 일고있다. 社會가 發達되고 變遷되어가는 오늘날 建築이 藝術이다, 技術이다하고 論難이 벌어진바 있거니와 내가 協會長 在任時 前職 某長官은 建築設計에서 構造가 60% 내지 70% 차지함으로써 앞으로는 建築設計에서 構造와 電氣, 機械等 設計工事の 設計를 各各分離시켜 別途로 發注시켜야 한다는 寒心스러운 말이 나와 우리를 當感케 했던 일도 있어 建築을 輕視하거나 아니면 無知의 所致로 돌리고 自慰한 記憶이 生生한데 이번엔 大型工事が 하루아침에 所謂 말하는 “턴키베이스”로 되어버렸으니 앞으로 小型工事も 이렇게 안된다고 장담할 수 없는 形便이고 보면 建築士業務의 萎縮은 날이 갈수록 深化되어 將次 建築士들의 실 땅마저 잃지않을까 불히 걱정된다.

建築이란 알다시피 人間生活의 三大要素 中의 하나인 住生活로서 人間에게 必須不可缺한것은 말할 나위도 없겠거니와 옛부터 各種 建築物은 建築家의 創作에 依한 結晶으로 文化的인 側面에서도 그 나라의 尺度를 가늠하는 對像物로 되어오고 있다. 더우기 建築設計의 窮極의 目的은 低廉한 工事費를 들여서 堅固하고 美觀하고 쓰기에 便宜하게 建築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平面·立面 等の 計劃, 構造의 選擇, 수 많은 建築資材의 選擇使用等 어떠한 한개의 建築物이라도 建築士 個個人의 創意力과 技術能力에 따라 作品이 달라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建築을 하고자 하는 建築主側에서는 實力있고 經驗이 豊富한 信賴할 수 있는 建築士를 選定하여 設計를 委囑하는것이 通例이고 政府에서 設計用役 發注時 實蹟을 重要視 하는 傾向도 바로 이 때문이라 思料된다. “턴키베이스”로서의 利點도 여러가지를 들 수 있겠으나 이는 絶對的인 相互 信賴의 바탕에서만 實行이 可能하다고

본다. 建築主는 建築業者를 信賴하고 發注하여야 되고 施工業者는 良心에 立脚하여 誠實하게 履行하여야 뒷말이 없겠으나 자칫 잘못하면 俗된 말로 복치고 장구치는 格이 되어 施工業者들의 利益追求의 素地가 생길 憂慮가 있고 作品 또한 劣作이 되기 쉽다. 비근한 例로 한동안 붐이 일었던 住宅業界에서 自會社안에 “엔지니어링”이라는 看板을 걸고 建築士를 月給쟁이로 고용 設計하여 建築, 分讓했던 連立住宅또는 아파트 등을 보자. 政府當局의 까다로운 規制와 監督下에 建築하여 分讓하면서도 이 “엔지니어링”이 業者들의 利益追求의 앞잡이가 됨으로서 分讓後 入住者들이 施工이 잘못됐다 하여 말쟁을 일으킨 建物이 한두개 뿐인가를... 大型建築物의 設計와 施工을 一括하여 入札할 境遇 바로 위에서 指摘한 바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그누가 保障할 수 있겠는가? 設計를 專門으로 하는 事務所에서 作成한 設計圖書로 入札하여 施工하고 있는 現在도 施工業者의 無誠意로 깨끗이 施工되지 않아 再施工을 命하여 겨우 竣功되는 建築物을 許多하게 보아왔다.

이러한 現實 속에서 相互信賴를 바탕으로 하는 “턴키베이스”로 建築한다는 것은 時期尚早인 것은 고사하고 世界的인 建築思潮에 逆潮하는 行爲이며 建築文化暢達에 制動을 건 處事로 看做된다. 한편 制度的인 面으로 보아도 大型工事の 設計는 建設業者에게 고용된 建築士는 믿을 수 있고 建築設計業을 專門으로 하는 建築士는 믿을 수 없다는 뜻도 되어 健全하게 業을 營爲하고 있는 建築士의 立場에서는 到底히 納得키 어려운 制度로서 不信을 當하는 것 같아 不快한感 禁할길 없다.

勿論 現時點에서 建築設計事務所를 들이켜보면 大部分이 零細性을 免치 못하고 있는 것이 事實이다.

그러나 受注받는 業務는 建築士 各者가 名譽를 걸고 誠意를 다하여 보다 나은 作品을 만들려고 努力하는 姿勢로 業務에 臨하고 있는 것이다. 하물며 自己의 業을 營爲치 못하고 남에게 고용되어 月給을 받고 일하는 建築士들의 마음가짐과 比較할 수 있겠는가? 社會나 政府에서 認定하는 우리들의 地位가, 그리고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冷待를 받아야 하는 現狀地가 애석할 따름이다. 이제 우리 建築士들도 精神을 차려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소심고 외양간 고친다는 格이 되었으나 協會를 철쭉고 相互不信하고 고집만을 내세우던 지난날을 다같이 反省하고 協會를 中心으로 一致團結하여, 懸案의 問題를 하나하나 풀어나가 우리의 地位, 우리의 實 땅을 지켜야겠다.

金正澈

(株)正林建築代表

Turn-key(一括入札) 工事
라하면 中東Boom으로 建設
界는 勿論 一般社會에서도

나설지 않은 單語가 되었다.

이러한 執行方法은 先進國에서는 信用과 信賴를 바탕으로 開發된 技術과 合理的 執行的 追求를 爲하여 利用되고 技術과 文明이 落後된 國家社會에서는 技術導入이 不可避 하므로 consultant 들을 通하여 자주 利用되고 있는 것이다.

特例規室에서도 定義했듯이 大型工事란 複合工種 工事로서 一定額 以上の 工事와 創作性을 要하는 建築工事로 크게 나눌 수 있고, 建築士 業務와 關聯되는 것은 後者の 境遇가 될 것이다.

政府나 其他 執行當事者가 이特例規定을 施行함에 있어 工事自体의 本質을 파악하고 이 制度로 인한 長短點을 綜合分析하여 合理的인 運營을 해줄 것을 建築界는 바라고 있을 뿐만 아니라 建築界 自体도 團合된 努力과 研究로 올바를 適用을 爲한 各種 工事의 分類와 比較 檢討로 對社會의 啓導를 서둘러야 할 것을 먼저 指摘해두고 싶다.

建築士 務業의 萎縮은 비단 一括入札制度의 運營도 問題려니와 建築界 自体에 內包된 너무도 많은 問題點들에 對해서 自省해야 되리라 믿는다.

建築士 業務의 量的 問題를 걱정하기 앞서 첫째, 分散되고 和合되지 못했던 建築界이지만 이제는 一致團合하여 一括入札에 따른 外國의 先例 研究와 檢討로서 合理的 制度運營의 資料를 作成하는 作業을 先行하고, 둘째로 比較檢討된 資料를 對政府 建議로 規定, 運營細則의 改善을 圖謀하고 나아가서 社會에 對한 啓蒙을 서둘러야 한다. 셋째로 우리 建築士들의 社會的 役割과 責任을 再認識하고 垂範의인 實行이 뒤따라야 한다고 生覺한다.

一括入札을 肯定的 姿勢에서 其受當性과 長點을 살피면 建築行爲란 企劃에서 設計 및 施工까지 그리고 使用의 段階까지 分節됨없이 T. Q. C(Total Quality Control)가 이루어져 적절한 FEAD BACK과 進行의 OVER LAP이 可能하여 速하고 經濟的으로 一貫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點을 들 수 있다. 또한 只今까지도 禁忌觀해오던 設計와 施工의 不可分의 密月關係가 制度의으로 認定되어 서로의 專門性과 Idea가 補完的으로 交換되고 可能한 工法이 開發되어 建築士나 建設會社의 技術蓄積이 可能하게 되며 技術水準의 向上과 國際競爭力도 培養할 수 있다는데 그 目標와 意義가 있다고 본다.

이에따라 建築界는 建築의 敎育에서부터 設計의 過程과 施工의 現況執行的 問題와 技術에 이르기까지 綜合的으로 對處해 나아가 그 地位를 確固히 해야 한다.

一括入札發注의 對象범주에서 産業施設이나 土木施設等の 適用은 國際的인 例로 보아 妥當性이 있다고 生覺되며 모든 工事를 金額으로만 分類한 特例規定은 創作性을 要하는 建築文化的 施設 工事는 除外하도록 明文化를 시키므로서 本規定의 施行運營의 混線이 없도록 誘導해야 한다.

創作的인 建築工事에 있어서도 建築士에 依하여 設計意圖와 技術的인 뒷받침이 徹底히 된 Specification의 作成과 Preliminary Design에 依하여 實施設計와 施工이 一括된 發注로 建築士의 創作活動이 保障된다면 建築士의 業務도 萎縮됨이 없고 政府가 의도하는 施工技術의 開發 蓄積도 可能한 一石三鳥의 効果도 얻을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든 一括入札은 建設會社로서 施工을 爲한 設計라는 過程이 있으므로 自体內에 設計Team을 包容하거나 建築士와 共同 參與(joint venture)하는 方法이 있을 것이며 또 J. V에도 外國用役團의 초청도 可能하므로 이를 克服하기 爲해서는 建築界가 零細性에서 脫皮하고 經驗의 不足 技術의 落後等を 하루速히 習得 補完하여 建築主나 建設會社와도 對等한 活動이 이루어진다면 建築士의 業務는 萎縮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從前에 한 設計事務所에 依하여 設計되던 project가 應札會社數만큼 參與機會는 建築士로서는 많아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建築士 스스로가 能力과 姿勢를 確固히 가다듬어 우리의 職能이 社會로부터 전족的으로 信賴를 받도록 努力하는 일만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인 것 같다.



姜錫元

(구름가建築研究所代表)

얼마전, 大統領令 第10078
號(1980. 11. 24)에 의해 改

正公布된 「大型工事契約에 關한 會計法 施行令 特例 規定」에 의하면 30億 以上の 大型工事는 設計·施工 一括入札로 執行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30億 未滿의 工事라도 각 中央官署의 長이 設計·施工 一括入札이 有利하다고 判斷되면, 一括入札로 執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法은 1977年 4月 1日 大統領令 第8525號로서 이미 制定, 公布되었던바, 이번에 보완하여 改正公布한 것이다. 法이 制定된 目的과 意義는 設計施工을 一括入札시켜 政府豫算을 節約하고, 建設技術과 新工法이 開發되도록 誘導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테면, 건물의 用途 및 規模등의 간단한 條件만을 提示하고, 가장 빠르고, 低廉하게 經濟的으로, 設計施工토록 하겠다는 趣旨인 것이다. 물론, 가장 經

濟的으로 建設하기 위해서는 既存의 工法이 아닌 새로운 工法이나, 建築技術이 開發되어야 될 것이고, 그러한 工法の 設計가 先行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또한, 설계와 시공을 굳이 區分 發注하여 施行할 것이 아니라 一括處理하여 行政人力을 節減하고 나아가서 政府豫算을 節約한다는 趣旨인 것이다.

이러한 이 法の 趣旨와 意圖의 裏面에 法施行으로서 惹起될수 있는 몇가지 문제점을 우리는 간단히 看過할 수 만은 없다.

建築物은 社會의 얼굴이라고 한다. 우리가 어느한 時代를 일컬어 말할 때에도 그 時期의 가장 代表되는 建築物을 이야기 한다. 建築物이란 단순히 生活하고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歷史의 記錄이며, 時代像의 反映이고, 그 時代를 代表하는 貴重한 遺産인 것이다. 그래서 空間과 造形을 다루는 建築物의 設計는 오래전부터 藝術創作 活動으로서, 누구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資格과 엄격한 審査를 거친자만이 設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建築物의 設計를 施工만을 전문으로 하는 建設業체에게 施工에 包含시켜 一括入札로 맡길 수 있는 것인가 하는 疑問이 提起되지 않을 수 없다.

中東建設를 以後, 흔히들 이야기하는 턴·키·베이스(Turn Key Base), 즉, 一括入札은 최근에 사용된 말은 아니다. 선진각국에서도 턴·키·베이스의 工事が 있었고 현재에도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 턴·키·베이스에 의해 發注되는 工事라는 것은 電氣·機械 등의 플랜트(plant)이거나 港灣 등의 建設工事に 사용되는 것이지 建築物의 築造에 適用되는 예는 거의 없다. 단, 오일달러로 富國이 된 中東 各國에서는 設計를 하거나 施工 監理를 할 수 있는 人的資源이 없고, 거의 外國技術에만 의존해야 되므로, 建築物도 一括入札로 간단히 處理하고 있는 實情이다.

프랑스 등 구라파地域의 例를 들어보기로 하자. 구라파의 建築物 設計는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건축가 固有의 責任이며 權限이다. 물론, 建築物의 設計는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基本計劃·施工圖面·電氣·構造등 모두를 圖面으로 建築家가 만들어내지는 않는다. 建築家는 基本計劃만을 하여, 건설업체를 선정한다. 建設업체의 선정은 우리나라와 달리 建築家의 任務이다. 建築家가 몇개의 建設업체를 선정하여 基本計劃圖書와 建築物의 設計趣旨와 意圖를 說明한다. 그러면 建設업체에서는 建築家의 趣旨와 意圖에 맞게, 그리고 가장 經濟的으로 建設할 수 있게 施工圖面을 制作, 見積과 함께 建築家에게 제출한다. 물론, 각 建設업체에는 施工圖面을 製作하는 엔지니어

링·파트(engineering part)가 있으며, 각기 開發하여 업체별 特性을 가진 建設技術과 工法을 保有하고 있다. 제출을 받은 建築家는 建築主의 立場에서 또한 도시환경적인 측면에서 建設업체를 선정한다. 이렇듯 建築物의 設計와 施工은 區分되어 있고, 建築家는 作家良心에 의해 建築物을 設計하고, 建設업체는 보다 經濟的인 工法開發에 노력을 경주한다.

지난 2月6日字 '건설회보'에는 4年제 대학과 몇개의 아파트단지가 이 法에 의해 一括入札도 執行된다는 보도가 실려있다. 그러면 이 法에 의해 大規模 公益建築物들이 設計없이 一括入札로 建設업체에서 執行하게 될 때, 어떠한 문제가 惹起될 것인가.

첫째, 都市環境과 空間構成의 측면에서, 內的外的 建築의 質이 과연 向上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建設업체도 하나의 경영체로서 가능한 範圍內에서 더 많은 기업이윤을 目的으로 하는 企業이다. 이들이 생각하는 建築의 質이 과연 建築家가 作家良心에 따라 創作하는 建築의 質보다 좋을 것인가. 결코 아닐 것이다. 建築의 設計를 施工의 연장으로만 파악하지않아도 다행일 것이다.

둘째, 그 建物の 建設업체가 建築主인 建물이 제대로 設計되고, 監理가 될 것인가. 세계 어디를 불문하고 좋은 建築物이 建築되기 위하여서는 3가지 要素가 있다고 한다. 첫째, 훌륭한 建築家와 둘째, 좋은 建築主와 셋째, 施工技術이라고 한다.

建築家들이 創作活動을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建築主의 理解心과 建築的인 眼目이다. 흔히, 設計된 建물이 施工過程에서 여하한 이유로 變更되는 것을 보아 왔다. 建築主가 建設業체라면, 더구나 企業目標의 하나인 利潤과 直結되어 있다면, 建築物의 設計 과정에서부터 부당한 干涉-設計條件의 提示가 아니라-이 쉽게 예상된다. 또한 監理過程에서는 어떠한 것인가?

建築物 設計受注는 대체로 建築家의 이름과 建築家의 人間關係인데, 전자보다 후자에 의해 受注되는 경우가 많다. 과연 建設業체가 임의로 設計變更 施工한다고 關係當局에 쉽게 고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만은 않을 것이다. 또한 關係技術公務員만 監理에 임한다면 어떠한가. 建築物을 직접 設計하지않은 技術公務員이 과연 建築家의 意圖를 제대로 파악하여 建物에 反映시킬 수 있을 것인가 위문이 아닐 수 없다. 監理와 設計는 建築士 固有의 業務로 建築士法 제19조에 못박혀 있다.

셋째, 建築家의 사기저하에 관한 문제이다. 어느 時代이든 歷史적으로 보아 文化가 발달한 時代에서

는 국책으로 藝術人을 보호해 왔고, 이것은 현재 세계적인 추세이다. 建築은 하나의 綜合藝術로서 設計는 創作의 범주에 속한다. 더구나 建築物은 一般 繪畫나 音樂과 달리 公益性이 重要視되고 있으며, 많은 재원이 投資되는 藝術인것이다. 이러한 것으로 해서 建築家는 나름대로 社會와 民族에 대해 책임감 있는 自負心과 矜持로서 公益의인 造型藝術 創造에 임하는 것이다. 建築家가 위축되고 그들의 사기가 저하되면 建築藝術이 發展될 수 없다는 것은 自明한일이 아니겠는가. 마땅히 政府에서는 양식있는 建築家들이 위축되고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깊은 思料가 있어야 될 줄 안다.

넷째, 建築士의 업무위축에 관한 문제이다. 세계적으로 建築家의 創作活動 場所는 아틀리에이다. 몇 명의 뜻을 같이하는 동지나 후배들과 함께 아틀리에에서 作業을 한다. 누구에게 고용되거나 간접받기를 畫家나 마찬가지로 싫어한다. 여러나라에서도 建築家가 作業하는 場所는 아틀리에 形式인 작은 事務所에서 많아야 10명내외의 가족을 거느리고 作業을 한다. 그 분위기는 대체로 자유스럽고 분망하기까지하다.

이 법에 의해 작은 아틀리에 形式의 設計事務所에 몸담고 있는 建築家들 대다수는 大規模 建築物 設計에서 제외되게 되어 있고, 굳이 하자면 建設業체에 고용되거나, 시공회사에 建築材料商人처럼 受注活動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建築士法에 의해 設計事務所는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일정규모 이상의 設計는 合同으로 된 事務所에서 設計를 해야 된다는가 아니면 綜合事務所가 아닌 곳에서는 監理를 할 수 없다는가 하는 것이다. 이들 合同이나 綜合의 大型事務所에서 政府에서 發注되는 30億規模 以上の 建物이나 30億 未滿이라 할지라도 各 發注官署의 長이 一括發注시킬 경우 직접 設計를 담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設計事

務所를 제외시켜야 新工法이 開發되고 建設技術이 發展될 것인가에 대해 깊은 思料가 있어야 될 것이다.

다섯째, 建築技術의 發展과 新工法 開發에 관한 問題이다. 建築家 없이 建設技術과 新工法이 과연 建築의 質을 높여가며 開發되고 發展될 수 있을 것인가. 本人은 절대 그러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判斷이다. 구라과 각국의 例를 들더라도 新工法의 開發은, 建築家의 선구적인 提案과 이것을 애써 實現하려는 建設業체의 노력에 의한 것이지만 단순히 建設業체에서만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니다.

여섯째, 不實工事의 우려다. 建設業체가 設計·施工을 一括處理할 수 있으며 企業利潤이 이들의 企業目的의 하나임을 상가할 때, 더이상 부언하지 않더라도 說明이 될 것이다.

일곱째, 이 법이 일으키는 波及效果이다. 극단적으로 說明하여 建築設計事務所와 建築家는 大規模工事에는 建設技術의 發展과 新工法의 開發을 할 수 없으며, 經濟的인 設計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법으로 인해 민간부분의 設計發注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할 것이다.

끝이어서 민간부분에서도 建築物의 發注는 턴·키·베이스에 의해 建設業체에만 發注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이다. 이 우려가 事實로 나타날 경우 建築設計事務所와 建築家들이 서야할 땅이 어디일 것인가.

지금까지 이 법의 虛構性과 不當性에 관해 몇가지로 나누어 이야기해 왔다. 그러면 왜 이러한 법이 制定되어야 하는가, 建築家들이 취할 태도는 무엇인가, 우리 모두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建築3 團體에서는 빠른사일내에 대책을 마련, 關係當局에게 대안을 提示하여 建築文化暢達이라는 관점에서 도 法改正을 誘導하여야 할 것이다. ■

“讀者諸位”

本協會에서 發行되는 “建築士誌”에 “讀者의 소리”欄을 新設하고 다음과 같이 讀者 여러분의 投稿를 기 다립니다.

○ 投稿 對象者

1. 本協會 會員 및 職員
2. 各 學校 學生 및 有關團體나 個人
3. 其 他

○ 原稿 作成 要領

1. 內容：國, 漢文, 混用으로 協會 運營에 對한

健全한 建議事項 各種 建築物의 質의 向上을 爲한 建議事項, 建築士誌의 質的 向上에 關한 意見 等 建築士業務에 對한 各種 經驗談, 에세이, 其他.

(題目, 投稿者住所, 姓名明記)

2. 數量：200字 原稿紙 5枚~10枚
3. 期間：隨時
4. 採択된 原稿에 對하여는 所定의 稿料를 드림
5. 寄稿處：大韓建築士協會 出版事業部

(서울 鍾路區 瑞麟洞 89) ☎ 73-9491~2

龜裂發生으로 인한 構造物의 耐力低下에 關한 檢討 (I)

鄭日榮

(서울大學校 建築工學科 教授)

[1] 序論

콘크리트構造物의 耐久에 影響을 주는 要因이 여러가지 있겠지만 크게 나누어 보면

- (1) 콘크리트의 龜裂
- (2) 構造物의 變位 및 變形
- (3) 콘크리트의 劣化, 剝離

(4) 鋼材의 腐蝕, 損傷, 碇着部의 損傷等으로서 이들 欠陥의 大部分은 龜裂發生을 同伴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構造物의 耐力와 龜裂은 密接한 關係가 있다는 것은 明白하다. 그러나 콘크리트構造物의 耐力에 對한 研究는 콘크리트가 均一하고 欠陥이 없는 境遇에 關한것이 많고, 部材 또는 構造物의 耐力를 龜裂과 關聯지워서 調査 研究한 例는 드물다. 따라서 이에 對한 在來의 研究와 調査結果를 參考로하여 記述하고자 한다.

[2] 龜裂의 類型과 原因

콘크리트의 龜裂은 그림 1에서와 같은 要因에 의하여 構造物의 形狀, 치수와의 關聯으로 대단히 複雜하게 이루어져 發生하게 된다. 더구나 콘크리트는 시멘트물, 骨材로 組成되었으며 環境條件이 一定치 않은 現場에서 施工되어 構造物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品質는 使用材料나 施工方法의 影響을 받게 되는 것은 當然하다. 또한 콘크리트는 引張強度가 작기 때문에 龜裂이 發生하기 쉽다. 여기서 龜裂의 重要한 原因別로 나누어 보면,

(1) 材料·配合에 의한 龜裂

- 1) 시멘트(粉末度, 風化等)의 異常 凝結
- 2) 진흙成分 塩分이 많은 細骨材
- 3) 風化岩, 有孔岩, 粘土 덩어리等 強度가 적은 粗骨材
- 4) 不適當한 콘크리트用 混和劑
- 5) 묽은 콘크리트 使用으로 인한 沈下 龜裂
- 6) 富配合 Mass concrete 등의 水和熱
- 7) 묽은 비빔, 富配合콘크리트의 乾燥收縮

(2) 施工에 의한 龜裂

- 1) 長時間 비빔, 長期間 運搬時
- 2) pump 壓送時의 再加水時

3) 거푸집의 배 나오는 경우, 漏水

4) 早期 脫型

5) 支柱의 沈下

6) 이음 部分의 不良

7) 굳짐 方法의 不良

8) 初期 養生 不良, 急激한 乾燥

9) 配筋, 配管의 被覆콘크리트 두께의 不足

10) 硬化前의 振動, 載荷, 土壓

11) 硬化 도중에서의 凍結

12) 造成後 곧 垆地에 建設하는 境遇

13) Negative friction에 起因하는 龜裂
도중에서의 凍結

(3) 構造에 의한 龜裂

1) 콘크리트의 強度 不足

2) 設計 以外의 外力(積載, 地震, 振動)

3) 鐵筋量, 補強筋의 不足

4) 建物의 不同沈下

5) 基礎算定用 應力算出時의 假定에 의한 龜裂

(4) 使用, 環境條件에 의한 龜裂

1) 建物全體의 不均等 溫度分布에 의한 伸縮

2) 火災, 表面 加熱, 内外面의 溫度差

3) 化學作用(酸, 塩類, 海水)

4) 鐵筋의 녹이 슬 때 發生되는 膨脹

5) 凍結融解의 反復

6) 防水層 누름 콘크리트의 膨脹 등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가) 材料 配合와 龜裂

콘크리트가 硬化하기 直前 또는 硬化하기 始作하는 時期에 생기는 plastic crack는 그 原因에 따라서 沈下龜裂, 初期乾燥 龜裂, 거푸집 支保工의 變形에 의한 龜裂 등으로 나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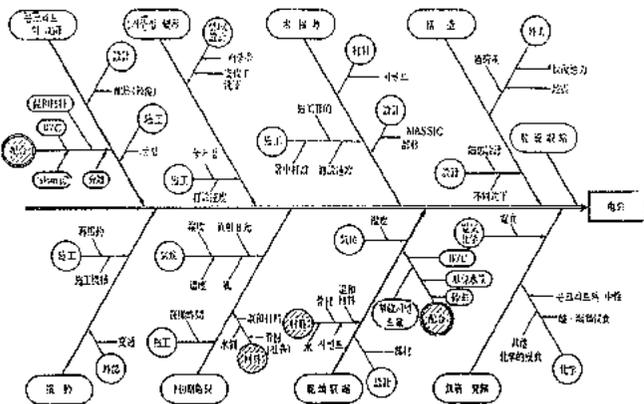
(ㄱ) 沈下龜裂

콘크리트는 打設한 後에 材料의 比重差異로 因하여 Bleeding 現象이 일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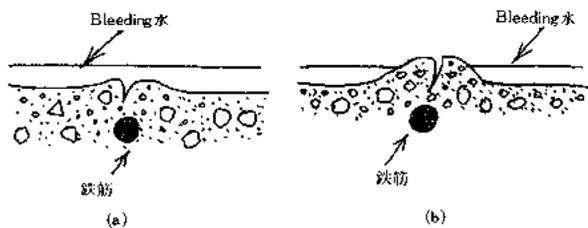
이와 같은 沈下가 鐵筋, 거푸집, 骨材 등으로 因하여 防害될 때에는 그림 2에서와 같이 그 周邊의 沈下가 不均等하게 일어난다. 그리고 그림 2 (b)와 같은 沈下龜裂은 沈下量이 클 뿐 아니라 凝結이 늦고

乾燥의 條件이 갖추어졌을 때 일어나기 쉽다. 여하한 간에 沈下龜裂의 主要原因은 單位水量이 많고 Bleeding 이 큰 콘크리트인 境遇이다. 따라서 單位水量이 적고 Slump가 적은 콘크리트를 正성껏 굳혔을 때 沈下龜裂을 防止하는 가장 基本이라 하겠다. 이와같은 原因으로 因한 龜裂은 普通 鐵筋上端에 1~3 時間 만에 나타나기 때문에 조금만 注意하면 發見되며 早期에 再振動 tamping으로 龜裂을 閉塞할 수 있다. 그림 3은 施工計劃 및 施工方法에 關한 問題이다.

(그림 1) 콘크리트의 龜裂發因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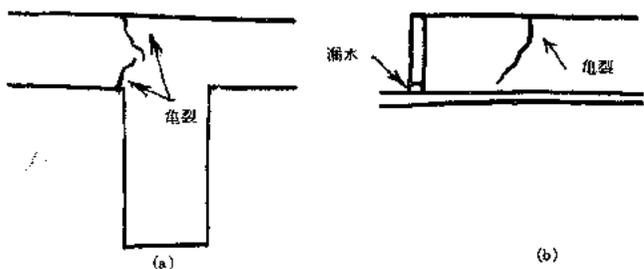


(그림 2) 沈下龜裂의 경우



Bleeding 途中에서 시멘트 粒子의 凝集力이 增加한 경우 沈下가 拘束되어 솟아오른 部分이 乾燥한 경우

(그림 3)



斷面이 다른 場所에 同時に 거푸집에서 漏水로 因한 不等 콘크리트를 打設하는 경우 沈下를 일으킨 경우

(ㄴ) 初期乾燥 龜裂

콘크리트 表面에서의 水分의 蒸發이 Bleeding 速度를 넘을 때 거푸집에서의 漏水等 에 의하여 表面에 Bleeding이 생기지 않을 境遇, 또는 充分히 굳지 않

았지만 凝結이 始作되어 콘크리트 内部에 水分을 吸收하는 狀態일 때는, 시멘트 페이스트를 構成하고 있는 粒子의 結合이 loose하여 조금만 乾燥하여도 龜裂이 發生한다. 이와 같이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乾燥에 의하여 일어나는 龜裂을 初期 乾燥 龜裂이라한다. Bleeding은 클 때에는 沈下龜裂의 原因이 되며, 内部를 不均等하게 하여 透水의 原因이 되는 등 그 다치 바람직하지 않지만, 아주 적으면 또한 初期收縮 龜裂이 일어나기 쉽고, Finishability도 좋지 않게 된다. Finishability의 低下는 過度의 마감作業이 되어 表面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모아 龜裂發生의 條件을 더욱 增加시킨다.

最終 Bleeding 量이 적은 境遇에는 다음과 같다. 시멘트에 對해서는 粉末度가 높을 때, 시멘트 페이스트인 때는 시멘트 粒子 相互間의 凝集力이 強해야 한다. 시멘트 溫度가 높을 境遇이다. 骨材에 對해서는 細粒 部分이 많을 때, 吸水量이 많은 骨材를 乾燥狀態로 使用할 때, 骨材의 溫度가 높을 境遇이다. 混和材에서는 粉末度가 높을 때, 粒子形이 不規則하고 保水係數가 높을 境遇이다. 混和劑에 對해서는 시멘트의 凝結을 빨리할 때, 單位水量을 減小시키는 境遇이다.

(2) 使用 環境條件과 龜裂

龜裂에 關係되는 使用 環境으로는 溫度變化, 濕度變化, 凍結 및 火災等を 對象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凍結과 火災의 경우를 溫度變化의 경우라고 생각하면 두가지로 統一할 수 있다. 그런데 B·Mather는 龜裂을 發生시키는 環境上의 因子로는 다음과 같은 여섯가지 現象을 들을 수 있다.

- 1) 不良 시멘트를 使用하였기때문에 생기는 膨脹
- 2) Alkali Silica 反應
- 3) 黃酸鹽 浸食
- 4) 埋設된 金屬의 腐蝕
- 5) 凍結融解
- 6) 初期收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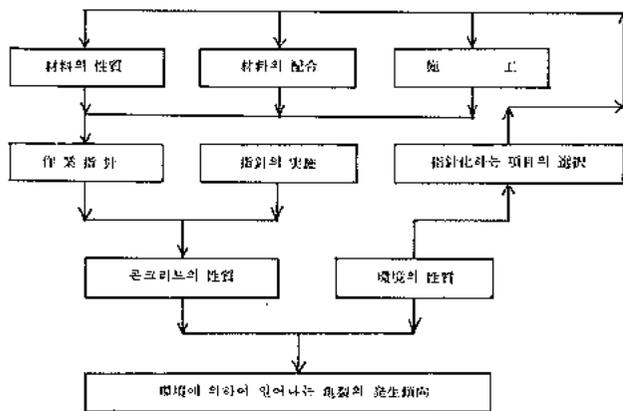
이들 因子와 콘크리트의 性質 및 環境의 性質과의 關係는 表1과 같다. 이들 가운데서 環境上 發生되는 濕氣의 變化는 龜裂을 일으키게 하는데 基本이 되는 것이다. 모든 境遇에 있어서도 龜裂은 環境의 性質과 콘크리트의 性質과의 豫想되는 相互作用에 對하여 注意있게 다루면 避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材料의 性質比率 및 施工에 對한 指針에 나타내고 있다(그림 4 參考). 다만 普通인 環境 因子와 異常인 環境因子(破局的 또는 突異의 原因으로 發生되는 環境因子)로 區別하여야 한다. 假令 콘크리트가 通常 使用되는 環境에서는 極端的인 高·低溫은 없

다. 通常의인 環境 條件에서 龜裂에 抵抗하는 同時에 極端的으로 甚한 異常條件에서도 龜裂을 일으키지 않게 한다는 것은 決코 實際的이 아니다. 이들 項目 가운데서 凍結融解를 除外하고는 溫度變化, 濕度變化에 對하여 記述하고자 한다. 溫度變化와 龜裂에 關한 一般事項으로는

- 1) 自己發熱 또는 外部溫度의 變動
- 2) 1)에 基因한 콘크리트 内部溫度의 變動
- 3) 2)에 基因한 自己變形의 發生
- 4) 自己變形이 拘束된 境遇에 있어서의 引張應力의 發生
- 5) 4)와 그때의 콘크리트 物性積에서의 龜裂의 發生性의 檢討

環境上의 因子	콘크리트의 性質	環境의 性質
不良 시멘트	未水和CaO 또는 MgO의 量이 過大	溫 氣
alkali silica 反應	骨材中의 可溶性 silica와 Cement 속의 alkali 量이 過大	溫 氣
黃燻塩 侵食	水和된 Calcium alminate 量의 過大	黃 塩의 量이 過大
金屬의 腐食	腐食하기 쉬운 金屬과 作用하는 藥劑에 의한 腐食	溫 氣
	腐食하기 쉬운 金屬과 不充分한 콘크리트 被覆	溫 氣와 過大한 量의 藥劑에 의한 腐食
凍結 融解	硬化시멘트케이스트속의飽和 毛細管孔, 不充分한 空隙 組織	溫 氣와 凍結 融解
初期收縮에 의한 龜裂	早期 表面乾燥	높은蒸發 乾燥率

(表 1) Bryant Mather의 變因에 關한 資料



(그림 4) 콘크리트의 性質과 環境의 性質과의 相互作用에 의하여 일어나는 龜裂의 發生傾向을 나타내는 diagram

와 같은 것이 생각된다. 그리고 濕度變化에 의한 因子로서의 相對 濕度는 가장 影響이 큰 것이 하나이다.

[3] 施工과 龜裂

施工할 때 일어나는 龜裂의 發生因子를 運搬과 打設 鑿입法 및 養生 등으로 나누어 생각하게 된다.

1) 運搬에 의한 影響

運搬에는 時間과 方法이라는 면에서 다루게 된다. 運搬時間이란 콘크리트를 비비기 始作하여 終了할 때까지의 時間을 말한다. 運搬時間은 콘크리트 物性에 여러가지로 影響을 주지만 龜裂發生에 對해서는 주로 두가지를 생각하게 된다.

(ㄱ) 沈下龜裂

콘크리트를 打設한 後에 水分의 上昇, 圓形物의 沈下라는 分離現象이 일어난다. 이 沈降이 鐵筋等에 의하여 防害되거나 콘크리트 두께의 部分的인 差에 의한 沈降의 差異가 생기면 그 表面에 龜裂이 일어난다. 普通 콘크리트를 打設한 後 1~2 時間 內에 일어나는 現象을 沈下龜裂이라 한다.

(ㄴ) 溫度上昇

콘크리트의 溫度는 材料의 溫度, 外氣溫, 水和反應에 의하여 일어나는 熱 및 비비면 運搬中의 機械的 Energy에 의하여 影響된다. 추운때는 別個로 하여 一般의일 때의 콘크리트의 溫度는 運搬時間과 더불어 上昇한다. 上昇하는 狀態는 더운 날씨일 때 顯著하다. 通常의인 Fresh concrete인 境遇에는 그다지 氣溫이 높지 않을 때, 1時間當 0.5~1°C, 더운 날씨에는 2°C까지 上昇한다.

콘크리트 溫度(°C)	外氣溫 (°C)	相對溫度 (%)	露 點 (°C)	風 速 (m/sec)	蒸發速度 (kg/m ² ·h)
27	4	100	4	4.5	1
21	4	100	4	4.5	0.635
16	4	100	4	4.5	0.366

(表 2) 外氣溫과 콘크리트溫度의 差에 의한 水分 蒸發量의 變化(W·Lerch에 의한)

콘크리트의 溫度가 上昇하면 두가지 면에서 龜裂發生에 影響을 준다. 그 하나는 打設 直後의 水分의 蒸發이 激烈하게 되는데, 特히 氣溫보다 콘크리트溫度가 높으면 그 傾向이 顯著하다. 表2는 그것을 表示하고 있다. 水分의 蒸發이 激烈하게 되면 初期龜裂이 發生하기 쉽게 된다. 다른 하나는 溫度應力에 의한 龜裂의 發生을 促進시키게 된다.

(ㄷ) 運搬方法

콘크리트 運搬 方法은 여러가지 있으며 適切한 方法을 適用하면 龜裂發生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近年에 使用하고 있는 pump 工法이 龜裂發生을 促進시킨다는 말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事實無根한 일인지요. Pump로서 콘크리트를 壓送하는 自体가 콘크리트의 龜裂을 促進한다는 것은 다른 運搬方法에도 있겠으나, 特히 壓送性を 잘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配合에 加해지는 變更이 龜裂發生에 影響을 주는 境遇라고 하겠다. 콘크리트의 壓送을 能率 있게 하기 위한 여러가지 方法이 있겠지만 콘크리트의 品質面에서 言及한다면 材料 分離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하며, 流動性이 좋아지고, 粘性이 작아져야 한다. 이와 같이 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속의 單位 시멘트量, 물달분을 어느 程度 增加시키고 slump 나 콘크리트量이 分離되지 않을 程度로 크게 잡아야 한다.

2) 打設 순환

콘크리트를 거꾸집 속에 넣어 굳히는 過程에서 생기는 龜裂은 다음과 같다.

(가) 沈下龜裂

鐵筋 上部에 생기는 沈下龜裂에 對해서는 slab 를 될 수 있는대로 작게 打設하면 되지만 完全히 막을 수 없는 境遇에는 發生後 直時로 tamping으로 없애게 하면 된다.

(나) 거꾸집의 變形에 의한 初期龜裂

打設後 콘크리트가 流動性을 잃고 充分한 強度를 維持하기 前에 變形을 일으키게 되면 任意斷面에 龜裂이 發生하게 된다. 鉛直部分의 거꾸집이 充分히 튼튼하지 못할 境遇에는 콘크리트의 壓力으로 휘어지고 그만큼의 콘크리트가 흘러 떨어지게 되어, slab 端部에 龜裂이 發生하거나, 보의 支柱가 強할 때, 보 端部에 龜裂이 發生된다.

(다) 水和熱로 인한 龜裂

이것은 主로 masic한 콘크리트일 때에 問題視된다.

(리) 硬化後의 體積變化로 인한 龜裂

이에 對한 要因을 크게 나누면 콘크리트의 體積變化의 크기와, 그것을 阻止하고자 하는 周邊에서의 拘束力의 크기를 생각하게 된다. 後者は 한 콘크리트 部材와 連結되고 있는 다른 部材나, 그 部材에 묻혀 있는 鐵筋에 의한 것이다. 假令 壁體나 바닥에 比하여, 그 周邊의 보 기둥은 그 體積變化가 鈍하게 되고, 壁體나 바닥의 變形에 對하여 拘束力을 미치게 한다. 또한 地中에 묻혀있는 部分은 地上에 나타나 있는 部分에 比하여 一般的으로 體積變化가 적다. 後者에 對하여 拘束力을 미친다. 이와 같은 狀態에서 한편으로는 引張應力이, 다른편에는 壓縮應力이 일어나지만, 콘크리트의 引張強度는 壓縮強度에 比하여 훨씬 적다. 引張側 部材가 破斷하여 龜裂을 發生시키게 되는 것이다. 콘크리트 構造物은 建設後, 全體로서 收縮方向으로 움직이므로 壁體나, 바닥, 및 地上部分에 比較的 많은 龜裂이 發生한다. 이와같은 龜裂은 콘크리트의 本來의 物性에 의한 것이므로, 이것을 施工上으로 考慮하여 防止시킨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現在 생각하는 方法으로는 材

料面에서 될 수 있는대로 收縮이 적게하여 使用하는 것이다. 結局 하나는 單位水량이 적고 slump가 적은 콘크리트를 使用하는 때와, 다른 方法으로는 龜裂을 될 수 있는대로 無害한 것으로 해버린다.

龜裂을 될 수 있는대로 無害한 것으로 하는 方法으로는 龜裂이 發生되어도 小數의 龜裂幅이 큰 것보다는 多數의 가는 龜裂이 되도록 하면 透水나, 濕氣를 通過시키지 않는다.

3) 養生

龜裂에 關係되는 養生法으로는 水分의 蒸發防止, 溫度의 制禦, 作業荷重의 制禦, 거꾸집의 維持期間等의 問題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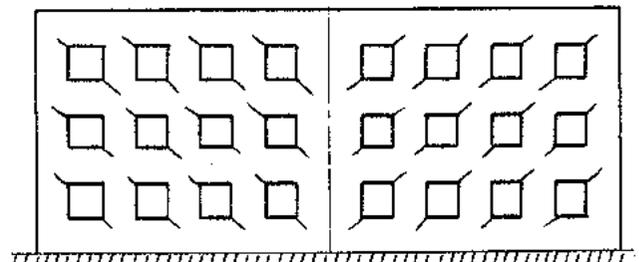
4) 構造的인 龜裂

建築物을 調査하여 보면 여러군데에서 여러 形體의 龜裂이 發見되게 된다. 調査結果를 整理하여 보면 發生原因에 따라 共通된 pattern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이들의 pattern을 類形別로 나누어 두면 龜裂發生의 原因을 推定하는데 도움이 된다.

(가) 壁面의 境遇

1) 逆八字形 龜裂

이것은 建物の 外壁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龜裂로서 그림 5와 같이 開口部의 기둥에서 發生하고 建物 全體로 볼 때에는 逆八字形을 이루고 있다. 이들 龜裂幅은 建物の 아래層 또는 兩端附近으로 갈수록 커지며, 夏節에 施工한 경우에 많은데, 普通 施工한 뒤 6個月이면 建品의 上層과 下層의 콘크리트의 乾燥收縮의 差異로 인한 것인데 建物の 上層이 相對적으로 短縮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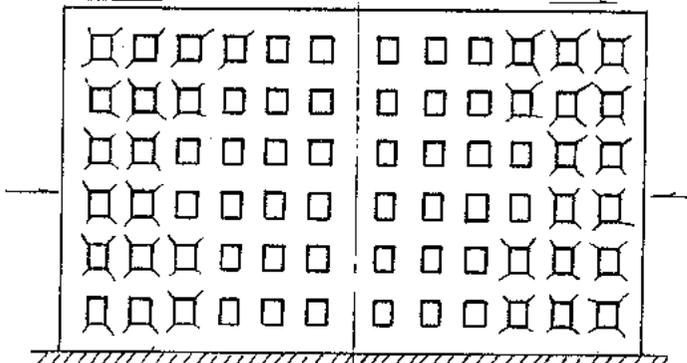
(그림 5) 逆八字形 龜裂

2) 八字形 및 逆八字形 龜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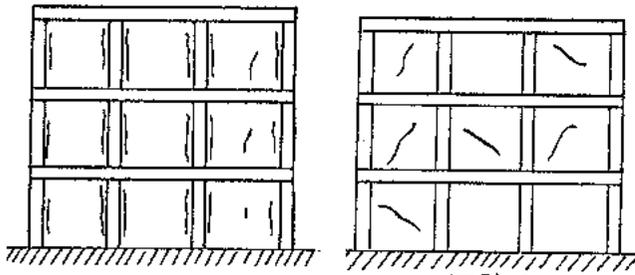
그림 6에서와 같이 建物の 層數가 比較的 높은 境遇에는 上層에는 八字形 龜裂이 發生하는데, 이것은 지붕面이 直射日光에 의하여 溫度膨脹을 일으켰기때문이고, 四季의 溫度變化에 의한 溫度上昇에 의하여 일어난다. 下層에서는 逆八字形 龜裂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가)와 나)의 原因이 겹치면 X形 龜裂이 發生한다.

㉔) 縱方向 龜裂

보와 같이 拘束이 큰 壁體에서는 主로 乾燥收縮에 의한 그림 7과 같은 縱方向의 龜裂이 壁體의 中央 또는 기둥에 따라 發生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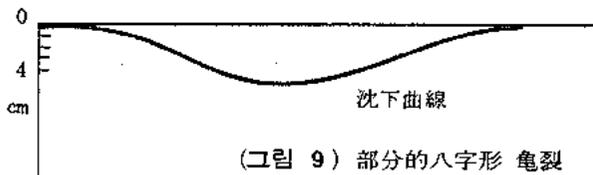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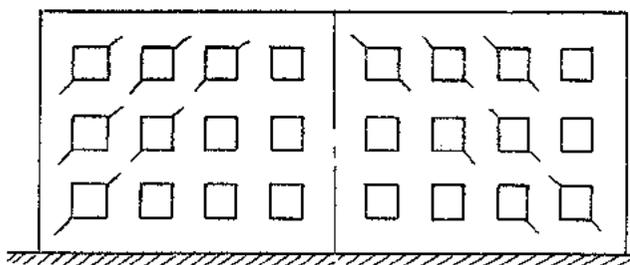
(그림 6) 下層의 逆八字形 및 上層의 八字形 龜裂



(그림 7) 縱方向 龜裂 (그림 8) 不規則한 斜方向 龜裂

㉕) 不規則한 斜方向 龜裂

그림 8과 같이 斜方向 龜裂은 얼핏 보면 剪斷力에 의한 龜裂로 錯覺하기 쉬우나 이것은 콘크리트 打設時에 一時的으로 工事中止에 의하여 일어나는 이음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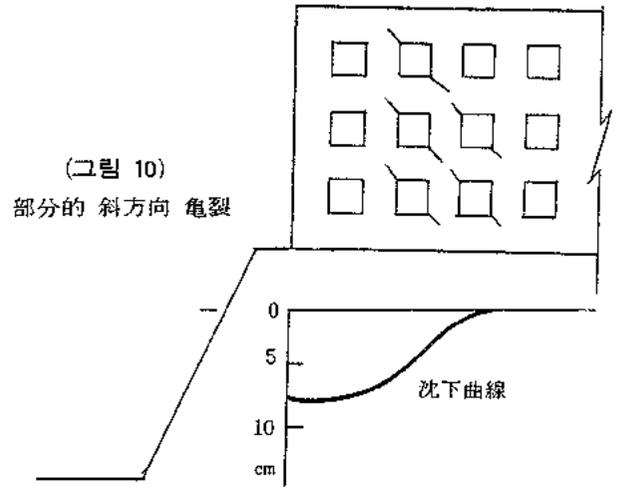
(그림 9) 部分的八字形 龜裂

㉖) 部分的 八字形 龜裂

이것은 不同沈下等の 原因으로 생기는 境遇가 많다. 一般적으로 壓密하고 均等한 地盤에서는 地中應力分佈가 建物の 中央附近에서 應力이 接쳐서 그림 9와 같이 建物の 中央部가 沈下하여 八字形 龜裂이 생긴다.

㉗) 部分的 斜方向 龜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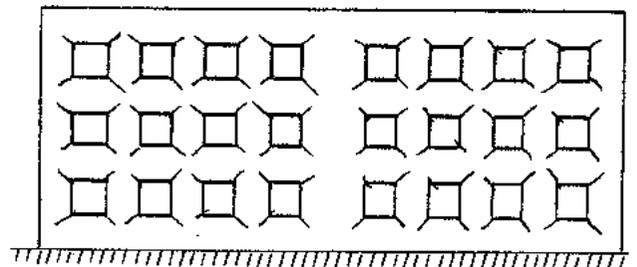
建物の 端部の 地盤이 沈下하는 境遇에는 그림 10에서와 같이 그 沈下한 方向에 斜方向 龜裂이 일어나고, 逆으로 한 部分에서 地盤이 沈下할 때에는 沈下한 部分과 反對 方向으로 傾斜 龜裂이 생긴다.



(그림 10) 部分的 斜方向 龜裂

㉘) 全面 斜方向 龜裂

地震과 같이 水平力으로 인한 壁體의 龜裂은 建物 全體의 壁體에 걸쳐서 斜方向 龜裂이 생기게 되는데, 그림 11에서와 같이 普通 X形 龜裂이 많다.



(그림 11) 全面斜方向 龜裂(X形 龜裂)

(㉔) 보의 境遇

㉑) 縱方向 龜裂

보의 下端은 그림 12에서와 같이 30~50cm間隙으로 생기게 되는데, 콘크리트의 收縮과 휨應力이 原因이 된다. 한편 보의 上端, 特히 보와 기둥의 接合部附近에 들어가는 龜裂은 휨에 의한 龜裂으로서, 그림 13에서와 같이 構造的인 原因이라 生覺된다. 보의 上端 特히 slab까지 貫通하여 들어간 龜裂은 剪斷 龜裂으로서, 地震이나, 不同沈下의 原因으로 因하여 斜方向으로 發生한다. 이 以外에도 보 下端에서 4cm 程度 位置한 곳에 보의 軸方向과 平行하게 發生되는 龜裂은 鐵筋이 녹으로 因한 膨張이 原因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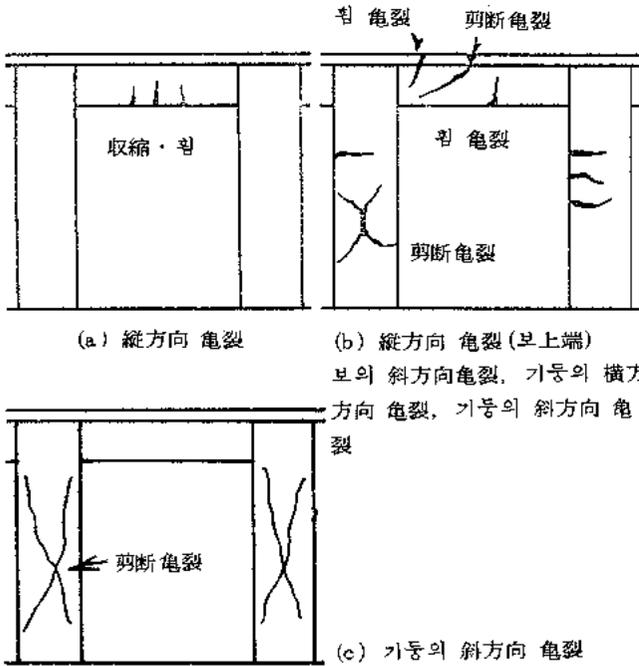
(㉒) 기둥의 境遇

㉑) 橫方向 龜裂

기둥의 휨應力이 크게 作用할 때 생기는 龜裂이다.

ㄴ) 斜方向 龜裂

地震으로 因하여 큰 剪斷力이 加하여졌을 때 생기는 龜裂 pattern으로서 그림1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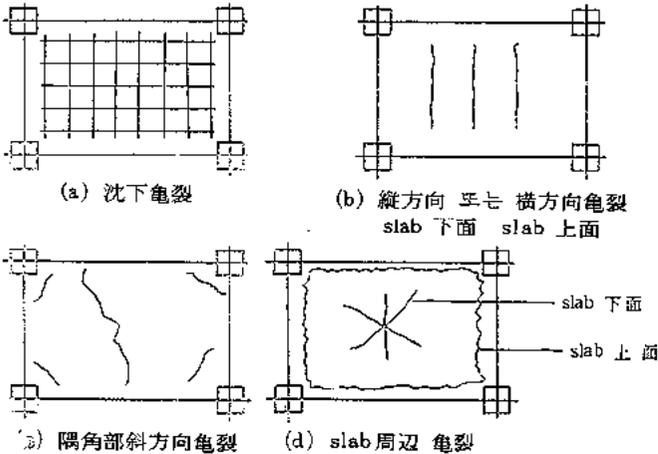


(그림 12) 기둥·보의 龜裂

(ㄷ) 바닥의 境遇

ㄱ) 沈下 龜裂

콘크리트 打設後에 생기는 沈降에 因하여 그림14 (a)에서와 같이 鐵筋이 配置된 表面에 龜裂이 發生하게 되므로 마치 바닥판과 같다.



4) slab 바닥의 龜裂

ㄴ) 縱 또는 橫方向 龜裂

콘크리트 乾燥收縮에 因한 龜裂로서 그림14 (b)에서와 같이 slab의 長邊方向과 直角인 方向으로 龜裂이 생긴다.

ㄷ) 隅角部 斜方向 龜裂

Slab의 周邊보에 因한 拘束이 클 때에는 그림 14 (c)와 같이 바닥 모퉁이에 斜方向으로 收縮 龜裂이 생긴다.

ㄷ) Slab 周边 龜裂

Slab의 처짐으로 因하여 생기는 龜裂은 그림14 (d)와 같이 Slab上面에는 周边에 沿하여 생기고, Slab 下面은 中央部에 휨 龜裂을 同伴하는 것이 普通이다.

[3] 龜裂과 耐力

콘크리트 構造의 耐力은, 그것을 構成하고 있는 材料强度, 斷面積 및 鐵筋配置關係에 直接的으로 關聯이 있다. 이것을 휨 모멘트에 關하여 나타내면

$$M_s = f(A_s, \sigma_s, l_r) \dots\dots\dots(1)$$

$$M_c = f(A_c, \sigma_c, l_r)$$

여기서 M_s, M_c : 鋼材와 콘크리트에 因하여 決定되는 部材의 휨 모멘트

A_s, A_c : 鐵筋 및 콘크리트 各各의 斷面積
 σ_s, σ_c : 鐵筋 및 콘크리트 各各의 許容應力度 또는 降伏點 應力度

l_r : 合力의 中心距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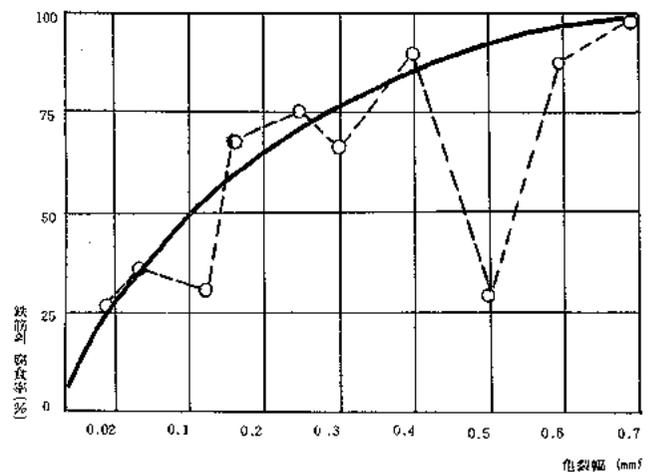
된다. 따라서 콘크리트에 發生되는 龜裂은 (1)式 속의 A_s, σ_s 에 서로 關係가 있으며, 鐵筋의 劣化로 因한 斷面積 減小, 콘크리트의 品質劣化를 일으키는 要因이 된다. 따라서 A_s, σ_s 의 減小나 低下는 M_s, M_c 의 減小에 直接 連結되어, 部材 또는 構造物의 耐力 低下를 가지게 된다. 더욱이 殘留되어 있는 龜裂幅이 커지면 鐵筋의 應力度 σ_s 는 커져있고 追加된 荷重에 대한 應力은

$$M_{s,r} = f(A_s, (\sigma_{sa} - \sigma_{sd}), l_r)$$

여기서 $M_{s,r}$: 殘留抵抗 모멘트

σ_{sd} : 既載荷重에 因한 鋼材 應力度

S_{sa} : 鐵筋의 許容應力度



(그림 15) 龜裂幅과 鐵筋의 腐蝕率

이다. 龜裂幅과 鐵筋의 劣化로 因한 斷面積의 減小에 對한 研究은 많이 하고 있다. 여기서 그림 15는 海岸에 있는 콘크리트 構造物을 對象으로 한 것이다 그런데 橫方向 龜裂은 鐵筋을 劣化를 速하게 하는데 그다지 影響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그런데 縱方向

의 龜裂이 發生한 경우로서 0.3mm를 넘는 경우에는 鐵筋에 녹이 쓴 것을 確認하였다. 그러나 龜裂幅과 鐵筋의 腐蝕에 關하여서의 確實한 關係가 解明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實用上의 龜裂幅은 各國마다 여러 가지 形体로 規定되어 있다. 이들은 各各 相互間에 다른 規定을 引用하여 얻은 形式으로 되어있어 거의 같은 값으로 되어있다. 表3과 같다.

(表3) 콘크리트의 許容龜裂幅

國名	種別	許容龜裂幅 (mm)	備考
英國	BSI 規定 一般 構造物	0.3	CP-110 d: 主鐵筋被覆
	특히 激烈한 浸蝕性의 環境	0.004d	
佛國		0.4	
獨國	DIN 規定 鐵筋의 種類, 直徑, 鐵筋比, 荷重條件 等에서 計算式이 주어진다.		DIN 1045
스웨덴	死荷重	0.3	
	死荷重+活荷重/2	0.4	
美國	ACI 規定 乾燥한 大氣中 또는 保護層이 있는 경우	0.4	ACI 318-71
	우 濕한 空氣中 暴露에 있을 경우	0.3	
	凍結防止用 藥品에 接할 경우	0.175	
	海水, 海水의 飛來로 因한 乾溫이 反復되는 경우 水密構造部材	0.15 0.10	
歐州 콘크리트 委員會	歐美콘크리트委員會 防護된 部材	0.3	CBB-FIP 持續荷重 및 1 年以上載荷된 變動荷重에 對하 여 持續荷重과 變 動荷重의 不利한 組合
	防護되지 않은 部材	0.2	
	顯著히 露出된 部材	0.1	
	防護되지 않은 部材	0.3	
	顯著히 露出된 部材	0.2	
日本	効外와 같이 比較的良好한 環境比較的 溫度가 높은 個所(河川上) 腐蝕性이 強 한 條件인 곳, 海岩 또는 地層高所와 같이 雨水의 影響을 直接받기 쉬운 곳	0.3 0.2 0.7	

表3은 이들 가운데서 代表的인 것을 나타내었다. 表에 表示된 값은 鐵筋에 녹이 슬지 않을 것 (龜裂이 생겨도 耐力에 影響을 미치지 않는 範圍)을 豫定한 것이다. 한편 鐵筋의 引張應力度와 龜裂幅과의 關係는 在來의 實驗結果等에서 얻은 것을 整理하여 表4 및 表5에 나타내었다. 따라서 녹으로 因한 鐵筋斷面의 減少는 表4의 龜裂幅이 許容되었다 하여도 (2)式에 나타낸 追加荷重(積載荷重)에 對한 耐力을 考慮하는 경우에는 表5의 龜裂幅에 注目하여야 하며 이 값으로서 耐力이 左右된다. 이와같은 事實에서 發生한 龜裂이 鐵筋應力과 關係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耐力의 推定方法이 달라진다. 따라서 調査段階에서 이와같은 區別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重要한 것이다.

(表4)

露出·條件	龜裂幅의 許容值
相當히 腐蝕을 받은 構造物의 部材	0.1mm
保護工이 없는 普通 構造物의 部材	0.2
保護工이 있는 普通 構造物의 部材	0.3

(表5)

鐵筋의 引張應力度	龜裂幅
1,000 kg/cm ²	0.05~0.1mm
2,000	0.1~0.2
3,000	0.2~0.3

假令 初期 乾燥收縮, 거무집의 沈下에 의한 龜裂은 一般의 鐵筋應力과 그다지 關係가 없다고 推定하고 있지만 構造物 完成後인 경우에는 應力과 龜裂은 關係가 있다고 생각되어 鐵筋位置에서의 龜裂幅을 推定하고 鐵筋應力의 算定을 表6을 基本으로 하여 施行되 되어야 한다.

(42페이지의 繼續)

住宅에 대한 住民들의 要求條件을 分析해 보면 大部分이 洋屋建物を 願하고 約 50% 以上이 2層 建物を 希望하고 있다.

標準住宅보다는 自己意思에 따른 個別住宅을 願하는 사람이 約 75%에 達하고 있으며 標準住宅의 경우에는 規模의 擴大와 形態의 多樣化를 希望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부엌構造는 約 50% 以上이 立式型을 願하고 특히 젊은 階層에 要求度가 높게 나

타나고 있다. 燃料은 約 70%가 煉炭을 希望하고 暖房用과 炊事用의 分離를 願하며, 暖房은 約70%가 煉炭보일러方式을 希望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便所는 住宅內部 設置보다 90% 以上이 外部에 設置함을 要求하고 있고, 浴室은 大部分이 必要함을 要求하고 있으나 改良住宅에 設置된 浴室의 경우, 設備의 未備와 부엌에서의 出入 등 使用上의 不便을 지적하고 있으며, 住宅안에서 出入할 수 있는 完全한 設備을 갖춘 浴室을 希望하고 있다.

太陽熱住宅의 造形設計

李 廷 德

(高麗大學校建築工學科教授)

住宅은 우리人類의 歷史에서 한번도 斷絶되지 않고 계속 사용해 온 唯一한 건축물이다. 우리나라에서도 墓墳·城堡·佛寺·官衙 그리고 塔婆와 같은 여러 축조물이 생겨나서 한창 꽃을 피우고 사라져 간 그 동안에도 住宅만은 생명체와 같이 代를 이으며 계속 발전하여 왔다. 비록 아주 작고 소박하게 지어진 집일지라도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그 속에 들어가 살기 때문에 최소한의 對外的 방패기능(벽·지붕 등)과 呼吸기능(窓·환기구 등)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없다. 더군다나 이것들은 地域마다 다른 기후나 太陽의 조건에 교묘하게 잘 맞도록 「進化」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太陽이 아쉽고 추운 北歐에서는 보다 많은 햇볕을 건물 안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지붕처마가 없고, 지붕의 물매도 積雪의 量을 極小로 하기 위해 급경사로 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熱帶에서는 진저리나는 태양광선을 막기 위해 처마길이가 깊을 뿐만 아니라 窓과 같은 開口部도 그 언저리에 햇볕이 닿지 않게 하기 위해 그늘 속에서 여달도록 자리를 잡고 있다. 暴雨가 많은 海洋性 氣候를 가진 곳(日本·東南亞 등)에서는 지붕에서의 單位時間當 滯水量을 極小로 하기 위해 지붕의 물매가 급경사이다. 급한 물매는 北歐와 유사하지만 처마가 없는 北歐型 지붕의 모양은 南海洋型이 급경사에 처마가 있어 무거워 보이는 지붕形態와 전혀 맛이 다르다. 이것은 곧 住宅全體의 造形感覺을 달리하는 主要因이 되고 있다.

韓半島의 住宅도 어김없이 이곳의 太陽과 氣候의 특성에 맞추어 그 모양새가 定해져오고 있다. 住宅 평면의 기능이 다르거나 주택의 크기가 다르더라도 어느 것이나 그 造形感覺이 서로 같은 것은 이 때문인 것이다. 우리는 太陽의 황금빛 직사광선이 필요한 嚴冬과 뜨거운 불볕을 피해다녀야 하는 三伏때문에 처마는 깊지도 얕지도 않게 되어 있으며 눈과 비의 量도 많지 않아서 기와지붕의 내림새가 緩慢한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傳統의 지붕은 햇볕을 막는 양산과 비를 막는 우산의 두 가지 역할을 다같이 해 낸 것이다.

鑿의 구조와 재료도 防溫은 물론 물과 충격과 더

러움에 견디는 石壁부분을 아래에 두고 습기에 견디고 창문을 설치하기 좋은 흙벽을 心壁구조로 윗쪽에 두었음은 우리의 四季節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창문의 크기와 위치며 개폐방식도 틀림없이 春秋의 운치까지도 계산한 것이라 하겠다.

이와같은 古典的 주택은 太陽熱의 活用은 물론 모든 外的여건에 맞도록 빛어 놓은 것이므로 소위 passive solar house 임은 물론 passive weathering house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기계적인 장치나 動力을 써야 하는 실비가 없이도 집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비록 현대적 기능을 갖어야 하는 오늘날의 주택에서도 본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기 위해서 建築家의 銳利한 創意와 構想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제 당면한 造形設計上의 문제점을 들어보겠다.

1. 平板形 集熱器를 태양광선에 露出시키어 최대한 태양에너지를 받도록 屋外에 설치하게 되는데 이때 集熱器는 태양光線만을 意識하여 傾斜를 취함으로써 建築詳細의 原則上 禁忌하는 「仰天傾斜의 유리而透過體(glazing)」가 문제점이 되고 있다.



눈·먼지 덜임

덜이지 않음

(그림 1) 집열기의 傾斜型과 鉛直型

즉 겨울철에 눈에 덜이거나 비바람으로 인한 먼지가 없게 되면 그것이 태양광선을 막게 되기 때문에 일일이 除去해야 하는 노력이 들며 만일 집열기의 위치가 좋지 않거나 크기가 지나치게 윗쪽으로 경우에서는 기계적 장치에 의하여 손질하게 되므로 또 다른 에너지의 사용을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그림 1에 예를 든 것과 같이 건축詳細原理에 맞는 ...을 바른 방향으로 집열판의 설치방법을 개발해야 하겠다.

右側의 鉛直型에서는 集열기는 鉛直方向으로 서있기 때문에 눈에 덮이지 않게 되며 그림에서와 같이 약간의 덮개(cap)가 없어도 보통의 비나 먼지들 파할 수도 있다.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集열기는 鉛直이지만 잘게 나누어진 受熱板(absorber plate)은 모두 太陽光線方向에 直角되도록 고안되어 있다. 이 예는 循環系統에 복잡성이 있으나 이점은 건축적 합리성에 적응하기 위해 기계적으로 극복해야 할 것이다.

2. 일반적으로 集熱器를 지붕에 설치하는데 건축미관에도 좋지 않을 뿐 아니라 表面 청소나 수리 와 같은 손질과 點檢(지붕안쪽에서의 점검일 경우 포함)에 불편하며 문제가 생겼을 경우 早期發見이 어려울다.

건축미관의 문제는 건축설계의 技術과 디자인感覺이 뛰어난 경우에는 해결할 수 있으나 住宅構造上 사람의 신경감각이 잘 닿지 않는 지붕위에 신경을 써야하고 손질을 해야 하는 裝置를 施設한다는 것은 住宅設計의 기본조건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붕위는 H射의 장애요인이나 集열기 表面손상의 위험이 감소되는 장점이 있지만 눈이 덮이거나 다른 요인으로 오염 되든지 파괴되었을 때 작업하기 위해 오르내리는 불편이 있다. 따라서 가급적 지붕 위에 두는 것을 피하고 앞에 例示한 鉛直型을 外壁 上部에 설치하는 등의 연구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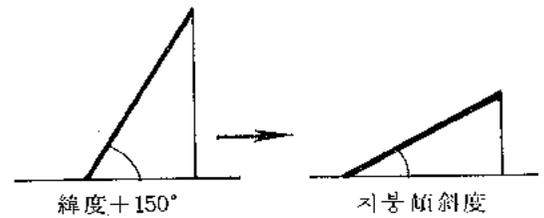
3. 주택이 密集되어 있거나 대지가 좁아서 부득이 지붕에 集熱器를 설치하는 경우 集熱器의 效率만 생각하는 나머지 그 傾斜度를 公式대로 「그곳의 緯度+150」로 잡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보편적 경사지붕의 물매보다 급한 경사로 설치하기 때문에 건물의 外觀이 이상해질 뿐 아니라 集열기 자체도 구조적 安定性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다. 다소 集열효율이 떨어지더라도 그림-2에서와 같이 지붕의 물매에 集열기(판)의 경사도를 맞추어 설치하도록 설계를 하여야 주택의 外觀을 해치지 않는 자연스러운 건물이 될 것이다.

4. 平板集熱器를 지붕에 설치하는 경우에 관리유지에 편하고 건물의 外觀이 調和되는 예를 그림-3에 例示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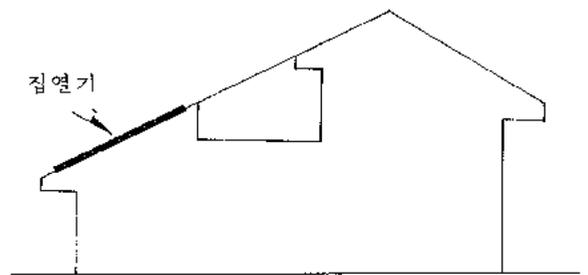
集열기는 지붕의 물매와 동일 경사로 놓여 있고, 그 上端은 2층사람의 眺望을 방해하지 않고 또한 난간의 높이가 되는 한도까지 올라가도록 한다.

최근 各國에서는 평판集열기를 지붕에 설치하면서도 건물의 外觀을 좋게 하는 여러가지 案이 고안 되고

있다. 이 課題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건축가에게도 흥미있는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붕이 아닌, 손 쉬움게 손이 닿을수있는곳에 「건축의장상 잘 조화되도록」설치한다는 더욱 더 흥미있는 설계연구 과제가 남아 있는 것이다.



(그림 2) 集열판의 傾斜度調整



(그림 3) 지붕集열기의 적정위치

5. 태양열이용방법이 기계방법이든 자연식방법이든 그것을 적용하는 주택의 설계에는 반드시 그 주택이 세워지는 곳의 地域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원래 南北으로 걸쳐 길게 형성되어 있는 韓半島는 南部·中部·北部의 氣候的 차이때문에 수천년 동안 조상들에 의해 주택의 평면과 구조형식이 달라올 만큼 地域的기후조건에 알맞도록 最適正耐候機能을 갖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傳統的주택형을 南部型·西部型·北部型으로 분류하는데 이 세가지를 비교하면 오늘날 우리가 追求하는 太陽熱의 利用과 保溫뿐만 아니라 여름철의(특히 南韓一帶에서 요구되는)적절한 통풍에 의한 이른바 passive cooling을 할 設計方向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알맞게 뾰는 처마의 길이는 外壁의 방수는 물론 뜨거운 여름의 햇볕을 막아주고 있는 것은 잊기 쉬운 전통이다.

6. 自然式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건축설계상의 여러가지 문제점이다. 현재는 건축가 개인의 주관적인 개념에 의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自然式의 각 「시스템」별로 精密하고 확실한 설계자료를 연구·개발하여 이것을 이용한 합리적인 설계를 해야 할 것이다. 自然式에는 다섯가지의 태양열이용 「시스템」이 있는데 어느 「시스템」을 이용 하더라도 그 건립지역에 맞는 정확한 설계자료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어느 地點에 태양열주택을 건립한다고 할 때 ① solar heat gain의 計算이나 ② 건

물의 배치, ③ 屋內配室계획, ④ 窓계획, ⑤ 채양설계 등에 사용할 太陽軌蹟表(sun chart)를 作成해야 한다. 그리하면 그 地點에 있어서 年中 어느 순간에 있어서나 태양의 높이와 方位를 알수있다. 이 表는 緯도에 따라 作成하게 되며 우리나라에서도 緯度別 太陽軌蹟表가 만들어져야 한다.

7. 自然式가운데 많이 사용되는 「트롬베」인 Trombe-wall 방식은 폐쇄감을 가져오므로 居室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南쪽이 탁 트여야 할 곳에 설치하는 것은 잘못된 설계이며 이러한 폐쇄성 蓄熱壁은 칩실과 같은 室의 外壁에 설치하는 것이 옳다. 우리나라의 여름철 통풍을 염두에 두어 거실의 앞에는 太陽空間(sun space)으로서의 開放可能 溫室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 하겠다. 이때 溫室內의 적당한 위치에 아름다운 彩色을 한 water-wall 축열조를 배열하는 것도 좋다. 외국에서 흔히 사용한다고 Trombe-wall과 같은 축열벽을 온실과 거실사이에 두기 쉬우나 이것 역시 우리나라의 여름통풍과 春秋의 바깥眺望을 막는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축열을 위해서는 바닥을 이용한 蓄熱床(masonry floor)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축열바닥은 座式生活空間에는 부적합하므로 立式거실에 적합하다.

8. 어떤 종류의 自然式에서나 외벽의 개구부에는 斷熱幕(insulation curtain)이 필수적인데 이 제품의 개발이 시급하다. 그리고 집열창의 창틀용 非傳導性材料의 개발이 요청된다. 현재 럭키주식회사 제품의 「하이샤시」가 있으나 제품성능이 단순하고 수요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이것들은 건축외관의 액센트요소가 되는 것임을 고려해야 한다.

서울長安坪과 忠南大德의 自然式 태양열 시범주택에서의 실험결과를 보면 현재 市販하고 있는 集熱窓의 성능이 좋지 않다. 그러므로 집열창의 개발이 시급한 문제로 되어 있다. 알미늄은 傳導性이 있어 사용할 수 없으며 럭키주식회사제품의 「하이샤시」의 경우 미서기창에는 2重유리를 끼울 수 없는 것이다. 엄밀히는 집열창(glazing)은 3重유리하여야 하며 선진 각국에서는 그렇게 설계되고 있다. 熱에너지의 受熱과 더불어 保温을 위한 glazing의 합리화가 시급한 과제인 것이다.

8. 自然式태양열 주택설계에서 특히 유념할 점은 다음과 같다.

- (1) 옥내배실은 南쪽에 居處공간(habitable room)을 북쪽에 非居處공간을 둔다.
- (2) 건물에의 출입현관은 북쪽을 가급적 피하고 온도 손실을 막는 방풍현관(protected entrance)으로

한다.

(3) 창은 필요한 곳에만 설치하고 필요이상 크게 하지 않도록 한다.

(4) 窓의 규모, 室의 종류, 환경조건, 건축주의 취향등에 따라 사용할 태양열난방시스템을 적절히 선정한다.

(5) 축열벽이나 water-wall의 표면색채는 반드시 黑色이 아니더라도 좋다. 즉, 주택 색채계획에 잘 맞는 색깔로 한다. (실험에 의하면 약 8% 정도의 효율차가 있다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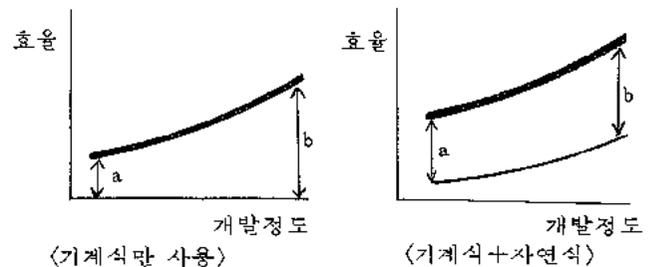
(6) 集熱窓의 크기는 그 地方의 平均겨울 氣溫에 따라 같은 넓이의 窓이라도 計算値가 달라진다.

(7) 온실형에서도 난방면적의 크기에 따라 온실의 크기를 산출한다.

(8) 축열벽의 두께, Trombe wall의 순환 通氣口의 크기는 그 산출계수가 지역성과는 무관하므로 외국에서 이미 실험을 통해 정하고 있는 수치를 사용해도 좋다.

(9) 자연식의 5가지 형식을 室의 조건에 따라 혼용함이 좋을 것이다.

10.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能動型인 機械式설비에 대한 개발이 한창인데 비하여 受動型인 自然式난방방법에 대한 연구·개발이 부진한 상태에 있다



〈그림 4〉 태양열 이용효율의 비교

太陽熱주택을 일반 저소득서민층의 주택에까지 확대 보급하여 우리나라의 에너지절약을 꾀하려면 주택의 大多數를 차지하는 서민주택에 적용할 수 있는 값싼 이용방식인 太陽熱自然利用方式이 마땅히 개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계식 태양열이용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주택의 설계단계에서 가급적 자연식 태양열이용의 방법을 복합시켜서 소위 複合型으로 계획하면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효율이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앞에 말한 바와 같이 외관과 기능이 혼연 일치하는 주택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建築士는 비록 太陽熱住宅만이 아니고 여러가지 종류의 주택과 共同·연립주택의 설계를 통해 우리나라의 住居文化와 都市美觀을 先導하고 있다. 이 制限된 國土에 하나라도 더 좋고 멋있는 집을 세우도록 힘써야 할 때라 생각한다.

韓式 木造建築時代に 使用된 建築道具 및 器械

趙勝元 · 趙英武

(株) 空間研究所

1. 序 論

과거 韓式 木造建物時代に, 大木手를 비롯한 建築百工이 건물제작을 하면서 사용하였던 建築道具들과 器械들은 어떠하였을까? 그들은 제각기 자기 職種에 필요한 道具들과 器械들을 자작으로 만들어 사용하였고, 각 工匠의 技藝의 水準을 그가 사용하는 도구들과 기계를 만들어 사용하는 솜씨를 보아 평가하였다 고도 한다.

그러나 이 建築道具들과 器械들의 체계있는 전모는 고증되어진 적이 한번도 없다. 더우기 외국의 기능공들이 1900年 後에 많이 들어와 일하면서 부터 과거의 건축도구와 기계의 제조 및 이용에도 점차 변화가 일기 시작하였었다. 흔히 도구와 기계는 건축 제작에 사용하다가 소모되면 버리고 새 것과 바꾸기 일쑤였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는 옛것이 체계있게 보존 될 것을 찾아보기 힘들다.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여러가지 건축도구들과 기계들의 명칭과 圖解는 고고학적으로 고증된 것이 아니라, 1920年 초 이후부터 본인(趙勝元)이 직접 만들어 사용하였던 것들을 중심으로하여 회고해서 설명한 것임을 특기한다. 그러니까 도구와 기계 하나 하나를 고증하여 분류, 설명한 것이 아니다. 여기에 소개한 건축도구들과 기계들의 圖解 그림들은 모두 中版 8枚에 그렸던 것인데, 이것들은 지난 1980年 12월 4일부터 경북중안 民俗博物館이 기획한 木工藝道具展에 전시되었었다. 이 建築道具展에 전시된 도구들은 주로 小木作이나 細工品制作에 사용하였던 것이 많은 것 같았다.

2. 약간의 考證

과거의 建築道具들이 비교적 폭넓게 圖說된 文獻들 중의 하나로 華城城役儀軌 卷三 圖說篇을 들 수 있다. 독자는 거기에서 다음과 같은 器械들과 道具들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擧重器, 轆轤, 大車, 平車, 發車, 童車, 雪馬(설매), 駒馬, 石杵(돌달구), 木杵(나무달구), 千金鐵(지렛대), 木柄鐵椎(막쇠매), 釘(자루정), 鐵紉(쇠사슬띠), 支架(지계), 犁鐵(보습), 畚(삼태기), 擔機(들것), 單機, 擔桶(목도통), 汲繩(두레박), 竜貫子, 木長本(장군)杵(나무가래), 廣鐵

(곡괭이), 尖鐵(괭이), 鐮(쇠가래) 鐮(삽) 등

노 卷五 財用篇에서, 이밖에 다음 명칭들이 수록되어 있다: 衡車, 別平車, 散輪車, 午簾木, 浮槓木, 來往板, 擔機木, 支乃木, 達歐木, 木加乃, 加乃丈夫, 杵, 水桶, 大加乃, 加乃, 錘子, 斧子, 鐵沙瑟, 水鐵, 夢同 등. 또 수레를 끄는 動力으로서 소, 말이 동원되었다.

흔히 알려진 또 하나는 儲承殿儀軌란 文獻이다. 그 속에는 다음과 같은 名件들 및 道具들의 名稱들이 수록되어 있다고 한다: 大鉅, 中鉅, 方輶, 瑟, 瑟釘(들정), 辺子釘, 馬串釘, 立釘, 斧子(도끼), 小刀子, 錐子, 中蒙同伊, 小蒙同伊, 衡鏢伊, 鏢伊, 非莫首金, 穴金, 加莫金, 大排地乃, 中排地乃, 小排地乃, 刃加乃, 角耳, 鉅刃, 雙絲刃, 代牌刃, 腦箭刃, 曲乃刃, 目只刃, 比湯刃, 辺湯刃, 介湯刃, 未里刃, 非倍背刃, 小刃, 曲刃, 小錯, 小時郎, 曲錘, 同串, 雜破鐵, 加致金手……등이다.

거기에서 우리의 고유한 명칭들의 발음을 漢字로表記한 例들을 발견할 것이다. 그것들 가운데는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도 있지만, 약간 신경을 쓰면 대강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例로 달구의 경우, 卷三 圖說篇에서는 돌달구 石杵, 나무달구 木杵라고表記하고, 卷五 財用篇에서는 달구나무 達歐木이라고表記한 것과 같은 例들을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비록 하나를 여러가지로表記 또는 表音한다고 해도, 그 內容이나 事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면 무관할 것이다.

3. 필기도구들

필기도구들로서 草筆, 墨筆, 墨刃筆, 硯石, 黃筆, 雜筆, 函筆이 사용되었다.

①- 초필은 설계도면이나 華文을 그리는 작은 붓이다.

②- 먹통은 먹줄을 치는 도구이다. 먹통은 소나무 광술용이나 괴목의 뿌리로 만들었는데, 먹통들은 각자의 필요와 취향에 따라서 크기와 모양을 제각기 다르게 만들었다. 먹통은 수직을 측정하는 평줄을 겸하였기 때문에 먹통 중심에 평줄을 매어 다는 고리구멍이 있는 것이 이상적이고, 또 한손으로 들고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좋다. 먹통 고리구멍 앞과 뒤에 각각 구

멍을 파서, 앞쪽은 먹줄을 묻힌 솜을 넣어두는 먹줄 칸이고, 뒷쪽은 먹줄을 감는 먹실 타래칸이 된다. 먹줄은 먹실구멍을 통하여 먹물을 묻혀 먹줄을 치게 되는데, 먹실끝에 비너못을 맨 것은 수평먹줄을 치는 것이고, 만약 먹실끝에 칼고리가 달려있으면, 수직줄을 치기 위한 것이다.

③- 먹칼은 대나무쪽이나 싸릿대가지의 끝을 잘게 쪼개어 먹물을 묻혀 금을 긋는 목필이다.

④- 버루는 먹물을 가는 도구이며, 오석을 깎아 파서 만든다.

황필, 잡필, 화필은 단청 채화에 쓰이는 붓이다.

4. 측량 및 측정도구들

측량도구들로서 그림쇠, 曲尺, 丁尺, 丈尺, 혈령자가 있었고, 측정도구들로서 佩鐵器, 景表版, 望筒, 水平景表版, 水平眞尺, 眞尺, 桴줄이 사용되었다.

⑤- 그림쇠는 正門을 그리는 規矩正門器이다.

⑥- 곡척은 길이를 재는 直角尺, 規矩正方器이다. 나무 또는 금속으로 만든다. 尺度單位는 尺, 寸, 分 단위, 그 尺長은 주로 營造尺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尺長은 여러가지가 있으며, 현재의 길이와 약간 달랐다.

⑦- 정척은 丁字形의 미래자이다.

⑧- 장척은 10척 즉 1丈 또는 그 이상이 되는 장대자이다.

⑨- 혈령자는 45°의 각도를 측량하는 연귀척이다.

⑩- 배철기는 방위분도의 줄금을 표시한 원판 중심에 세운 表木 위에 지남철(자석봉)을 설치하여 方位를 측정하는 도구이다.

⑪- 경표판은 원판 중심점에 表木을 꽂아 세우고, 日景이 투영하는 가장 짧은 길이를 관찰하여 正南方을 잡는 방위측정기이다.

⑫- 망통은 門眼 구멍을 뚫은 통신을 통대 위에 설치하여 상하로 회전시키며, 대낮에는 日景의 길이가 가장 짧아지는 쪽의 해, 밤에는 북극성을 관찰하여 正南方과 正北方을 잡는 방위측정기이다. 경표판 위에 설치하기도 한다.

⑬- 수평경표판은 판면을 파내어 불을 채워 수평을 잡는 水池版 한쪽 끝에 表木版을 세우고, 日景의 길이가 가장 짧아지는 쪽을 관찰하여 正南方을 측정하는 수평 및 방위측정기이다.

⑭- 수평진척은 楸木 꼭대기에 천정처럼 水平器를 얹어, 水平器의 물갈 좌우양단과 중앙에 띄운 세 浮子들이 수평立表線에 가지런히 놓이는 것을 관찰하여 地面의 수평과 고저를 측정하는 수평측정기이다.

⑮- 진척은 길다란 尺台 중심점에 立表木을 수직으로 고정시키고, 立表木 꼭대기에서 드리운 桴줄과 수직입표선이 평행으로 놓이는 것을 관찰하여 수평과 수직을 동시에 측정하는 도구이다. 진척은 準尺이라고

도 한다.

평줄 또는 桴繩은 줄 한쪽 끝에 고리, 또 한쪽 끝에 는 보죽한 추를 매달아, 기둥 위에 고리를 걸고 줄이 드리우는 것을 관찰하여 수직을 잡는 측정도구이다.

5. 대장간 도구들

대장장이(冶匠)가 사용하는 도구들로서 風具, 모루, 집계, 쇠메, 물구멍이 있었다.

①- 풍구는 화로의 숯불 또는 골탄을 연소시키는 송풍장치이다. 나무통 속 가죽주머니에 연결된 피스톤을 밀어당겨서 압축 공기를 배출하는데, 손으로 피스톤을 조작하는 것을 손풍구, 발로 조작하는 것을 발풍구라고 한다.

②- 집계는 가위 모양의 두 집게다리를 손으로 조작하여 화로 속에서 달군 쇠붙이를 집어 되적이는 도구이다. 執械는 木作에서도 쓰이는데, 집게다리 끝이 반월형으로 된 것을 방울집계, 아주 작은 것을 쪽집계라고 한다.

③- 모루는 집게로 쇠붙이를 얹어 뒤적이며 쇠메나 쇠망치로 두들기며 단련시키는 鐵台이다. 정자형의 鐵台를 丁모루라고 한다.

④- 쇠메는 긴 나무자루에 크고 무거운 平頭 쇠덩어리를 꽂아, 두손으로 잡고 휘둘러쳐서 단련하는 예이다. 石作에서 돌을 깨고 또 火木作에서 대못을 박을 때도 쇠메를 사용한다.

⑤- 물구멍은 외양간의 구멍의 모양과 같으며, 물을 채워 넣고 단련한 쇠붙이를 식히는 나무물통이다.

6. 양수 및 급수도구들

양수 및 급수도구들로서 누레박, 용두레, 담통, 장군을 사용하였다.

①- 누레박은 긴 밧줄을 매어 우물물이나 강물을 퍼 올리는 물통이다.

②- 용두레는 긴 세 다리의 까치다리틀에 매달아놓고 낮은 데의 물을 퍼올리는 주걱모양의 양수도구이다.

③- 담통은 나무널로 만든 둥글고 큰 물통이다. 두서너 사람이 담통 양쪽에 밧줄을 걸고 목도에 끼워 끌어 나른다.

④- 장군(長本)은 작은 아구리 구멍이 달린 물통이다. 나무로 만든 장군과 오지로 만든 장군이 있다. 농촌의 오줌장군과 같으며, 지체에 실고 나른다.

7. 운반도구들

건축재료들을 먼 곳에서 운반하는 도구들로서 駒板, 雪馬, 搬具, 舉支械, 童車, 發車, 平車, 大車, 방갓배, 거룻배가 있었고, 공사현장에서는 소쿠리, 삼태기, 망태기, 지게, 들것, 담기, 목도가 사용되었다.

㉕-소쿠리는 싸릿대나 참대회초리로 엮어 짜서 만들며, 뒷쪽으로 아구리가 터 있고, 자질구레한 물건을 담아 나른다. 새통, 먹서리, 둥구미, 섬은 바꾸니와 비슷하다.

㉖-삼태기는 싸릿대나 참대회초리로 엮어 짜서 만들며, 뒷쪽과 앞쪽으로 아구리가 터 있고, 흙, 모래, 석회를 걸러 담아 나른다.

㉗-망태기는 삼실로 바꾸니 모양으로 그물로 짜서 만든 구멍이며, 연장이나 잔 물건을 담아 어깨에 메고 나른다.

㉘-지게(支械)는 「卜」자형의 두 지게다리를 고정시킨 등받이에 등태와 뿔방을 달아, 두 지게다리 위에 물건을 싣고, 두 어깨에 짊어지고 나르는 운반도구이다. 지게는 노루발 작대기로 고여 세운다.

㉙-들것(擔機)은 두 장대를 가장자리에 끼워 맨가마나 밧줄그물 위에 물건을 싣고, 두 서너 사람이, 두 장대를 잡아들고 운반하는 도구이다.

㉚-단기(單機)는 두 장대에 밧줄로 묶어 매단 두터운 木版 위에 물건을 싣고, 두 서너 사람이 두 장대를 어깨에 메고 나르는 운반도구이다.

㉛-목도는 무거운 물건을 감아 맨 밧줄에 굵은 몽둥이를 끼워, 두 서너 사람이 어깨에 메고 나르는 도구이다. 긴 물건은 앞뒤에 각각 목도를 한다.

㉜-끝개(駒板)는 「ㄷ」字形으로 만든 두터운 판틀 앞에 밧줄로 꿰어 매고, 무거운 물건을 싣고, 굴림대위를 굴러 나르는 운반도구이다.

㉝-설매(雪馬)는 양쪽 骨板이 뱃바닥 모양으로 된 짐틀 앞에 밧줄을 꿰어 매고, 무거운 물건을 싣고, 눈길이나 산비탈길을 미끌어 당겨 나르는 운반도구이다.

㉞-반구(搬具)는 바퀴가 없는 수레틀이며, 물건을 싣고, 소나 말이 끌어서 나르는 운반도구이다.

㉟-지지게는 소의 등에 얹고, 물건을 실어서 나르는 짐안장이다.

㊱-동차는 네 판바퀴가 달린 짐틀수레이며, 두 서너 사람이 밧줄로 끄는 작은 수레이다.

㊲-발차는 두 판바퀴가 달린 작은 짐틀수레이며, 사람이나 소가 끈다.

㊳-달구지(牛車)는 두 바퀴가 달린 짐틀수레이며, 소가 끈다. 짐틀의 크기와 바퀴의 모양에 따라서 大車와 牛車로 나누인다. 평차는 대차에 비하여 바퀴가 작다. 바퀴는 박달나무로 만든다.

방갓배, 거룻배는 바닷길이나 물길을 노를 젓거나 사대질하여 물건을 나르는 운송선이다. 배 밑창이 얇고 평평하다. 뚝배에 뚝을 단 뚝배도 있다.

8. 기중기계들

무거운 물건들을 들어올리는 기계로서 擧重器, 轆轤, 挽械와 梢台가 있었다.

㉠-거중기는 滑輪장치를 한 기중기이며, 높이에 따라서 脚柱틀에 경사진 좌우 縲車를 조립하여, 무거운 짐을 잡아 맨 밧줄을 감아 올린다. 華城城役儀軌에 의하면, 脚柱높이 14척, 30인의 인력으로 12,000근짜리 물건을 들어 올렸다고 한다. 활문장치는 각주에 가로 짚 상·중·하의 橫梁에 매어 달았다.

㉡-낙로는 커다란 받침틀 한 끝에 높은 雙竿을 고정하여 滑輪장치를 한 기중기이다. 화성성역의궤에 의하면, 받침틀의 높이 15척, 雙竿의 높이 각각 35척, 쌍간에 가로 짚 橫梁에 滑輪장치를 매어 달았다.

㉢-밧줄은 삼베나무 어작위의 겹질을 꼬아 만든 새끼 3~6가닥을 다시 꼬아 만든다.

㉣-솟대(梢台)는 높은 네 脚柱틀에다가 滑輪장치를 매어 단 廻轉竿을 가설한 기중기인데, 밧줄은 단계로 감아 당긴다. 단계는 밧줄을 감아 당기는 回轉軸 장치이다. 여러 사람이 回轉心棒을 돌린다. 60尺높이 솟대를 가설하여 직접 사용한 적이 있다.

9. 가설도구들

작업용 가설틀로서 목마, 사다리, 안공, 톱질틀, 대패질틀, 칭평틀이 있었고, 가설장치로서 비계다리, 헛간을 조립하였다.

㉤-목마(木馬)는 네 脚柱틀 위에 디딤판을 고여 놓고, 디딤판 위에서 일하는 작업틀이다.

㉥-사다리(梯機)는 높은 곳을 오르내리려고 긴 두 脚柱 사이에 디딤대를 가로 박은 계단용 가설틀이다.

㉦-안공(案拱)은 원목을 기대놓고 자귀질을 하는 까치다리의 고임틀이다.

㉧-톱질틀(鋸機)은 원목을 기대놓고 인거톱질을 하는 고임틀이며, 그 규모가 커진다.

㉨-대패질틀(鉋機)은 재목을 대패질하기 위하여 긴 수평널을 고인 작업틀이다.

㉩-칭평틀(秤平機)은 선자연들을 치목하는 틀이다. 칭평틀은 사전에 미리 초맥이 평교대와 재맥이 평교대를 정확하게 가설한 틀로서, 건물 네 귀에 포연할 선자연들의 길이, 횡, 생출(生出), 생기(生起) 등에 맞추어 차례로 치목하는 가설틀이다. 선자연의 번호는 귀주너 양편에 붙이는 합장선자연으로부터 매겨지기 시작한다.

㉪-비계다리(浮械, 浮橋)는 높은 곳으로 재료를 운반하는 경사디딤판과 높은 곳에서 오가며 일하는 수평디딤판을 건물주변에 가설한 틀이다. 길고 둥근 나무로 짰다.

㉫-헛간(虛間)은 임시창고와 임시숙소의 가설물, 또는 시공할 건물 자체를 비, 바람, 눈, 서리로부터 보호하려고 사방을 노단으로 가리고, 지붕을 이엉이나 노단으로 덮어 버리는 비계헛간이다. 길고 둥근 나무를 꺾쇠, 못, 세끼로 매어 조립한다.

10. 땅을 파고 다지는 도구들

땅을 파는 도구들로서 곡괭이, 삽, 가래가 있었고, 기초의 천물(塡物)은 달구로써 다졌다.

㉑-곡괭이(谷鉞, 廣鑿)는 긴 나무자루에 한쪽은 정과 같이 뾰족하고 또 한쪽은 구부러진 쇠붙이를 꽂아, 두손으로 휘둘러쳐서 단단한 땅을 파헤치는 도구이다.

㉒-삽(鑿)은 긴 나무자루에 넓적한 네모진 쇠붙이를 꽂아, 땅속에 밀어 넣어 흙을 퍼올리는 도구이다. 삽자루는 장대 또는 손잡이가 달린 것이었다.

㉓-가래(杓)는 두 가닥의 받줄을 맨 긴 나무자루에 네모진 넓적한 삽날을 꽂아, 한 사람이 자루를 조작하고 또 두 사람이 받줄을 잡아당겨 흙을 퍼올리는 도구이다. 세 사람이 한패가 된 것을 가랫꾼이라 한다. T자형의 나무자루 끝에 쇠붙이를 꽂은 것을 나무가래(杓), 긴 자루끝에 삽보다 넓적한 쇠붙이를 꽂은 것을 쇠가래(鑿)라고 구분한다.

㉔-나무달구(木杵)는 직경 1척 이상에 길이 3척 이상되는 나무통의 가는 허리에 여러 가닥의 받줄을 매고, 여러 사람이 제각기 받줄을 잡고 일제히 잡아당겨 올렸다가 내리쳐서 지초면과 천물을 다지는 도구이다. 돌달구(石杵)는 나무통 대신에 절구통 같은 돌덩이의 가는 허리에 여러 가닥의 받줄을 맨 것이다.

11. 조석도구들

造石도구들로서 정, 썰기, 쇠매, 벽쇠매, 쇠망치, 도두락망치, 방망이, 지렛대를 사용하였다.

정(錠)은 끝이 뾰족한 쇠몽둥이이며, 쇠매, 쇠망치, 방망이로 정머리를 둘러쳐서 돌을 쪼개고, 쪼고, 파고, 다듬는 도구이다. 나무자루나 쇠줄자루가 달린 것을 자루정이라고 한다. 정머리는 평면이다. 정에는 썰기정, 쪼는 정, 깔날이 선 정, 장노리 정, 조각정 등 여러가지가 있다.

㉕-썰기정(剖錠)은 나무썰기 모양의 납작한 쇠몽둥이정이며, 돌의 결을 쫓아 여러 개의 썰기정을 박아 쪼갬다. 썰기는 원추체나 각추체 모양의 짧은 쇠몽둥이이며, 썰기날은 직선형인 것도 있다.

㉖-쪼는 정(琢錠)은 끝을 뾰족하게 날을 세운 정이며, 쇠망치나 방망이로 정머리를 둘러쳐서 돌의 모서리와 표면을 쪼아 다듬는다.

㉗-깔날 정(刃錠)은 직선형의 깔날을 세운 정이며, 쇠망치나 방망이로 정머리를 둘러쳐서 돌을 卽止하게 다듬는 정이다.

㉘-장노리정(錠鉞)은 손자루에 장노리 모양의 정을 꽂아, 돌의 표면을 쪼아 다듬는 정이다.

㉙-조각정은 숫돌로 정날을 뾰족하게 갈아 세우고, 돌을 조각하고 화문을 새기는 정이다.

㉚-쇠매(鐵鎚)는 대장장이의 쇠매와 같고, 크기가 여러가지이다.

㉛-먹쇠매(錐椎)는 긴 나무자루에 두터운 원판 모양의 쇠매를 꽂은 매이다.

㉜-쇠망치는 한쪽 머리가 뾰족하고 또 한쪽 머리가 평면인 쇠붙이를 꽂아, 정머리, 끌머리, 못대가리를 둘러치는 도구이다. 못을 박고 또 못을 뽑아내는 것을 못뽑이장도리라고 한다.

㉝-도두락망치는 넓적하고 평면인 쇠붙이의 양쪽 머리에 곰보날을 세운 망치이며, 돌의 표면을 평평하게 다듬는 망치이다. 곰보날의 모양은 楮子 또는 菱形으로 배열된다.

㉞-방망이는 장고 모양의 작은 나무통에 손잡이를 꽂아, 한 손으로 정머리를 둘러쳐 돌의 표면을 꼼꼼하게 다듬는데 사용한다. 小大作에서도 끌머리를 방망이로 쳐서 치목하거나 접합부를 조립한다.

㉟-지렛대(剗劍, 千金鐵)는 한쪽 끝이 직선날이고 또 한쪽 끝이 노루발모양으로 된 길고 단단한 쇠몽둥이이며, 고임돌을 이용하여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려 옮기고 또 대못을 뽑아 낸다.

12. 못을 박고 조립하는 도구들

나무의 접합부를 짜맞추는 도구들로서 메, 방망이가 있었고, 못을 박는 도구로서 쇠망치, 장도리를 사용하였다.

메는 쇠매와 목메가 있다.

㊱-쇠매는 긴 나무자루에 커다란 평면머리의 쇠덩어리를 꽂아, 두손으로 휘둘러쳐서 대못을 박는다. 크기는 대형, 중형, 소형이 있다.

㊲-목메는 긴 나무자루에 커다란 평면머리의 나무통을 꽂아 나무의 접합부를 때려 맞춘다. 목메는 벽매와 같고, 나무통의 둘레에 쇠띠를 감기도 한다. 대형, 소형이 있다. 소형메라도 방망이보다 크다.

㊳-장도리는 한쪽 머리가 못을 박는 평면머리이고 또 한쪽 머리가 노루발 모양이 못뽑이로 된 쇠붙이를 손자루에 꽂아, 못을 박거나 뽑아 낸다. 못뽑이 대신에 못대가리를 깊이 박기 위하여 뾰족하게 만든 장노리도 있다.

13. 나무를 깎아 다듬는 도구들.

나무를 깎아 다듬는 도구들로서 도끼, 낫, 훈이칼, 툇기칼, 자귀, 까귀를 사용하였다.

㊴-도끼(斧)는 부리가 크고 직선형의 날이 선 쇠덩이를 나무자루에 꽂아, 두손으로 휘둘러쳐서 벌목하고 가지를 쳐내는 도구이다. 도끼의 크기와 도끼날은 크고 작은 여러가지 모양이 있다.

㊵-낫(鎌)은 「ㄱ」자형으로 구부러진 안쪽에 칼날을 세운 쇠붙이를 손잡이에 꽂아, 한손으로 쳐서 나

뭇가지지를 쳐내고, 껍질을 훑어내는 일종의 칼이다.

㉗-훑이칼(削刀)은 초생달 모양의 둥근 안쪽에 칼날은 세우고, 양쪽 고리 속에 손잡이를 꽂아, 두 손잡이를 잡아당겨 나무껍질을 훑어내거나 원목을 둥글게 훑어 깎는 半月刀이다.

㉘-꺾기칼(刷刀)은 작고 꼬부라진 칼날 한쪽 끝에 손자루를 꽂아, 대패질 할 수 없는 웅이나 흠터를 긁어 깎아 내는 曲刀이다. 꺾기칼보다 더 뾰족하고 날카로운 칼을 厥刀라고 한다. 꺾기칼의 칼날은 크기와 모양이 여러가지다.

㉙-자귀(鋸)는 나무자루에 뿌리가 크고 무거운 직선형의 쇠날을 꽂아, 두손으로 돌려쳐 나무의 曲面과 稜面을 깎아 다듬는 도구이다. 도끼날은 자루와 같은 방향이지만, 자귀날은 손자루와 직각 방향으로 꽂힌다. 자귀는 대자귀와 손자귀 그리고 끌자귀가 있다.

㉚-대자귀는 나무자귀(木鋸)와 쇠자귀(鋸)가 있다 나무자귀는 丁字形의 자귀자루들에 자귀날을 꽂은 것이고, 쇠자귀는 긴 자루에 한쪽은 부리가 크고 또 한쪽은 자귀날이 선 쇠붙이를 꽂은 것이다.

㉛-손자귀(手鋸)는 손자루에 작은 자귀날을 꽂은 것이다.

㉜-끌자귀(鑿鋸)는 끌날과 같이 좁고 긴 자귀날을 손자루에 꽂아, 나무를 깊이 파내는 자귀이다. 끌자귀는 나막신을 깎아 파내는 것과 같고, 나무를 조각하고, 화문을 새긴다.

㉝-까귀는 한쪽 머리가 쇠망치로 쓰이는 자귀이다. 양쪽 머리가 모두 구부러진 자귀날이 선 것을 용까귀라고 한다.

14. 나무를 자르는 도구들

나무를 잘라내거나 켜는 도구들로서 斷鋸와 引鋸가 있다. ㉞ 단거톱은 나무통을 자르는 톱이고, ㉟ 인거톱은 나무결에 따라 널을 켜내는 톱이다. 단거톱날은 45°각도로 날을 세운 것들을 두줄로 어긋나게 교차시킨 것이고, 인거톱날은 70° 각도로 세운 톱날을 서로 어긋나게 교차시킨 것이다. 톱들은 톱날의 크기와 길이에 따라서 제각기 달라지는데, 주로 「工」字形으로 조립한 톱틀 한쪽에 톱날을 끼우고, 또 한쪽에는 사람의 머리털을 꼬아 만든 탕계줄을 비너뿌으로 틀어서 톱날을 팽팽하게 고정시키는 틀이다. 톱의 종류들은 크게 나누어서 단거와 인거로 구별되고, 그리고 제각기 대, 중, 소, 細形의 네 가지로 분류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대목들은 이 여덟가지 톱들을 자작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게 된다. 20세기 초에는 기계톱이 없었으므로, 대형과 중형의 톱은 두 사람이 서로 밀어당겨서 나무를 자르거나 켜었고, 소형과 細形의 톱들은 한 사람이 두손 또는 한손으로 밀어당겨사용하였다. 톱날이 길어서 톱틀에 끼워 사용 할수 없는 無梁톱은

양쪽에 손자루만을 꽂아 사용하게 된다. 그밖에 칼톱, 잔톱, 꼬리톱, 손톱 등이 있다.

㊱-칼톱(刃鋸)은 송곳같은 칼날 등에 톱니날을 세워, 널판 구멍을 톱질하는 引鋸, 斷鋸 겸용이다.

㊲-잔톱(細鋸)은 小木作에서 창문의 울개미와 살대를 켜는 細引鋸, 잔 나무통이나 이음새를 자르는 細斷鋸가 있는데, 작은 손톱틀에 꽂아 사용한다.

㊳-꼬리톱(尾引鋸)은 톱날의 모양이 칼톱과 같은 것인데 톱날의 길이가 길고 목이 좁아서 곡선으로 나무를 켤 때 사용된다. 파도형의 연함을 켜거나, 화반과 단운공의 원호형을 켤 때 사용된다. 꼬리톱으로 켜 다음에 깎기로 다듬게 된다.

㊴-손톱(手斷鋸)은 小斷鋸의 크기와 같고, 작은 손톱틀에 꽂아, 大木作에 있어서, 안방, 서까래를 자르는 小斷鋸톱이다.

15. 나무를 밀어 깎는 도구들

나무 표면을 매끄럽게 밀어 깎는 도구들로서 대패출미리, 치목긋기, 탕을 사용하였다.

대패(鉋)는 대패집 아구리 속에 대패날을 끼워 고정하고 손으로 밀어당겨 나무 표면을 깎는 도구이다. 대패집은 단단한 무프레나무 같은 것으로 만들며, 대패날의 모양에 따라서 밀바탕을 만든다. 평대패날이면 밀바탕을 평면으로, 뒤집이대패날이면 뺏바닥 모양의 反曲面, 둥근대패날이면 丸面이 된다. 대패날의 모양에 따라서 평대패(平鉋), 뒤집이대패(反鉋), 둥근대패(丸鉋) 등으로 구별하고 각각 대형, 중형, 소형이 있고, 또 대패질의 차례에 따라 초대패질 하는 초대패틀(初鉋), 재대패질하는 재대패틀(再鉋), 잔대패질하는 잔대패틀(細鉋)을 사용하여 마무리 한다. 점점 대패집의 아구리가 작아진다.

㊵-평대패는 나무의 표면을 평정하게 밀어 깎는 대패이다.

㊶-뒤집이대패는 나무의 표면을 우묵하게 휘어 들어간 곳이나 모서리를 뒤집이하여 밀어 깎는 대패이다.

㊷-둥근대패는 나무의 표면이 둥글게 돌아진 곳이나 우묵하게 들어간 곳을 밀어 깎는 대패이다.

㊸-초대패는 대패집의 아구리가 커서 대패밥이 잘 빠져나가며, 초대패를 앞뒤에 손잡이가 달려 두 사람이 서로 밀어 당긴다.

㊹-재대패는 초대패질 한 나무 표면에 돌아난 웅이나 결을 밀어 깎으며, 아구리가 약간 작아진다.

㊺-잔대패는 초대패질이나 잔대패질 한 나무 표면을 곱게 밀어 깎아 마무리하는 대패이다. 잔대패날은 가늘고 날카롭다. 小木作에서 주로 사용된다. 大木作에서는 재대패질로 마무리 하기도 한다.

㊻-출미리(絲鉋)는 나무 표면에 여러가지 출모양을 밀어 깎는 대패의 일종이다. 이것을 사미리라고한

다. 줄대패날은 單絲, 雙絲, 單弧絲, 雙弧絲, 丸絲, 橢圓絲, 丸溝絲, 半溝絲 등으로 밀어 깎는 여러가지가 있고, 줄대패집 밀바탕도 이에 따라 모양이 달라진다. 기둥의 사면과 모서리, 창문의 울개미와 살대, 난간, 회란 같은 곳에 줄대패질을 한다.

⑨⑧-치목긋기칼은 긋기틀의 한 측면에 적당한 간격으로 가감하여 칼날을 꽂아 고정하여, 긴 나무 표면에 평행선을 긋는 도구이다. 사미리질이나 탕질을 하려면 미리 치목긋기칼로 칼줄을 긋는다.

⑨⑨-탕(鋤)湯은 나무의 모서리나 표면에 깊은 골을 밀어 깎는 대패의 일종이다. 탕에는 나무 모서리를 턱지게 깊이 깎는 번탕(邊湯), 나무 표면에 깊은 줄골을 밀어 깎는 개탕(介湯), 쌍줄골을 밀어 깎는 비탕(比湯)이 있다. 탕날은 탕집 아구리에 끼워 고정하지만, 탕집 밀바탕은 용도에 맞추어야 한다. 탕날은, 좁고, 탕집은 길다. 탕집은 박달나무로 만들되 무거워야 한다.

16. 나무에 구멍을 파는 도구들

나무에 구멍을 파내는 도구들로서 송곳, 끌을 사용하였다.

송곳(錐)은 손잡이에 뾰족한 송곳날을 꽂아, 손바닥으로 비벼 돌려 나무에 구멍을 뚫는 도구이다. 송곳에는 비뚤, 도래송곳, 활비비송곳이 있다.

⑨②-비뚤은 길고 굽은 송곳날의 한쪽 끝 고리에 손잡이를 꽂아, 두손으로 손잡이를 돌려 구멍을 뚫는 송곳이다.

⑨③-도래송곳은 나선줄로 날을 세운 송곳날의 한쪽 끝 고리에 손잡이를 꽂는 송곳이다. 비너뚤구멍, 대뚤구멍을 뚫는다.

⑨④-활비비송곳은 활 모양의 송곳틀에 긴 송곳을 고정시켜 활대틀을 틀어 나무 구멍을 뚫는 송곳이다.

⑨⑤-끌(鑿)은 좁고 날카로운 끌칼을 손잡이에 꽂아, 쇠망치나 방망이로 손잡이 머리를 내려쳐 길고 큰 구멍을 파내는 도구이다. 끌칼은 용도에 따라서 폭이 좁고 약간 넓은 것, 또 칼날이 직선형이나 곡선 형으로 된 것 등 여러가지가 있다. 맞춤구멍, 이음구멍을 파는데, 여러 나무를 똑같이 끌질하려면 도집계(都執械)로 한꺼번에 꼭 포개다. 꺾쇠로 포개놓기도 한다.

⑨⑥-도집계는 여러 개의 나무를 두 널판이나 띠쇠로 포개놓고 고정하는 큰 집계이다.

17. 나무를 조각하는 도구들

나무를 조각하는 도구들로서 칼, 끌, 까리가 사용된다. 칼은 용도에 따라서 여러가지 크기와 모양이 있다.

⑨⑦-조각칼은 목혜장, 안자장, 조각장이 나무를 조각하고, 화문을 새기고, 액자나 글자를 새기는 칼이

다. 彫作에 사용된다.

18. 쇠날을 가는 도구들

여러가지 연장의 쇠날을 가는 도구들로서 줄칼, 숫돌이 있다.

⑨⑧-줄칼은 강철판 양면에 각종 무늬의 날카로운 곰보날을 세운 것이며, 칼날을 갈아 세운다. 톱줄칼은 가늘고 작다.

⑨⑨-숫돌은 숫돌틀에 고정시켜 놓고, 칼날을 물갈기 하기에 사용된다. 숫돌은 거친것, 가는 것, 매끄러운 것을 차례로 사용한다.

19. 미장도구들

미장도구들로서 흙주걱, 흙반이, 흙손, 호미, 쟁이, 쇠스랑, 갈퀴, 작도, 채를 사용하였다.

⑩①-흙주걱은 긴 나무자루에 길쭉한 판주걱을 달아, 반죽한 화물을 퍼서 높이 떠주는 주걱이다.

⑩②-흙반이는 비모난 판대기 밑에 손잡이를 달아, 한손으로 화물을 받아드는 도구이다.

⑩③-흙손은 화물을 찍어 바르는 도구이다. 대개 미장 초벌은 맛벽질 쳐바르기가 되고, 재벌을 한 다음에 곱게 마무리질 한다.

⑩④-호미는 손자루에 세모난 호미날을 꽂아, 흙을 고르고 흙어 모은다. 호미날은 지방에 따라 모양과 크기가 다르다.

⑩⑤-쇠시랑(小時郎)은 긴 자루에 구부러진 연두창을 묶어, 흙이나 지푸라기를 고르고 흙어 모은다. 갈퀴와 비슷하다.

⑩⑥-작도(斬刀)는 넓적하고 큰 칼날을 작도틀에 고무쇠로 박아 놓고, 작도 칼날에 맨 밧줄로 잡아 올린 다음에 발바닥으로 작도칼날을 눌러 질단을 써는 도구이다. 맛벽질하는 흙에는 지푸라기, 보리수염을 잘게 썰어 반죽하고, 마무리 회분 반죽에는 잔 해면솜을 섞어 반죽한다.

⑩⑦-채는 채틀 밑에 채그물을 달아, 미장용 흙, 모래, 석회, 탄가루의 크기를 알맞게 걸러낸다. 채틀을 흔들거나, 까치다리틀에 매달아 놓고 걸르기도 한다.

20. 기와잇기 도구들

기와를 잇는 도구들로서 기와칼, 고무레가 있다.

⑩⑧-기와칼(瓦刀)은 부리가 넓적하고 두툼한 칼이며, 기와장을 쪼개고, 扶土를 고르고, 와구트에 화물을 쳐바르는 도구이다.

⑩⑨-고무레는 나무자루에 梯形의 나무판을 꽂아, 扶土를 물메잡아 갈아 다진다. 자루가 작은 것이 섯고무레이다.

그밖에 실포, 흙주걱, 흙반이, 흙손이 사용된다.

21. 도배도구들

도배하는 도구들로서 도배칼, 가위, 도전판, 풀솔이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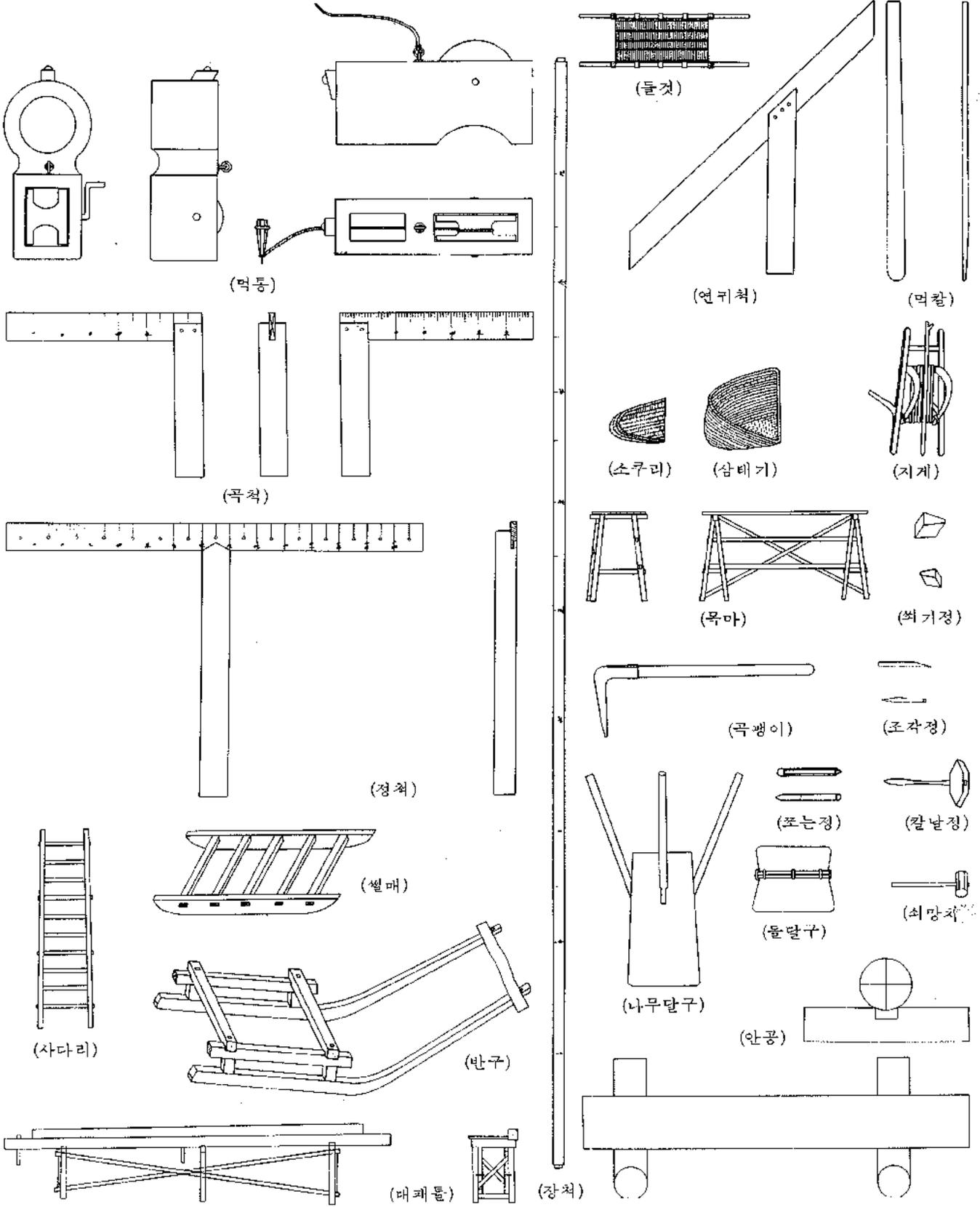
㉑-도배칼(剪刀)은 도배지를 자르는 칼이다. 칼날이 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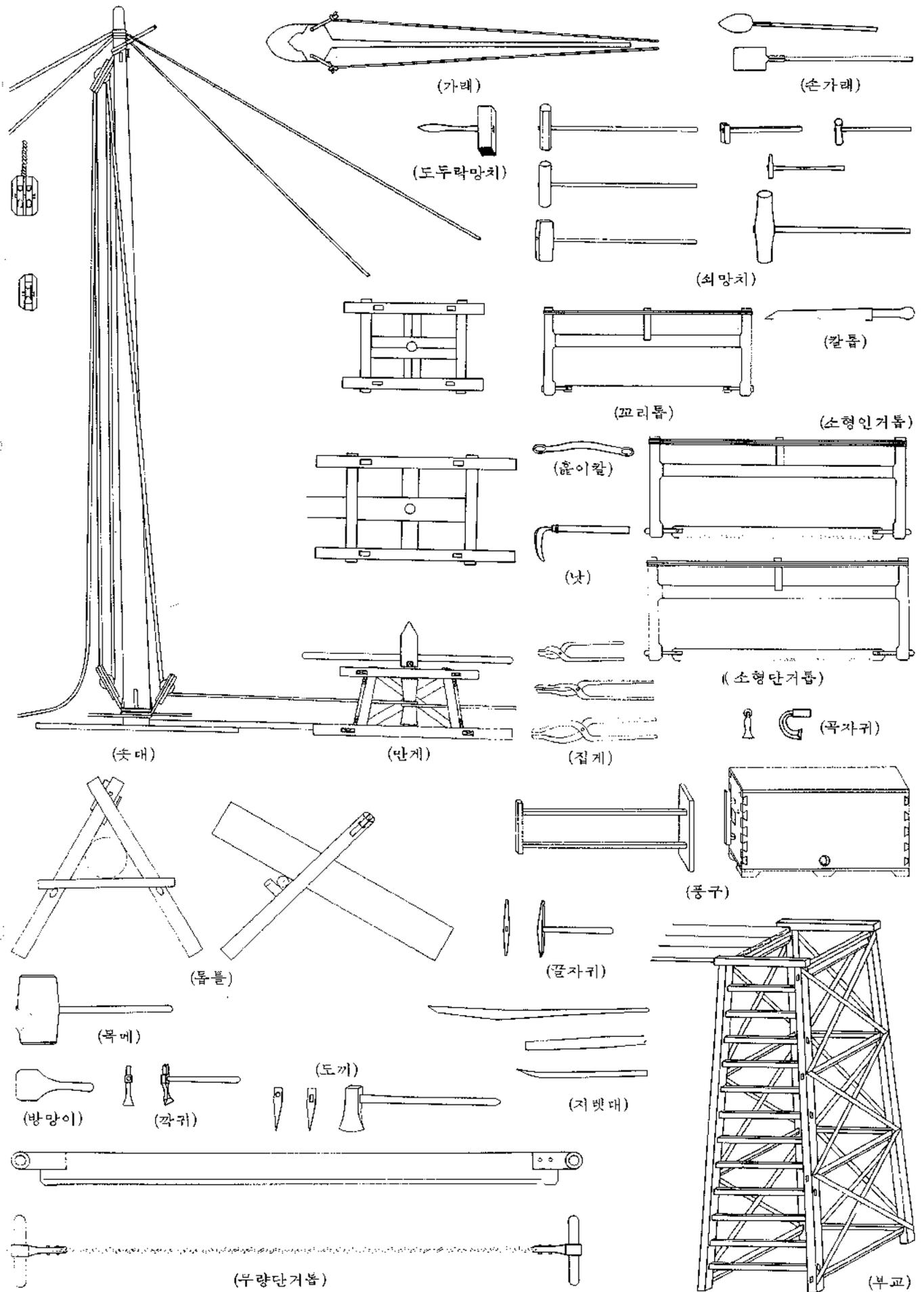
㉒-도배가위(鉞)는 보통 가위와 같으며, 도배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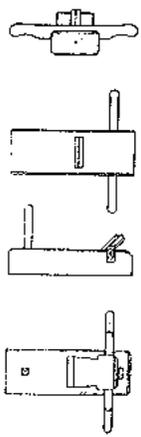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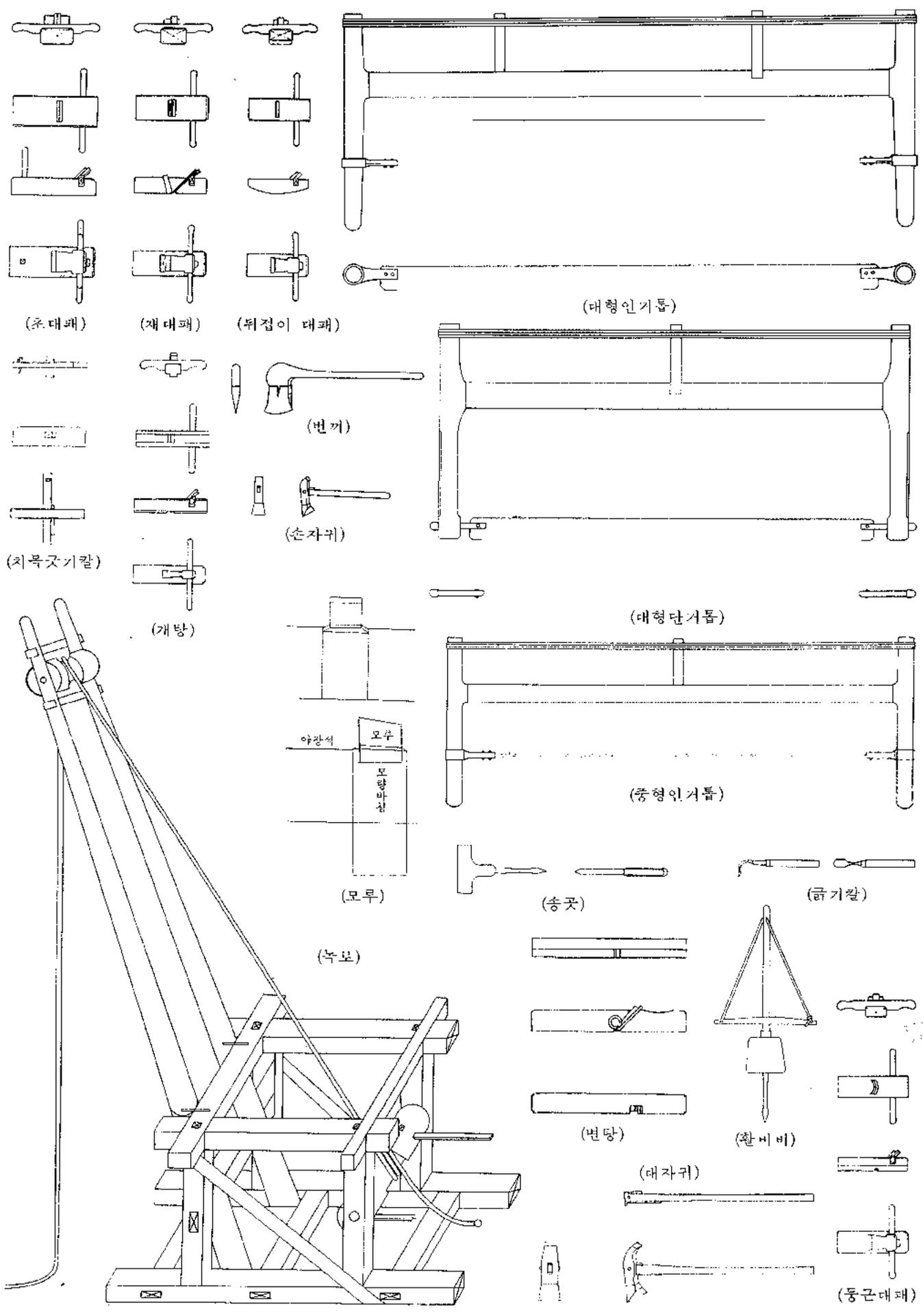
자른다.

㉓-도전판(刀剪板)은 고리가 달린 두 판대기이며, 도배지들을 가지런히 포개 눌러 놓고 한꺼번에 칼질하는데 쓰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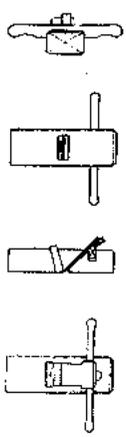
㉔-풀솔은 돼지털을 빗자루 같이 감풀로 뭉쳐 손자루에 달고, 풀을 묻혀 도배지에 바르는 솔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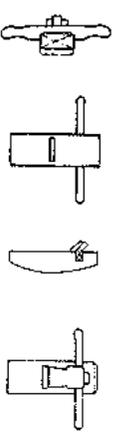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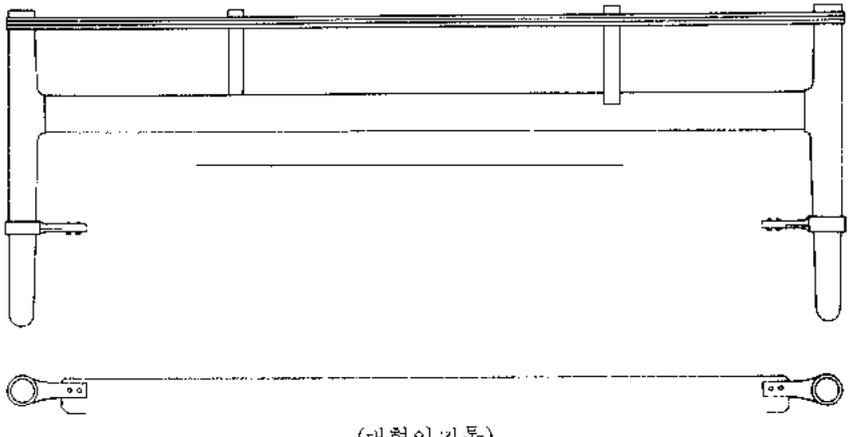
(주대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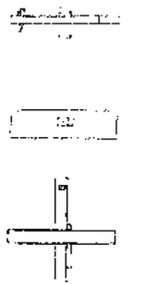
(재대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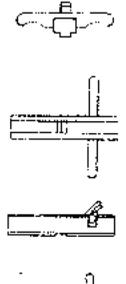
(뒤집이 대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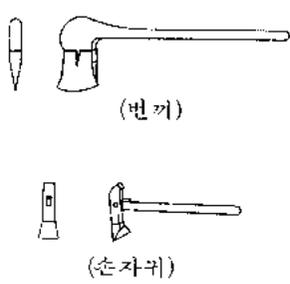
(대형인기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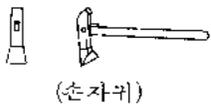
(치목긋기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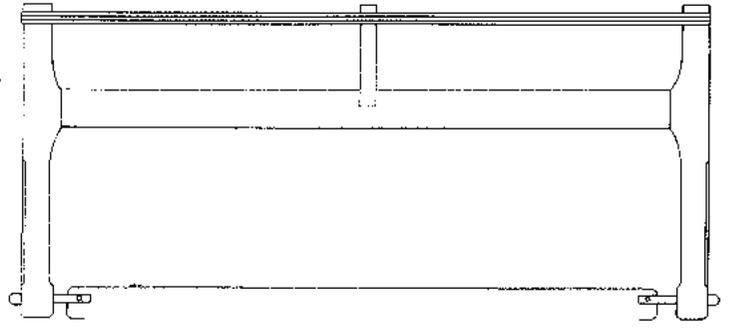
(개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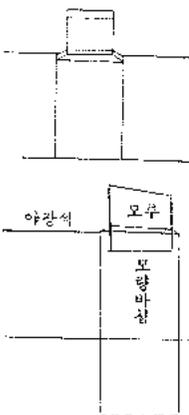
(번끼)



(손자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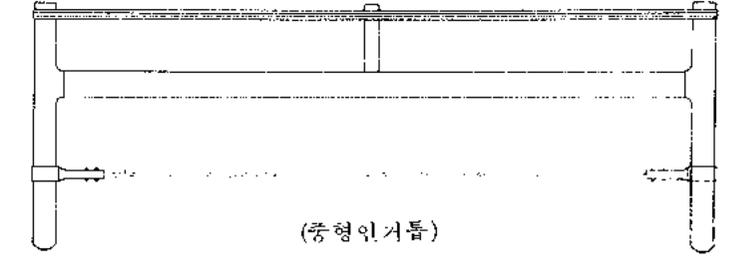


(대형단기톱)



(모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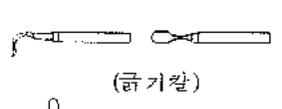
(녹보)



(중형인기톱)



(송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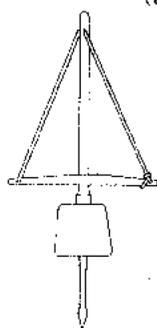
(굽기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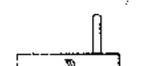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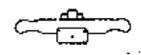
(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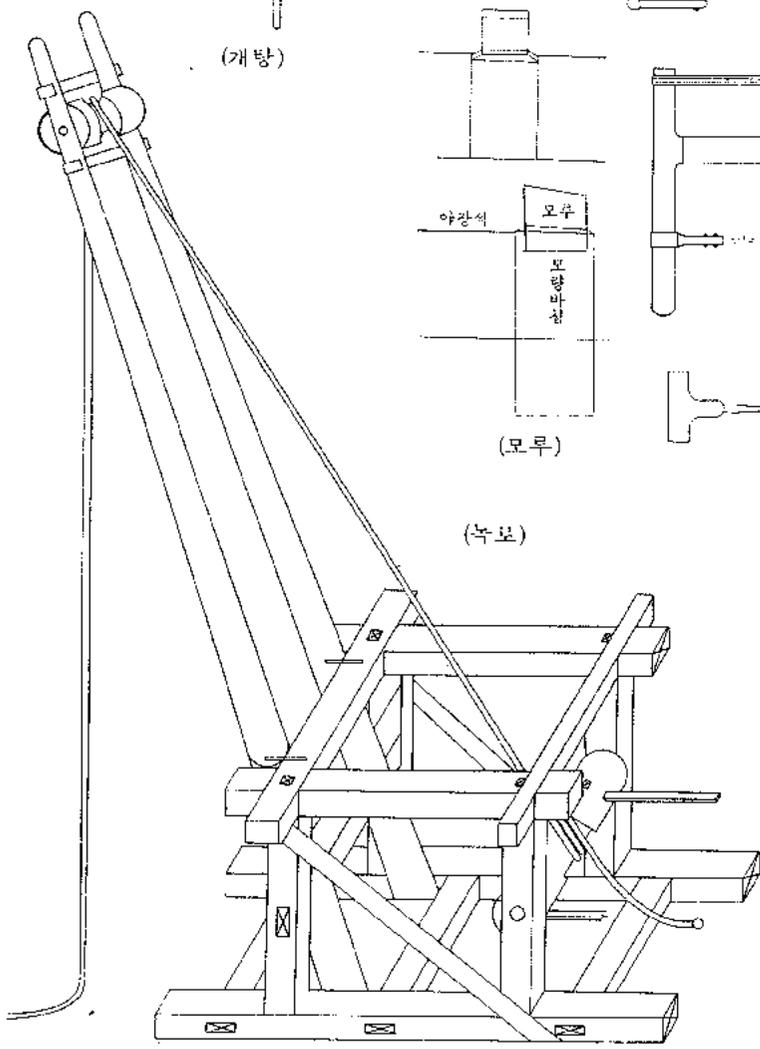
(대자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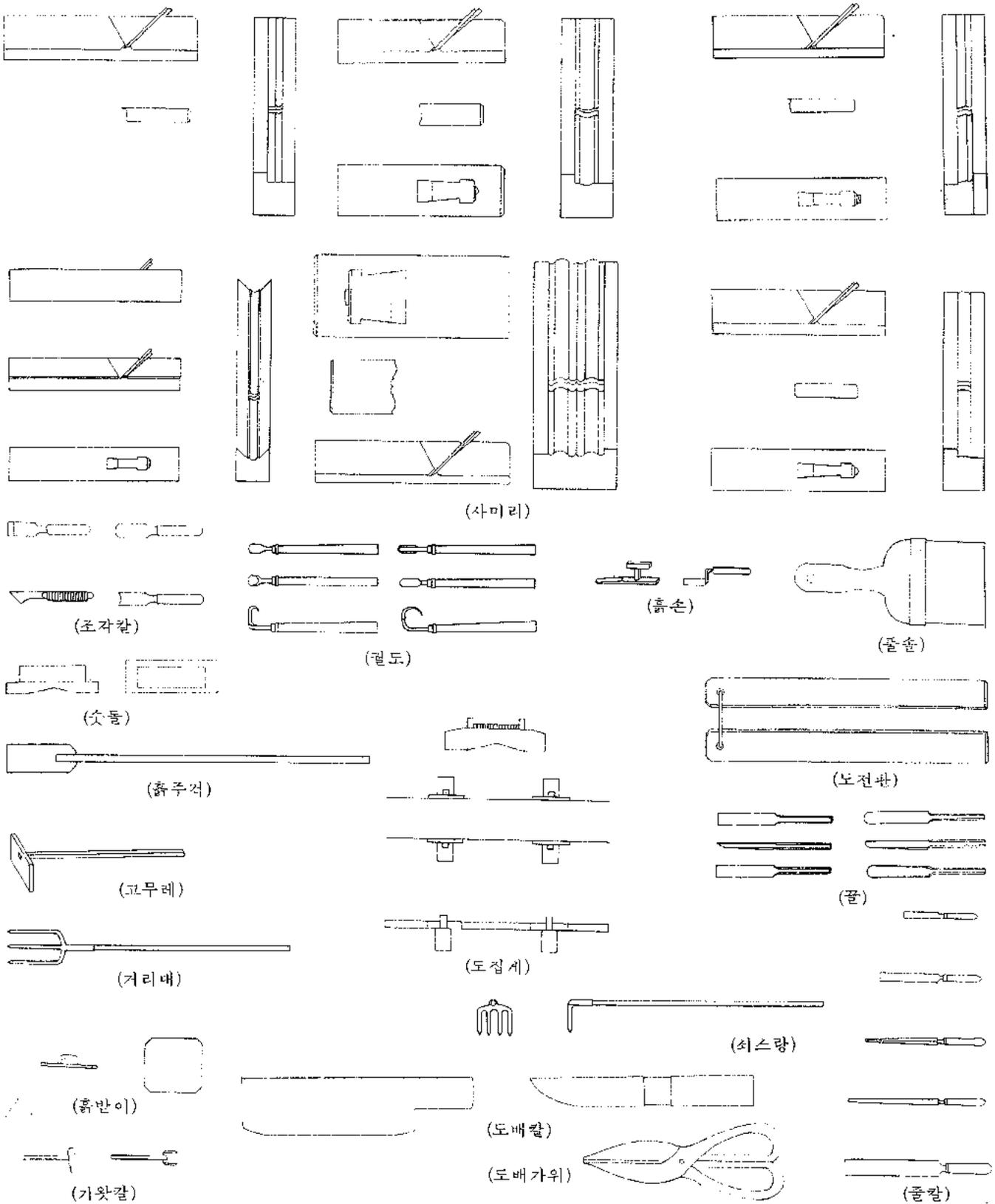


(환비비)



(둥근대패)





利權請託 根絶하여 正義社会 具現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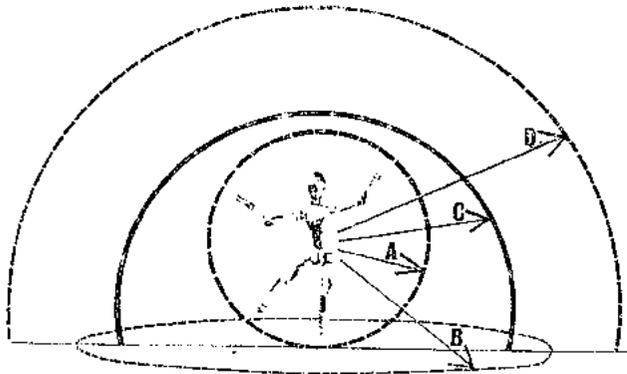


人間化의 空間

崔宗鉉 (譯)

(圓光大學校 工科大学 專任講師)

“The New Vision”에서 “Laszlo Moholy-Nagy”에 따르면 “生物學的 統一에서 全体的인 事件으로서 人間의 삶에 대한 깊은 知識이 利用되어질 때에, 建築은 最上으로 實現되어질 것이다. 그것의 重要한 要素中 하나는 人間의 空間內的 配列이고 空間을 그것의 連結로서 把握되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建築의 根幹은 空間의 問題를 支配하는데 놓여있다.”



(그림 1)

球形空間：人間은 그의 私의 球A를 B층, C보호물, D天球로 投影한다.

建築에 있어 一般的으로 人間과 空間이 마치 두개의 完全히 分離된 實體인 것인 양 評價되어 오고 있다 Concrete나 Stone은 立方體를 形成하기도 한다. 그러나, 空間의 느낌(sensation)을 創造하고 經驗하는 主体는 人間이다. 構造體의 外形上의 特質은 發散하는 힘들이다. 그 힘들은 感覺을 誘發시키는 刺戟(큰 범위의)의 根源이고 知覺의 첫단계는 이러한 message들의 받아들임이다. 이어 일어나는 神經系統과 마음의 活動은 複雜할 뿐만 아니라 構造的이고 選擇的이다. 空間의 方向性(定位: Spatial Orientation)에 必要한 情報들은 受容되고 相互關係를 하지만 關係없는 많은 量의 情報들은 걸러진다. 一般的으로 이러한 過程은 거의 自動的이고 呼吸이나 걷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럽다. 人間이 비록 주어진 空間을 그의 感覺機關의 모든 範圍를 통해 知覺하기 시작하지만 知覺過程의 最終產物은 하나의 느낌이다. 즉 그 特定한 空間에 대한 느낌(그가 그 空間에 投影하는 느낌)이다. 그래서 어떠한 空間이라도 그것 자신의 特定한 性質을 갖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知覺過程의 첫단계는 無意識的 次元에서 더 많이 作用함에 반해 最終局面은 意識世界의 感情이 賦課된 反應을 불러 일으킨다. 均衡이 잘 잡혀있지 않고 採光이 나쁜 空間은 불쾌한 분위기를 자아내어 反撥을 일으키고 生命力을 지닌 空間은 精神을 드높이는 느낌을 갖게 할 것이다.

● 自身の 空間

子宮은 人間의 첫번째 enclosure이다. 이經驗이 그의 훗날의 思考에 正確히 얼마나 많은 影響力을 미치는 가는 推測의 일 따름이다. 人間과 動物에 있어서의 첫번째 行動들은 視覺이 正常作用을 하기전까지는 身體制禦를 使用한다. 어린이가 物體를 잡으려고 손을 내밀는 時期는 그가 空間에 對한 身體的 感覺을 그의 環境의 視覺的 構造에 統合시키고 있을 때이다. 心理學者들은 空間의 知覺을 시각과정으로 분류하려는 경향이 있고 문헌들은 收斂, 重複 그리고 質感을 나타내는 成分들 등과 같은 요소들의 偏愛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空間은 觸覺, 聽覺, 嗅覺을 補強해 주는데 寄與하고 있다. 過度로 裝飾이 되고 絨緞이 깔린 아파트내의 音響, 또는 聖堂에서의 발자국의 울리는 反響들은 공간에의 附加的인 定義를 提供한다. 地下室의 濕氣찬 壁의 냄새는 enclosure의 느낌을 上昇시킨다. 발은 觸覺을 活用하거나 또는 絨緞에서 들, 자갈, 木材로의 바닥 質感의 變化를 測定케 해주는 壓力을 느끼는데 활용되기도 하지만 더욱 重要한 것은 바닥面의 傾斜의 變化를 覺한다.

● 平衡의 維持

筋肉運動感覺은 그것에 의해 手足의 實際位置가 確認되어지는 感覺이다. 內耳의 前庭感覺器管은 귀의 구성장치에 중심을 두고 있는데 身體의 垂直軸에 對한 몸의 움직임과 傾斜度의 變化를 測定한다. 이 두器管은 함께 身體의 均衡을 維持한다. 垂直과 水平은 建築物에 있어서 優劣한 視覺的 要素가 되어왔다.

왜냐하면 水平面은 最小限의 努力으로 身体가 建築物을 通過하게 해주고 垂直面은 그가 無意識的으로 그의 姿勢의 平衡을 維持시키는 고정된 參照物을 人間에게 提供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傾斜面이나 斜線들은 그것들이 人間の 平衡性에 挑戰을 하기 때문에 항상 動的인 性質을 가지게 된다. 運動하는 彫刻의 한 部分으로 觀察되어지는 움직이는 身体는 空間內에서 극도로 複雜한 形態의 關係를 나타낸다. 이러한 움직임을 統合시키는데 必要한 制禦는 주로 無의식적 차원에서 行해지고 人間の 空間감각에 기초를 제공한다.

내뻗는 팔과 다리의 回轉에 의해 생기는 曲線은 근본적으로 球形인 空間을 規定한다. 人間을 에워싸는 이 球는 그가 精神的 本体로 變換시키는 生理的 實體이다. 왜냐하면 그는 이 Zone을 그 자신의 個人的所有物로 여기기 때문이다. 이러한 空間에 對한 그의 態度는 “상대방과의 거리를 維持한다.”와 같은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言語의 隱喻的 表現에서 나타난다. 國民性, 階層 그리고 상황에 起因하는 거리에 대해 규정된 관습이 있는데 그것은 개인들 사이에서 준수된다. 일반적으로 그 空間이 侵害를 받게 되면 그것에 대한 반응은 움츠러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친구사이에 있어서 이 空間은 줄어들고 戀人사이에서는 없어진다. 自己中心의인 사람은 그의 個人的인 氣가 넓게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이 球를 증가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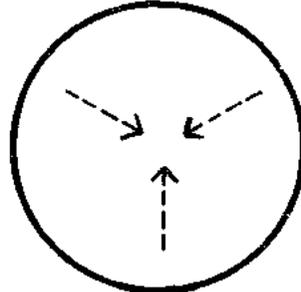
표현력이 풍부한 소리나 신호 등에 의한 상호전달은 언어보다 분명히 앞서 일어났고 아직까지도 人間相互關係에 있어서 必須的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의사표시는 言語의 pattern을 補強하고 있기 때문이다. 一般的으로 人間은 움직이고 있는 自身을 어떻게 表現하고 있는가와 다른사람의 움직임에 대해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 空間形態의 重要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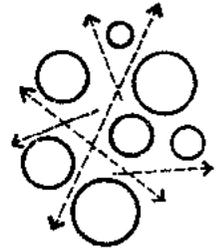
人間の 움직임과 몸짓이 潛在意識으로의 분명한 접근수단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心理學者들 및 최근에는 바로소 言語外的 傳達手段들을 타당성 있는 學問의 分野로 認定하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이다. 美術, 彫刻, 建築에 있어서 形態의 表現力을 설명해 줄 原理探究에 있어서, 表現의 가장 풍부하고 본능적인 원천인 몸짓의 유형과 인간 자체에 주의력을 집중해야 한다.

円形 또는 球形空間은 동물의 굴이나 새의 둥지등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形態이고 그것은 인간이 건축이나 춤에서 그 자신을 表現하는 手段의 최초 형태이기도 하다. 또한 그것은 인간의 個人的 領域의 投影이고 개인의 오두막집과 얼음집의 形態 그리

고 마을의 円形 집단화합 등에서도 發見된다 이러한 하나의 要素, 즉 円을 使用하여 世界도처의 原始共同社會는 다른 세계와의 커다란 구분을 表現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차원에서 使用된 공간이고 그 자체는 첫번째 원리를 설명하는데 사용되어 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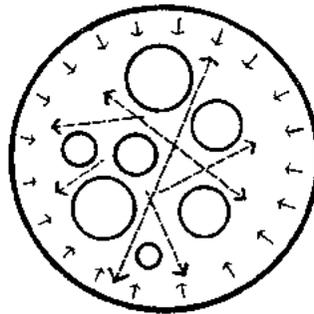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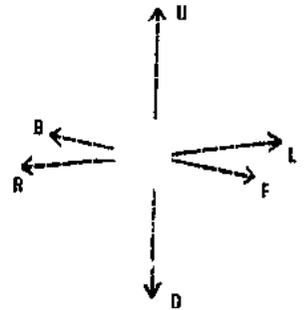
(그림 3)

적극적 空間, 둘러싸인 空 소극적 空間, 남겨진 空間, 제한된 視界, 내적 中 제한되지 않은 視界, 中心, 靜的, 點의 결여, 動的.

평면 平面에 한채의 住宅을 배치하게 되면 그 광경(scene)은 즉시 공간적인 性格을 띠게 된다. 건물內부의 空間은 둘러싸여지고 적극적이다. 그러나 건물 주변의 空間은 建物에 의해 置換되었다는 것 이외에는 그 자신의 명확한 性格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더러 소극적이다. (二次元에서의 상호 동등한 관계는 형태심리학자들에 의해 figure와 ground로 分類되어지고 있다.) 많은 수의 오두막집들이 놓여질 때 그들사이의 空間들은 더욱 강하게 占有物 또는 소극적 空間으로 表示된다.



(그림 4)



(그림 5)

적극적 空間과 소극적 空間의 長方形 空間은 上, 下, 左, 右, 前, 後, 세축으로 形成된다.

적극적인 空間은 性質上 더욱 靜的이고 内部에 중심점을 갖는다. 소극적 空間은 中心의 느낌을 주지 않고 視界가 차단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밖으로의 확산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動的이다. 現代建築家들은 주거집단계획에 있어 많은 세련된 응용물을 내놓고 있다.

● 円에 있어서의 空間

2次元的 象徴物로서의 円은 더이상의 단순화가 不可能하기 때문에 커다란 힘을 끌어내고, 円形과 球形 空間은 그것들 역시 더이상의 감소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유사한 힘을 시각적으로 끌어낸다. 눈은 그러한 空間들 내에서 아무런 모서리나 모퉁이를 발견하지 않고 자유로이 움직인다. 그안에서는 軸이 없고 축점은 항상 中心을 향해 内部로 향해진다. 人間의 個人的 움직임이 球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形態 위에 형성된 空間에 대한 經驗은 定義를 내릴 수 없는 方法으로 마치 일종의 그자신의 투영인 것처럼 人間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天球는 時·空에 관계없이 발견되어지는 하늘의 개념이고 人間의 個人的 空間의 궁극적 投影이다.

“World History of the Dance”에서 Curt Sachs는 말하기를 “人間이 동굴이나 돌출된 바위를 찾거나 또는 거친 기후에 대처하기 위한 간단한 바람막이를 세우는 것에 더이상 만족하지 않고 오두막집 建設에 착수했을 때 그들이 만든 것은 円形방이었다. 원시인의 주택은 별집을 닮았다. (그들에게서는 어떠한 垂直壁, 正사각형도 生成되지 않았다.) 基礎文化와 初期段階의 대부분의 空間 概念은 円을 필요로 했다. 주목할 만한 이 사실은 춤에 있어서도 円이 최초의 공간형태였다는 사실로도 立證된다. 춤에 있어 그것은 정말로 무한히 먼 옛날 일이었다. 人間이 그의 空間的 要求를 다른 물질, 나무줄기, 돌 등을 使用하여 客觀的으로 表現하기 以前에, 그는 그의 手足, 몸통의 衝動的인 움직임들을 滿足시켜야만 했다. 이러한 内部의 要求가 얼마나 強했느냐와 움직임과 構造物이 얼마나 分離할 수 없는 程度로 密着해 있었나 하는 것은 다음 事實에 의해 說明되어진다. 円形建物에서 離脫하여 長方形의 오두막집을 세운 文化圈(오로지 이러한 文化圈)에서는 습합춤(Choral Dance) 역시 直線形態를 取한다. 춤의 形成發展은 本質的으로 円形 오두막의 形成發展과 同時에 일어났다. Front dance는 長方形 오두막의 形成 및 發展과 連關되어진다.”고 했다.

● 角을 짓는 形態로

長方形空間도 역시 身體의 形態와 깊은 관련이 있는, 人間의 空間概念이고 同時에 人間의 概念的 思考에 대한 能力을 反映하는 發展이다. 上下, 前後, 左右의 軸은 이루 해야될 수 없는 座標系를 提供한다. 이러한 次元에 대한 自覺은 傳達를 더욱 效果的으로 하게하는 手段과, 사냥이나 戰鬪에 있어서 集團行動을 統制시키는 수단을 마련하였고, 이런 狀況들을 表現할 수 있는 程度로 言語의 발전을 끌어 올리게 했다.

直角, 正四角形, 立方體의 概念은 科學의 礎石이 되었고, 그것은 결국 物理的 環境에 대한 統制力을 人間에게 以前보다 더욱 더 주었다. 그것은 또한 航海에 必須的 補助物인 나침반의 눈금도 提供했다. 重力에 대한 우리의 複合的 感覺은 우리들로 하여금 水平面 위에서 活動하는것을 좋아하게 만든다. 傾斜진 곳에 걸거나 서있는 것은 水平面 위를 걷는 것보다 더욱 敏捷한 平衡運動을 必要로 한다. 水平面으로 層을 이룬 우리의 모든 建築物들은 이러한 緣由로 偏愛를 받고 있다.

重力의 힘은 우리가 위·아래 즉 空間에서 upward와 downward를 깨닫게 하는데 自然스럽고 強力하게 寄與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 앞의 空間에 反應할 때, 우리 뒷쪽의 空間에 대한 것과는 아주 다른 反應을 나타낸다. 人間은 그의 가장 最近의 哺乳類祖上과 마찬가지로 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頭蓋骨의 옆이나 뒷면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고 얼굴 正面에 位置하고 있다. 코나 귀는 그들의 機能上으로 볼 때 덜 明確한 方向을 잡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刺戟을 받게 되면 그것들은 그 出處로 우리를 向해서 直面한다. 손과 팔 그리고 발과 다리는 우리의 身體를 空間內的 事物들에 正面으로 位置시킬 때 그것들의 效果範圍가 最大가 되도록 結合되어 있다.

물론 forward와 backward를 가지고 있는 空間概念 즉 ahead와 behind의 意味는 우리의 思考와 感情에 스며든다. 前面에 位置하고 있는 모든 事物은 制禦할 수도, 또는 對抗할 수도 있지만 後面의 事物들은 그러한 制禦에서 벗어나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危險의 根源이 될 程度로 不安定한 狀態로 남아있는 것은 아니다. Richard Neutra는 Survival Through Design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것에 관해서도 隱喻的인 要素가 하나도 없다. 아마도 百萬年동안 그것은 原始的 思考에 스며들었고 人類의 모든 目的이나 鬭爭 그리고 個人들에게 感情을 일으키는 特色을 주어왔다.”

時問이 經過함에 따라 세 軸은 象徴的 聯想을 發展시켜왔다. 人間은 그의 움직임이나 舉動에 있어 無意識的으로 남과는 다른 空間zone을 使用하고 그래서 그것은 각 個人的 筆蹟을 그의 固有物로 만든다. 上下軸은 上昇에서 下降(의기소침)까지의 多樣한 感情을 지니고 身體가 움직이는 곳이다. 기쁜 瞬間의 뜨는듯한 기분은 垂直軸을 따르며 身體의 上昇感을 誘發해서 그 사람은 公중에 떠서 다니거나 세상 꼭대기에 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된다. 沈鬱은 筋肉의 弛緩을 동반하

고 身體는 “feeling low”나 “down in dumps”와 같은 은유법에 의해 表現되는 典型的인 姿勢로 빠져든다. 窮極的인 것은 人間의 高貴한 熱望과 卑賤한 所望에 對한 그의 軸, 즉 天國과 地獄이다.

後方·前方으로의 軸은 過去·未來, 內向的·外向的, 消極的·積極的인 联想을 가지기도 한다. 왼쪽·오른쪽은 아마 왼손잡이·오른손잡이에 대한 習慣 때문에 廣範圍한 參考物을 提供하고 있다. 舉動에 있어서 오른손은 보통 더욱 能動的이고 表情이 強하나 왼손은 종종 無意識的 動機를 나타내고 있다. 舉動에 不誠實性은 종종 誇張되고 歪曲된 pattern을 통해 確認되어지고 筆蹟을 속이려는 企圖에 있어서도 유사하게 제일 먼저 變경되는 것은 形態의 要素이다.

오늘날의 대부분 建築家들은 symmetry에 嫌惡感을 가지고 있으나 宗教建築計劃에 있어서는 아직도 어느 정도의 Symmetry 要素들이 必須的인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세상 도처에서 行해지는 宗教儀式에서 使用되는 움직임(movement)은 왼쪽편이 정확하게 오른쪽편과 均衡을 이루고 있는 傾向의 優勢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왼쪽 손이 오른쪽손의 거울의 像과 같이 움직인다면 讀者는 위에서 說明된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手足은 몸체로 向하거나 또는 몸체로부터 멀어지는 움직임을 보이게 되고 다른편으로 向하거나 멀어지거나 할 것이다. 이 效果는, 補充的이고 또는 어느 面으로 볼 때 스스로 均衡을 잡는 空間의 緊張을 만들어 내리는 것이다.

Geoffrey Scott는 The Architecture of Humanism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자신의 機能의 像을 바깥세상에 投影하거나 바깥세계를 우리 자신의 用語로 解釋하려는 慣習은 確實히 오래됐고 一般의 日本人 아니라 深遠하다. 그것은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을 知覺하거나 解釋하는데 있어서 사실 자연스러운 方法이다. 그것은 原始人들의 方法이고, 그들은 그들의 所望이나 信仰을 思考力으로 정확히 표현하기 훨씬 이전에 춤의 精巧한 몸짓으로 有形의 표현을 하였다. 세계에 대한 과학적 지각이 우리에게 強요되고 있다. 세계에 대한 인간적인 지각은 當然한 권리로 우리의 것이다. 科學的 方法은 知的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有用하지만 너무 단순하다. 세계를 우리 자신의 身體, 그리고 意志와 의 類推에 의해 인간화하거나 해석하려는 神人同性論的인 方法은 그래도 審美的인 方法이고 그것은 詩의 기본원리이며 건축의 토대이다.

참조물로 使用되는 세 軸은 3次元的인 십자가를 形成하고 人間은 그것을 사막이나 萬年雪(어떤 地形이든 관계없이)로 가지고 갔고 이 軸들은 주택의 平面

과 壁이 되기 위해 使用된다. 長方形 상자는 人間의 身體的, 精神的 조직의 거울(繼鑑)이다. 空間을 이러한 형태로 이해하려 하는 것은 人間의 本性이고, 知覺은 逆으로 장방형 형태에 특별히 인간적인 方法으로 作用한다.

長方形 Volume은 그것이 形態로 吟味되기 前에 공간으로 느껴진다. 그것은 둘러쌓인 面들의 성질이나 크기가 관찰되기도 전에 높이, 길이, 넓이의 軸들로 評價되어진다. 空間은 높다, 낮다, 길다 등으로 表現되기도 하고 또는 낮다, 좁다, 짧다 등으로 表現되기도 한다. 각 경우에 있어서 하나의 平面은 멀리 떨어져 있거나 가깝게 위치함으로써 다른 平面과 구별되어진다. 이것은 자연스럽고 분명한 視覺方法이고 공간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秘訣을 제공해 준다.

● 開放과 閉鎖

공간의 주된 성질 중의 하나는 開放과 閉鎖의 程度이다. 面들의 近接은 人間의 空間에 대한 反應을 좌우하는 要素들 중의 하나이다. 建物內에서의 삶과 움직임은 복잡한 유형의 신체 움직임으로 이루어지고 가장 稠爛한 모습에 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壁에 부딪치는 일은 극히 드물다. 왜냐하면 面의 위치는 무의식적으로 관찰되어지고 움직임은 그에 따라 順應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낮은 天井下에서의 움직임은 높이에 충분한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깨를 움추리거나 머리를 숙이는 등의 反應을 유발시킨다. 지붕 밑 다락방의 傾斜面은 명확한 느낌의 斜線의 圧力을 주고 있다. 筋肉緊張의 성격에 관해서는 아직도 많은 부분들이 미지수로 남아 있다. 그러나 그것은 睡眠時의 弛緩으로부터 興奮狀態時의 緊張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變化한다. 그것은 感情狀態에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것은 유쾌하고 활동적인 사람의 機敏함으로부터 좌절의 무기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變化한다. 하나의 假定으로, 공간의 폐쇄형태와 그것에 대한, 어떤 形態의 筋肉의 緊張에 의한 反應사이에는 相互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확실히 공간에 대한 실제적 지각과 그것에 대한 反應 사이에는 (구별되는) 특성이 있다. 이 反應의 정확한 성질이 무엇이든가 간에 緊張이란 用語는 그것을 表現하는데 使用되어질 것이다.

가깝게 접근해 있는 벽면에 대한 白覺은 긴장감을 유발시키고 두 平面의 접점에서 이 긴장감은 두배로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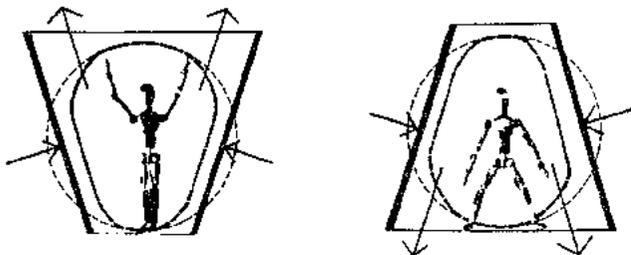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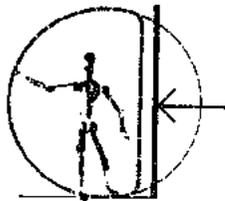
長方形空間에 대한 Wright의 反應은 다음과 같다. “人間性을 비좁은 곳에 가두는 섬뜩한 광경을 보았을

때에 나는 모퉁이를 없애 버리고 그 대신 유리(corner window)를 설치했다. 나는 이렇게 함으로써 “좁은 곳에 가둠”이나 “비좁은 곳에 밀어 넣음”에 일격을 가했다. 후에 Johnson Wax 건물에서 벽과 천정사이의 수평 모서리를 排除했다. 平面과 断面에서 상자모양을 없애는 것이 나의 작업의 根本이 되었다.”

경험의 단순화와 그 經驗의 전체로서 파악되고 이해되어질수 있는 (즉 齊一性에의 所望) 用語로의 形体化는 心理學的 事實 이상의 뜻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根本的인 要求이다. 人間에 있어 세계 내부의

(그림 6)

空間의 知覺. 面들이 身體에 접근함에 따라 그것들은 처음에는 暗示的인 制限을 주고 그 다음에는 實質的인 制限을 움직임에 주게 되고 緊張을 야기시킨다.



(그림 7)

空間의 知覺. 왼쪽 단면도의 경사면들은 상승 또는 압박의 느낌을 주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경사면들은 身體를 前方으로 몰아치거나 움직임에 억제작용을 하고 있다.

秩序와 意味를 찾으려는, 性癖을 타고 났을뿐 아니라 강력하기 때문에 그는 複雜한 것을 단순화시키고 불규칙한 것을 규칙적인 것으로, 또한 비합리적인 것을 合理化시키려 한다. 이러한 秩序와 단순성에의 探究에 있어 精神은 감소와 증가의 두 方向으로 作用한다.

理論의 공식화 과정에 있어서 적합하지 않은 격리된 事實들은 손쉽게 無視되어 자고 그 반면 情報만을 가지고도 이론이 形成되어 지기도 하며 그때에 空白는 채워진다. 視覺作用도 이와 유사하다. 형태를 봄에 있어 複雜한 pattern의 刺激들은 걸러지고, 細部보다 일반적인 構造的 線들이 먼저 記錄된다. 만데로 情報가 최소인 경우에 있어 정신활동은 구조적(생산적)이고 “完成化(completion)”로의 경향을 나타낸다.

그림 8)의 네개의 形態는 隔離된 선이나 점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네모짐”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림 9)의 네 形態가 3次元의 形態로서 벽과 기둥들을 長方形 volume을

暗示한다. 完成現象은 조직사이의 공백을 연결한다. 이러한 空間에 들어갈 때에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얇은 막을 통과하는 듯한 느낌이 들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空間의 創造的 使用에 있어 가장 重要한 하나의 事實이다. 왜냐하면 建築家는 지각을 일으키는 契機를 마련해 주기 위해 형태를 전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간은 閉鎖的 要素들이 物理的으로 완전히 明示될 때 보다는 暗示될 때에 더욱 生動感을 가지게 된다. 왜냐하면 建築家들은 空間의 구성에 있어 모든 手段들을 다 사용하지 않고 일종의 節約을 하게 되는데, 그 자신의 주위 공간을 完成하고 구축하는 것은 觀者이기 때문이다. 두 공간이 斜線的 結合관계에 있을 때 corner의 緊張은 사라지고 強力한 사선軸이 暗示된다. 그림 13)에서 A지점에서 서 있노라면 바로 이웃의 공간의 完成이 이루어지고 저쪽 空間은 이쪽 空間에 從屬的인 것으로 보인다. B지점에서서도 마찬가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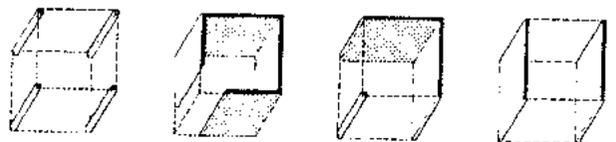
複合的인 空間들도 이 原理에 의해 構造되어 질수도 있고 多樣한 視點에 따른 많은 미묘한 차이를 가질 것이다. Saarinen設計의 G. M. 건물에서 觀者는 建物들 사이를 지나다닐 때 각각의 Zone을 독립공간으로 느끼고 그 時點에서 그 空間은 다른 것들 보다 優位에 설 것이다.

만약 Mies의 計劃들이 完成理論의 論證으로 생각된다면 “Less is More”는 새로운 意味를 가지게 된다. 그의 技巧에 있어 空間은 항상 최소한의 수단으로 意味되어져 왔다.



(그림 8)

完成化: 각 도형들은 점들과 선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心理的으로 構成되어져서 정사각형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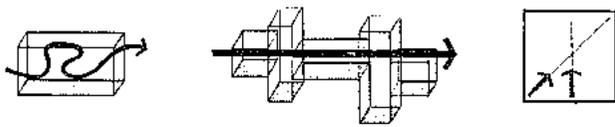
(그림 9)

完成化: 2次元의 形態에서 벽과 기둥들은 육면체의 주면으로 보인다.

建築的 構成의 대부분에 있어서 공간적 軸이 暗示된다. (그림 11)에서 공간A는 主軸과 斜線軸을 가지고 있으나 강력한 性格은 아니다. 공간B의 面들은 十字軸이 매우 압도적이 되게끔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공간에서의 움직임은 공간 주변의 구조물로 향해질 뿐만 아니라 이 軸들을 이루는 선이로써, 선에서 벗어나는 또는 紙上을 따른 움직임 등으로 느껴지게 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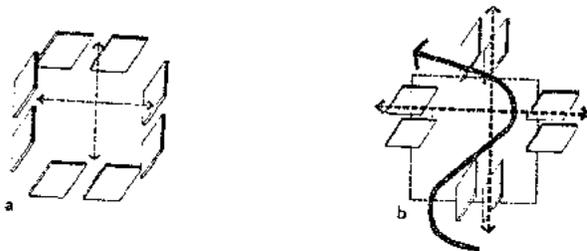
도 한다. 강한 空間的 軸을 가지고 있는 建物에서는 그 軸을 따라 前方으로 움직이게 하는 힘을 느끼게 된다. 그 영향은 강하다 못해 壓到的이다. 主軸에 교차하는 軸들은 운동감에 反拗하고 그것을 阻止한다.

Wright設計의 Darwin D. Martin씨宅은 이러한 방법을 使用한 그의 空間處理의 매우 훌륭한 예이다. 그곳에는 일련의 연결공간이 있는데 그것들은 軸들과 그것에 反對되는 軸들에 의해 여러 지점들이 연결된다. 각 空間들은 이러한 보이지 않는 힘의 線들에 의해貫通되고 각 volume들은 그 空間에 뿐만 아니라 서로 서로를 향해 動的緊張感을 附與하는 格子軸에 의해貫通된다.



(그림 10)

空間은 움직임에 의해 경험된다. 움직임과 空間에 대한 느낌은 복합적인 것이고 그 안에서 각기는 다른 것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단순한 공간에서의 複雜한 움직임(왼쪽), 복합적인 공간에서의 단순한 움직임(중간), 직각축 또는 사선축상의 움직임(오른쪽)은 서로 다른 공간 경험을 일으키고 형태에의 定位을 조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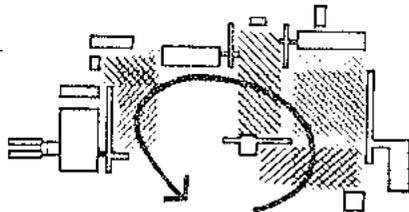


(그림 11)

空間軸. A와는 대조적으로 B에 있어서의 面들은 강하게 암시된 軸들을 가지고 있다. 움직임은 그 軸들을 가로질러 절단하는 것으로 느껴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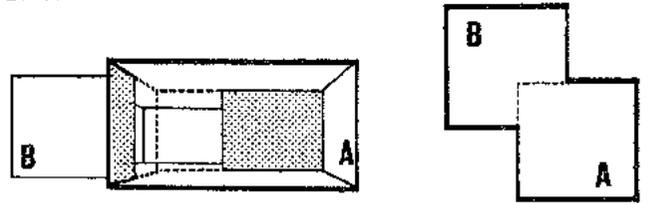
그림 12

完成化, GM 기술본부에서 건물들은 공통된 외부공간을 함께 가지고 있고 그 공간들은 觀者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完成化해서 전체로 통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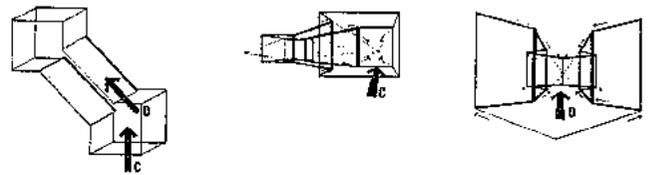
空間의 構成 (composition)은 彫刻의 形態的 性質을 가질 수 있고 또한 전혀 다른 方法(靜的이 아니고 人間의 삶과 움직임에 관계를 갖는 方法)으로 構成될 수도 있다. 空間에의 經驗은 연속적이고 움직임에 따라 變化한다. 공간의 연속(sequence)은 영화나 음악 또

는 춤에서와 같이 경험의 連續性을 뜻하고, 그 연속은 형 (pattern)과 構造(structure)를 가지고 있음에 틀림 없다.



(그림 14)

중첩된 공간들. A에서 보게되던 공간은 장방형으로 完成化해서 B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B에서 볼 때에는 정반대가 된다.



(그림 14)

정방형 공간과 사선적 공간. 형태에의 定位(定位)는 움직임의 軸에 의해 조절된다. C선상의 움직임에서 형태는 비대칭적으로 보이고 두 정방형 공간은 사선통로에 의해 연결되어진다.

D선상의 움직임에서 형태는 대칭적으로 보이고 두개의 사선적 공간들은 똑바른 통로에 의해 연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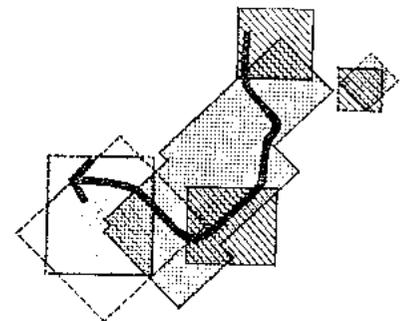
● 運動 / 空間의 連續性

건물의 內的 生命은 공간과 그외에 움직임의 經驗이 아니고 움직임과 空間의 一聯인데 그 속에서 각각의 영향은 다른 하나와 풀 수 없도록 뒤섞여 있다.

空間과 움직임의 相互관계의 예로서 主軸을 따른 진행은 性格上 斜線上의 움직임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공간들은 서로서로에 角을 이루며 놓여지기도 한다. 그래서 한 空間의 主軸上의 움직임은 다음 空間의 사선상의 움직임으로 이어진다. 空間들은 恒常 模糊性을 가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의 volume에서 正面으로 움직일 때 展露이 변함에 따라 그 역할도 반대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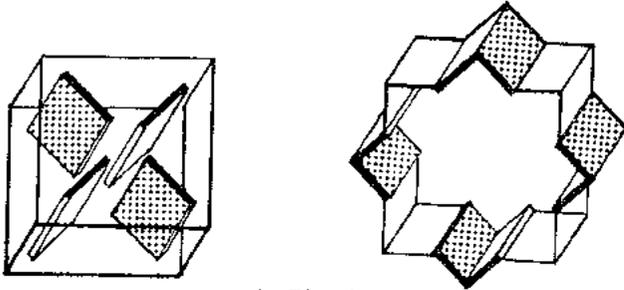
(그림 15)

Wright 設計의 St. Joseph 氏宅의 圖解.



St. Joseph에 있는 Wright가 設計한 집은 이 두가

지의 原理를 使用했다. 왜냐하면 주침실과 거실은 집 중심부에 斜線的으로 配置되어 있고 circulation은 主軸에서부터 사선축으로 변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16)

정방형공간과 사선적 공간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융합되어진다. 그러한 공간내에서의 定位는 항상 불명확한 것으로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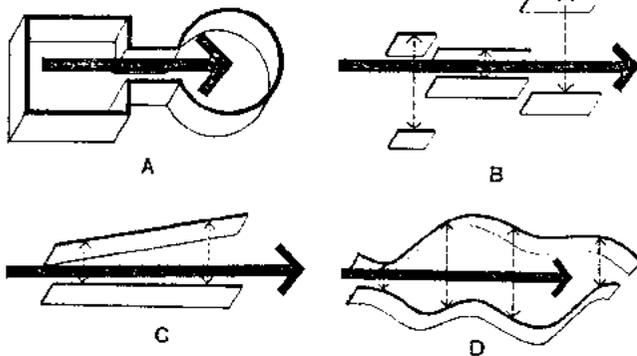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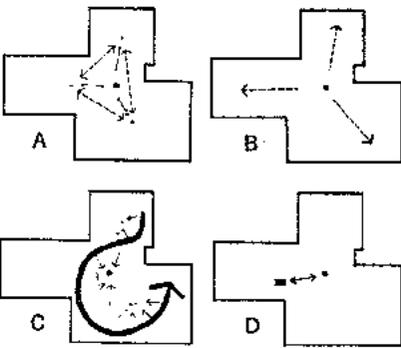
(그림 17)

공간의 형태적 특성들.

A) 각기 중심들은 공간내의 主中心에 관계를 가진다.

B) 공간은 그 主中心으로부터 확장된 것으로 느껴진다.

C) 그 공간내에 A의 움직임은 이러한 중심들로 향하거나 또는 그것들에서 멀어지거나 또는 그것들에 대해 주변적인 것이 된다. D) 중심을 벗어난 시각의 초점은 中心과 動的인장을 이루며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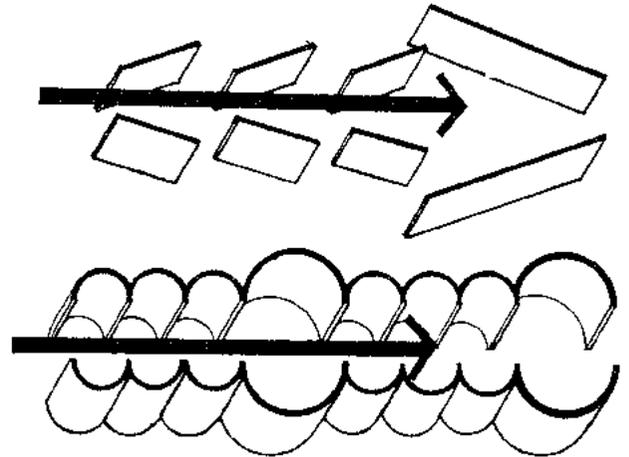
(그림 18)

공간적 연속: A) 형태에 있어서의 대비. B) 돌연한 변화. C) 완만한 변화. D) 공간의 유연성.

circulation은 통상 한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도달의 手段이 된다는것 이외에는 考慮對象이 되지 않고 가장 짧은 통로가 偏愛를 받고 있다. 그러나 움직임은 왼쪽·오른쪽, 위·아래, 시계방향의 나선형, 반대방향의 螺旋形 또는 구불구불하거나 角을 이룰 수도 있다. 高低의 변화도 역시 方向의 변화와 쌍을 이루

기도 한다. circulation은 통상 T자나 삼각자에 의해 통제되어지나, 그러나 일단 움직임의 機能的 pattern은 물론 表現的 pattern이 考慮되어 진다면, 建築은 춤의 本質 중의 어떤 부분들을 떠맡을 것이다.

建築家들은 종종 그 안(建築物)에서 營爲될 삶을 회생시킬지도 모를 정도로 建物の 物理的 形態에 사로잡혀있다. 建物の 實體는 그것의 物質的 內容(實體)에 의해서만 보여진다. 그러나 空間을 통한 움직임으로서의, 시간에 따른 건물에의 經驗 역시 實在的이다. 건축구조(architectural structure)에 form이 있듯이 경험의 pattern 에도 form이 있다.



(그림 19)

空間의 流動적 連續

建物は 그 주위를 돌아보고 건물내부를 들어가 봄에 의해서만 느껴지기 시작한다. 建物과의 親熟이란 그가 建物에 대한 그의 태도를 찾아낸다는 것을 意味한다. 이 말은 즉 배치 형태가 精神的 模型(mental model)의 어떤 형태로 記憶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意味한다. 일단 건물의 형태배열이 理解되면 여하한 즉석의 經驗들은 이 지식에 의한 영향을 받게 된다.

마찬가지로 한편의 음악과의 親熟은 그 作杼의 어떠한 부분도 전체에의 관련하에 경험되어 진다는 것을 意味한다. 제한된 樂節은 감상자가 그 악절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다음에 이어지는 音의 破裂을 예상하기 때문에 더 큰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建物들의 頭序없는 모임은, 그것들이 정신적으로 持되고 受容되어지는 형태적 배열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주체성을 결여하고 있다. 그것들 안에서 方向感(orientation)은 不可能하다. 平面이 재빨리 그리고 明確하게 머리속에 기록되기 위해서는 좋은 登錄商標과 공통점을 갖는 그 무엇을 지닐 必要가 있다.

자신의 身體에 대한 지식을 통해 人間은 重力의 力學에 대한 경험적 지식을 획득한다. 物體를 들어올릴 때 그는 그것의 重心을 계산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왜냐하면 自動的으로 그의 자세를 가장 効果적인 位置로 조종할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식은 建築

에 있어서의 form에 대한 그의 반응을 조절한다. 왜냐하면 그것들도 역시 균형·불균형의 緊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 緊張과 運動

空間은 中心點을 가지게 되고 複合空間은 主中心點 周圍에 一聯의 補助的 中心들을 가지게 된다. 視覺焦點이 부과되면 원래의 中心과 關心을 끄는 人工的 中心 사이에는 緊張이 形成되게 된다.

人間이 건물 내부에서 움직일 때, 그의 모든 움직임은 형태(form)에 관련 行해진다. 그래서 단순공간에서조차 움직임은 中心을 向해지거나 또는 그것에서 멀어지려는 것 등으로 느껴진다. 건물 내부의 circulation은 어떤 結節點(nodal point)으로 向하거나 또는 그것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등으로 表示된다. 建物이 積極的인 主体性을 가지기 위해서는 circulation pattern의 雰囲気에 잘 맞추어진 형태배열을 필요로 하게 된다. 명확히 규정된 中心點을 가지고 있는 건물에서 다른 모든 空間들은 이 중심 공간으로부터의 遠·近 등으로 경험되어질 것이다. 큰 건물은 서로 動的平衡 狀態를 이루며 존재하는 일련의 중심점들을 가지기도 한다. 이러한 中心들 사이의 움직임은 힘의 場(field)을 통해 움직이는 것에 비교되어 질 수 있다. 왜냐하면 主空間에서 副空間으로 또는 그 반대로의 轉移는 動力(學)에 있어서의 減少 또는 增加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끝없는 ribbon building은 主体性和 場所感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 안에서의 움직임은 定位와 空間的 對比를 缺如하고 또한 그 自體의 消極的 性質을 어느정도 그 속에서의 生活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建築에 대한 경험은 高度의 複合性을 띠고 있다. 왜냐하면 어떤 一聯의 空間을 통한 움직임에 의해 일어나는 느낌들은 獨立的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全體 形態에 대한 知識에 의해 影響을 받고 있다. 움직임은 主空間들과 中心點들로 指向되거나, 그것들로부터 벗어나거나 또는 그것들에 周邊的이다. 즉석의 경험은 이전의 느낌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또한 前面 形態에 대한 예상에 의해 조절된다.

人間이 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建築物의 힘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건물의 실체는 형태와 경험의 요소들이 그 속에서 숫자로 나타나는 複合方程式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한다. 窮極的으로 경험은 들다 主体이다.

空間의 連續은 어떻게 구성되어 질 수 있는나? 한 공간과 다른 공간을 연결하는 간단한 直線 움직임을 생각해 보자. 변화는 정사각형에서 원으로 또는 曲線 形態에서 角形 등의 형상(shape)의 變化일 수도 있다. 크기(scale)에 있어서의 변화는 緩慢할 수도 또는 급할 수도 있고 轉移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또는 단순히 작음에서 큰 곳으로 되기도 한다. 主空間들은 轉移空間에 의해 並置되거나 隔離될 수도 있다. 空間은 빛에 의해 暴露되어 질 수도 있고 빛의 使用方法에 의해서 劇的으로 變化될 수도 있다. 空間의 구성 단위들은 빛과 어두움 또는 開放과 閉鎖에 調化되고 상호관련있게 組立되어질 수 있다. Aldo van Eyck는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人間은 그때도 呼吸한다. 建築은 언제 똑같이 할 것인가?”

開放과 閉鎖의 내조적 요소들은 무수한 方法으로 움직임 pattern에 관련되어질 수 있다. 공간을 통해 움직일 때 그 공간들은 팽창하거나 또는 축소되기도 하고, 한 방향으로 열리고 다음에는 다른 방향으로 열리기도 한다. 가장 관계가 있는 유사물은 춤의 움직임이고 건축가는 dancer로 부터 그리고 그 자신의 춤을 추며 행하는 신체적 實驗으로부터 空間構成(composition of space)에 대한 많은 지식을 배우게 될 수 있다.

공간의 心理學的 次元은 명확하지 않아서 미리 예상하기가 매우 힘들다. 심리학적 차원들 역시 많은 경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된다. 공간의 건축적 형태와도 그와 같음에 틀림없기 때문에 空間은 강한 shelter의 느낌을 주고 있다.

Wright는 이것을 목이 넓은 돌출처마와, 건축물과 땅을 동일시 보이게 하는 水平線에 의해 達成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Lou Kahn의 建築과 計劃들은 종종 요새와 같은 외관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요새의 느낌은 넓은 중심공간에 의해 內적으로 完化되고 있다. 그래서 같은 目的이 완전히 다른 手段에 의해 達成되고 있다. 空間의 形體化는 어느 정도로 그 안에서 생길 활동들을 決定하고, 家族이나 集團의 관계를 助長시키거나 低下시킬 수 있다.

Lewis Mumford의 말처럼: “많은 빛(약간의 어두움을 간직한), 많은 개방성(약간의 閉鎖性), 많은 volume(약간의 mass), 많은 융통성(약간의 硬直性)”

“Modern Movement가 무르익어 감에 따라 有機的 建築은 外向性 못지않게 內向性에, 客觀性 못지않게 主觀性에, 科學과 理性의 冷徹한 照明 못지않게 숨은 原始的이고 無意識의 힘에 公正한 評價를 내릴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有機的 建築은, 人間을 덜 인간적 규모의 공식이나 적합할 정도의 크기나 형태로 낮추려 하지 않고, 완전한 인간(whole man)의 기능과 目的들을 考慮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

※ (本稿는 1964年 4月 P/A紙에 Michael Leonard가 寄稿한 것을 完譯한 것임.)

필자 Michael Leonard는 英國과 獨逸에서 修學했고 劇場과 舞踊을 위한 建築의 計劃과 實行에 있어서 精力의 人 建築家이다.

農村住宅 및 聚落構造改善에 關한 問題點과 方向

田 耕 培

(漢陽大學校建築學科教授)

1. 序 論

農村住宅改良 및 聚落構造改善事業의 目的은 한마디로 말해서 非能率的이고 非文化的인 落後된 農村生活環境을 急變하는 새로운 農村生活에 適合하도록 改善하여 農民들이 文化福祉生活을 享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고 하겠다.

이 目的達成을 爲해 政府에서는 1970年 4月22日 大統領의 새마을運動 提唱을 契機로 農村近代化 事業에 着手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約10年 동안의 그 成果를 간추려 보면, 約200萬棟의 草家지붕의 改량을 비롯하여 부엌, 便所, 울타리 등 住宅의 部分的인 改良에서부터 마을의 道路擴張, 共同作業場, 어린이 놀이터, 새마을회관, 上下水道 및 電氣架設 등 마을 生活環境改善에 이르기까지 많은 成果를 거두었고, 特히 1976年부터는 住宅改良에 力點을 두어 15坪型 3種, 18坪型, 3種 計 6種의 標準設計圖를 作成하여 規格品을 使用한 試驗住宅을 郡當 5個마을 마을當 5戶 計 690個 마을에 3,450戶를 建立하였으며, 併行하여 聚落構造改善事業이 始作되어 1976年에 10個 마을, 1977年에 247個 마을, 1978年에 822個 마을, 1979年에 1,000個 마을이 改善되었다.

10年동안에 걸친 이와같은 成果에 對해서는 아무도 否認할 수 없으나 農民들의 過重한 經濟的인 負擔, 事業에 對한 認識 및 技術不足, 農民 相互間의 利害關係, 相互間의 意見齟齬, 關係 公務員의 建築技術 未熟, 專門家들의 參與不足, 資金調達 등 많은 問題들이 야기된 것도 事實이며 長期的인 次元에서 본다면 반드시 좋은 成果였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 가장 크게 反省해야 할 點은 첫째, 各 專門家에 依한 研究의 不足을 들 수 있겠고 둘째, 우리나라 農業의 未來像의 定立과 이에 對應하는 長期的인 農村地域計劃의 基本計劃樹立없이 事業이 部分的인 施策에 依해, 앞서 施行되었다는 點. 例를 들면, 短期間內的인 半強制的이고 一律的인 草家지붕의 改良은 住宅改良事業 推進으로 無意味하게 되고, 마을 全體의 將來에 對應하는 長期的인 基本計劃이 없는 道路의 擴張, 上·下水道の 整備, 散發的인 住宅改良 亦時 聚落構造改善事業推進으로 勞力의 浪費가 될 우려

가 있으며 現在 推進中인 聚落構造改善事業도 앞으로 營農體系, 農產物의 流通體系, 農民의 生活圈등의 變化에 對應한 農村地域計劃의 基本方向에 立脚하여 施行되지 않으면 같은 過誤를 犯할 우려가 있다. 세계, 展示效果나 實績爲主를 止揚해야 할 것이다. 地域的인 特性과 將來의 展望을 考慮하지 않을 것이다. 尼敎, 官主導型을 止揚하고 住民들의 意見을 尊重한 住民爲主의 改善事業이 推進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劃一的인 標準住宅을 止揚하고 農民들의 기호에 맞는 自由로운 選擇의 幅을 넓혀도록 하고, 多樣한 많은 示範住宅을 建立하여 住宅에 對한 關心을 고취시키고 積極的인 指導啓蒙活動에 主力을 두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建築當時의 建築費節減에만 汲汲하지 말고 長期的인 經濟性을 考慮해야 한다. 일곱째, 住宅의 形態는 劃一性을 止揚하고 多樣性을 追求하면서 地域의 特性이나 自然風景에 調和 되도록 開發되어야 할 것이다.

2. 農村地域計劃의 次元에서 본 聚落構造改善의 問題點과 展望

1960年代 後半부터 우리나라 都市産業의 急激한 發展으로 農村 人口의 都市集中 特히, 젊은 農村勞動力의 大舉離農으로 勞動力 不足現象마저 일어나 農業의 大轉換期를 맞게 되었다. 이와같은 主原因은 都市와 農村의 所得隔差, 生活環境의 不良, 文化公共施設의 貧弱, 劣等意識, 소외감등에 起因하는 것으로 分析한 政府는 1970年에 農村近代化促進法을 制定하고 農村近代化事業에 着手하여 農家所得增大와 生活環境改善事業에 重點을 두고 모든 施策이 推進되어 왔으나, 여전히 都農間의 所得의 隔差는 벌어지고 農村人口의 都市集中現象은 그치지 않았으며, 급기야는 農業勞動力의 老令化, 婦女化現象이 일어나고 農業의 機械化가 不可避하게 되었으며, 所得增大에 따른 消費生活增大, 交通의 發達과 報導機關의 發達로 農民들의 意識構造의 變化, 生活樣式의 都市化, 兼業農家の 增大, 營農의 多角化, 生活圈의 擴大, 勞動力 不足에 依한 代理耕作, 農業의 企業化, 農業의 大型機械化등 農村社會에 새로운 變化가 일어나고 있다. 이와같은 變

화가 앞으로 繼續될 것이 豫想되므로 이 變化에 따라 앞으로는 現在의 農村, 農民이라는 概念이 새로운 性格으로 變할 것이 分明하며 聚落形態도 漸次的으로 解體統合이 不可避하게 될 것으로 推定된다. 農民들은 生産성이 높은 農業技術者 또는 土地의 出資者로서 農業經營者로 登場될 것이 豫想되며 農村은 都市에 食品, 물등을 供給하고 都市는 農村에 生活品의 供給, 廢棄物의 處理라는 有機的인 結合關係가 成立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農村社會의 變化에 對應하기 爲해서는 自然放任的인 改善이 아니라 時代의 흐름에 適合한 剛期的인 將來를 생각한 農村計劃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農村自体보다도 都市와의 有機的인 結合關係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計劃 自体도 都市計劃에서 行해지고 있는 各種計劃이나 開發등에 比較되는 새로운 型의 農村地域計劃이 樹立되어야 할 것이다.

3. 營農方式의 問題點과 展望

農村 勞動力의 都市流出은 農村의 勞動力 不足을 極甚하게 하였고 家族 構成의 分化로 勞動力

不足을 婦女子化 現象을 빚어 從來의 家族人力에 依한 農業方式은 限界에 이르러 앞으로 機械化營農은 不可避하게 되었다. 그러나 農耕地의 基盤造成 未備, 營農의 零細性등이 機械化를 阻害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앞으로 當分間은 機械의 共同所有에 依한 協業, 共同作業, 機械의 貸與 또는 代理耕作등이 展望된다. 地域에 따라 主穀爲主農業에서 脫皮하여 畜産, 果樹, 野菜, 煙草 등 經濟作物으로의 轉換에 對한 育成方案 문제, 都市近郊 農村의 都市에의 通勤兼業 農家の 增大문제 業態別 專門化圃地 造成문제 등 營農政策에 對한 長期的인 基本 方向設定이 時急히 要求되고 있다. 이와 같은 政策的인 農業構造의 方向 如何에 따라 農村地域 計劃의 基本方向도 달라지게 될 것이다.

4. 聚落立地條件의 再檢討

自然發生的으로 形成된 既存聚落이 急變하는 營農方式과 農民生活에 便利한 位置에 配置되어 있는지의 與否, 將次 周邊마을들과의 統廢合의 경우의 適地選定, 가까운 都市와의 關係에서 본 生活圈 形成등이 細密히 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客觀的인 適地條件으로는 水質·日照가 良好하고, 조용하고 아늑한 場所라야 하며, 地盤이 견고하고, 各種 生活施設利用에 不便이 없어야 한다. 特히 適地選定에 있어서 留意해야 할 點은 低濕地帶, 高地帶, 河川邊 浸水地帶, 山間 溪谷地帶, 國道 및 高速道路邊 農耕地의 中央部등은 可及的 避하는 것이 좋다.

最近 聚落構造改善事業으로 새롭게 計劃된 聚落 中

에는 展示效果를 誇示한 나머지 方位, 騒音, 視線 등 立地條件을 無視한 事例가 적지 않다.

5. 聚落의 規模 및 形態의 再檢討

앞으로 農村人口의 激減과 營農方式의 機械化, 農民生活의 向上등에 따라 農耕地의 이곳 저곳에 散在되어 있는 小規模聚落의 統廢合에 依한 農村聚落의 再編成이 不可避하겠으나 이 경우 規模를 어느 程度로 생각하느냐가 큰 問題가 된다.

規模形態를 몇가지로 區分해보면 小單位散村型(既存形態), 大單位集村型, 農村都市型등이 생각된다. 農村都市 및 大單位集村型일 경우 農耕地까지의 距離 農作物의 管理등이 문제가 되겠으나 機械化 營農의 경우에는 別問題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 경우의 利點은 日常生活에 必要한 教育, 醫療, 購買, 厚生文化福祉 등 各種施設의 最小限의 成立이 聚落內에 可能하여 住民들의 施設利用이 便利하고, 生活를 活氣차고 潤澤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埽地造成費, 上下水道 및 電氣架設등의 建設費를 節減할 수 있고 土地利用率을 높일 수 있다.

6. 地帶別 特殊性 및 都市와의 關係에서 본 問題點

既存 聚落構造 改善事業이 地域的인 特殊性이나 都市와의 結合 關係에 無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앞으로는 地域的인 特殊性和 都市와의 關係에서 再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地帶區分은 都市近郊, 平野, 山間, 海岸 등의 地帶로 크게 區分할 수 있다. 都市近郊 農村地帶에서는 都市에의 通勤兼業化로 因한 農業勞動力 不足, 脫農化가 進展될 것이며 農地의 市街地化에 따른 土地 需給 문제, 都市의 廢棄物 處理문제등이 야기 될 것이다. 特히 都市에의 勞動力供給, 野菜, 과일등의 비타민供給이라는 關係로 成立될 것이 分明하다. 生活面에 있어서는 生活의 都市依存化, 非農家の 混在 문제등이 일어날 것이다.

平野農村地帶에서는 主穀生産의 適地로서 機械化가 容易하고 大單位 農業經營이 可能하다.

山間農村地帶에서는 都市와의 交通이 不便하여 兼業農業이 不可能하고 營農의 機械化가 困難하므로 離農現象이 極甚해질 것이 豫想된다. 地域에 따라 業態別(畜産, 果樹, 養蠶, 煙草, 人蔘등) 農産物 專門圃地 造成이 講究되어야 하겠고 生産性的 向上方案, 流通構造의 改善方案 專門生産施設의 研究가 必要하며 聚落構造改善도 여기에 適合하도록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海岸農村地帶에서는 漁業과 兼하고 있어 農業의 零細性 勞動力의 不足은 더욱 極甚하고 兼業으로 因한 生活環境의 無秩序 作業의 不便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 앞으로는 海岸漁業基地를 造成하여 農業과 漁業의 分離를 期해야 하겠고 農業보다 漁業을 爲한 聚落構造改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7. 앞으로의 農村聚落計劃의 方向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여러가지 문제點들이 있겠으나 몇 가지 基本方針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① 個個의 住宅에서 住宅集團으로, 住宅集團에서 各種生活施設網을 包含한 廣域地域으로 計劃의 範圍가 擴大되어야 하므로 住宅이나 聚落計劃은 長期的인 地域計劃의 方向에 따라 計劃이 樹立되어야 한다.

② 最小限의 生活施設을 包含한 文化生活을 亨有할 수 있는 計劃이라야 한다. 生活施設과 生産施設의 完全分離, 營農의 機械化, 大單位 聚落등이 前提條件이 되겠으나 生活圈의 段階構成을 地域計劃이라는 上位計劃에서 커버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③ 農産物을 消費地까지 円滑히 供給할 수 있는 流通의 合理化를 期할 수 있는 計劃이라야 한다.

④ 地域的인 特性和 傳統, 自然環境을 最大限으로 利用한 計劃이라야 한다.

⑤ 都市計劃에서의 地域制와 같은 土地를 用途區分하여 生活의 合理化 및 農作業의 能率化를 期하고 土地利用을 最大限 높일 수 있는 計劃이라야 한다.

⑥ 周邊都市와의 關係를 有機적으로 結合시켜 모든 生活文化施設을 自由롭게 亨有할 수 있는 計劃이라야 한다.

8. 改良農村住宅의 問題點

(1) 垡地規模 및 住宅規模

既存住宅의 垡地는 約50坪에서 500坪까지 그 分布가 多様하고 그 形態가 不整形으로 垡地利用率이 낮았으나 改良住宅의 경우는 150坪 정도 整形으로 區劃되어 있어 垡地利用率은 높다. 그러나 住民50% 이상 垡地의 狹小에 不滿을 갖고 200坪以上 넓은 垡地를 願하고 있다. 이 理由를 分析해 보면 150坪以上 完全 區劃되어 있으므로 自己집 周邊에 空地가 없어 모든 農作業을 自己집 안에서만 행해지고 있기 때문 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農作業 空間이 別途로 確保되면 生活空間으로서의 垡地로서는 充分하다고 생각된다.

住宅의 경우 標準設計圖에 依해 建立되었기 때문에 規模가 15坪에서 25坪까지, 房數는 3個로 限定되어 있어 住宅의 規模나 平面型에 對한 選擇의 폭이 좁아 不滿이 많고 規模는 20坪~40坪, 房數는 3個~4個程度를 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는 自由建設을 誘導하고 徹底한 啓夢指導가 必要하다고 생각되며, 標準設計圖의 경우는 平面型이나 그 規模에

있어서 多様化하여 기호에 맞는 自由選擇의 폭을 넓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住宅配置計劃의 問題點

農村住宅의 配置計劃에 있어서는 生活空間과 農作業에 必要한 生産空間, 畜舎 등을 어떻게 區分하여 配置하는가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既存住宅의 경우는 住宅, 附屬舎, 畜舎 등이 作業마당을 中心으로 混合配置되어 있어 作業能率面에서나 生活環境面에서 매우 不便한 點이 많았다. 改良住宅에서는 이와같은 不便을 없애기 爲해 住宅과 附屬舎棟을 完全히 分離 整理하였으나 그 分離自体가 住宅 垡地內에서 이루어졌고 農作業이 個別로 行해지고 있기 때문에 作業生産空間의 面積不足으로 垡地內에 自己 芟대로 附屬舎, 畜舎등을 增築하고 있어 從來와 같이 原狀復歸될 可能性마저 낮고 있다. 앞으로는 生産作業 部分을 住宅垡地外部로 分離시키는 문제가 研究되어야 할 것이다. 生産作業 施設計劃은 마을全体 共同部分, 몇 各戶의 구분共同部分, 個別 部分으로 區分하여 研究 되어야 하겠고 現在와 將來의 形態를 設定하여 將來의 目標에 容易하게 吸收可能한 配置計劃이 講究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建築材料 및 構造에 關한 問題點

農村住宅에 使用되는 材料는 都市住宅과 別差異가 없으며 構造材로서는 主로 木材, 부록, 벽돌, 흙벽돌을 使用하고 지붕은 기와, 스테이트를 使用하고 있으나 一般的으로 材料選擇에 對한 認識不足으로 流行에 따르는 傾向이 強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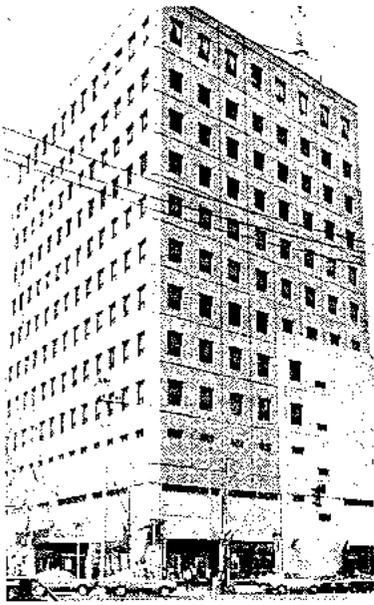
改良住宅에서는 부록 및 벽돌構造에 기와 및 스톱 지붕이 大部分을 차지하고 있으나, 保溫, 防濕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앞으로 이런 點을 考慮한 標準設計圖作成, 農村住宅에 適合한 建築材料의 開發이 時急하다.

(4) 住宅의 平面計劃 및 形態

平面計劃에 있어서는 農民들의 生活內容을 細密히 分析하고 農民들의 要求條件을 充分히 檢討하여 그 生活에 適合하게 計劃되어야 하며 將來의 生活變化에도 對應할 수 있도록 講究되어야 한다.

특히 標準設計圖의 경우에는 平面, 外形, 材料, 色彩등을 多様하게 農民들의 選擇의 餘地를 많이 주고 將來 變化를 감안하여 增築可能한 設計圖作成도 必要하며, 形態로서는 單層기와 지붕의 獨立住宅 以外에 2層스탑, 2戶聯立, 低層아파트 등도 새로 改善되는 聚落에는 試圖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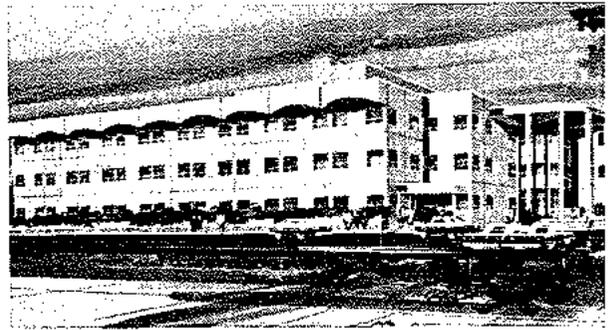
(18페이지에 繼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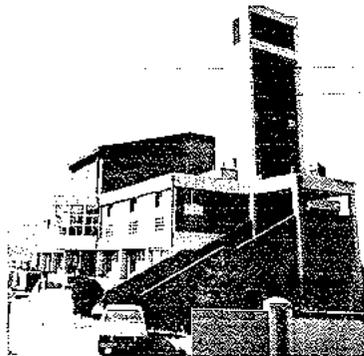
百貨店 / 柳根洵・鄭寅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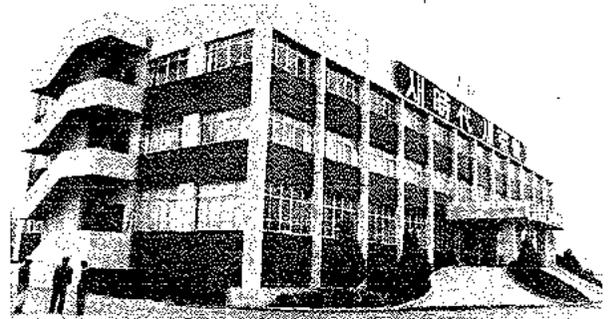
教育館 / 金仁錫



病院 / 金鍾敏



教會 / 李戰成



郡庁舎 / 朴成圭



住宅 / 吳英治



教育館 / 洪淳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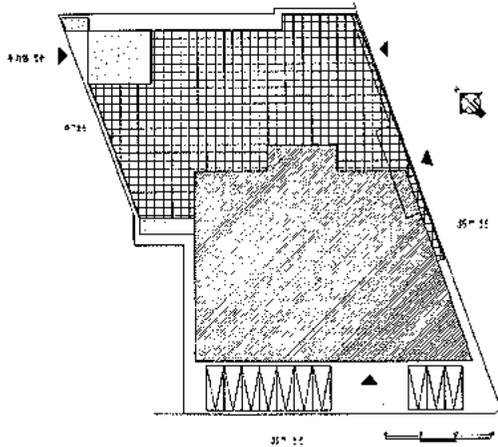
東洋百貨店

柳根冽 · 鄭寅協
(柳根冽 · 鄭寅協建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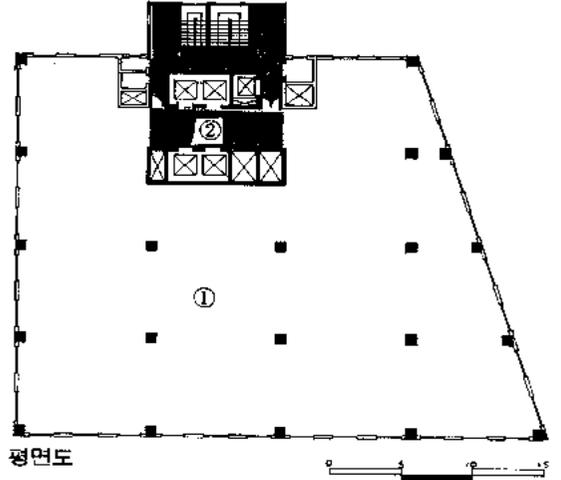
소재지 / 충남대전시선화동 · 구조 / 철근콘크리트라면조
규모 / 대지면적 2,346m² 건축면적 1,884.93m² 연면적 22,136.07m² 층수 / 지상12층 지하 4층 구조 / 전회수, 전기 / 이정화, 설비 / 김영창, 외벽 / 벽돌쌓기, 라일가감

■設計概要

백화점 및 임대 사무실로 그 용도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있도록 코아 부분을 절약하여 계획하였으며 주차장 계획은 대지의 여분이 없어 옥내 주차물 지하와 일부 옥상에 배치하여 하는 관계로 난공사를 무릅쓰고 지하4층을 시도하여 지하층공사 완료후 인근 주민과 분쟁이 야기되어 북쪽 대지와 인접 기존건물(3층)을 매입하여 기존건물은 철거치않고 설계변경을 하게되어 당초 계획과는 달리 코아가 1층에서는 중심으로 배치된 것처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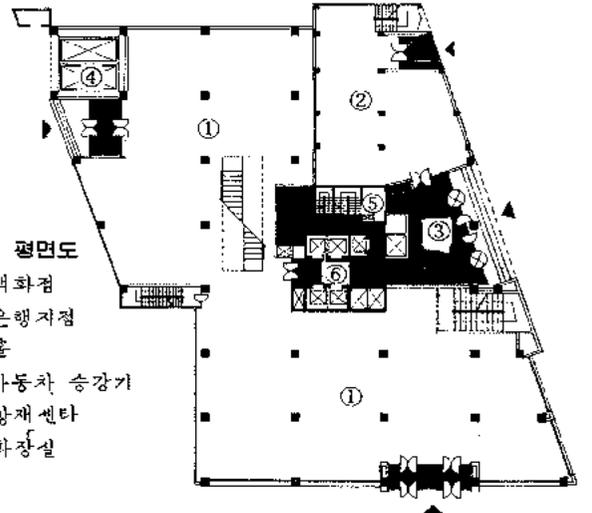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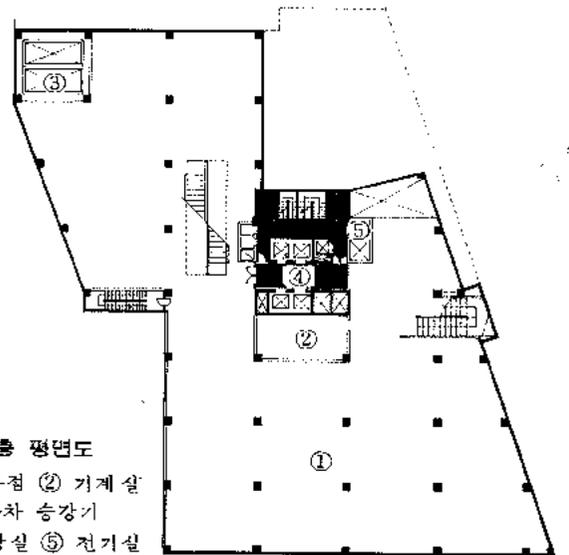
기준층 평면도

① 사무실 ② 화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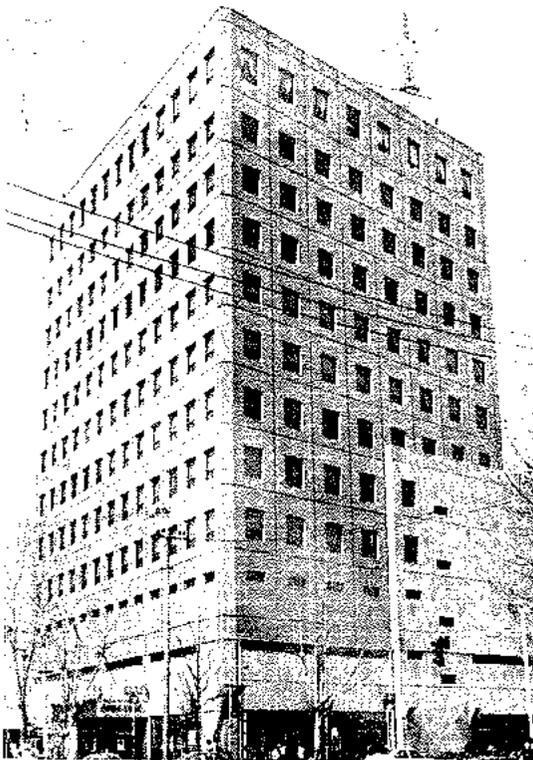
1층 평면도

- ① 백화점
- ② 은행지점
- ③ 홀
- ④ 자동차 승강기
- ⑤ 방재센터
- ⑥ 화장실



지하 1층 평면도

- ① 백화점
- ② 기계실
- ③ 자동차 승강기
- ④ 화장실
- ⑤ 전기실



永同天主教会



李載成
(CMU 協同建築研究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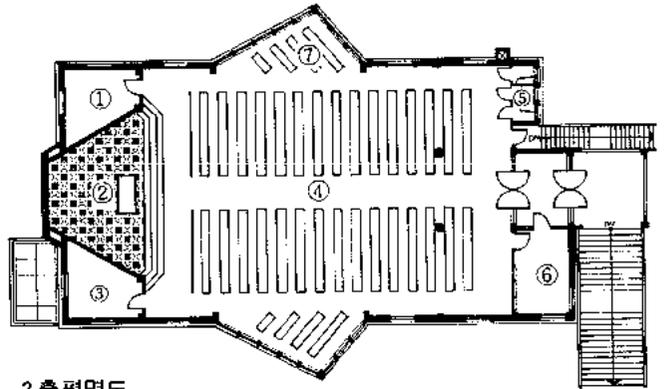
소재지 / 충북영동군영동읍계산리·규모 / 지하 1층·지상 2층 건축면적 / 392.32m² 연면적 / 1,007.02m² 용적율 / 54.09% 진폐율 / 19.70% 구조 / 철근콘크리트 (철골트러스) 외장 / 적벽돌치장쌓기

■設計概要

자연녹지에 대한 진폐율등의 규제 때문에 대지에 대한 한정된 이용도가 계획에 대한 일정한 범위 안에서, 활성화된 기능의 구분과 요구조건을 충족시켜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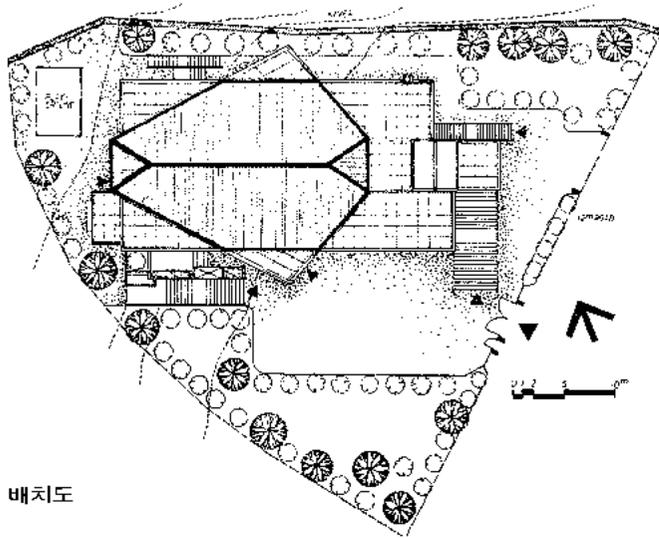
지하층에는 유치원 및 교리실, 1층에는 사제관 및 수녀원, 2층에는 성당으로 계획하였으며, 특히 유치원은 자연 채광의 효과를 최대한 살리기 위하여 지상노출시켰고, ORY AREA를 통하여 높이터로 직접 나갈수 있게 하였다.

외관은 내지 북측에 흐르는 하천과 주위환경에 어울리면서도 독특한 분위기를 갖게 하기 위하여 지붕형을 단순하면서 특이하게 구상하여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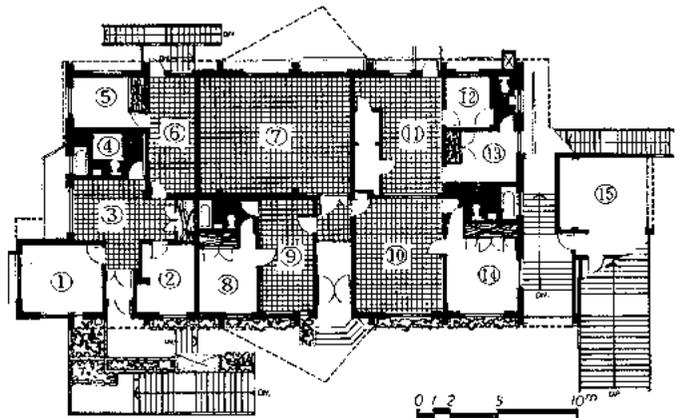


2층 평면도

- ① 성의실 ② 계대 ③ 창고 ④ 회중석 ⑤ 고해실 ⑥ 아동실 ⑦ 성가대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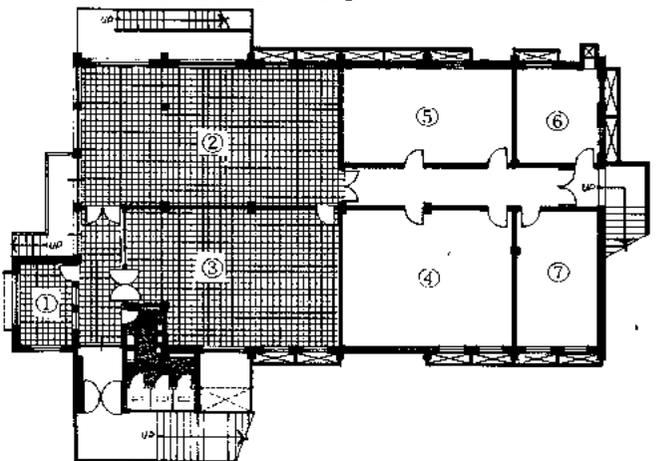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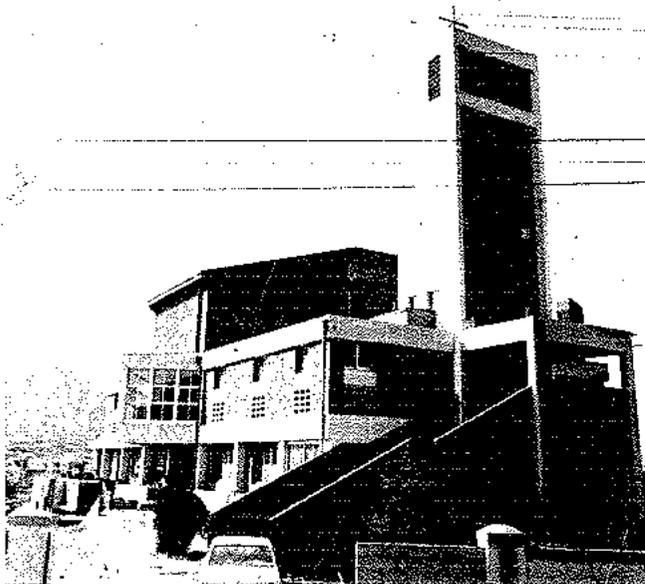
1층 평면도

- (수녀원) ① 침실-1 ② 침실-2 ③ 거실 ④ 다용도실 및 욕실 ⑤ 가사실 ⑥ 주방 및 식당 (사제관) ⑦ 회의실 ⑧ 보좌신부침실 ⑨ 거실-1 ⑩ 거실-2 ⑪ 주방 및 식당 ⑫ 다용도실 ⑬ 찬모침실 ⑭ 본당 신부침실 ⑮ 창고



지하층 평면도

- ① 사무실 및 급식실 ② 유치실 ③ 교실 ④ 교리실-1 ⑤ 교리실-2 ⑥ 보일러실 ⑦ 교리실-3





K 氏 住 宅

吳 英 治
(技美建築設計事務所)

위치 / 대전시중구대흥동 437의 6 · 구조 / 벽돌조, 스타브워 S형 오지 기와 마감. 대지면적 : 227.1m² · 건축면적/지하층 51,357.5m² · 1층 108.86m² · 2층 94,522.5m² 합계 : 254.74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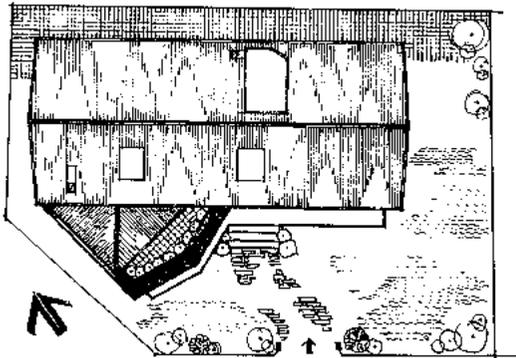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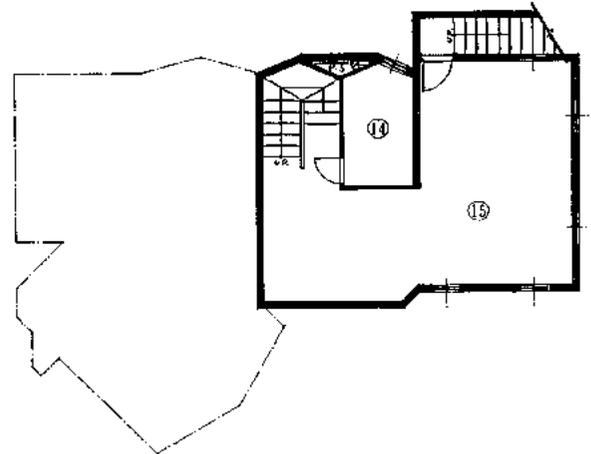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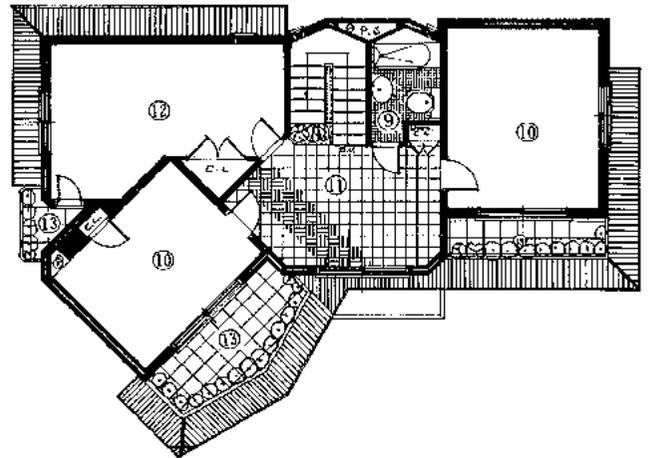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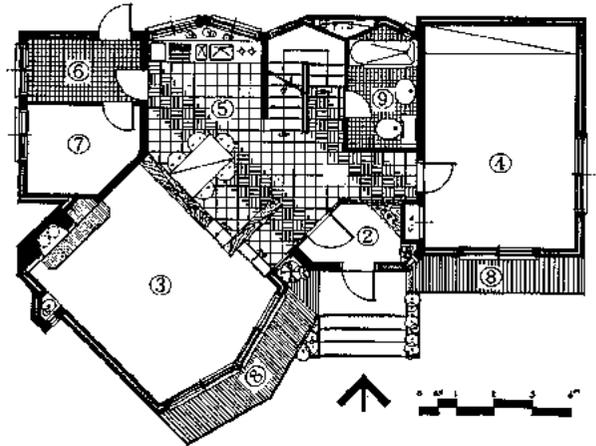
■ 設計概要

도로 모퉁이 垆地이나 대지의 깊이가 얇고, 向이 좋지 않은 가각을 어떻게 활용하여 에너지난 시대에 남향으로 거실을 가져오나 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보았다.

1. 우리 주택 양식이 오늘날 한식과 양식의 절충형이 되어 가장 이상적인 남향에 큰 면적의 응접실을 두어 통로의 교차로 역광 밖에 기능을 못한 접을 개선코저 사회권과 가사 노동권 그리고 개인권의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동선 처리를 짧게 하였다.

2. 주방 조리대 앞 창을 약간 돌출시켜 주부의 심리적 개방감을 주도록 하였으며 그 공간을 이용 소 화분을 놓아 자연의 분위기를 끌어 드렸다.

3. 계단실 벽에 (층계참) 경사지도록 하여 Direction을 유도 하였으며, 변소와의 벽 사이에 파이프 스페이스를 만들어 파이프 배관을 하여 하자 문제의 해결점을 간소하게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울루음(보이라실) 한 곳으로 모아 그 패열로 파이프의 동결을 방지토록 하였다.



배치도



투시도

2층평면도(上) 1층평면도(中) 지하층평면도(下)

①현관 ②홀 ③거실 ④안방 ⑤주방식당 ⑥다용도실 ⑦가사노동실 ⑧테라스 ⑨욕실 ⑩침실 ⑪2층거실 ⑫아트리에 ⑬발코니 ⑭보이라실 ⑮지하실



東国大慶州分校社会学館

金仁錫
(綜合環境研究所一建)

소재지 / 경상북도 월성군 금장리 · 대지면적 / 131,952m²
건축면적 / 4,476m² · 연면적 15,460m² · 구조 / 철근콘크리트
리트라면조 · 지하 1층, 지하 4층 기와잇기지붕

■ 設計概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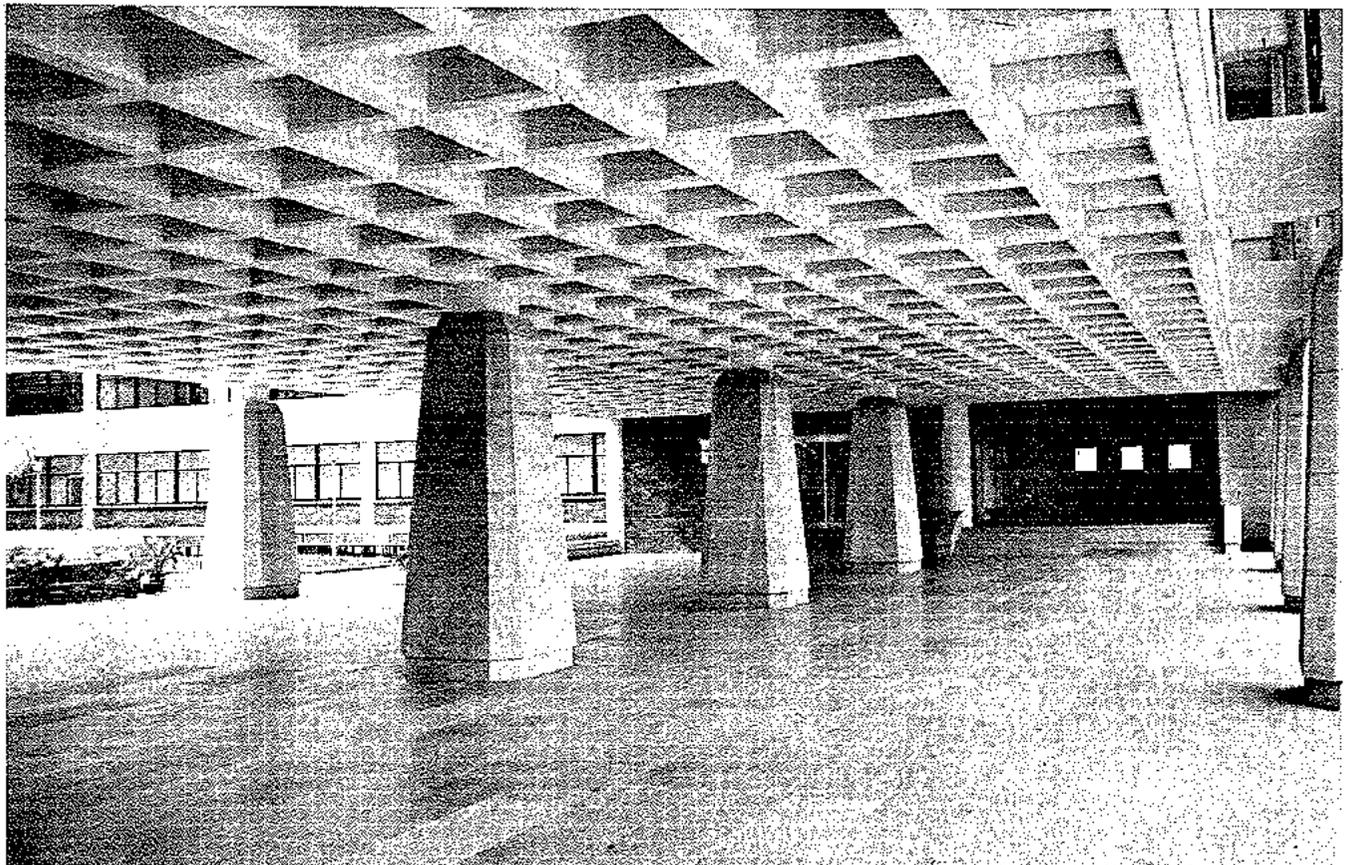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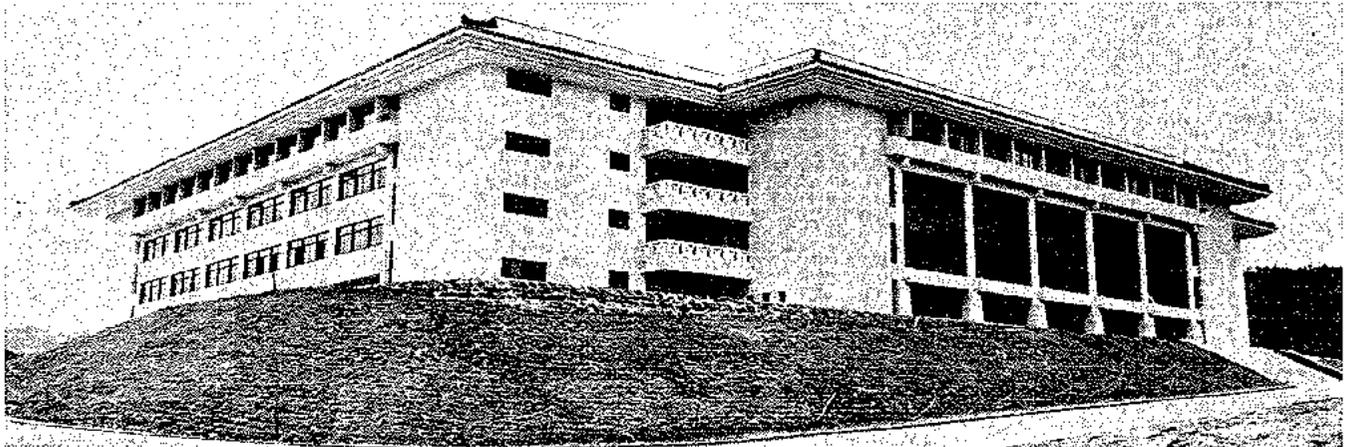
동국대학교 경주분교 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경주시 외곽에 있는 분교 캠퍼스에 제 1 차 사업으로 인문사회학관을 신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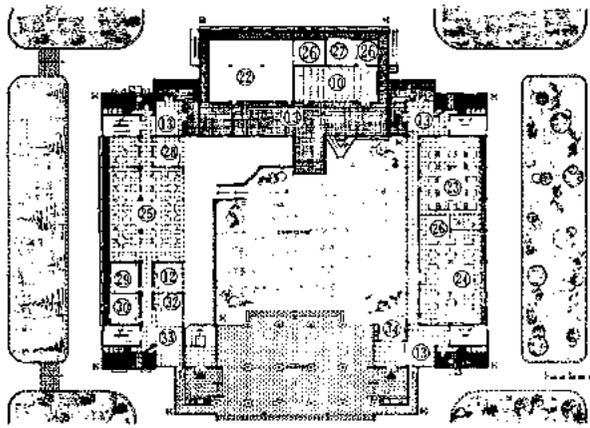
건물의 기본평면형은 □ 자형 중정식으로 되어 있으며 4 개의 기능블럭이 중정을 중심으로 연속복합되어 있다. 약측블럭은 일반강의실과 실험실 동이며, 정면블럭은 피토티와 행정실, 도서실, 교수연구실로 되어 있으며 후면블럭은 합동강의실과

시청각실등의 지원시설로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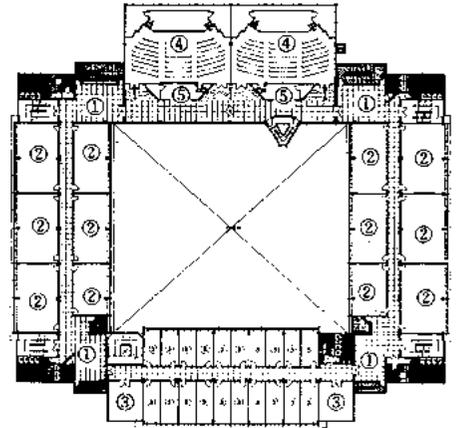
그리고 중정의 녹지와 연속한 SUNKEN GARDEN으로 처리된 지하층에는 식당, 학생휴게실, 세미나실등의 복지시설로 하였다.

건물의 외관은 경주서개발사업시행취지에 맞추어 깊은 추녀와 개와잇기지붕, 회랑구성 등 기능에 맞게 고건축양식을 시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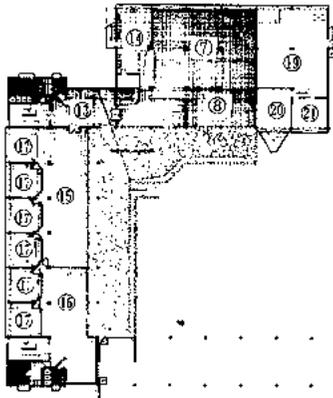


1층평면도



기준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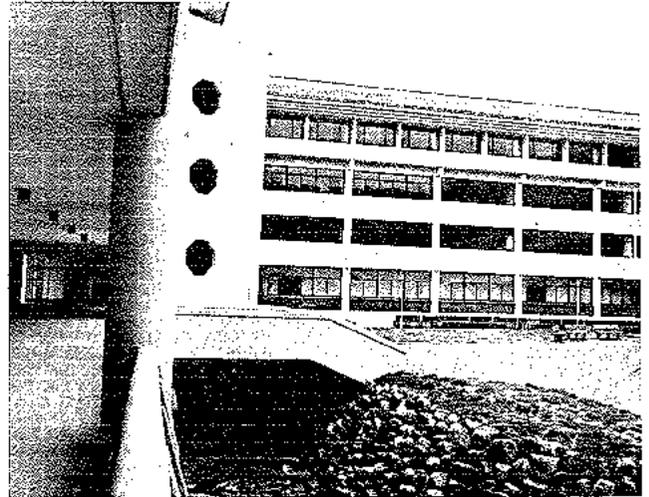
① 홀 ② 강의실 ③ 교수연구실 ④ 소강당 ⑤ 영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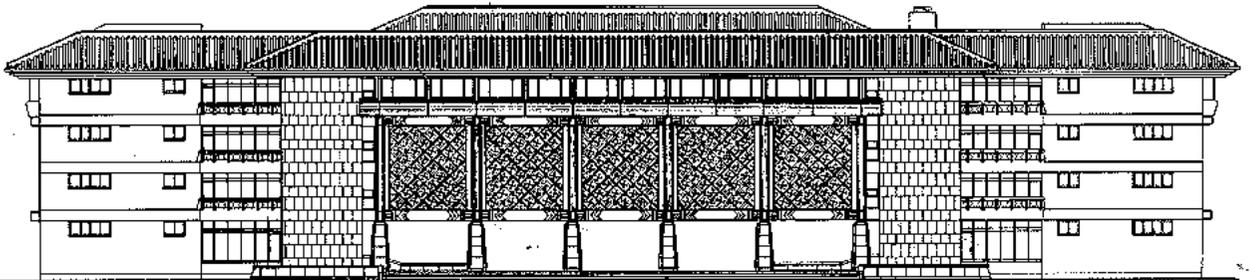
지하층평면도

① 피로티 ② 교무과 ③ 서무과 ④ 서고 ⑤ 열람실 ⑥ 교수연구실 ⑦ 학생식당 ⑧ 교직원 식당 ⑨ 준비실 ⑩ 어학실습소 ⑪ 합동 강의실 ⑫ 소강당 ⑬ 홀 ⑭ 주방 ⑮ 남학생 휴게실 ⑯ 여학생 휴게실 ⑰ 세미나실 ⑱ 매점 ⑲ 기계실 ⑳ 전기실 ㉑ 기사실 ㉒ 미술실기실 ㉓ 화학실험실 ㉔ 생물실험실 ㉕ 물리실험실 ㉖ 재료실 ㉗ 기구실 ㉘ 진화교관실 ㉙ 용원실 ㉚ 숙직실 ㉛ 숙실 ㉜ 안내 ㉝ 수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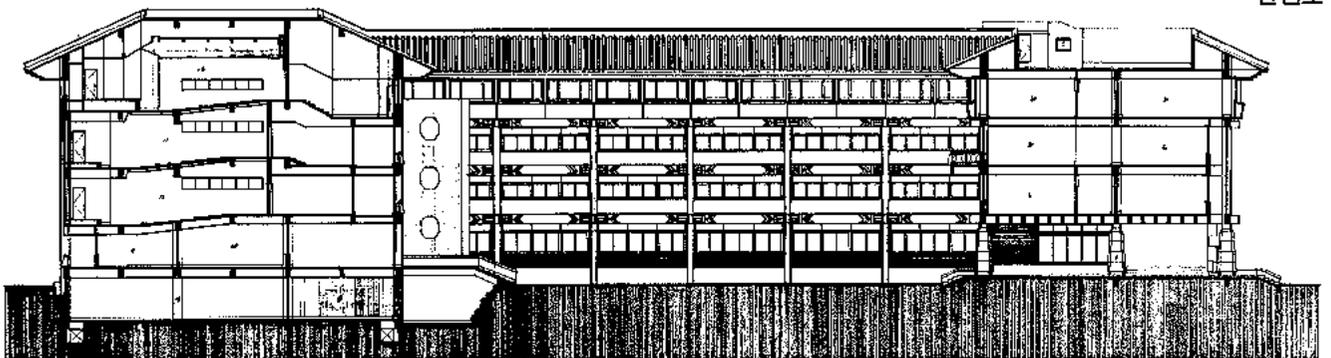
회랑과 중정일부



정면도



단면도





大田 聖世 再活 病院

金鍾敏

(B·K 建築設計事務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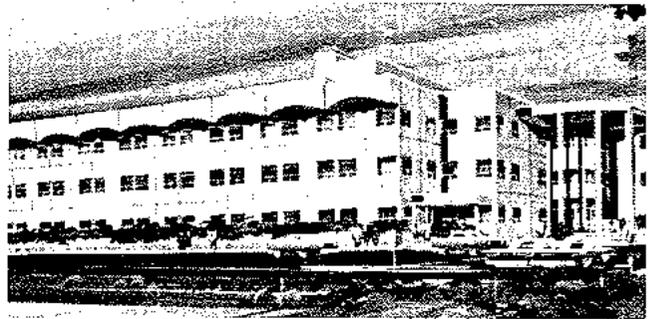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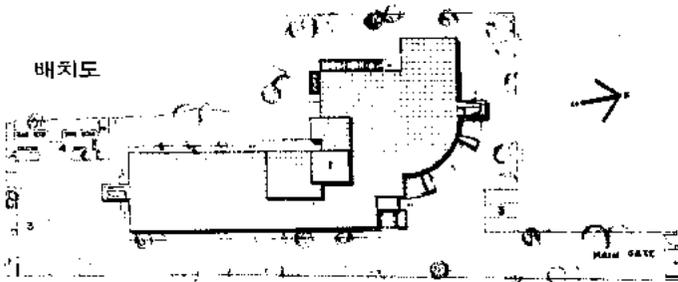
소재지 / 충남 대전시 중구 월평동 계획 / 김태진 구조 / 박순오. 기계설비 / 정학모 전기설비 / 대정공업설비 (이정화) · 규모 / 대지면적 3,858㎡ 건축면적 / 1,329.13㎡ 기준층 1,069.76㎡ 연면적 4,265.28㎡ 층수 / 지하 I 층 지상 3층 탐욕 2층 구조 / R.C조 설비 / 냉난방공조설비

■ 平面計劃

병원전체의 능률적인 Service를 위하여 관리운영에 있어 외래부와 증양진료부를 명확하게 구분시켜 외래자와 환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쉽게 목적한 곳을 찾을수 있도록하여 명확한 동선처리와 작업능률을 높이도록 하였으며, 건축설비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설비의 증양화를 피하면서 의료인구의 증가에 대비한 5층까지 증축하여 총 200Bed가 되도록 시설의 확장계획을 고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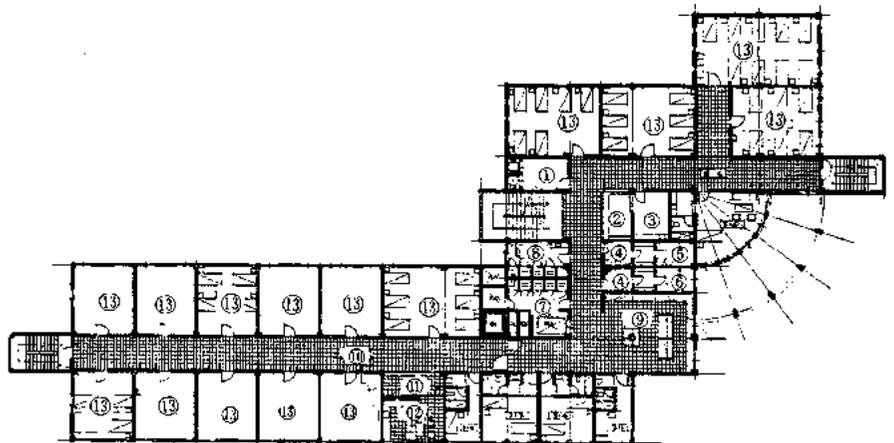
■ 設計概要

병원기능을 증축시키기 위하여 각종 기능을 집중화하고 인력과 시간을 절약하여 능률적이고 충분한 Service가 될수 있는 형태와 System이 요구되고 있는바 병원의 형태와 System을 기능별로 구분하여 처리한다는 방침하에 본 계획에 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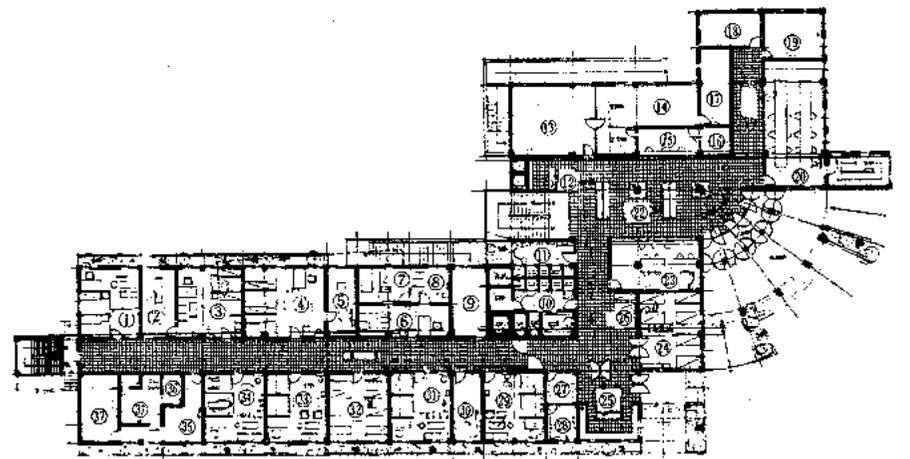
3층 평면도

- ① 배선실 ② 간호원실 ③ 작업실 ④ 세면장 ⑤ 샤워장 ⑥ 샤워장(남) ⑦ 여자화장실 ⑧ 남자화장실 ⑨ 대기실 ⑩ 복도 ⑪ 간호원 대기실 ⑫ 작업실 및 휴게실 ⑬ 병실



1층 평면도

- ① 신경외과 ② 브스실 ③ 정형외과 ④ 일반외과 ⑤ 수술실 ⑥ 산부인과 ⑦ 회복실 ⑧ 소수술실 ⑨ 고압가스실 ⑩ 여자 화장실 ⑪ 남자 화장실 ⑫ 배점 ⑬ 원무실 ⑭ 회계, 사무실 ⑮ 접수, 안내 ⑯ 신환접수 ⑰ 의무 기록실 ⑱ E. E. G. EMG ⑲ 혈액은행 ⑳ 임상병리실 ㉑ 홀 ㉒ 약국 ㉓ 응급실 ㉔ 응급 대기실 ㉕ 스트레처 ㉖ 접수실 ㉗ 숙직실 ㉘ 내과 ㉙ 내시경, 심전도실 ㉚ 건강관리과 ㉛ 중앙주사실 ㉜ 소아과 ㉝ 치과 ㉞ 관동실 ㉟ 암실 ㊱ X-RAY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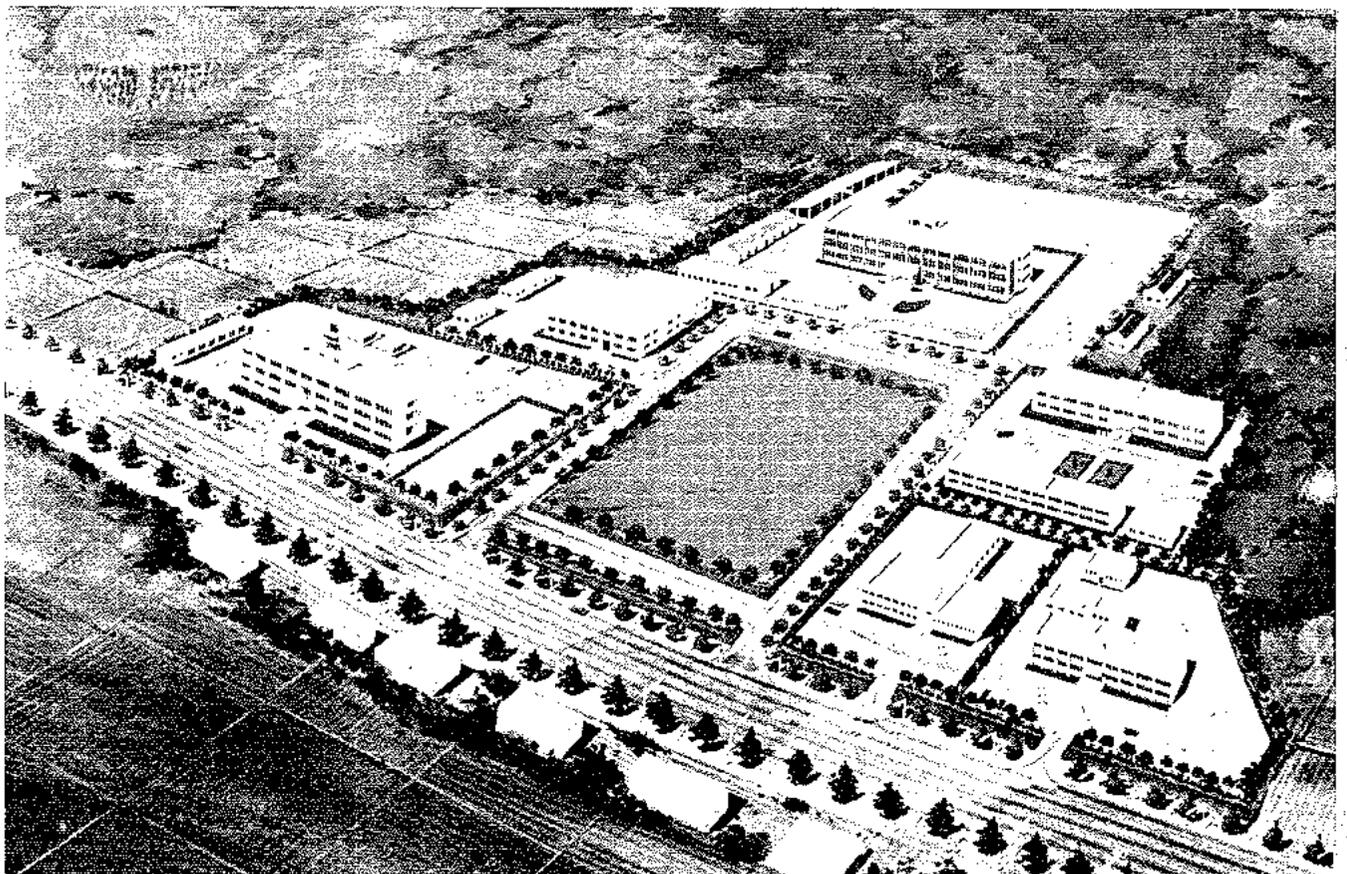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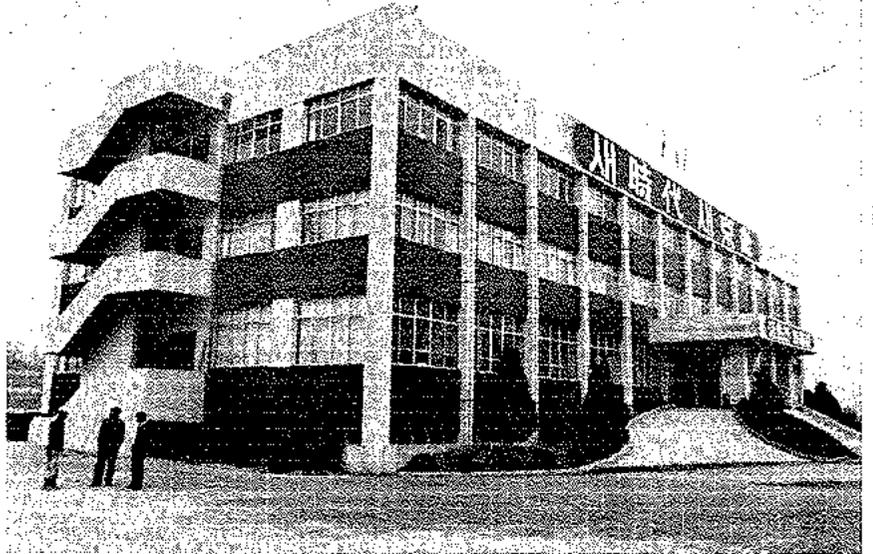
南 楊 州 郡 庁 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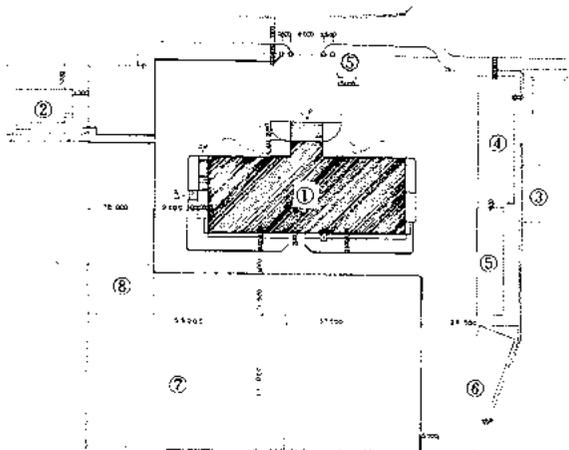
朴 成 圭
(合成建築技術公社)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군 미금면 지금리 규모 / 대지면적 14,204m² 건축면적 / 1층 1,174.5m² · 2층 1,134m² 3층 1,134m² 지하층 1,174. m² 옥합 162m² 계 4,779m² (1,448.18평), 구조 / RC조 설비 / 냉난방시설

■設計概要

양주군이 분군됨에 따라 서울과 강원지방의 관문인 미금면 지금리 국도변에 남양주군청 및 관계기관을 유치 종합청사 지체를 수립하고 4,956M²의 넓은 대지에 국도변 중앙에 15,000M²의 광장을 중심으로 중앙광장 남쪽에 군청사를 우측에 교육구청 및 농협, 좌측에 전화국 및 경찰서를 배치하여 종합 군청사의 근대적인 면모를 살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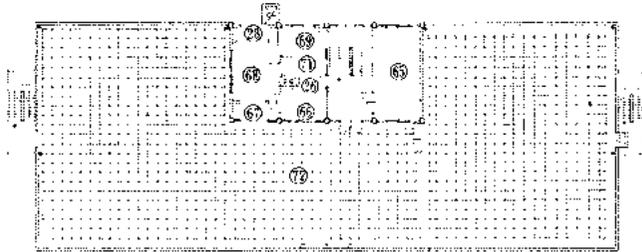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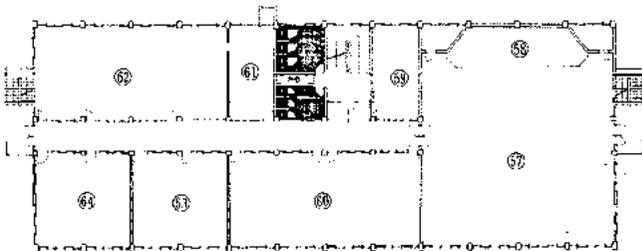
배치도

- ① 본청사 ② 관사 ③ 수위실 ④ 창고 ⑤ 식당 ⑥ 차고 ⑦ 정구상
- ⑧ 백보드장 ⑨ 변전소 ⑩ X-RAY실 ⑪ 처과 ⑫ 임상병리실
- ⑬ 약제실 ⑭ 암실 ⑮ 사무실 ⑯ 진료실 ⑰ 결핵검사실 ⑱ 회복실
- ⑲ 서고 ⑳ 배피소 ㉑ 약창고 ㉒ 가족계획실 ㉓ 소장실 ㉔ 탄
- 의실 ㉕ 샤워실 ㉖ 창고 ㉗ 보이러실 ㉘ 밤메리실 ㉙ 발전실
- ㉚ 전기실 ㉛ 대기실 ㉜ 민원봉사실 ㉝ 지적창고 ㉞ 상임위원
- 장실 ㉟ 로비 ㊱ 안내실 ㊲ 숙직실 ㊳ 사령실 ㊴ 지역정화추
- 진위원회 ㊵ 사회과 ㊶ 농촌지도소장실 ㊷ 농촌지도실 ㊸ 새
- 마을과 ㊹ 채무과 ㊺ 공보실 ㊻ 내무과 ㊼ 방송실 ㊽ 가재실
- ㊾ 행정자료실 ㊿ 부속실 ① 칩실 ② 군수실 ③ 부군수실 ④
- 영사실 ⑤ 상황실 ⑥ 회의실 ⑦ 연단 ⑧ 발간실 ⑨ 산업과
- ⑩ 선거관리위원회 ⑪ 건설과 ⑫ 민방위과 ⑬ 산림과 ⑭ 공조
- 실 ⑮ 테렉스실 ⑯ 교환실 ⑰ I. T. T실 ⑱ 문명크실 ⑲ 창고
- ⑳ 복도 ㉑ 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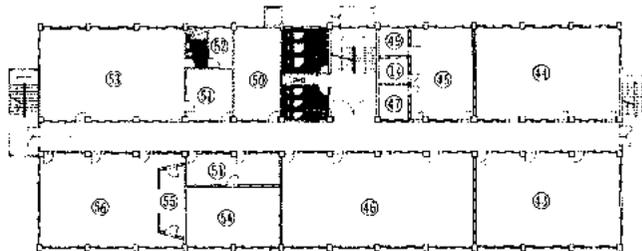
옥상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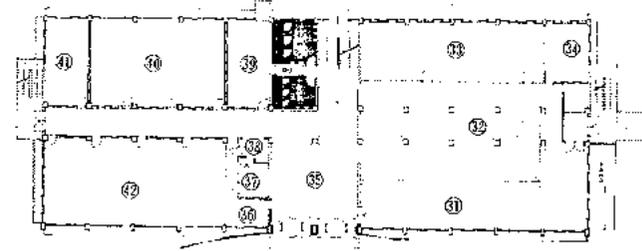
3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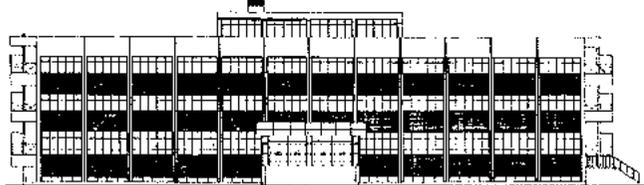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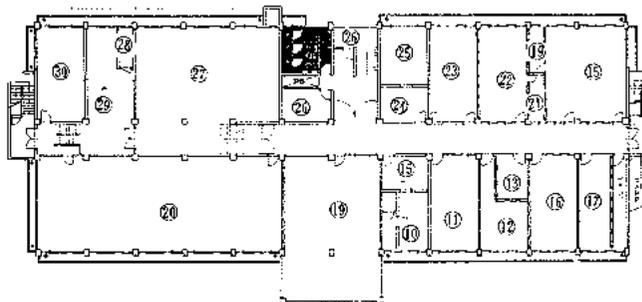
2층평면도



1층평면도



지하층평면도



입면도





忠北大学校 教育館

洪淳寅
(大宇建築研究所)

실제담당/김기형, 구조설계/신중순, 기계설계/유동열, 전기설계/이종환(유신전기), 대지위치/충북 정주시 개신동, 캠퍼스총면적/46만평, 건축면적/3,690㎡, 연면적/14,912㎡, 구조/철근콘크리트 4층, 지하 1층, 주요 용도/강의실, 연구실, 외관재료/변색 벽돌, 진카트 샷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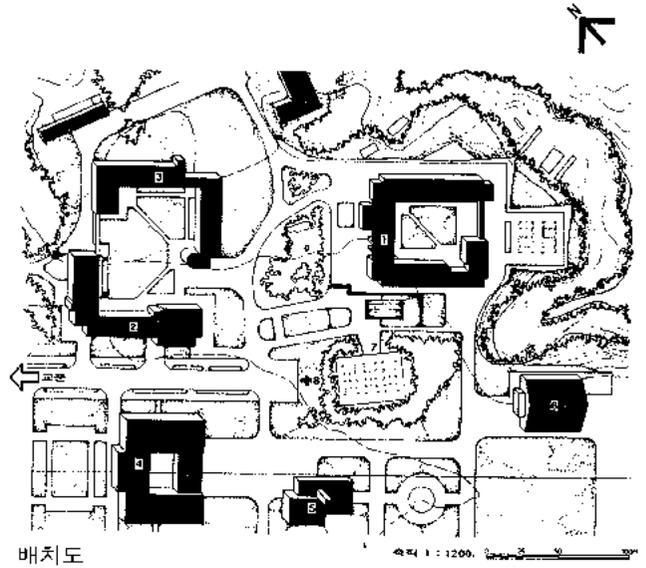
■設計概要

1979년 5월에 설계 착수하여 1981년 초에 준공된 본 건물은 충북대학이 종합대학으로 승격되어 마스터플랜이 수립된 후 두 번째 완성된 건물이다.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설계시의 많은 자료의 도움이 있었고 또 결과로 나타난 지금의 관악 캠퍼스 건물중에서 또한 많은 반성과 교훈이 본 충북대학 교육관 및 각 건물설계에 큰 영향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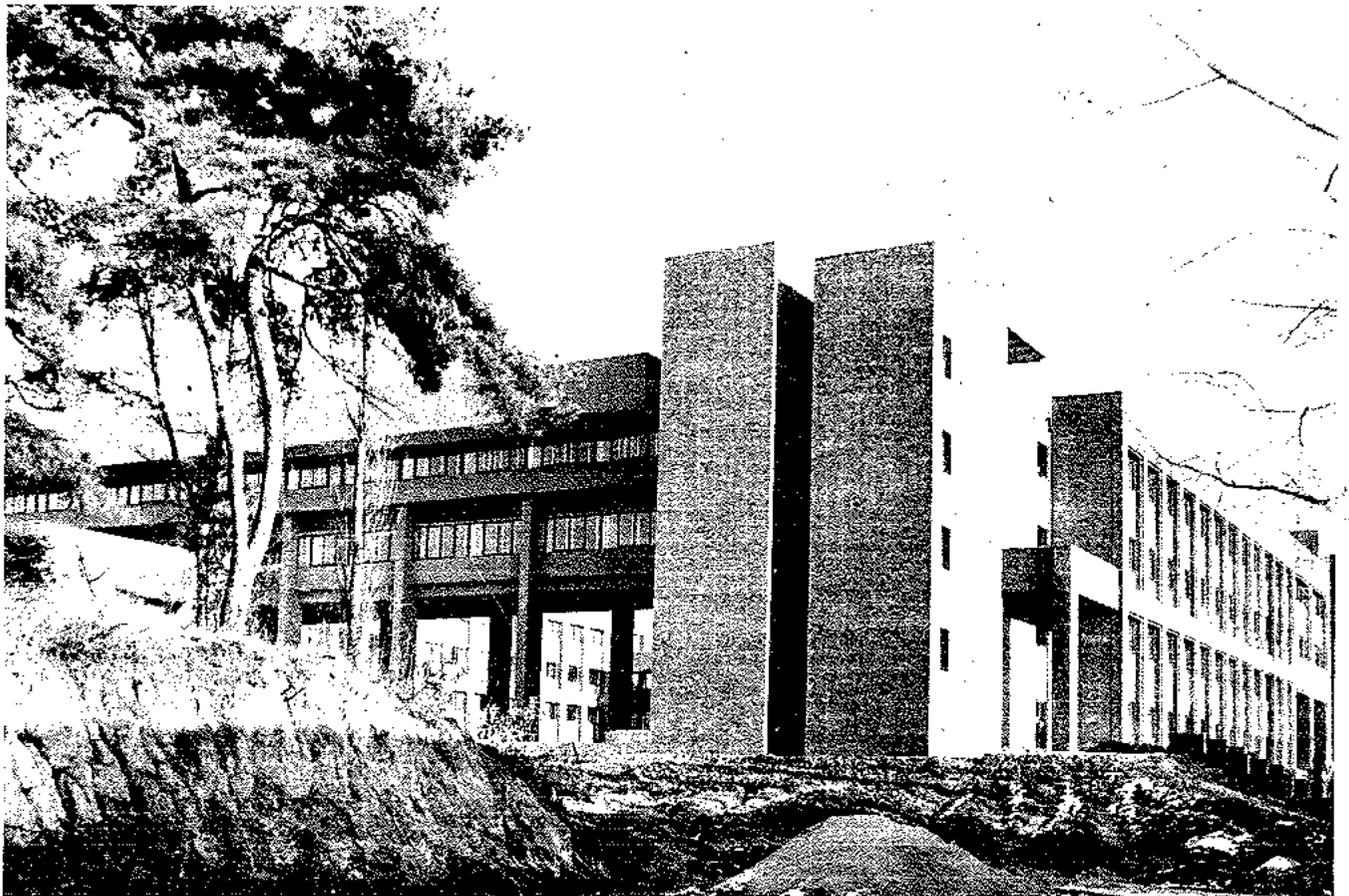
본 교육관은 교육시설이 동선, 관리 등 불리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대학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맞추어 모든 대학인에게 창조적 환경을 조성해주는 정신적 측면에서 특히 평가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출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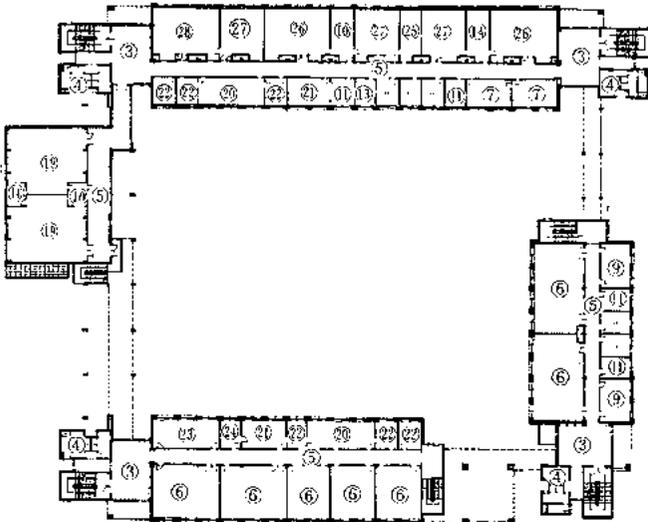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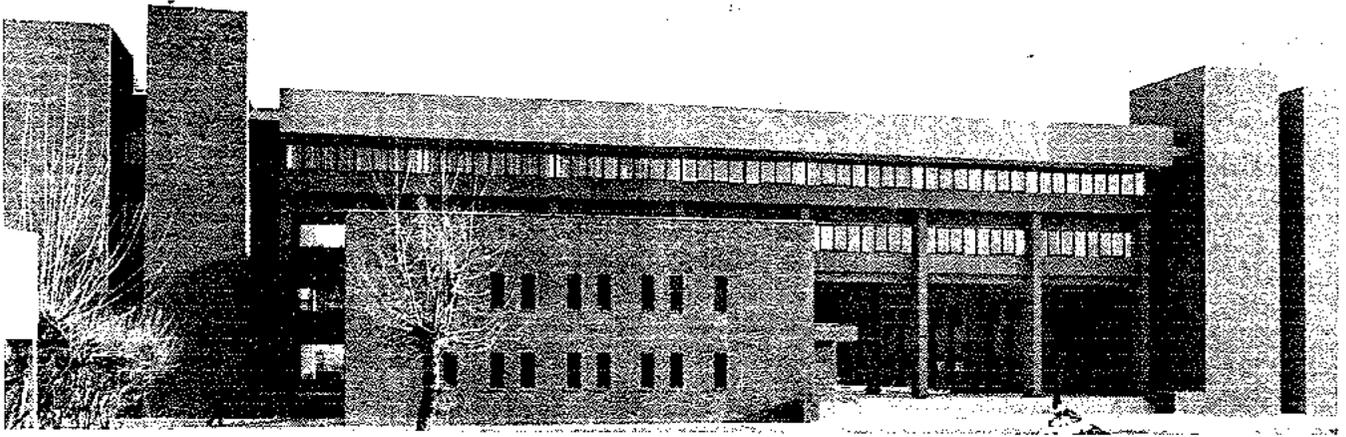
중앙에 70×50m의 아늑한 내정을 중심으로 사범대학 각 실험실과 본 건물의 주요설계 포인트 이다 할 수 있고 함동강의 실 상부의 루프데라스의 많은 이용이 있으리라 믿는다.

시공중 짧은 예산범위 안에서 어려운 디테일 만들어내야 했고, 설계자의 책임있는 감리가 어려웠던 것은 아쉬운 점을 남겼고 본격적인 조경 예산관계도 어려움이 있으나, 1~2년 후면 주변환경에 무리없이 조화되리라 믿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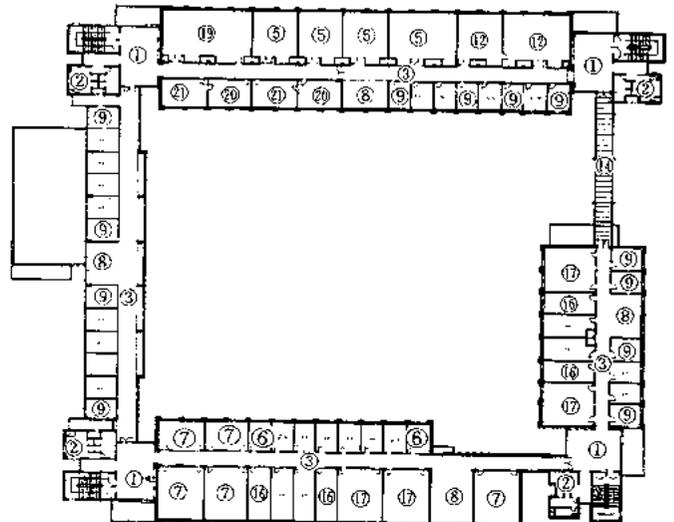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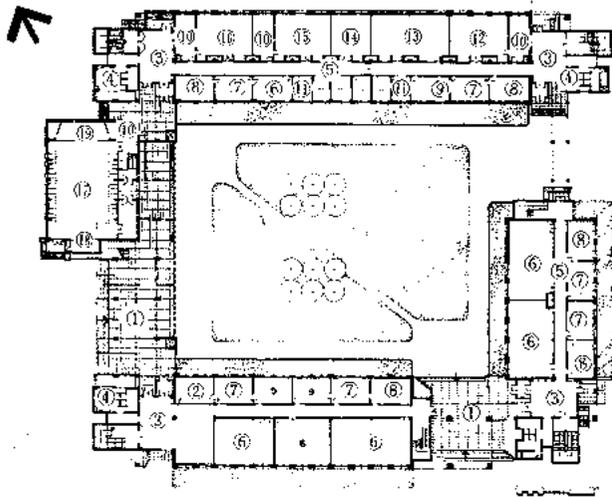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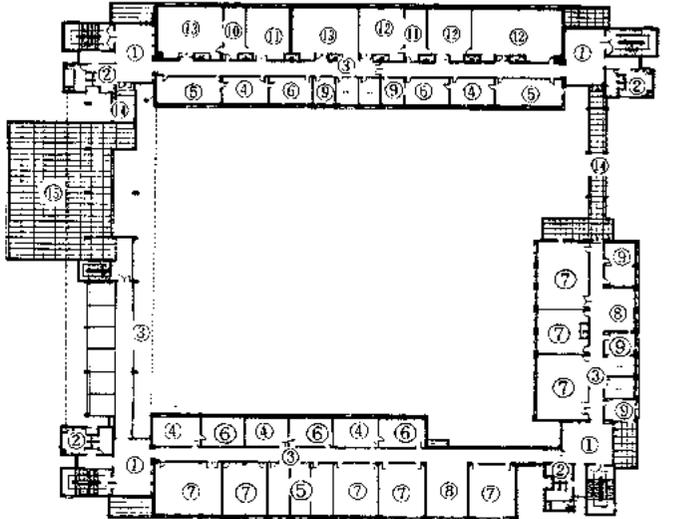
2층 평면도



4층 평면도



1층 평면도



3층 평면도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 ① 포치 ② 수위실 ③ 로비 ④ 화장실 ⑤ 복도 ⑥ 강의실 ⑦ 학과장실 ⑧ 학과사무실 ⑨ 자료실 ⑩ 준비실 ⑪ 교수실 ⑫ 조리실 ⑬ 식품 및 피복실험실 ⑭ 준비 및 실험기기실 ⑮ 가정관리실습실 ⑯ 부실구성실 ⑰ 합동강의실 ⑱ 영사실 ⑲ 스테이지 ⑳ 행정실 ㉑ 학장실 ㉒ 행정과장실 ㉓ 세미나실 ㉔ 사회의실 ㉕ 천평실 ㉖ 화학실험실 ㉗ 기기실 ㉘ 생물실험실

3층 평면도 4층 평면도

- ① 로비 ② 화장실 ③ 복도 ④ 과 사무실 ⑤ 자료실 ⑥ 과장실 ⑦ 강의실 ⑧ 휴게실 ⑨ 교수실 ⑩ 준비실 ⑪ 기기실 ⑫ 물리실험실 ⑬ 생물실험실 ⑭ 오버브릿지 ⑮ 지붕 ⑯ 대학원 연구실 ⑰ 연구소 ⑱ 지학실험실 ⑲ 타자실 ⑳ 학과장실 ㉑ 학과사무실

姜 奉 辰

1917年 9月 26日生

本籍：서울特別市 城東区 杏堂洞 314-27

住所：서울特別市 城東区 陵洞 254-20

學歷 및 經歷

- 漢陽大學校 工科大学 建築工學科卒業.
- 建築技術士(施工), 文化財實測, 設計, 補修技術者, 建築十等 各 免許試驗 合格.
- 全南大學校 工科大学 建築工學科 講師.
- 朝鮮大學校 工科大学 建築工學科 教授.
- 漢陽大學校 工科大学 建築工學科 教授.
- 韓國建築家協會 古建築委員.
- 大韓建築學會 理事 및 建築歷史委員.
- 大韓建築士協會 創立發起人 및 理事.
- 大韓建築士協會 會長 및 推選會員.
- 서울特別市 文化賞 審査委員.
- 建築士 試驗委員.
- 大韓建設協會 股肱審議委員.
- 國立中央博物館, 牙山顯忠祠, 光化門復元, 安重根義士紀念館, 國立墓地顯忠館 및 顯忠門, 陸軍士官學校花郎臺, 隔山島李忠武公遺跡淨化事業, 死六臣公園墓地韓式建物, 서울弘智門 및 五閘水橋等 設計.
- 建築에 關한 業績으로 文敎部長官, 文公部長官, 建設部長官等으로부터 感謝牌 받음.
- 大韓建築學會誌, 大韓建築士協會誌, 韓國洋灰工業協會誌, 韓國觀光協會誌等에 建築에 關한 學術 및 報告論文 46篇發表.

本協會 前 會長이신 姜奉辰 會長의 事務室을 찾았다. 20余坪 남짓한 設計室과 그 옆에 한坪 半 정도 의 조그마한 執務室에 들어서는 순간 該 君의 儉素함과 假飾없는 性品을 알수가 있었다. 열핏 보기에 是 溫厚한 性格이 면서도 어려운 일에는 決斷力 있게 處理하시 는 意유내강형이라고 할가, 누구나 스스럼없이 對해주시는 該 仁慈함과 素朴한 웃음의 對話 속에서 凡禮는 絶對 벗어나지 않는 該 君, 지금도 職員보 다도 約 30分前에 出勤하여 細密하게 点檢 指示 하여야 좋은 作品이 完成된다면서 차분한 對話를 始作한다.

對談 姜奉辰 (前本協會會長)
金正澈 (本協會編纂委員長)

金：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 뵈게 되어 반갑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姜：健康管理을 爲하여 새벽登山과 冷溫湯을 每日 勵行하고 있습니다. 午前中에는 定時에 設計 事務室에 出勤하여 設計實務를 指導하고 午後에는 讀書와 園藝를 즐기기도 합니다.

金：독서, 바둑 등 外에 時間 善用은 어떻게 하시는 지요?

姜：親知들과 한데 어울려 武橋洞 뒷골목 酒幕에서, 古典, 故事, 情談等으로 하루의 疲勞를 잊는것 도 즐거운 時間이죠.

金：과음은 안하시는것이 좋지요. 요즘 計劃하고 있는 일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어떤 巨創한 Project 하나를 構想하고 있습니다.

金：建築作品과 創作觀에 對하여 좋은말씀을 부탁드립니다.

姜：建築作品의 創作에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種類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 하나는 「理想設計作品의 創作」이며, 다른 하나는 「現實設計作品의 創作」이라 하겠습니다.

「理想設計作品」이란 Client의 注文이 없는 作品으로서 「建築實現性」이 아주 없거나, 있더라도 極히 該 機會가 稀薄하며, 또는 처음부터 實現性을 度外視하고 아무런 外的制約없이 作家의 構想대로 自由롭게, 理想的으로만 創作된 作品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建築學徒의 卒業設計作品이라던가, 亞成建築人의 個人展을 하기 爲한 架空作品, 또는 建築人으로서의 登龍門이라 할수 있는 國展에의 出品作品等과 같은 所謂 「想像作品」을 「理想設計作品」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理想設計作品의 創作은 아무런 外的인 干涉이 없으므로 建築人으로서의 欲望과 情熱을 마음껏 驅使할수 있으며, 이로 因하여 創作能力의 鍊磨에도 큰 도움이 될수 있는 長點이 있는 反面에, 設計作品에 對한 經濟的인 報酬가 없기 때문에 負擔이 큰것이 短點이라 하겠습니다.

「現實設計作品」이란 위와는 反對로 Client의 注文에 依하여 創作 되는 作品으로서 「建築實現性」을 前提로 하는 創作活動이라 하겠읍니다.

이 경우에 注文者가 作家를 選定하는 方法에는 大体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 方法이 있습니다.

첫째는 所謂 「隨意契約」 또는 「特命契約」에 依하여 作家를 選定하는 것으로서 注文者는 特定한 建築人 한사람의 人格과 能力을 信賴하고 設計著作을 依賴하는 方法이며 가장 普遍的으로 많이 利用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指名競技」라고 하는 것으로서 注文者가 必要로 하는 建築物에 對한 設計著作에 有能하며, 適格하다고 認定되는 作家를 2人以上 指名하여 各者로부터 Idea를 提供받아 그 中에서 1人을 選拔하는 方法이며, 이 경우에는 普通 指名作家에게 相當한 報酬를 支拂하는 것이 常例이지만 往往히 吝嗇漢의 狡猾한 術策에 無償으로 利用만 當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셋째로는 普通 Competition(公開競技)이라고 하는 所謂 「懸賞設計」에 依하여 作家를 選定하는 方法으로서 이는 주로 國家機關 또는 公共団体 등에서 「重要性을 띤 建築物」 또는 「大規模的인 建築物」 등에 때때로 利用되는 方法의 하나입니다.

即 當選作에 對한 懸賞金을 걸고, 注文者가 미리 定해서 發表한 資格要件을 갖춘 建築人이라면 누구나 応募할 수 있기 때문에 機會均等的이고 名譽的이기도 하는 長點이 있는 反面, 落選되었을 경우에는 精神的인 打擊은 勿論, 經濟的인 損失이 너무크며,

또 當選되었을 경우에도 企業主에 따라서는 「懸賞金 支拂로써 設計著作權의 讓渡가 이루어진 것」으로 解釋하고 往往 當選者와 實施設計契約를 締結하지 않고 어느 特定人과 契約하려고해서 物議를 일으켰던 일과 같은 短點도 없지 않았읍니다.

以上과 같은 세가지의 어느 경우를 莫論하고 Client는 일단 選定된 建築人에 對하여 「建築人의 良識과 人格과 能力을 信賴하고 全的으로 作家의 創作에 一任」하여 設計著作을 依賴하는 경우는 至極히 드문일이라 하겠읍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Client로서의 「使用目的, 趣味, 嗜好 또는 主觀的美意識」 등에 依하여 要求條件을 提示하는 것이 常例로 되어있고, 또 隨時로 條件이 變更되기도 하기 때문에, 作家로서의 初志一貫된 創作意慾과 信念이 흔들려서 本意아닌 作品이 되어 버리는 경우도 없지 않은것입니다.

建築人은 經濟的 利害關係가 隨伴되는 業務에 從事하기 때문에, 社會的으로 弱한 立場에 있을을 奇貨로 해서 Client는 때에 따라 無理한 要求條件을 내걸어 作家의 自尊心을 傷하게 하는 일이 許多하며

作家는 이에 對하여는 良識으로써 說得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指名競技 또는 公開競技 등에서 當選作으로 選拔된 作品이라 할지라도 實施設計過程에서 Client는 企業主의 一方的 見解로써 當初 作家의 創作 意圖와는 다른 方向으로 設計條件을 變更하는 例가 許多합니다.

따라서 建築人은 作品創作을 Client의 要求條件에만 흔들리지 말고 建築人의 主觀中心으로 創作에 臨하고 信念을 貫徹하기 爲하여는 建築人 스스로가 水準 높은 創作力의 涵養에 努力하고, 幅 넓은 見聞, 經驗에 立脚한 說得力으로 理解시켜야 하며, 人格的으로 Client의 信賴와 尊敬을 받을 수 있도록 建築人 스스로가 修養에 더욱 힘쓰는 道理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金: 先生任께서 計剛하고 계신것을 말씀해 주실까요?

姜: 그동안 著作한 設計作品과 會誌 등에 發表한 論文들을 整理해서 이를 한데 묶은 記念作品集을 發刊해 볼까 하는 計劃을 가지고 있습니다.

金: 우리 會員이 갖추어야 할 良識에 對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 앞에서 이 사람은, 建築人이 眞正코 創作活動을 所信있게 하려면 먼저 스스로가 顧客을 說得, 理解시킬만한 充分한 見識을 갖추도록 努力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읍니다.

日帝때 日本建築人들이 흔히 말하기를 「建築쟁이는 建築밖에 모르는 無識꾼」 일뿐 아니라 「自己技術만 믿고 다른것을 알리고 하지 않는 고집쟁이」라고 自嘆스런 말을 많이 하했읍니다.

이것은 當時의 工業教育이 技術爲主의 偏跛的 Curriculum에 依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오늘날은 美國式Curriculum을 採択하고 있으므로 相當한 時間의 教養課程을 履修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래도 人文系와는 比할수 없는 實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建築人은 自己專攻의 「建築」 以外の 많은 것들을 幅 넓게 알기 爲하여 不斷한 努力과 研究를 거듭하여 知性과 良識을 兼備한 建築人이 되도록 自覺해야 할것입니다.

金: 先生任께서 이번 機會에 會員들에게 教育的인 측면에서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姜: 建築士協會가 發足 한지도 於焉間 16年이란 긴歲月이 흘렀읍니다.

發足當時의 會員數는 不過 300余名밖에 되지 않았던것이 오늘날 1,900余名에 達하도록 長足の 發展을 했읍니다.

이에 따라 會員들의 生活水準도 國家經濟G.N.P. 成長率에 比例하여 上昇된 것도 事實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他業種에 比하여 顯著하게 高率인

標準所得率(現在는 27%) 때문에 會員들은 税金에 시달리고 있는 實情입니다.

所得率이란 記帳을 하지 않은 事業者에게 推計로 課稅(所謂 認定課稅)할 경우의 事業者의 利益率(總收入額에서 經費를 控除한 金額)로서 이 所得率에 稅率을 곱해서 税金을 算出 하는 것입니다.

零細性을 벗어나지 못한 會員들이 經理職員을 두어 記帳하기란 經營上으로도 困難 하겠지만 業務의 性質上 일일이 証憑書類를 갖출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記帳이 不可能하다고 말하는 會員도 많습니 다.

그러나 記帳이란 꼭 經理를 아는 사람만이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會員스스로의 손으로 事實대로 正直하게 記帳하는 것이 稅務當局으로부터 그 信憑性을 認定 받게 됩니다.

本人은 10余年前 부터 손수 記帳해서 自進納付 하고 實査를 받아 왔기 때문에 近者에는 誠實申告納稅者로 認定을 받아 實査를 免除하고 書面檢討 만으로 써 完結짓게 되었습니다.

記帳을 誠實하고 正確하게 履行하면, 欠損이 낮을 때는 既納付稅額을 過誤納으로 認定받고 還給받을 수 있는 惠沢도 있으므로 이 機會에 會員여러분에게 記帳을 하시도록 勸告합니다.

金: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建築家로써 社會에 對하여 바라는 事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실까요?

姜: 經濟開發計劃의 重要한 一翼을 担当해 왔던 建築人은 確實히 옛날과는 天壤之差別로 社會的인 待遇와 認識이 달라진 것만은 事實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로 經濟的인 面에서였고 精神的인 面에서는 아직도 未恰한 點이 많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經濟的으로 달라졌다 하는 點은 主로, 建築人에게 設計를 委囑하려면 相當한 高額의 報酬를 支拂해야 한다는 認識과 人力難으로 求人이 힘들어졌다는 點等을 들 수 있습니다.

다시 말 하면 建築人의 「技術값」과 「사람값」이 많이 올랐다는 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建築人의 立場에서 생각할 때는 精神的인 面은 固捨하고 物質的인 面에서도 결코 滿足할 수는 없습니다.

工事費에 對한 不過 몇%의 低廉한 報酬를 받고 設計作品의 創作을 一旦 受任하고 난 以後부터 完成納品時까지는 寢食을 잊고 構想에 沒頭하는 것이 建築人의 生態이며, 心身의 酷使와 接連 疲勞로 因하여 夢想中에도 構想作品의 幻像이 나타날 程度로 苦心焦思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設計作品」이란 것을 알아주는 사람은 別로 없을 것 입니다.

이와같이 「設計作品」이란 참으로 建築人의 腦와 心과 血의 三位一體로 된 結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이러한 建築人의 設計作品이 「建築物」로 實現되고 完成되었을 때 一般社會는 勿論 가장 잘 알만한 企業主까지도 其 建築竣工에 對한 論功行賞에 있어 輕重과 先後를 撞着施行하고 있는 것이 現實입니다.

建築物이 完成되어 舉行되는 式典 所謂 「落成式」 또는 「竣工式」이란 것에 參席해 보면 于先 設席한 것이 建築人에 對한 座席配置 또는 其 順位일 것입니다.

오히려 作家인 建築人은 下席으로 配置되고 施賞 順位도 施工者인 建設業者의 後位에 舉行되는 것이 常例일 뿐 아니라 企業主에 對해서는 建築設計者는 招請 조차 하지 않고 感謝表示의 節次를 省略 또는 無視해 버리는 경우도 許多합니다.

建築人에 對하여 精神的인 社會的 待遇가 切實히 要望됩니다.

金: 하나의 例를 들어 말씀하셨지만 社會의 沒理解가 너무도 아쉽습니다. 韓國建築의 方向에 對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姜: 우리 建築人은 外國人으로부터 “韓國建築이란 어떤 것이냐”하는 물음을 받는다 면 對答하기 困難 할 것입니다.

조그마한 溫突房의 羅列로 構成된 在來式 저렴한 住宅이 韓國建築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景福宮 勤政殿과 같은 虛虛空間으로 된 宮殿이 韓國建築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며, 深深山中의 佛堂이 韓國建築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建築界에서도 相當히 많은 論議가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韓國傳統建築에 對한 概念이 뚜렷하게 定立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斷定的이나마 이 사람이 平素에 생각하고 있는 태도를 말해 본다면 “韓國傳統建築이란 韓國사람이 보면 即刻的으로 韓國建築임을 느낄 수 있는 韓國的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알기와 숫기와를 얽고 와귀토로 처마끝을 마무리 한 悠然한 지붕의 曲線美라던가, 처마밑받침을 裝飾的으로 아기자기하게 꾸민 나무토막괴임의 律動美 그리고 卍字, 亞字등을 巧妙하고 復雜하게 組合構成한 窓戶의 造作美와 獨特한 構想과 色相으로 彩色한 幻想的인 丹青의 紋樣美, 可視遠望이요, 不可近視的인 粗雜하면서도 그림과 같은 稚拙美等 우리가 보면 即刻的으로 「韓國的」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20世紀 後半期에 現代建築은 所謂 「國際樣式」化 되었다고 합니다.

開發途上國家인 우리나라는 祖國近代化라는 大命題 아래 經濟開發과 外來文化吸取 및 其의 消化에만 汲汲했었기 때문에 建築에 있어서도 어느새에 우리것을 찾

아불 거를도 없이 國際樣式으로 되어 버렸으며 將次 韓國建築의 나갈길이 憂慮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所見으로는, 國家發展의 原動力은 “經濟力의 富強”이라고 말할 수 있으므로, 이를 爲하여 쓰이는 産業用과 商業用建築物 및 住宅難解決을 爲한 多層 共同住宅의 建築等은 機能面과 經濟面의 見地에서 現代建築樣式에 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其他의 建築物과 特別 文化的 性格을 띤 建築物의 建築은 韓國民族의 “얼”이 담긴 韓國의인 固有한 傳統 建築樣式을 加味하여 짓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現行法上으로는 이에 對한 아무런 規制가 없을뿐 아니라 現行建築에 比하여 越等한 工事費가 所要되기 때문에 工法上의 研究와 併行해서 稅制面과 金融面 등에서 特別優待하고 國家的으로 獎勵하는 政策的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金 : 끝으로 協會發展을 爲한 좋은 말씀을 부탁 드립니다.

姜 : 建築士協會는 어디까지나 會員에 依한, 會員을 爲한, 會員의 協會가 爲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協會의 職員이나 任員이 되는 사람은 犧牲的 精神으로 協會發展과 會員福利를 爲하여 奉仕해야 하며, 會員은 이들이 安心하고 任務를 遂行할 수 있도록 協助와 協力을 아끼지 말아야만 協會가 發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人間은 組織社會에서 生活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國家組織으로 부터 작게는 個人의 職場組織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組織社會가 아닌 것은 없습니다.

建築士協會는 建築士의 生活를 爲한 唯一한 組織社會라고 할 수 있습니다. 協會가 發展하므로써 그 組織細胞인 會員의 生活도 發展向上할 수 있습니다.

近者에 一部 會員間에는 協會無用論을 말하는 사람도 있고, 圖書申告制를 廢止 또는 事後申告制로 變更해야 한다고 主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周知하는바와 같이 建築士協會가 오늘날 長足の 發展을 한 根本的 原因은 從前의 「圖書登錄」制度의 德分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法이 改正되서 「圖書申告」制로 바뀌었습니다만, 用語만 달라졌을뿐 實質的 으로는 從前과 變함이 없는 協會發展의 原動力 役割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萬一에 一部 會員의 主張대로 事後 申告制로 變更施行 한다면 協會는 弱화되어 有名無實하게 될 것은 明若觀火한 일이며, 더욱 協會無用論에 있어서는, 討論할 價值조차 없는 言語道斷의 主張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協會가 弱화 되면 會員의 權益도 弱화되고, 生活도 低下될 것은 勿論입니다.

會員은 協會發展의 方向으로 建設的인 協調가 있

어야 할 것입니다.

金 : 大型工事의 設計·施工 一括入札을 規定한 豫算會計法施行令特例規程 施行에 對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姜 : 이 特例規程은 近者에 새삼스럽게 新設制定된 것이 아니고 이미 1977. 4. 1에 公布施行 되었으며, 그後 1978. 12. 30에 一次改正 되었고, 지난 1980. 11. 24에 二次로 改正되어 施行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規程이 갑자기 建築界의 非常한 關心과 問題點으로 登場하게 된 것은 지난해에 改正한 規程內容이 從前의 規程에 比하여 顯著하게 建築士業務를 萎縮시키는 包括的 規程으로 變質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即, 從前의 特例規程에서는, 大型工事의 定義를 「完成에 2年以上을 要하고, 總 工事費가 50億원 以上인 新規工事」라고 하였고, 代案入札 또는 一括入札에 依할 수 있는 경우를 「大型工事로서 卓越한 創意力 또는 新工法等의 活用으로 工事費의 節減, 施工期間의 短縮等에 效果가 顯著한 것으로 予想되는 것은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大統領의 承認을 얻어 代案入札 또는 設計·施工一括入札의 方法에 依할 수 있으며 每會計年度中 그 對象工事を 公告」하도록 되어 있어 特例規程의 施行에 相當히 慎重을 期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改正된 規程에서는 大型工事의 定義를 「複合工種工事로서 總 工事費가 30億원 以上으로 予定된 新規工事」라고 限度額을 引下했고, 30億원 未滿이라 할지라도 特定工事は 各 中央官署의 長이 「代案入札 또는 設計·施工一括入札로 執行함이 有利하다고 認定하는 工事」인 경우에는 執行이 可能하도록 하는 項目을 新設하였습니다.

物價上昇率을 勘案할 때 限度額을 引上함이 適當할 텐데 引下한 것은 不合理하다고 생각되며, 또 新設된 特定工事의 規程은 適用範圍가 無限으로 擴大될 것이 憂慮되기 때문에 建築士의 生業에 重大한 威脅을 느끼게 되고 나아가 建築文化發展을 沮害하는 要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建築人은 創意力을 研磨하고 新工法을 不斷이 研究開發해야 하며 經營面에서의 零細性을 脫皮하도록 努力해서 政府當局의 信任을 獲得하도록 하는 한편, 建築三團體는 欣然一體가 되어 全建築人의 이름으로 關係當局에 建議하여 合理的인 方向으로 改正하도록 推進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金 : 時間이 많으면 先生任의 좋은 말씀을 더 들을 수 있을텐데요, 오늘 바쁘신 중에 時間을 내셔서 有益한 말씀을 해주셔서 感謝합니다.

姜 : 協會 發展을 爲하여 獻身하시는 任員들께 感謝드립니다.

支部巡訪

忠 清 南 道 編

忠清南道는 韓半島 中西部에 位置하여 總面積8,784 km²이며 家口數 585,000戶에 人口 300萬名입니다.

行政區域은 2個市 15個郡으로 되어 있으며 産業構造는 農林 水産 등 一次産業이 42%로서 아직도 一次産業 中心의 産業構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지난해의 農業所得은 2,437,000원이었습니다.

우리道는 交通의 要衝地이며, 首都圈의 背后地로서 重要한 意味를 지니고 있습니다.

歴史的으로는 百濟文化의 中心地이며 數 많은 護國忠節烈士가 輩出된 高장으로 穩健하고 傳統的이며 保守的인 住民性向을 特色으로 하고 있습니다.

牙山에 位置한 顯忠祠를 비롯하여 禮山의 忠義祠와 錦山의 七百義塚 그리고 天原의 柳寬順烈士 追慕閣 등 4個所의 聖域化 地域이 있어 每年 한번씩 護國忠節의 뜻을 기리는 뜻깊은 行事가 이 高장에서 舉行되고 있으며 天原郡 聖居面에 海外同胞의 孤魂이 잠들어 있는 望鄉의 동산이 있어 每年 10월에 合同慰靈祭가 舉行되고, 옛 先賢의 遺蹟을 간직한 文化財로서 公州 武寧王陵과 扶餘의 定林寺址 5層塔 등 指定文化財를 비롯하여 秋史故宅 南潤精舍 등 크고 작은 文化財가 236점에 이르러 저의 道는 곧 傳統文化의 發祥地로서 文化道民의 後裔라는 矜持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 1 : 귀도의 地域社會 開發促進方向에 對하여 소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 1 : 忠清南道의 地域社會 開發方向은 地域 特性과 水準에 맞는 均衡發展과 地域의 自律的인 成長能力을 가지도록 하여 支援의 惠沢을 고루 미치게 함으로써 住民의 參與意慾을 높여도록 하겠습니다.

- 于先 政府에서 推進하고 있는 大單位建設事業은 既竣工된 大淸多目的댐을 비롯하여 標準研究所 등 23個 研究機關이 들어서는 大德 專門研究團地와 13,700基의 安葬能力을 갖게 되는 大田 國立墓地造成 그리고 5,400톤과 36,000톤의 食糧增産效果를 가져오는 插橋川 및 瑞山地區 農業綜合開發事業 保寧·舒川에 建設中인 140萬Kw 發電能力의 高亭 및 西海火力發電所 建設에 積極支援하는 한편 邑面單位, 小都邑의 基本的인 生活環境 부터 集中開發하고,
- 都市開發에 阻害가 되는 要素를 根源的으로 除去하기 爲하여 利害關係가 相衝되는 地域單

位 痼疾의 懸案問題 解決에 注力할 것입니다.
○또한 地域興望事業인 道路開設 및 鋪裝工事, 遺蹟開發事業등을 開發 促進할 方針입니다.

문 2 : 都市計劃 側面에서 集團 開發方向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 2 : 高度産業社會의 都市開發 pattern은 都市構造形成에 있어 圈域機能을 活性化하고 內部的 機能을 連續化 함으로써 相對的 均衡維持를 爲한 住居 活動, 工業生産, 中核管理 商業 流通業務等 諸機能을 集中 集團化하여 單位 投入의 相對的 效果는 물론 市民活動의 空間的 效率向上과 便宜性 提高 및 集積 利益에 있는바 都市의 立地의 條件에 따라 機能을 個性化, 特性化, 分担化, 專門化 하여 土地利用을 高度化하는 方向으로, 開發 pattern을 誘導 平面的 分散은 可及的 止揚하고 立體的인 集中開發은 既存集團 不良地區를 再開發하는等 土地利用의 增進을 極大化하고 都市空間을 最大한 確保하여 都市의 健全한 發展을 期하도록 하겠습니다.

문 3 : 建築士 業務와 忠清南道 建築行政 全般에 對한 意見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 3 : 建築士는 建築設計 및 監理를 함에 있어 國民의 生命·健康 및 財産을 保護하여야 함은 물론 建築物의 質的向上에 努力하여야 하는等 住民의 生活과 直結되는 建築士의 業務는 그 重要性이 莫重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建築士가 處理하는 모든 業務는 住民의 便益을 最大한 圖謀함은 물론 行政 官署 立場에서 諸般法規를 지키면서 能動的으로 處理하므로써 보다 迅速하고 보다 正確하고 보다 堅實한 建築業務를 펴 나아가야겠습니다.

문 4 : 建築文化 暢達을 爲하여 다같이 努力해야 할 事項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 4 : 建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生活하는 空間을 藝術的인 創造와 科學的인 技術이 總動員되어 이루어지는 것으로 文化藝術이며 後世에 傳統的인 文化遺跡으로 길이 남는 것입니다.

그러나 一部 建築物들은 都市美觀을 全然 考慮하지 아니하고 그때 그때 氣分에 따라 狹小한 依地에 畸形 建築物를 建築한다든가 심히 불쾌감을 주는 原色의 色彩로 塗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 建築物이 都市美觀을 살릴 수 있고 傳統的인 建築文化로서 後孫에게 繼承될 수 있도록 藝術家로서의 높은 긍지를 가지고 周邊環境이나 模樣, 色彩를 調和있게 反映이 되도록 細心한 研究와 不斷한 努力으로 建築文化 創造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대전시 건축관계 조례

대전시 조례 제1023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내의 건축제한 재해 위험지구내의 건축제한, 벽면 및 담장의 구조, 내지내의 조경, 건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 이 조례는 대전시의 도시계획 구역 재해 위험 구역 및 취약지구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1종 미관지구”라 함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6조의 2 규정에 의거 상업지역으로서 토지의 이용도가 극히 높은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 미관지구를 말한다.
2. “제2종 미관지구”라 함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6조의 2 규정에 의거 상업지역으로서 토지의 이용도가 비교적 높은 구역에 대하여 지정한 미관지구를 말한다.
3. “제3종 미관지구”라 함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6조의 2 규정에 의거 관장에 직접 필요한 도로연변과 시가지로부터 관광지 또는 사적지에 이르는 도로연변에 지정한 미관지구를 말한다.
4. “제4종 미관지구”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6조의 2 규정에 의거 한국 소유의 건축양식을 보존하거나 주거 및 생활환경의 미관유지를 지정한 미관지구를 말한다.
5. “제5종 미관지구”라 함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6조의 2 규정에 의거 상업지역으로서 그 환경의 미관지구로 위하여 지정한 미관지구를 말한다.
6. “최저고도지구”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높이의 최저한도를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7. “최고고도지구”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를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8. “제1종 공지지구”라 함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지구에 적용할 전폐율 $\frac{2}{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정한 지구를 말한다.
9. “제2종 공지지구”라 함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지구에 적용할 전폐율 $\frac{3}{10}$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 지구를 말한다.
10. “제3종 공지지구”라 함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지구에 적용할 전폐율 $\frac{4}{10}$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 지구를 말한다.
11. “취락지구”라 함은 국토 이용관리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농어민의 집단적 생활 근거지로서 개발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12. “재해위험구역”이라 함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해일 고조 하천의 범람 또는 출수 기타 재해에 따른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13. “건축위원회”라 함은 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거령 제171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2장 풍치 지구내의 건축제한

제4조 (용도제한) : 풍치 지구내에서는 령 제1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2에 계기한 건축물과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철물, 기타 폐품류를 취급하는 고물상
2. 전채상, 공구상, 철물점
3. 저탄장, 야적장
4. 작업소

제5조 (전폐율 등) : (1) 풍치 지구내의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폐율은 $\frac{2}{10}$ 를 초과할 수 없다.

(2) 풍치지구 내의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제6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풍치지구 내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600평방미터로 한다.

제7조 (대지안의 공지) : 풍치지구내의 건축물은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담장 및 바닥면적 30평방미터 이하의 부속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의 외벽 각 부분까지의 거리 : 4.미터
2.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외벽 각 부분까지의 거리 : 2미터

제8조 (용적율) : 풍치 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적율은 60%를 초과할 수 없다.

제9조 (건축물의 높이) : 풍치 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2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제3장 미관 지구내의 건축제한

제10조 (건축심의) : (1) 시장은 미관지구내의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모양과 색체에 관하여 미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심의의 절차 기준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용도제한) : (1) 제1종 미관지구 내에서는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장
2. 철물, 기타 폐품류를 취급하는 고물상
3. 전채상, 공구상, 철물점
4. 창고, 저탄장, 야적장
5. 작업소
6. 전염병원, 정신병원, 마약진료소
7. 정육점, 세탁소
8. 장의 관련 시설
9. 자동차 관련시설
10.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공동주택

(2) 제2종미관지구에서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9호에 계기한 건축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3) 제 3종 미관지구내에서는 제 1항 제 1호 내지 제 8호에 계기한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4) 제 4종 미관지구내에서는 제 1항 제 1호 내지 제 6호에, 계기한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5) 제 5종 미관지구내에서는 제 1항 제 1호 내지 제 5호에 계기한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제 12 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미관지구내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면적으로 한다.

1. 제 1종 미관지구 : 600㎡
2. 제 2종 미관지구 : 400㎡
3. 제 3종 미관지구 : 400㎡
4. 제 4종 미관지구 : 300㎡
5. 제 5종 미관지구 : 400㎡

제 13 조 (대지안의 공지) : 미관지구내의 건축물은 주전면 도로측의 건축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담장 및 바닥면적 30평방미터 이하의 부속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분	건축선으로부터 외벽 각 부분까지의 거리
1. 제 3종 미관지구	2미터
2. 제 4종 미관지구	2미터

제 14 조 (건축물의 높이) : 미관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2층 이상으로 한다.

제 15 조 (건축물의 규모) : (1) 미관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은 다음표에 제기하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인접하여 기존 건축물 또는 도로 등이 있어 부득이한 경우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분	건축물의 앞면길이	건축물의 옆면길이
제 1종 미관지구	14m	12m
제 2종 미관지구	12m	10m
제 3종 미관지구	12m	10m
제 4종 미관지구		
제 5종 미관지구	12m	10m

(2) 제 1종 내지 제 3종 및 제 5종 미관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 면적은 층의 수에 따라 다음표에 제기하는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층 의 수	건 축 면 적
3층 이하	100㎡
4 - 10층	200㎡
11 - 15층	400㎡
15층 이상	800㎡

제 16 조 (건축물의 모양) : 시장은 미관지구내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양식, 구조 형태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 17 조 (건축물의 부수 시설 등) : (1) 미관지구내에서는 세 탁물 건조대, 장독대, 철조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2) 미관지구내에서는 골목 환기설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3) 시장은 미관지구내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개축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제 4 장 고도 지구내의 건축제한

제 18 조 (최저 고도지구내의 건축제한) : 최저 고도 지구내의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및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호에 제기하는 범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구 분	건폐율	용적율	대지 최소면적
높이의 최저한도를 10미터 미만의 범위내에서 지정한 지구	$\frac{4}{10}$	100%	300㎡
최저높이 10-20m이하의 범위내에서 지정한 지구	$\frac{5}{10}$	200%	600㎡

제 19 조 (최고 고도 지구내에 건축제한) : 최고 고도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율은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10미터 이내에서 지정된 최고 고도지구내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폐율 : $\frac{5}{10}$
2. 용적율 : 800%

제 5 장 교육 및 연구지구내의 건축제한

제 20 조 (용도제한) : 교육 및 연구지구내에서는 명 제 147조 제 1호 내지 제 7호에 제기하는 건축물과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강의 관련시설
2. 전염, 정신병원, 마약진료소
3. 자동차 관련시설
4. 저탄장, 야적장
5. 정육점, 전당포
6. 교정시설

제 6 장 업무지구내의 건축제한

제 21 조 (용도제한) : 업무지구내에서는 명 제 148조 제 1항 제 1호 및 제 2호에 계기한 건축물과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전염, 정신병원, 마약진료소
2. 저탄장, 야적장
3. 전채, 공구상, 철물점
4. 작업소
5. 종교시설
6. 단독주택(공동체외), 공동주택
7. 운동시설
8. 교정시설

제 22 조 (특정업무 지구내의 용도제한) : 명 제 148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업무의 환경정화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지정 공고한 업무지구내에서는 제 21조에 계기한 건축물과 노유자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제 7 장 공지지구내의 건축제한

제 23 조 (건폐율) : 공지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 1종 공지지구 : $\frac{2}{10}$
2. 제 2종 공지지구 : $\frac{3}{10}$
3. 제 3종 공지지구 : $\frac{4}{10}$

제 24 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공지 지구내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면적으로 한다.

1. 제 1종 공지지구 : 600m²
2. 제 2종 공지지구 : 400m²
3. 제 3종 공지지구 : 300m²

제 25 조 (대지안의 공지) : 제 1종 공지지구내의 건축물은 주된 도로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담장 및 바닥면적 30평방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선으로부터 외벽 각부분까지의 거리 : 6m
2.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외벽 각부분까지의 거리 : 4m

제 8 장 공할지구내의 건축제한

제 26 조 (용도제한) : 공할지구내에서는 명 제 154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다음 각호에 계기한 건축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발전소
2. 제련소
3. 요업공장, 화학공장

제 27 조 (건축물의 높이) : 시장은 항공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높이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다.

제 9 장 아파트지구내의 건축제한

제 28 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아파트지구내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면적으로 한다.

1. 공동주택 : 1,500m² 이상
2. 기타 건축물 : 300m² 이상

제 29 조 (건폐율) : 아파트 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1. 공동주택 : $\frac{4}{10}$
2. 기타 건축물 : $\frac{5}{10}$

제 30 조 (용적율) : 아파트 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적율은 300%를 초과할 수 없다.

제 31 조 (인동거리) : (1) 아파트 지구내 동일 대지안에 건축하는 공동주택간의 인동거리는 각 건축물 높이의 1.5배 상당하는 거리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아파트 지구내의 공동주택은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 높이의 $\frac{5}{10}$ 배에 상당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제 32 조 (건축물의 모양) : (1) 시장은 아파트 지구내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모양, 색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2) 시장은 아파트 지구내의 건축물로서 주거환경상 현저히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개축 또는 대수선을 명할 수 있다.

제 10 장 취락지구내의 건축제한

제 33 조 (용도제한) : 취락지구내에서는 명 제 157조의 2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건축물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위락시설
2. 교정시설
3. 자동차 관련시설
4. 장의 관련시설
5. 도축장

제 11 장 재해위험 지구내의 건축제한

제 34 조 (건축제한) : 재해위험 구역내에서는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건축물 기타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자동차 관련시설
2. 동물 관련시설
3. 근린운동시설, 운동시설
4. 흥행, 전담회, 공사용 가설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존치 기간 6개월 이내 가설 건물

제 12 장 벽면 및 담장의 구조

제 35 조 (벽면의 위치) : 건축법 시행령 제 14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중 도로에 면한 1층의 벽면의 위치를 건축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 30조 제 2항 또는 명 제 168조의 2 제 1항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6 조 (담장의 구조) : (1) 도시계획 구역내에서는 담장에철조망, 유리파편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2) 도시계획 구역내의 미관지구 내에서 담장의 높이 및 구조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 37 조 (담장 및 벽면위 색채) : 시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구역내의 건축물의 벽면 및 담장의 색채를 제한할 수 있다.

제 38 조 (지붕의 구조 및 색채) : 시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 구역내의 건축물의 지붕의 구조 및 색채를 제한할 수 있다.

제 13 장 대지안의 조경

제 39 조 (대지안의 조경) : 명 제 168조의 3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식순 등 조경은 다음 표에 계기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 2미터 이상의 교목을 60%이상 식수하여야 한다.

구 분	식수밀도(제곱미터)	상록비율(%)
관 목	0.4본 이상	
교 목	0.3본 이상	상록수 : 40% 낙엽수 : 40%

제 40 조 (조경사업비의 예치) : 명 제 168조의 3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시장에게 예치하여야 하는 조경공사비는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조경기술 자격취득자 2인 이상이 조경예정 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비 내역서 상의 금액으로 한다.

제 14 장 건축 위원회

제 41 조 (기능) :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는 명

- 제171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심의조사 또는 건의한다.
- 제 42 조 (조직) : (1)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 43 조 (위원장 등의 직무) :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유고시에는 시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 44 조 (회의) : (1)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 45 조 (소위원회) : (1)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소위원회는 책임위원을 두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
 (3)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 중에서 호선하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위원회가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가름하기로 한 때에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가름할 수 있다.
 (5) 소위원회는 전원 출석으로 개최하고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46 조 (전문위원) : (1)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 또는 연구를 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 약간인을 들 수 있다.
 (2) 전문 위원은 건축 및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의 재청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3) 전문 위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 47 조 (간사 및 서기) :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2) 간사는 주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주무과 건축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 제 48 조 (회의록의 비치 및 보고) : (1)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 49 조 (자료제출의 요구등) : (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 소속하의 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 공무원의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 제 50 조 (수당) :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위원과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청된 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 51 조 ((비밀준수) : 위원회 위원, 전문위원, 간사 및 서기와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계한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 (1) (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단서, 제15조 제1항 단서, 제17조 제3항 및 제32조 제2항의 규정은 위원회가 설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폐지조례) : 대전시 조례 제727호 미관지구 조례, 조례 제703호 대전시 건축위원회 설치조례, 조례 제728호 교육 및 연구지구 조례 제360호 풍치지구 건축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 (3) (경과조치) :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4) (경과조치) : 이 조례 시행당시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존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명 제180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50세대 미만 아파트(연립주택) 건설지침

개정 1980. 5. 9.

1. 목 적 :

- 아파트(연립주택)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으로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 인근주거의 보호와 아파트(연립주택)의 질적향상등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함에 있음.

2. 규제범위 :

- 대지의 규모
 - 150명(495평방미터)이상
 - 단 10세대 이상에 한하여 적용
- 대지의 인접도로 : 6미터 이상
- 진폐율 : 50% 이내 (단, 고도지구내에서는 60%이내)
- 층수제한 : 5층 이하
- 건축물의 구조
 - 세대간 간벽은 공간쌍가에 방음시설을 한다.
 - 벽체의 두께 : 19센티 이상
 - 외벽의 창문 : 2중창 (단 부속건물은 제외)
 - 최상층의 천정 : 방열시설
 - 지붕 : 2층 이하는 콘크리트 박공지붕위 후형스래트기와 지정색 케인트칠 (구배 1/10이상)
 - 단, 3층 이상은 예외로 한다.
- 건축물의 배치
 - 2층 이하의 전면 건축선에서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2미터 이상 후퇴
 - 3층 이상은 전면 건축선에서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3미터 이상 후퇴
 - 단, 측면은 2미터 이상 후퇴 (4면이 폐쇄되어서는 안됨)
- 단지내의 도로
 - 출입도 6미터 이상
 - 단지내의 도로는 보장하여야 한다.
- 어린이 놀이터
 - 기준면적(10세대 기준) : 49.5평방미터(15평) 이상
 - 1세대 초과량 : 3.3평방미터(1평) 이상 비율로 가산
 - 필수시설 : 그네, 미끄럼틀, 철봉, 시소, 모래관 등 1개 이상

9) 배수시설

- . 1층 세대수에 해당하는 맨홀을 설치하고 토관으로 배수관 설치

10) 조 경

- . 공지면적의 1/10이상 식수
- . 장소선정 : 생육 가능지
- . 담장 : 도로변은 투시형 담장

11) 오물 수거 시설

- . 세대별 설치
- . 맨홀 설치시 위치 : 다스트슈트 하단
깊이 : 1미터 이하
수거구 : 수거에 편리 하지 설치 단, 1층 바닥이 지반보다 1미터 이상 높을시는 예외

12) 보안등 설치 : 대지사면에 1개소씩 설치 (200와트 이상 수은등)

13) 부실공사의 예방

- . 공사감리자 공정보고 월 1회 제출 (익월 5일까지)
- . 시공기사 현장 대리 상주 배치
- . 건축직 공무원 현장확인

3. 기타

- . 본 지침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법 주택건설 촉진법, 기타 법률과 대전시 건축조례 규정에 의하고 단, 대전시 관내 환경 기타 지형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 본 지침은 10세대 이상 아파트 (연립주택)에 적용한다.

4. 적용일시

- . 본 지침 발표 후 1개월 경과 후 시행한다. ■

會員作品 原稿作成要領

※ 본지에 게재된 귀하의 設計作品은 본지와 더불어 永久保存되는 귀중한 資料가 되며, 또한 본지에 게재된 作品만이 자동적으로 本協會 建築賞의 候補作品이 됩니다.

(1) 구비도서 및 작성요령

① 圖面

- 配置圖 : 매지가 소규모인 때는 평면도에 겸한다. 대규모인 경우는 별도작성 (인쇄 크기의 2배정도 크기)
- 平面圖 : 1층평면 · 기준층평면 일반적인 경우, 각층평면 (지하층포함) 특수한 경우에 추가.
- 断面圖 : 주요 기준단면 단순한 경우는 생략

② 作成要領

1. 백지 (트래싱지 또는 쉐트지)에 검정색으로 잉킹한다. 소규모 건축물에서의 모자이크 타일선 등과 같은 섬세한 부분은 생략 연필선은 지움.
2. 室名과 縮尺표시는 연필로 기입한다.
3. 방위표시는 잉킹한다.
4. 平面圖, 断面圖의 縮尺은 다음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 소규모 (주택 등)	1/50 ~ 1/100
{ 중규모	1/100 ~ 1/200
{ 대규모	1/200 ~ 1/500

(2) 写真

- 作品写真 : 全景, 内部, 詳細 各 2~3점씩.
- (흑백) : 全景写真は 촬영 불가능한 특수사경인 경우에 한하여 透視圖로 대신 할 수 있다.
- 設計者写真 : 자연스러운 포즈로 한다. 사진 뒷면에는 그 성명을 명기함.

(3) 建築物概要 및 設計說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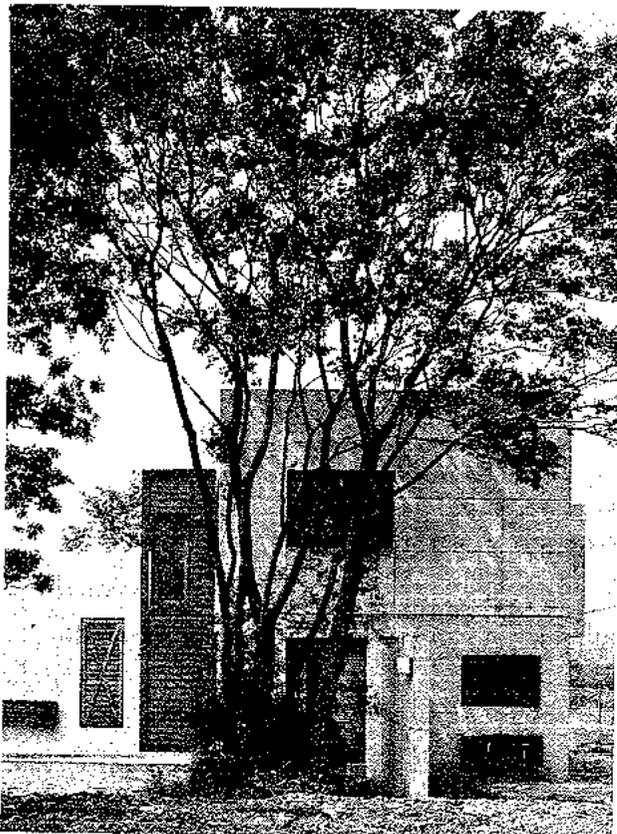
- 建築物 概要 : ① 建築物名 :
② 所在地 :
③ 設計者 : 担当 / 事務所名 별도 기입
④ 施工者 :
⑤ 規模 : 垜地面積 / 建築面積 / 基準層面積 / 延面積 / 地上層數 / 地下層數 / 層높이 / 建築物높이
기타 施設規模 (例 · 病床數, 客室數, 座席數 등)
⑥ 構造 : 主体構造 / 柱스팬
⑦ 設備 : 난방, 空調 / 衛生 / 電氣 기타

設計說明 : 계획과정과 계획방침 특기사항을 간결하게 설명한다. 200자 × 2~4장

자세한 내용은 本協會 出版事業部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TEL. 73-9491~2

月間建築情報

1981. 2. 11 ~ 3. 10



海外建設, 東南亞 진출 急伸張

작년 受注額 4 億 8 千萬달러를 기록

2월 11일 건설부에 의하면, 東南亞의 建設 受注額은 지난 66년부터 77년 사이에 모두 6.4億달러, 연평균 0.53億달러였으나 78년 0.91億달러 79년 3.78億달러, 80년 4.89億달러로 急伸張하였다.

東南亞시장의 진출이 활발해진 이유는 泰國과 필리핀등에 국한됐던 시장이 새 產油國으로 부상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로 옮겨가고 있으며, 이밖에 싱가포르·홍콩등의 建設사업이 활발하기 때문이다. 또 中東에서의 受注가 여의치않아 建設업체들이 아시아 再進出을 積極화했기 때문이다.

현재 東南亞지역의 受注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東南亞受注 총액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肥料工場 副產物 廢石膏로 建材생산

人造大理石·内裝타일을 값싸게 - 科技院

한국과학기술원 建築재료 연구실은 최근 國內肥料工場에서 매년 200여만톤가량 副產物로 나오는 廢石膏를 세척·여과시키는 전처리를 통해 용해가능한 불순물과 이물질 등을 제거, 精製 半水石膏를 제조하는 공정을 개발, 이의 실용화를 서두르고 있다.

이들의 물리적 특성 시험을 실시한 결과, α형 半水石膏(습식법으로 정제한 것)의 압축강도는 200~600kg/cm² β형(건식법 정제)은 60~100kg/cm² 이었다고 밝혔다.

α형은 시멘트와 같은 정도의 強度가 있으므로 고강도가 필요한 壁이나 치과용 석고로, β형은 고강도가 필요없는 천정용 단열건축재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半水石膏의 생산비는 시멘트의 절반정도로 경제성이 높고, 원료를 대량 확보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고 지적, 앞으로 색상을 넣어 人造大理石을 만들거나 내장용타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大邱~光州 高速道路邊 基準地價 告示

堡地 평당 평균 34,740원

2월 12일 건설부는 오는 10월 착공할 大邱~光州間 高速道路 주변일대 13억 8천 7백만평에 대해 基準地價를 告示했다.

東西高速道路 建設용지 買收 및 取用時 보상액 기준으로 삼기 위해 고시된 基準地價 대상지역은 全北 南原郡 등 4道 9郡 7邑 87面으로 基準地價는 坪當 平均 △堡地가 34,738원, △田 2,338원, △畚 4,518원, △林野 245원 이다.

비현실적인 防火施設改修命令은 않기로

고층빌딩·호텔등은 改修命令 강화-서울시

2월13일서울시는 防火施設規制를 크게 완화, 건물구조상 改修가 극히 곤란한 기존건물중 화재 취약성이 경미하거나 연소의 우려가 없는 耐火建物 및 施設에 대해서는 施設改修命令 및 立件評點을 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의 이같은 조치는 改修가 도저히 불가능한 건물에 대해 改修命令만 되풀이 해왔을 뿐 아니라 出火의 위험이 거의 없는 耐火建物 및 施設에 대해서도 防火區劃, 특별피난계단, 不燃化 內裝材 시설의 의무화, 시민의 불평과 부담을 주는 등 민원의 대상이 돼왔기 때문이다.

시는 이와함께 위험물제조소등의 저장탱크시설중 탱크와 벽간 거리(50cm 이상), 空地保有基準등도 시설 개수명령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화재취약건물중 대형화재의 우려가 많은 고층빌딩, 위생접객업소, 호텔 등은 계속 施設改修命令 및 施設의 의무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室内配管施設도 竣工檢査대상으로

水道凍破事故막기 건축법 개정 추진-서울시

서울시는 겨울철 水道凍破事故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建築法을 개정, 實內配管施設 규정을 신설하여 각종 건물 준공시 옥내배관시설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할 방침 으로 관제당국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77년까지는 건물의 준공시 수도국 직원으로 하여금 옥내배관시설에 관한 적부여부를 확인토록 했으나 부조리의 소지가 있다는 여론에 따라 78년부터 수도에 관한 검사를 생략해왔다.

나이지리아, 經濟開發計劃 참여 요청

아브자新都市 200億달러, 4 차계획 1,500億달러.

2월14일 외무부에서 열린 韓·나이지리아 外相會談에서 아우두 나이지리아外相은 81년부터 86년까지 추진 되는 총규모 1,500億달러의 제 4 차 經濟開發計劃에 韓國이 적극 참여해줄것을 公式要請하고 나이지리아 建設開發計劃의 사본을 조만간 외교채널을 통해 보내겠다고 말하였다.

아우두外相은 약 200億달러를 투입, 진행중인 나이지리아의 아브자新首都 移轉建設事業에 참여해줄것을 아울러 요청했다.

4 大門안의 建物高度制限을 풀기로

서울시-首都圈審議委 통과 즉시 解除

2월15일 서울시는 4 大門안의 建物높이를 지금까지 획

일적으로 15층 이내로 규제해왔으나 종전의 방침을 변경 地域別로 建物高度制限을 해제하기로 했다.

4 大門안의 建築物에 관한 새計劃案은 건설부장관등 17명의 장관급으로 구성된 首都圈審議委員會에 넘겨져 심의가 끝나는대로 확정돼 금명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 당국자는 서울의 都市美觀을 살리고 土地利用率을 높이기 위해 서울 市立産業大學 首都圈問題研究所에 용역을 주어 建物高度制限규정을 포함한 建築物에 관한 새 규정을 마련, 주요기관과 창경원·비원·덕수궁 등 古宮에 인접된 지역외에는 원칙적으로 建物高度制限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79년 4월부터 4 大門안의 건축물에 대해 전폐율 40%, 용적율은 670%로 규제, 16층 이상의 건물은 건축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왔다.

서울시의 高度制限조치가 해제되면 10여동의 15층 이상 건물이 세워질 것으로 보인다.

工事不實化 방지코저, 最低價落札制 폐지

내년 3월까지 制限의 平均價落札制 적용

정부는 工事不實化 방지를 위해 오는 3월1일 부터 내년 3월말까지 最低價落札制 대신 制限의 平均價落札制를 적용키로하고 2월17일 국무회의는 豫算會計法 施行令을 개정했다.

앞으로 시행될 制限의 平均價落札制는 예정가격의 85% 이상 入札者들의 入札平均價格을 산출해서 이에 가장 접근한 低入札者를 落札시키는 것이다.

정부가 이 새 落札制를 내년 3월말까지 特例적으로 적용키로 한것은 건설업계의 不況을 틈타 과당 경쟁을 벌여 工事不實化를 빚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制限의 平均價落札制는 代案入札이나 실제, 3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 또는 특정공사를 제외한 모든 정부 시설공사에 적용할 방침이다.

5 次國土開發計劃試案, 既存據點 개발치중

行政首都 연기, 牙山工團計劃 재검토 大都市圈法 제정, 開發利益 社會選收制 등

2월19일 건설부가 마련,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5 次 經濟社會發展計劃 작성을 위한 國土 및 産業立地 部門政策協議會에 보고된 계획안에 의하면, 지금까지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 工團을 조성하는 등 據點開發中心이었던 國土開發戰略을 5 次 5 個年計劃期間(82~86년) 부터는 기개발된 據點을 중심으로 廣域化하는 등 확산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地方中心都市의 중점개발로 多核의 國土利用 構造를 형성하고, 大都市圈法을 제정 서울·釜山·大邱 등의 인구 집중유입을 막아 地方都市와의 균형있는 개발

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行政首都建設은 5次計劃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하고, 牙山灣에 건설하려 했던 第2製鐵 동 대단위 工團 造成은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또한 國土利用構造는 農耕地 22,253km²(80년 현재)→21,676 km²(86년)으로 줄이는 대신, 工業用地는 331km²→431km²로, 公共用地는 1,728km²→2,433km²로, 住居用地는 1,831 km²→2,050km²로 각각 늘리고 土地開發利益의 社會選收制를 실시키로 했다.

이 기간중에는 遊休地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 값싼 宅地를 개발키로 하고, 光州·全州·濟州·扶餘·公州 지역은 새로운 生活圈으로 개발, 人口의 지방정착을 유도시키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建設部, 216개 建設業체 企業診斷

財務構造·免許基準 適否확인 코저

2월24일, 건설부는 전국 216개 建設業체에 대해 오는 3월 4~7일까지 4일간 國立建設研究所에서 企業診斷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企業診斷은 財務構造 및 免許基準 위배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것으로 80년 不渡發生業체 및 讓受·讓渡業체 그리고 80년 7월에 상향조정된 資本金免許基準 으로 보완지시를 받은 業체들이 대상이다.

土木, 建築業의 免許基準중 資本金은 2,000만원에서 4,000만원, 上建綜合建設業은 4,000만에서 8,000만원으로 100% 상향조정됐었다.

半月 등 5개 工團 工場用地 分讓저조

商工部, 入住要件 크게 완화키로

商工部 직할 工團 7개중 龜尾·九老工團이 예정대로 工場이 들어섰고 龜尾·昌原·麗川·溫山·半月 등 5개 工團의 工場用地 1971만평중 38%인 756만평이 아직 분양되지 않고 있다.

상공부는 半月工團에는 490여개업체, 龜尾工團에는 60개 업체, 昌原工團에는 46개 업체 등 모두 630여개 업체가 더 들어가야 분양이 끝날것으로 보고 있다.

또 11개 地方工團가운데 淸州工團이 17만평, 光州工團에 1만평의 用地도 늘리고 있다.

工團의 工場用地분양이 저조한 것은 경기침체에다 입주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商工部는 入住基準을 中小企業에 한정하고 상호 有關業種만 이주케하는 등 工團別 入住要件을 올해부터는 크게 완화하기로 한다.

技術士資格試驗에 출원자 急增, 총3210명

82년부터는 技師1급 등 거져야

2월26일 韓國技術檢定公團에 의하면 지난 2월20일로

마감된 금년도 技術士資格試驗에는 建築·土木·機械·金屬 등 19개분야 91종목에 총 3,210명이 응시원서를 제출한것으로 집계됐는데, 이것은 작년의 2,500명보다 710명이 급증한것이다.

이같이 급증되는 이유는 현행 國家技術資格法에 응시자격은 大卒者로서 7년이상 경력자면 되는데, 이 경과조치는 금년으로 끝나고, 82년부터는 반드시 技師1급 취득후 경력 7년이상 또는 技師2급 취득후 9년 이상 경력자에 한해 응시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한국기술검정공단은 7월31일에 最終合格者를 발표할 예정이며, 공단 관계자는 약 10%선인 300명 내외가 합격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80년의 경우 총 2500명이 응시 242명이 技術士資格을 취득했다.

政府工事 早期契約순조, 建設景氣 점차 活氣

2월말 2,508억원 계약, 4월중순 발수 끝날듯

3월 2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올해 1억원 이상 調達總발주 政府施設工事 중 早期執行할 5094억원(500건)중 2월말 현재 49%에 달하는 2,508억원이 계약됐다.

81년도 調達總발주 施設工事規模는 신규와 계속 공사를 합쳐 政府機關에서 4,227억원(610건), 政府投資 機關에서 4,753억원(411건)등 모두 8,980억원이다. 이 규모에는 국방부소관 防衛施設과 각부처의 긴급시설 및 借款資金 시설공사 등은 제외된 것이다.

정부공사 早期契約 내용을 보면 建設部 519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이 住宅公社 416억원, 海運港灣廳 280억원, 道路公社 274억원 등으로 되어 있다.

이날 관계당국자는 이같은 추세로 나갈 경우 늦어도 4월중순까지는 당초목표로 했던 정부공사 조기계약이 무난하게 달성될 수 있을것으로 전망하고 公共部門의 建設景氣에 자극받아 民間部門의 건설활동도 점차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年單位로 基本計劃 수립義務化 등

정부, 都市計劃法 改正案을 제출

3월 2일 立法會議에 제출된 都市計劃法 改正案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都市計劃區域의 경우 20년을 단위로 하여 長期都市開發의 방향 및 都市計劃 立案의 指針이 될 都市基本計劃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都市計劃의 決定告示가 있는 위에는 2년내에 年次別 執行計劃을 수립 공고하도록 했으며, 執行計劃이 공고된 土地라 하더라도 隣近土地의 合理的 利用이나 都市計劃事業의 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假設建築物를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都市計劃의 立案 및 都市基本計劃의 수립에 있어 住民 意見を 청취하도록 하고, 非行政機關에 의

한 都市計劃事業 시행시에는 事前供覧制度를 신설,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했으며, 都市의 무질서한 市街化를 막고 都市의 計劃的·段階的인 開發을 기하기 위해 市街化 조정區域을 지정하여 일정기간 市街化를 留保 할 수 있게 했다.

國民住宅基金債券 발행, 基金住宅 轉賣制限

「우수주택부품」표시 등 - 住宅建設促進法개정안

3월 3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住宅建設促進法改正案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이 관리 운영하는 國民住宅基金을 신설하고, 이 기금은 國民住宅과 관련된 宅地開發 및 國民住宅建設에만 투입하며 基金 마련을 위해 國民住宅基金債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住宅資金은 與信限度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 건축자재 품질향상을 위해 건설부장관은 “우수주택부품”에 품질표시를 지정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이 표시를 도용 판매한 자에 대한 벌칙도 규정했다.

또 이 자금의 지원을 받아 건축된 주택은 5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전매하지 못하도록 못박고 있다.

이밖에도, 入住者가 자발적으로 共同住宅을 관리하고자 할 때는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해 관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 등 30개 市綠地 千萬坪을 宅地로

住宅政策審議 거쳐 宅地開發 豫定地區로

3월 4일 건설부에 의하면, 올해부터 宅地開發促進法이 발효됨에 따라 지난 2월말까지 전국 40개 市에 필요한宅地開發 豫定地區를 보고토록 지시, 보고된 1,500여만평중 우선 30개시 1,000여만평을 宅地開發 豫定地區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지정될 豫定地區는 대부분이 綠地로 묶여있는 土地들로 알려졌다.

서울지역은 江南區開浦洞지역 200만평, 江東區高德洞지역 90만평 등이며, 釜山은 西區多大洞 20여만평, 10여만평이다. 大邱는 인근 達城郡月背邑 20여만평, 慶山郡安心邑 부근 釜山鎮區堂甘 1·2洞 20여만평이다.

건설부는 實查作業이 끝나는 오는 6월께 住宅政策審議會 議決을 거쳐 이들 지역을 宅地開發 豫定地區로 告示할 예정이다.

宅地開發 豫定地區로 지정되면 土地의 形質變更, 建物の 新築·増築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그러나 5년내에 宅地로 개발해야 하며, 이 기간내에 개발이 불가능할경우 주민의 편의를 위해 지정을 해제하도록 되어 있다.

80년도 住宅建設 不振...목표의 70%

81년도 목표 25만 가구, 전년 대비 17% 감소

장기화된 건축 침체를 반영, 지난 80년 住宅建設이 크게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3월 4일 건설부에 따르면 작년도 住宅建設 實績은 약 21만 가구로 목표 30만 가구의 70%선에 머물렀을 뿐 아니라 79년 실적 25만 1천 가구의 83.7%에 그친 것으로 추정 집계됐다.

이같은 부진은 계속되는 건축경기 침체로 민간 부문에서의 주택건설이 크게 위축됐던 때문이다. 올 81년도 주택건설 목표는 80년 목표보다 17%가 감소된 25만 가구이다.

事業計劃 확정전에 環境影響 評價를 받아야

아파트·工團·空港·道路 등 건설에

환경오염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環境影響 評價制度가 3월 5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環境廳은 環境保全法 제 5조 및 동시행령 제 4조에 의거, 環境影響 評價書 작성규정을 확정 발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아파트地區의 開發을 비롯하여 都市의 개발, 産業立地 및 工業團地의 조성, 에너지 開發, 工業港 또는 道路의 建設, 水資源 開發, 鐵道建設(지하철 포함), 空港建設 등 10개 분야의 사업은 環境評價를 받아야 한다.

環境評價書는 計劃立案時부터 해당 행정기관의 長의 책임 아래 작성, 事業計劃 확정 전에 환경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청이 이를 검토, 환경에 영향이 클경우 事業計劃의 修正 또는 補充을 요청할 수 있다.

86년까지 住宅 146萬동 建設

— 91년까지 500萬동 建設計劃을 대폭 수정 —

3월 6일 5次 5個年計劃樹立을 위해 관계실무계획반이 마련한 住宅部門 計劃試案에 따르면, 연도별 住宅建設 目標은 △ 82년 27만동, △ 83년 28만동, △ 84년 29만동, △ 85년 30만동, △ 86년 32만동, 합계 146만동이다.

이같은 목표가 달성되면 住宅普及率은 81년 75%(추정치)에서 86년에는 78.6%로 높아지게 된다.

정부는 당초 81년부터 91년까지 11년 동안 500만동의住宅을 건설한다는 長期計劃을 세웠으나 財源確保의 어려움 등으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이를 白紙化하고, 그대신 長期 住宅建設 計劃을 5個年計劃에 흡수, 500만동 建設 目標를 7次 5個年計劃이 끝나는 96년까지 달성키로 했다.

防災處理대상 축소 등 消防規制 완화키로

建築許可·竣工時 절차도 개선—소방법 개정안

내무부가 마련 3월 6일 국무회의에 상정된 消防法 改正案에 따르면, 消防施設義務는 既存建築物의 경우, 앞

로는 관계규정이 개정되더라도 일체 소급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防災處理 對象을 대폭 완화, 아파트·工場·市場·百貨店·圖書館·地下商街·學校·30(m)이하의 高層建物 등 8종은 커튼·카피트 등에 防災處理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除外했으며, 호텔·劇場·카바레·病院 등 7종의 火災취약 대상은 계속 규제하기로 했다.

또 단순한 煤房을 목적으로하는 學校·一般住宅등의 危險物 取扱所와 揮發油 1,000ℓ, 輕油·燈油 5,000ℓ, 병커C油 20,000ℓ 등 소량을 취급하는 危險物 貯藏所에는, 危險物 取扱主任을 선임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고, 工場 등의 危險物 臨時 貯藏使用 期間을 10日에서 60日로 연장 長期工事의 불편을 해소시켰다.

내무부는 이와 함께 建築許可 消防 등의 대상에서 一般住宅을 제외하고, 建設竣工檢查節次中 消防施設 竣工同意를 받게 했던 것을 消防施設 完工檢查畢證 교부로 대체키로 했으며, 共同 防火管理 對象建築物을 높이 15m(5층) 초과에서 30m(10층) 초과로 완화했다.

接道區域 建築制限行爲 크게 완화

건설부-새부지침을 마련

3월 7일 건설부가 새로 완화한 「接道區域中 制限區域內의 行爲에 관한 細部指針」에 의하면, 허가를 받아 할수 있는 행위를 종전의 10종에서 30종으로 확대하고, 허가없이 할수 있는 행위를 종전의 4종에서 21종으로 크게 확대했다.

接道區域은 장래 도로확장을 위한 공간확보와 도로 보호, 도로면 미화, 위험 방지등을 목적으로 66년에 지정됐다. 접도구역은 금지구역과 제한구역으로 구분되며, 禁止區域내에서는 행위가 금지되며 制限區域내에서는 허가를 받아 행위를 할 수 있다.

高速道路의 경우 接道區域은 경계로부터 양측 각각 50m폭이며, 양측 각 30m는 禁止區域, 나머지 20m는 制限區域이다. 國道·地方道·郡道는 양측 각각 20m 이내가 接道區域, 이 중 15m 이내는 禁止區域, 나머지 5m 폭은 制限區域이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은 制限區域내에서의 행위를 완화한 것으로 주요 신설사항은 다음과 같다.

■ 建設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가능한 행위

▲ 土地의 形質變更 행위로서 ① 公益事業 시행으로 인한 土石의 채취 및 매립, ② 砂防사업

▲ 建築物 기타의 工作物을 新築·改築 또는 増築하는 행위로서 ① 기존주택을 동일대지·동일 건축면적 안에서 원형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지붕·대들보·벽체등의 보수 ② 건축면적의 1/2이내가 제한구역에 저축되는 住宅의 신축·개축·증축, ③ 높이 1.4m미만의 담장 및 축대의 설치, ④ 기존주택 부속건물의 상호 용도변경 행위, ⑤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상수도 사업, ⑥ 제방축조

■ 許可없이 可能한 행위

▲ 土地의 形質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① 밭과 논 의 용도를 서로 바꾸는 행위, ② 농업용 분뇨장 설치, ③ 채소·연초 및 원예용 비닐하우스 설치

▲ 建築物·기타의 工作物을 新築·増築·改築하는 행위로서 ① 주택의 내부를개조 또는 수리하는 행위, ② 외장을 변경하거나 도장미화하는 행위 등

서구식 永久 賃賃住宅制度 도입을 촉구

— 국토개발연구원 연구보고 —

3월 9일 國土開發研究院은 「임대주택의 필요성과 공급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대도시 중심으로 대량의 賃賃住宅 需要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 영구적인 西歐式 賃賃住宅制度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이 보고서는 서구식 임대주택제도의 육성 이유로 ▲ 自家住宅에 대한 상대적수요를 억제하여 住宅價格의 安定化를 기하고 ▲ 현행 임대주택 제도에서 지불되고 있는 거액의 保證金이 私債市場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점차 月賃제도로 대체하여 遊休資金을 制度金融으로 흡수하며 ▲ 賃賃住宅 産業은 建設業·金融業은 물론 유지 및 관리에 따르는 파급 고용 효과가 높다는 점등을 들었다.

그러나 임대주택 供給者의 利潤保障과 需要者의 負擔能力간의 격차가 임대주택산업 육성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분석하고, 이의 해소를 위해 政府의 지원과 보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賃賃住宅産業은 마땅히 민간에 의해 주도돼야 하나 無住宅 零細民層의 주택난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 부문에서도 영구 임대주택을 공급해야한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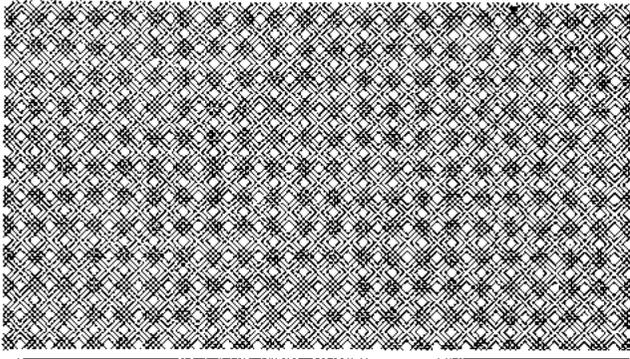
建設工事受注 6% 감소-80년도

建築部門은 전년대비 23%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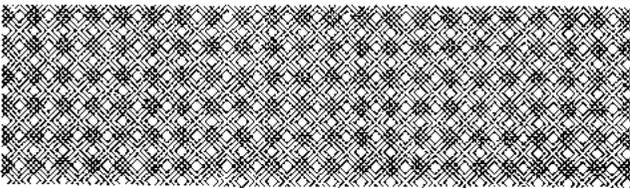
3월 10일 경제기획원이 국내 170개 대규모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80년도 建設工事 受注動向에 의하면, 이들의 工事受注 總額은 전년대비 6.1%가 감소된 20,623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번 조사에 불포함인 170개 업체 이외의 受注分(약 55%)을 감안하면 80년도의 總受注額은 약 45,829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했다.

조사대상업체의 연간 수주액 26,023억원을 發注者別로 보면 公共部門은 전년대비 23.0% 감소, 民間部門 31.2% 증가, 國內外國機關 154.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工事種別로 보면 建築이 전년대비 23.7% 증가, 土木이 28.9% 감소하였는데, 建築 部門을 더욱 세분해 보면 住宅 20.4% 증가, 事務所·店舖 31.3% 증가, 官公署·學校·病院 45.0% 증가한 반면, 工場 및 倉庫는 23.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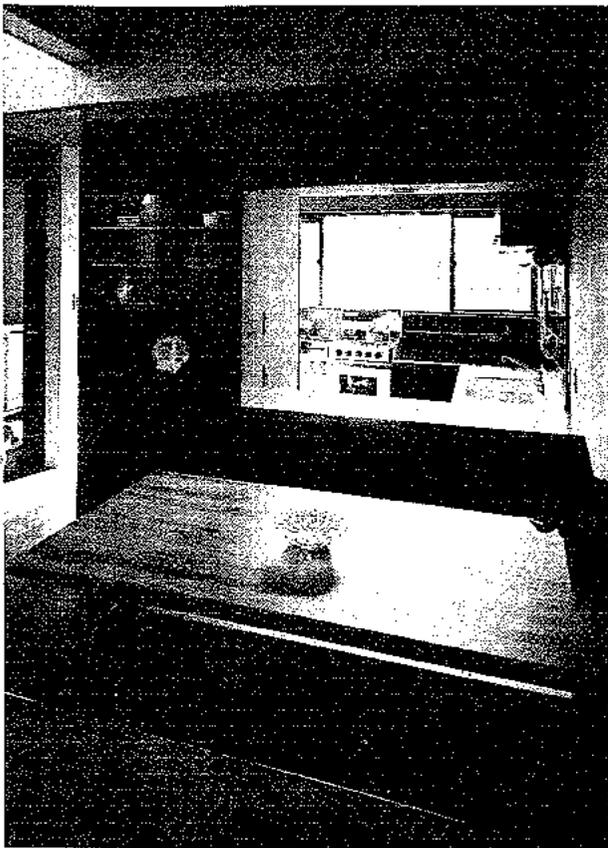


建築行政相談



1981. 2. 10 ~ 3. 10

相談時間 : 매주 월요일~금요일 오후 1시부터 3시
相談電話 : 72-7653, 7685



— 建築法에 관한 事項 —

문 1 : 상업지역내 2종미관지구의 대지 100평에 가설건축물 건축이 가능한지요.

답 : 도시계획 예정지에는 가건축이 가능하나 도시계획에 저촉되지 않고 건축법에 저촉되지 않고 건축법에 적합한 대지의 가건축규정은 없고 본건축을 하여야 합니다.

문 2 : 상가아파트는 현행법상 건축이 가능합니까?

답 : 가능합니다.

문 3 : 경사진 도로가 있을 경우 3면은 지표면으로 3면지 2이상 들어가 있고 도로에 면한 부분은 완전노출되었을 경우 지하층으로 볼수 있는지요.

답 : 3면중 1면이 지상으로 노출되었을 경우 지하층으로 볼수 없습니다.

문 4 : 2필지의 대지중 1필지를 공대지로 사용승락을받아 건축할 수 있는지요.

답 : 일단의 토지는 지적법상의 1구획지변을 말하며 건폐율을 적용하기 위해 사용승락을 받아 건축할 수 없으며 한 필지를 합병하던가 2필지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문 5 : 대지면적 1,000평에 정구장을 설치하고 8평 정도의 휴게소를 설치코자 하는데 신고로서 처리가 가능합니까?

답 : 휴게소 건축은 신축임으로 허가를 받아 건축할수 없습니다.

문 6 : 공단의 건폐율은 얼마로 적용해야 되는지요.

답 :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 지구에 따라 건축법 제39조 규정을 적용합니다.

문 7 : 피난상의 지하실로 4면중 1면의 일부가 외부와 직접연결되도록 지발을 낮췄을때 인정되는지요.

답 : 4면중 1면의 1M가 노출되었어도 피난상의 지하실로 볼 수 없습니다.

— 建築法 施行令에 관한 事項 —

문 1 : 로타스케이트장은 건축법시행령 부표에서 어느 용도로 분류하는지요.

답 : 건축법 시행령 부표14에 의거 위락시설중 유기장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문 2 : 주거지역내 건축물을 건축할 때, 옥탑이 건축면적의 1/8미만인 경우에도 일조권 규정에 저촉을 받는지요.

답 : 건축법시행령 제167조 제 1항 단서에 의거 별제 3조 제 1항 제 5호규정에 의하여 높이에 산입되지 아

니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일조권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 3 : 대지 47평중 25평만 소유하고 있는데 분할하여 건축할 수 있습니까?

답 : 대지면적은 27평이상이어야 분할이 가능하며 건축은 공동으로 신청하여 건축할 수 있습니다.

문 4 : 아파트 지구내의 대로도변에 판매 시설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까?

답 : 도로쪽에 따라 일조권을 적용하지 않고 지역지구에 의거 결정되므로 현재로서는 주거지역내 적용하여 일조권을 적용하여 건축하여야 합니다.

문 5 : 판매시설을 계획시 연면적 4,500m² 라면 건축선에서 얼마 띄우며 그 일부가 판매시설이라도 마찬가지로 인지요.

답 : 기본 3m에 연면적 1,000m²상 1m씩 초과하므로 8m이며 당해용도로 쓰이는 면적 1,000m²초과마다 1m씩 초과됩니다.

문 6 : 건물에 있어서 지하실의 식당과 기계실을 용적율 산정과 주차장 산정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요

답 : 용적율 산정에서는 식당은 산입하고 기계실은 제외하여야 하고 주차장 산정에 있어서는 기계실 식당을 전부 산입시켜야 합니다.

문 7 : 주거지역으로서 30미터 도로면에 위치한 토지인데 300평 사무실허가가 가능한지요.

답 : 12m이상 도로면 길가지역에서는 업무시설 건축이 가능합니다.

문 8 : 대지 14평을 소유하고 있는데 주거지역으로서 건축허가가 되는지요.

답 : 주거지역의 대지면적 최소한도가 27평인바 지역지구 지정 이전에 기허 분할되었거나 27평 이상으로 대지면적 최소한도 규정이 제정 이전에 분할되었으면 7할인 20평까지 허가되므로 14평은 건축 불가합니다.

문 9 : 2개이상 직통계단 설치규정중 제 3호에 제기한 내 용에 200m² 란 3층 이상의 층 바닥면적 합계를 말 하는 것인지 1개층 바닥면적인지요.

답 : 3층 이상의 층중 1개층 바닥면적을 뜻하는 것입니다.

문 10 : 3층은 주택이고 1~2층은 의원시설인데 직통계 단을 설치하여야 하는지요.

답 : 건축법 시행령 105조 규정에 의거 3층부분 주택이 200m² 이상인 경우는 직통계단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문 11 : 점포를 주택으로 용도변경코쳐하는데 허가를 받아

야 하는지요?

답 : 건축으로 봐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문 12 : 건축물 1층의 피로티구조에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바닥면적에 제외되니까?

답 : 피로티구조부분에 공중의 통행에 전용될 경우에만 바닥면적에서 제외됩니다.

문 13 : 25M도로(동서)에 접한 대지의 정북방 향은 일조 권등을 위한 높이제한 규정을 받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답 : 25M 동서도로에 접한 대지의 정북방향은 동규정의 제한을 받습니다.

문 14 : 자연녹지지역내에서 전폐율과 용적율은 각각 얼마 인니까?

답 : 전폐율은 20% 용적율은 60%입니다.

문 15 : 기존 4층 건물에 2개층을 증축코자 하는 바 지하대피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지요.

답 : 기존건축물의 건축년도가 73년이전이면(지하층 규정신설이전) 수직증축은 지하층을 증가시키지 않고 건축 가능합니다.

문 16 : 영동지역의 상업지역 전폐율은 얼마인가요?

답 : 상업지역 전폐율은 최고 60%입니다.

문 17 : 화재로 손실된 목조건물을 규모가 같게 조적조로 지을때 재축에 해당하는지요.

답 : 형태 및 구조변경이므로 시행령 제 2조에 의한 신축으로 간주합니다.

문 18 : 주용도가 공장인데 이중부속 사무실을 쓰고 있는 부분을 공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허가없이도 가능합니까?

답 : 건축허가를 받아야 변경 사용할 수 있습니다.

— 建築條例에 關한 事項 —

문 1 :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설치 기준적용시 복합용도 인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답 : 해당용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후 합산한 주차대수로 적용합니다.

문 2 : 옥외주차장 비율은 50%이상으로 해야 합니까?

답 : 고층건축물 규제방안에 의한 전폐율 이하인 경우에는 옥외주차장 비율은 25%이상, 국제방안에 의한 전폐율이상인 경우에는 50%이상을 옥외에 설치 하여야 합니다.

(고층건축물 규제방안에 따로 전폐율은 4대문 내 간선도로변은 40% 간선도로변 이외는 45% 기타 지역은 50%임).

문 3 : 주차장 연면적 설정시 기계실이나 창고등의 면적을 제외하는지요.

답 : 주차장 면적산정에 있어서는 주차장 자체면적만 제외되고 기계실이나 창고등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을 산정 합니다.

문 4 : 2종미관지구와 4종미관지구가 교차되는 각각부분의 대지에는 2종, 4종중 어떤 기준을 적용합니까?

답 : 미관도로가 교차되는 지점의 건축제한은 대지의 형태상에 따라 주전면도로를 기준한 건축조례를 적용하면 됩니다.

문 5 : 미관도로와 후면도로가 고저차가 심한경우 건축물의 층수제한은 어느 도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지요.

답 :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목적은 주변환경과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미관도로변을 기준으로 하여 건축물 층수 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문 6 : 서울시 건축조례중 식재밀도에 관한 규정은 대지면적에 따른 기준인지 조경면적에 관한 기준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답 : 조례에서는 조경면적 1m² 당 교목 0.3본이상 관목 0.4본 이상을 식재토록 되어있습니다.

문 7 : 강북지역에서 억제한 목욕탕, 여관을 주거지역에서 건축허가 할 수 있는지요.

답 : 주거지역에서 여관은 12m도로에 인접 대지로서 가능하며 목욕탕은 건축법상 저축이 없으면 가능합니다.

문 8 : 영등포구 영등포동 571번지 상대지 45평으로 2종미관지구인데 현재 기존건축물이 노후된 건축물로서 대수선허가를 받을수 있는지요.

답 : 시청건축지도과에서 미관심의를 받은 후 대수선허가를 받을수 있습니다.

문 9 : 예식장계획에 있어 객실에 출입문의 수는 몇 개로 하여야 합니까?

답 : 예식장 영업허가 기준에 건물 전체의 출입구도 2개이상 각 객실의 출입문도 2개이상으로 하여야합니다.

문10 : 잠실에 예식장 허가가 가능합니까?

답 : 예식장의 면적이 450평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문11 : 건축계획시 옥외주차장 비율은 얼마나 하여야 합니까?

답 : 원칙은 주차대수의 50%이상을 옥외에 설치하여야 하나, 4대문내 간선도로변은 40% 4대문내 간선도로변 이외지역은 45%, 기타 서울시 전역에서 50

%이하의 건폐율로 할 경우는 25%이상의 주차 대수를 옥외에 설치하면 가능합니다.

문12 : 풍치지구내에서 건축물 높이는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답 : 건축물은 2층을 초과하거나 8M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2층 건축물로서 지형상 부득이한경우는 높이를 10M까지 할 수 있습니다.

문13 : 2종 미관지구내에 현재 공사중인 용도 점포, 사무실을 예식장으로 변경가능합니까?

답 : 반경 5km이내에서는 예식장 신규허가는 받을 수 없으나 도시계획시설에 저축되어 철거되어 이전할 경우는 가능합니다.

문14 : 주차장법 관리조례중 옥외주차비율이 25%인지 또는 26%인지요.

답 : 주차장법 시행령 서울시 조례에는 옥외주차비율을 50% 이상이나 인구억제책에 의한 소정의 건폐율 이하로 건축할시는 26%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문15 : 상기용도의 경우 서울시 주차장 조례중 주택부분을 제외한 면적에 대하여만 주차장 대수를 산정하여야 하는지요.

답 : 주택을 포함한 연면적에 대하여 주차장 대수를 산정하여야 됩니다.

문16 :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이 복합된 건축물에 주차장 대수 산정시 어떻게 하는지요.

답 : 근린생활 시설이나 업무시설에 대한 주차장 설치 기준이 같으므로 건축연면적 150m² 당 한대의 비율로 산정해야 됩니다.

문17 : 요근래 주차장확보 규정이 변경된 내용은?

답 : 근린생활시설 용도 건축시 주차장정비지구내에서 150M당 1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문18 : 주차장 설치시 89평대지인데 모두 옥내에 계획하여도 되나요.

답 : 주차대수의 26%이상은 옥외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문19 : 건물의 용도가 1, 2층은 의원 3층주택일 경우 주차장은 어떤 비율로 설치하는지요.

답 :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근린생활 시설(의원)도 주차장정비지구내에서는 150m² 당 1대의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문20 : 종로구 창신동 주거지역내 주차장 정비지구일때 주차장 설치면적은?

답 : 기타 건축물이므로 150M²/1대.

문21 : 강북 4대문 내 상업지역 건폐율은?

답 : 50% 이하.

문 1. 건축물 이력표찰을 부착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모두 적용하는지요.

답 : 건축물표찰은 단독주택, 연립주택, 병용주택, 아파트에 한하여 준공시에 부착토록 되어 있습니다.

문 2 : 강서구 신정동 754번지 「화물터미널부지」지목이 “담”인 경우 건축허가가 가능한지요.

답 : 도시계획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시행허가를 득하시면 지목에 관계없이 건축이 가능합니다.

문 3 : 영동상업지역인데 시장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 : 시장은 도시계획법에 의거 도시계획 시설 결정 및 시행허가를 득한후 시장용도로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문 1 : 지목이 임야인 400평 대지상에 교회건축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답 : 일반적으로 형질변경 허가를 득하여 지목을 '대지로 변경, 건축허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문 5 : 판매점, 또는 휴게소건물은 열손실 방지조치를 하여야 됩니까?

답 : 근린생활시설은 열손실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나 휴게소는 관계없습니다.

문 6 : 일부완공된(7층 중 2층)부분에 대하여 가옥대장 등재가 가능한지?

답 : 일부완공부분에 대하여는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할 수 없어 가옥대장 등재가 불가하나 가시용 증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 7 : 연립주택 3층 허가가 가능한지요. 따라서 대지면적 최소한도는 얼마인가요.

답 : 3층의 연립주택허가가 가능하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용도지역지구에 적합하면 가능합니다.

문 8 : 동자동 재개발지구내에 건축시 참고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답 : 기구단위로 건축계획을 수립하는데 토지소유자 2/3 이상, 대지면적 2/3 이상 동의를 득하면 건축계획을 수립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신청을 하여 인가되면 건축허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문 9 : 전시용 식물원 수족관을 건축하고자 하는데 열손실 방지조치를 하여야 합니까?

답 : 전시 시설중에서 전시장만 열손실 방지조치를 하도록 되었으므로 식물원, 수족관은 법적으로 조치하도록 규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문10: 기숙사 건축시 종합건축사무소의 감리를 필요로 하는가요.

답 : 종합건축사무소만의 감리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1. 공동주택
2. 건축법 3조 1항에 해당하는 국민주택(분양 또는 임대면적)입니다.

문11: 태양열 주택 건축시 어떤 혜택을 받을수있습니까?

답 : ○용자를 받을수 있고
• 세제상의 혜택(취득세, 등록세면제)
• 주택 채권매입을 면제 받을수 있습니다.

문12: 지역지구가 걸쳐 있을때 어떻게 적용합니까?

답 : 과반이상이 포함되는 지역지구에 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하며 다만 상업지역이나 미관지구인 경우는 도로에 띄 모양으로 된 일단의 대지는 상업지역이나 미관지구에 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문13: 성수동에 기존공장인데 증축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입니다.

답 : 공장은 수도권내에서는 공업재배치 계획법에 의거 증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문14: 서울에서 주택건축시 최대건축면적은 얼마이며 대지면적의 최대한도는 얼마입니까?

답 : 대지면적은 250평 건축물의 연면적은 150평 이하입니다.

문15: 9평미만의 증축신고는 어떻게 하는지요.

답 : 3평이하의 증축은 관할 동사무소에 3평에서 9평까지와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는 관할구청에 신고하시면 담당직원의 현장답사후 처리됩니다.

문16: 주택 표준설계도를 구입하여 건축하고자 하는 바 수속절차는 어떻게 하는가요.

답 : 각 구청 건축과에서 표준설계도를 유형별로 보관하고 있으므로 그중 마음에 드는것을 골라 1,000원에 구입한 후 배치도를 작성하고 소유권 증빙서류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문 17: 공동주택인데 주차장 대수산정 규정은?

답 : 공동주택은 250m² 당 1대이고 상업지역인 경우는 200m² 당 1대입니다.

문18: 연립주택을 시공코져 할 경우 3층이 가능한지요?

답 : 주택건축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연립주택이 3층까지 가능합니다.

문19: 착공신고시 건설업자 선정보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요.

답 : 건설업자 선정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문20: 건축허가시 제출하는 서류를 알고 싶어왔습니다.

답 : 대지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허가신청서 정 부분도면(배치도, 안내도등 포함) 등을 제출합니다.

— 其他規程에 關한 事項 —

- 문 1 : 건축물 이력표찰을 부착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모두 적용하는지요.
 답 : 건축물표찰은 단독주택, 연립주택, 병용주택, 아파트에 한하여 준공시에 부착토록 되어 있습니다.
- 문 2 : 강서구 신정동 754번지 「화물터미널부지」 지목이 “담”인 경우 건축허가가 가능한지요?
 답 : 도시계획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시행허가를 득하시면 지목에 관계없이 건축이 가능합니다.
- 문 3 : 영동상업지역인데 시장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 : 시장은 도시계획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시행허가를 득한 후 시장용도로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 문 4 : 지목이 임야인 400평 대지상에 교회 건축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답 : 일반적으로 형질변경 허가를 득하여 지목을 대지로 변경 건축허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문 5 : 판매점 또는 휴게소 건물은 열손실 방지조치를 하여야 됩니까?
 답 : 근린생활시설은 열손실 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나 휴게소는 관계없습니다.
- 문 6 : 일부완공된(7층 중 2층) 부분에 대하여 가옥대장 등재가 가능한지?
 답 : 일부완공부분에 대하여는 준공접사필증을 교부할 수 없어 가옥대장 등재가 불가하나 가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문 7 : 연립주택 3층허가가 가능한지요. 따라서 대지면적 최소한도는 얼마인가요.
 답 : 3층의 연립주택허가가 가능하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용도지역지구에 적합하면 가능합니다.
- 문 8 : 등자동 재개발지구내에 건축시 참고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답 : 가구단위로 건축계획을 수립하는데 토지소유자 2/3이상, 대지면적 2/3이상 동의를 득하면 건축계획을 수립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신청을 하여 인가되면 건축허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문 9 : 전사용 식물원 수족관을 건축하고자 하는데 열손실 방지조치를 하여야 합니까?
 답 : 전시시설중에서 전시장만 열손실 방지조치를 하도록 되었으므로 식물원, 수족관은 법적으로 조치하도록 규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 문10 : 기숙사 건축시 종합건축사무소의 감리를 필요로 하

는가요.

- 답 : 종합건축사무소만의 감리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1. 공동주택
 2. 주택법 3조1항에 해당하는 국민주택(분양 또는 임대면적)입니다.
- 문11 : 태양열 주택 건축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 : 용자를 받을 수 있고, 세제상의 혜택(취득세, 등록세 면제), 주택채권 매입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문12 : 지역지구가 걸쳐 있을때 어떻게 적용합니까?
 답 : 과반이상이 포함되는 지역지구에 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하며 다만 상업지역이나 미관지구인 경우는 도로에 띄 모양으로 된 일단의 대지는 상업지역이나 미관지구에 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 문13 : 성수동에 기존 공장인데 증축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입니다.
 답 : 공장은 수도권내에서는 공업재배치 계획법에 의거 증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 문14 : 서울에서 주택건축시 최대건축면적은 얼마이며 대지면적의 최대한도는 얼마입니까?
 답 : 대지면적은 250평 건축물과 연면적은 150평 이하입니다.
- 문15 : 9평미만의 증축신고는 어떻게 하는지요.
 답 : 3평이하의 증축은 관할동사무소에, 3평에서 9평까지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는 관할구청에 신고하시면 담당직원의 현장답사후 처리됩니다.
- 문16 : 주택 표준설계도를 구입하여 건축하고자 하는바 수속절차는 어떻게 하는가요.
 답 : 각 구청 건축과에서 표준설계도를 유형별로 보관하고 있으므로 그중 마음에 드는것을 골라 1,000원에 구입한 후 배치도를 작성하고 소유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문17 : 공동주택인데 주차장 대수산정 규정은?
 답 : 공동주택은 250m² 당 1대이고 상업지역인 경우는 200m² 당 1대입니다.
- 문18 : 연립주택을 시공코져 할 경우 3층이 가능한지요?
 답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연립주택이 3층까지 가능합니다.
- 문19 : 착공신고시 건설업자 선정보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요.
 답 : 건설업자 선정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

慶南 會員 □ □ □

모든 分野가 漸漸 細分化되고 專門化되어가는 現時點에서 特別히 다른 分野와 달리 建築界는 더욱 尤甚하여 이에 隨伴되는 諸般法令이 隨時로 改廢되는 現實에서 우리 建築士들은 이에 敏捷하게 能動的으로 対処해 나가야 우리의 權益과 法益을 伸張할 수 있다고 思料되어 다음과 같은 事項을 協會에 懇曲히 建議합니다.

1. 斯界의 重鎮이나 法에 造詣가 깊은 有能한 人士를 招聘委嘱하거나 法律知識이 該博하고 經驗이 豊富한 會員으로하여금 諸般建築關係法令을 研究分析하여 當局의 法令改廢時에 이를 反映토록 해야 하겠읍니다.

2. 各種 法令의 改廢結果의 迅速弘報方法을 講究하고 이를 編纂하여 會員에게 配布해야 합니다.

上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協會內에 既存 各種 委員會와 對等한 關係法令研究委員會(假稱)를 設置하여 運營함이 會員의 法益을 圖謀할 수 있는 捷徑이라고 생각합니다. 勿論 人力·予算上의 隘路가 있으리라고 充分히 理解는 갑니다마는 우리 業界의 實情에 符合되지 않는 法令改廢가 있다고 假定할 때 그로 因한 被害에 比하면 鳥足之血이라고 생각되기에 敢히 苦言을 하는바입니다.

서울 會員 □ □ □

建築士 協會 會員으로서 讀者의 소리欄을 新設해 주신 데 대하여 任員관계자께 感謝를 드리는 바입니다.

月刊 建築誌로서 協會 會員뿐 아니라 건축계 전반에 기여하는 비중은 지대 하리라고 사료 되읍니다마는 더욱 더 發展의 소지를 갖기 爲해서는 개선되고 보완 되어야 하는 點도 없지는 않다고 生覺되어 이 欄을 통해서 감히 다음과 같은 建議을 하는 바입니다.

첫째는 建築士誌가 發行되어 讀者들이 받아보는 날자가 너무 늦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요즈음엔 많이 개선 되었다고 느껴지지만 建築士誌를 讀者가 받아볼 수 있는 것이 發行日로부터 한달정도 늦게서야 읽을 수 있으니 매늦은 冊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 最小한 每月 10日 안으로 받아 볼 수 있도록 努力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둘째는 建築士誌가 協會 會員뿐만 아니라 建築에 관계되는 여러사람들이 建築에 관한 專門誌나 그외의 이렇다할 冊字를 읽힐 기회가 없으며 새로운 建築情報나 建築作品을 가까이 하므로써 建築人들이 建築士를 理解하고 親近感을 갖는데 많은 도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 되어 本誌의 求讀門戶를 開放했으면 합니다.

셋째는 本誌에 기고되는 作品에의 創作意慾을 돋우고 色象에 대한 認識을 높이기 爲해서 本誌를 漸次的으로, 差別化 하는 點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째는 協會 運營에 대한 技術指導 事項에 대해서 느끼는 點은 隨時로 바뀌는 法規 條例 規則과 各 地方마다 相異한 添附 書類 其他 모호한 部分이 많아 建築許可 관계로 時間的 經濟的 浪費뿐만 아니라 建築士의 權益을 보호하고 品位를 損傷하는 일이 없도록 通判적인 審議 部署를 두어 제안서류를 먼저 檢討한 뒤에 관계부처에 書類를 提出토록 하여 建築士事務所에서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수 있다면 좋을듯 합니다.

다섯째는 合同事務所 綜合事務所 단독建築事務所 中에서 단독 建築事務所만이 단독 住宅을 設計할 수 없도록한 條例를 挽回하여 주도북 關係部處에 建議하여 合同事務所와 단독事務所가 겪는 고충을 同時에 解消하여 建築人이 긍지를 갖고 所信것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하여야 할 것입니다.

釜山 會員 □ □ □

國家에서 福祉社會建設에 역점을 두고 있는 現時點에서 우리는 일심단결하여 協會에서 主導하는 福祉方向에 따라야 할것이라고 봅니다. 協會에서도 先導的인 制度를 着想하여 施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늦게나마 協會에 마련한 會員 福祉年金會를 만들어 주신데 대하여 協會의 한사람으로서 感謝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當부하고져 하는 것은 善良하고 誠實한 會員을 保護하기 爲하여 非理會員이 發生時 보다 強力한 制裁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各種 法이 改定되면 迅速히 編纂 配布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協會를 爲하여 수고하시는 全 任員에게 感謝 드립니다.

濟州 會員 □ □ □

會員의 한사람으로써 讀者의 소리欄을 新設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다음 2가지 사항을 建議하고자 합니다.

工事 監理團 構成에 對하여는 士法 및 關係法規가 建築 구미에 맞게 改定이 된다면, 모르되 現行 제안法規下에서는 바람직한 着想이라고 사료되며 運營上에 多大한 난점이 있고, 福祉年金制度 持續 如否는 當初 잘 進行될 것이라고 多數 會員이 부푼꿈을 갖고 큰 기대를 걸었으나 制度上의 問題로 因한 서울 支部와 釜山支部와의 意見 격차는 해산위기에 봉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制度自体를 定款에 삽입하여 運營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建築計劃과 省에너지

“에너지”라는 낱말은 말할 필요조차 없이 누구나가 절실하게 그 어떤 공감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면서 또 누구나가 무관심하게 잊어 버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좋은 자연의 혜택을享有하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극성스러운 정도로 학계며, 연구기관이며 기업체등 거국적으로 야단법석인데 우리에게 현실은 조용한 땅각속에 파묻혀 있는 잠마저 드는 것은 소심한 기우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기에 옮기는 글은 일차 오일쇼크 후인 1975. 11. 空氣調和衛生工学会(日本) 會誌의 내용중에서 건축계획에 관하여 논술한 伊藤直明氏(東京都立大学)의 글을 옮겨 參考가 되기를 바라는바입니다.

建築計劃은 元來 自然을 無視할수 없다. 自然을 利用하고 自然을 遮斷하고 自然과 調和된 建築이야말로 省에너지에 이어지는 無理없는 建築이다.

設備의 進歩에 滿足한 나머지 이와같은 基本을 忘却한 建築計劃이 에너지의 多消費를 招來하고 있는 現狀을 돌이켜보고 建築自體의 省에너지의 必要性을 檢討해 보고져 한다.

또 建築의 省에너지를 생각할 때 單純히 完成된 建築의 消費에너지의 節約뿐만 아니라 이 建築을 構成하는 部材의 製造에너지까지 함께 考慮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1. 첫째로 建築物에 있어서 消費되는 에너지는 暖冷房을 비롯하여 照明, 給排水, 給湯, 換氣, 搬送等 여러 갈래에 이르지만 可及의 적은 에너지의 消費로서 要求하는 居住環境을 達成되도록 努力하는 것이 設計者로서의 使命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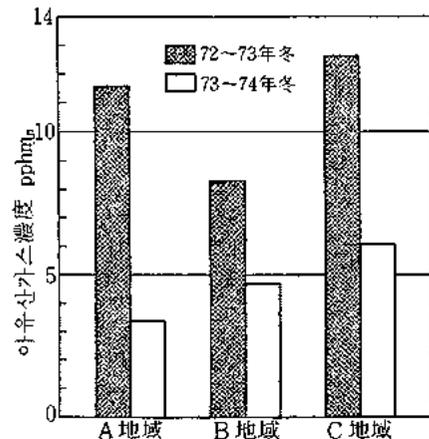
元來 建築物은 自然에 처치고 自然의 힘을 利用하도록 考案된 것이었는데, 近年에 設備技術의 두드러진 發達은 建築設計者에게 그와같은 努力을 忘却시켜 建築 FASHION의 경쟁에 줄나름 치게한 結果를 招來하였다 고도 말할수 있다.

FIX된 큰 유리窓을 通하여 쏟아져들어오는 日射를 받아들이면서 強引하게 冷房을 하기도 하고 人工照明에 無理하게 依存한 나머지 그로 因하여 負荷의 顯著한 增大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를 無關心 하면서 이루어지는 建築의 設計가 얼마나 많이 관을 치고 있는 現實인가?

이와같은 에너지의 多消費는 單純히 에너지의 問題에만 그치지 않고 空氣汚染, 熱汚染等 過密都市의 環境惡化에도 連關된다는 것을 認識하지 않으면 안된다.

石油危機에 따르는 暖房의 節約이 빌딩密集地域의 空氣汚染 濃度를 顯著히 低下시킨 結果를 나타낸것은 이를 잘 證明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圖-1)



(그림 1) 빌딩密集地域에서의 冬期 亞硫酸가스 實測例 (石油危機가 있었던 1973~1974年 冬期和 前年 同期間의 比較, 東京丸の内)

그런데 建築物에 있어서 에너지 消費는 直接的으로는 거기에 裝置되는 設備 SYSTEM과 그 運用에 따르겠지만 本質적으로 建築 그 自體의 바탕과 具備하여야 할 性能에 따르는 것이다.

따라서 設備의 省에너지 手法을 생각함에 있어서 建築計劃全體에 거슬러 가서 “省에너지”라는 FACTOR를 생각하여 나가는 것이 重要하다.

2. 建築計劃에 있어서 省에너지...自然의 調整, 利用 建築에 있어서의 省에너지는 우선 基本的으로는 自然에 대한 調整과 利用이라는 것이다. 自然條件中에 놓이는 建物이 維持, 管理되어가기 爲해서는 必要한 에너지는 敷地條件, 建物의 形狀, 建物을 構成하는 部材와 SYSTEM에 따라 左右되는 것이다.

특히 太陽의 熱과 빛, 外氣溫度, 바람등의 自然要素를 어떻게 받아들여 또는 어떻게 遮斷하는가 하는 것이 建築計劃에 있어서의 省에너지 手法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建築적으로 考慮될 省에너지 手法으로서 檢討해야 할 要素를 든다면 表-1과 같다. 이들 要素는 本來

建築計劃中에 當然히 考慮되야 할 事項이고 또는 建物の 外皮가 지나야 할 性能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만 構造的(輕量化), 工法的要求(PREFAB化를 위한 單純化, 輕量化), 工濟的要求(INITIAL COST의 DOWN)或은 意匠的인 面에서의 要求가 優先하여 그것때문에 居住環境性能의 低下를 부르고 이것을 모두 設備에 依存하는 傾向이 一般化되어 에너지에 無關心한 建築을 낳는 結果로 되었다고도 말할수 있다.

(表 1) 建築的으로 考慮될 省에너지 手法.

對象	檢討하는 項目, 手法	目的
敷地	植栽	日射調整 再輻射防止
建物形狀	形態 方向 色	日射, 바람의 調整 日射, 바람의 調整 日射, 輻射의 調整
建物構成 部 材	斷熱性 熱容量	伝導負荷의 輕減 PEAK負荷의 輕減 室溫변동의 調整
	窓面積	日射調整, 伝導부하輕減 自然採光
	氣密性	間隙風 輕減
	日射차폐 (채양)	日射調整
	日射集中 (태양열 이용)	暖冷房에너지源
	日照調整 (採光)	自然照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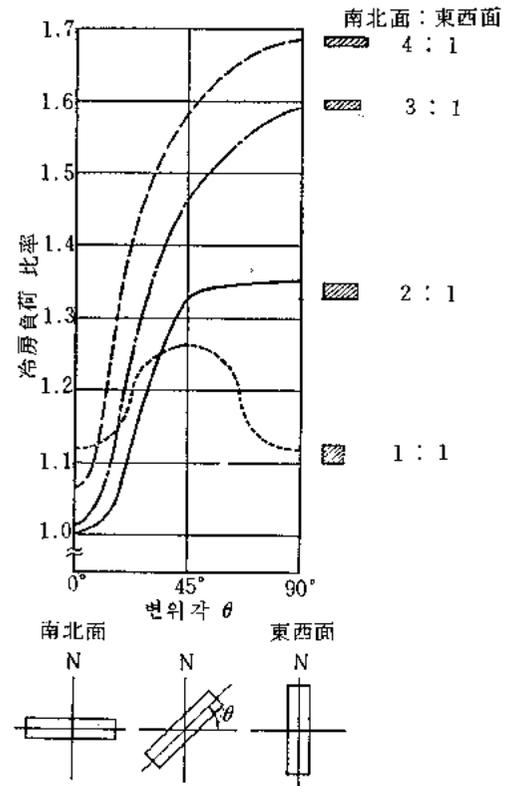
따라서 “省에너지”라는 要素를 넣어서 建築計劃을 進行한다고 하면 上述한 것과 같이 諸要求에 對한 制約을 두어 制動裝置를 명확하게 하여두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1) 建物の 形態, 方位를 어떻게 잡느냐 하는 것은 建築計劃의 基本이지만 이를 取하는 方法에 따라서 에너지 消費가 크게 變하게 된다. 圖-2는 某 BDG.의 計劃에 있어서 建物の 形態와 方位가 冷房負荷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比較한 試算例子이다(日建設計에 의한 試算例).

이에 따르면 같은 長方形의 건물이라 할지라도 FACADE가 南北面에 있는 것이 東西面에 있는것보다 負荷가 적은것이 明確하며 특히 同一바닥面積으로 FACADE面積이 크게되면 그 輕減이 두드러지는 것을 나타낸다. 이와같이 省에너지를 생각할 경우 敷地條件에 建物の 形이며 方位의 검토의 自由度가 있다면 우선 거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必要性이 있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2) 斷熱性

建物外皮의 斷熱性能은 直接에너지 損失에 關係되는 것이기 때문에 建物の 省에너지를 생각할때 먼저 取할 수 있는 것이다. 歐米諸國에서는 石油危機後 建物の 斷熱性에 關한 基準値를 大幅的으로 改正하여 에너지消費를 抑制하는 곳이 많다.



(그림 2) 建物の 形狀, 方位에 따르는 冷房負荷의 比較(같은 長方形의 建物일지라도 FACADE가 南北面쪽이 東西面보다 冷房負荷가 顯著히 적다)

斷熱性を 높이면 에너지節約(内部發熱이 많은 건물에서는 冷房일 경우는 逆效果)에 이어지지만 同時に 室内氣候計劃上의 效果도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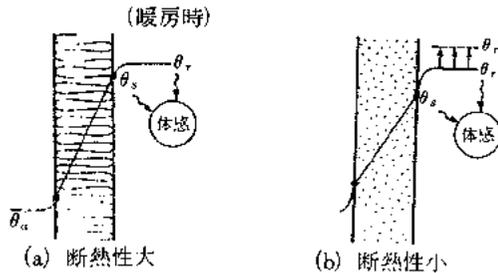
即, 室内의 居住者의 溫熱感에는 溫度, 濕度, 氣流, 周壁溫度의 4要素가 關係되고 있는 것은 알고있는 일이지만 현재의 空調技術로는 前3者의 調整에만 그치고 周壁溫度에 對해서는 별 妙策없이 내버려둘 따름이다.

現實로는 그 때문에 不快感을 招來하는 例는 적지않다. 예를들면 日射에 의하여 加熱된 地盤SLAB나 外壁, 吸熱유리窓面, 或은 그 逆으로 冷却된 面에 의한 不快感등이다. 또 극단적인 예이지만 夏節의 炎熱下의 자동차내에서는 外周의 鋼板이 달아서 아무리 冷房이 되어있다 손치드라도 통상의 냉방실은으로서로는 만족스럽지 않고 室溫을 극도로 낮추는 結果로 되어 그 때문에 냉방병으로 몸의 條件을 나쁘게 하는 일은 종종 들게 되는 일이다.

이와같은 點에서도 적어도 斷熱性を 향상시키는 등으

로 表面溫度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表面溫度에 依한 不快感을 室温의 上下로서 COVER하려고 하는것은 그만큼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으로 된다(圖-3). 또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할수록 室温分布의 不均一等 室内氣候上의 문제도 많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림 3) 暖房時 断熱性이 나쁜 建物에서는 表面溫度가 낮아짐에 따라 体感上의 不利를 補充하기 위하여 室温을 높여야 하며 그만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으로 된다.

(3) 熱容量

앞에서 말한것 같이 近来建物の 高層化, PRE FAB이라는 構造面, 工法面에서의 要請과 材質의 變化에 따라 建物の 輕量化가 이루어져 그 때문에 建物の 熱容量은 一般적으로 顯著히 低下되었다.

從래의 重厚한 鉄筋CONCREE造的 建物에서는 壁体等 蓄熱때문에 暖房或은 空調停止後의 室温變化는 極히 緩慢한데 對해 全面 유리와 같은 몹시 얇은 外皮構造의 建物에서는 室温變化가 極甚하고 暖冷房을 停止하면 바로 在室者에 不快感을 느끼게 하는 일이 종종있다. 특히 暖房時에는 暖房停止와 同時에 추위를 느끼게 하고 補助暖房을 하지않으면 안되는 것은 省에너지 面에서 마이너스 일 것이다.

이와같은 觀點에서 東獨과 같이 建物の 熱容量을 規準에 定하여 있는 곳도 있다. 또 逆으로 건물 的 熱容量을 생각한다면 정상계산으로는 난방시의 熱容量에 의한 負荷의 輕減을 定量的으로 나타내는 것으로도 말할 수 있다. 그 밖에 窓面積, 건물 的 氣密性, 차양에 對해서도 省에

너지의 觀點에서 充分히 檢討되어 研究할 必要가 있다.

3. 建築構造 部材의 省에너지.

'건물을 構成하는 材料로서 어떠한 것을 採하느냐는 省에너지 建築을 생각할때 充分히 考慮하지 않으면 안된다. 完成된 建物의 維持管理를 爲한 에너지가 아무리 節約되었다하여도 그와 같은 建物을 만들기 爲하여 사용한 材料가 그 製造過程에서 심하게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 것이 어서는 모처럼의 省에너지 設計라 할지라도 無意味할 따름이다.

따라서 건축構造部材의 선택에 있어서는 材料가 가지 는 특성과 製造에너지까지도 함께 吟味하는 것이 必要하며 그 때문에 各材料의 제조과정에서 에너지 消費度의 RANK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되겠다.

4. 設計評價基準의 確立.

人間의 安全, 健康에 直接 관계되는 문제는 建築基準法 等에 규정되어 法的保護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快適性이라든가, 便宜性, 에너지 節減이라하는 要求는 間接的으로는 安全, 健康에 이어지는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지나온 것으로 미루어볼 때 이것을 法的으로 規定할 POPENTIAL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에너지資源의 궁핍, 消費의 現狀, 이에 따르는 環境破壞의 深刻함을 直視할때 에너지 消費의 抑制에 對하여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라는 것은 言及할 必要조차 없다.

省에너지는 自主的인 努力으로 推進하기 爲해서는 省에너지 手法의 設計基準과 評價基準을 確立하여 하나의 判斷 材料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目下 空氣調和, 衛生工學會, 建築學會에서는 이와같은 目的에서 작업이 進行되어가고 있다. 建築計劃을 決定하는 要素는 大端히 많고 그것들의 BALANCE가 하나의 建築을 낳는다고 말할 수 있다. 그 BALANCE의 基準은 모두 設計者의 胸中の BLACK BOX에 있는 것으로서는 省에너지 推進의 效果는 없다. 에너지 消費만이 決코 建築評價의 對象의 要素는 아니겠지만 省에너지를 推進하기 爲해서는 이 BLACK BOX 에서 "에너지"를 끄집어 내어 客觀的인 評價尺度로 判斷되게 하는것이 必要하다. ■

提供 : (株) 正林建築

設備部長 李燮高

新刊書籍紹介

「西洋建築史精論」

發行處: 漢陽大學校 工科大学 建築學科 朴學在 教授 研究所

供給處: 서울 江南區 삼성동 159-114 (대륙빌딩 201호) ☎58-4680



住宅建設基準에 關한 規則

1979년 4월 21일

- 개 정 1979. 8. 22 건설부령제235호
- 개 정 1980. 6. 2 건설부령제265호
- 개 정 1980. 7. 10 건설부령제266호
- 개 정 1981. 3. 10 건설부령제292호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건설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의 질을 향상시키고 적정한 시설을 갖춘 주택을 건설 공급하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대지) 주택을 건설하는 대지는 다음 각호에 계기 한 폭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농어촌지역·재개발사업지구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건설하는 주택, 외국의 차관자금에 의하여 건설하는 주택 및 국방 기타 국가의 주요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의 대지와 아파트 지구 안에 있는 대지로서 건설부장관이 주변환경이나 도시 미관상 주택의 대지로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단독주택의 대지 : 8미터
2. 연립주택의 대지 : 10미터
3. 아파트 대지 : 50미터

제 3 조 (건축물의 배치) ① 공동주택 1동의 길이는 120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81. 3. 1개정)

② 공동주택의 정면은 철도·고속도로·공항 기타 소음 등의 발생원에 면하게 배치하여서는 아니된다. ('80. 6. 2 삭제, '81. 3. 10 신설)

제 4 조 (시설 등의 제한) ① 공동주택에는 건축설비·대피시설·주차시설·주택관리업무시설·체육시설 및 제 28조의 규정에 의한 집회소 이외에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도시계획구역 중 상업지역 안의 공동주택에는 제 34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시설 중 상가 또는 슈퍼마켓과 업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80. 6. 2 개정)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중 대피시설 및 체육시설은 지하층에 한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80. 6. 2 신설)

③ 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에는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관리업무용의 시설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을 제외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대지의 조건과 토지이용 계획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주거시설의 주거편익에 직접 공할 수 있는 시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 조 (단위평면계획) ① 주택의 호당 또는 세대당 단위 평면계획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호당 또는 세대당 전용 면적이 4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0. 6. 2 단서신설)

② 전용면적 115평방미터 이하인 주택에는 세대당 또는 호당 2실 이상의 욕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6 조 (복도 및 계단의 기준)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공용의 복도 및 계단(비상계단을 제외한다)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 7 조 (벽체 등의 구조) 공동주택의 벽체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인 경우에는 그 두께가 15센티미터(시멘트모르타·회반죽 또는 석고프라스타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 이상일 것.
2. 블록조·벽돌조 또는 무근콘크리트조인 경우에는 그 두께가 22센티미터(시멘트모르타·회반죽 또는 석고프라스타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 이상일 것.
3. 피·시판인 경우에는 그 두께가 12센티미터 이상일 것.
4. 기타의 구조인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이 제 1호 내지 제 3호의 경우와 동등 이상의 차음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조일 것. ('80. 6. 2, '81. 3. 10 개정)

제 8 조 (난간의 구조) ① 장독대 또는 가사용품 등의 저장소로 사용할 발코니의 난간은 장독대 등을 은폐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발코니·계단 및 복도의 난간과 출입문이 있는 욕실의 난간은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구 조	기 준
바닥마감면에서의 높이	1.1미터(옥내계단의 난간인 경우에는 90센티미터) 이상일 것.
간살의 간격(간살구조인 경우에 한한다.)	10센티미터 이하일 것.

('81. 3. 10 개정)

제 9 조 (진개수거 시설) ① 3층 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다스트슈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계단인 경우에는 같은 층에 있는 2세대당 1개소 이상이어야 한다.

2. 복도식의 경우에는 같은 층에 있는 3세대당 1개소 이상으로 하되, 각 세대의 현관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위치에 1개소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다스트슈트는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다스트슈트의 상단부에는 동력·태양열에너지 또는 풍력으로 작동하는 악취 배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 10 조 (창·문 및 낙수구의 규격 등) 주택의 창 및 문과 평지붕에 설치하는 낙수구는 건설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표준 상세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작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창 및 문에 대하여는 특수공법에 의한 구조로서 건설부장관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0. 6. 2 단서신설)

제 11 조 (마감재료) ① 주택의 각 부위별 마감재료는 별표 4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주택에 대하여는 제 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세대당 전용면적이 85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2. 건축사법 제 4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서 따라 건축하는 주택
3. 조립식 공법 기타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공법으로 건축하는 주택

제 12 조 (열사용량계기의 설치) 중앙집중 난방방식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난방열이 각 세대에 균배될 수 있는 공법으로 하고, 각 세대마다 난방열량을 측정하는 계기를 설치하거나, 난방온도를 조절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난방열량 측정계기 또는 난방온도 조절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기존의 공동주택의 보일러시설을 이용하여 추가 건설하는 공동주택과 동일 보일러 시설을 이용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전부가 세대별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80. 7. 10, '81. 3. 10 개정)

제 13 조 (전기시설) ① 주택에 설치하는 전기시설은 4킬로와트 이상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다만, 전용면적 50평방미터 이하의 주택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동주택에는 세대별 전기 사용량을 측정하는 적산 전력계를 각 세대의 현관벽의 외측에 설치하거나 계단실 또는 복도에 접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공동주택 단지 안의 옥외전선은 지하에 매설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당 전용면적이 85평방미터이하로서, 중앙 집중식 난방방식이 아닌 주택을 건설하는 단지에서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가설하는 전선은 가공선으로 할 수 있다. ('80. 6. 2 개정, '81. 3. 10 단서신설)

제 14 조 (도로 등) ('80. 6. 2 개정)

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단지에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폭 이상의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 ('80. 6. 2 개정)

당해 도로를 이용하는 주택의 규모	도로의 폭(미터)
300세대 미만	6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10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12
1,000세대 이상	18

② 주택을 건설하는 단지의 도로의 폭은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길이가 35미터 이상인 도로의 폭은 당해 도로를 이용하는 주택의 규모가 100세대 미만인 경우라도 6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80. 6. 2 개정)

당해 도로를 이용하는 주택의 규모	도로의 폭(미터)
100세대 미만	4
1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6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8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12
1,000세대 이상	18

③ 도로와 공동주택의 외벽까지의 거리는 2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부도로의 막다른 부분에는 자동차가 회전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81. 3. 10 개정)

④ 주택을 건설하는 단지의 폭 12미터 이상인 도로에는 폭 1.5미터 이상의 보도를 설치하되, 보도면은 차도면보다 10센티미터 이상 높게하여야 하며, 횡단보도는 지체부자유자의 통행에 편리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80. 6. 2 개정)

⑤ 도로의 차도는 아스팔트·콘크리트 또는 석재로 포장하여야 하고, 보도는 보도블록, 석재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로 포장하여야 한다. ('81. 3. 10 개정)

⑥ 단지 안의 도로로부터 건축물의 주현관 입구까지의 통로의 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 15 조 (상·하수도 시설) ① 주택에는 세대마다 수도계량기와 2개소 이상의 급수전을 설치하여야 하며, 부엌, 욕실 및 세탁장 등 물을 사용하는 실의 바닥에는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80. 6. 2 개정)

② ('80. 6. 2 삭제)

제 16 조 (통신시설) ① 시의 행정구역안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에는 세대마다 전화설치 장소까지 전화국선이 인입되도록 배관·배선 및 단자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의 행정구역 안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단지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지의 주민의 이용에 편리한 위치에 공중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교환시설을 하거나 공중전화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기타의 통신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300세대 이하인 경우에는 1대 이상
2. 300세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대에 300세대를 초

과하는 500세대 이내마다 1대의 비율로 가산한 대수 이상

제 17 조 (가스공급시설) ① 도시가스 또는 열피가스의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세대마다 가스공급설비를 하여야 한다. 다만, 취사·난방 겸용의 연탄아궁이식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건설부장관은 하나의 단지에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가스공급 계획에 따라 가스 저장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 18 조 (자동차 정류소) ('81. 3. 10 삭제)

제 19 조 (우편시설)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단지에는 500세대 이내마다 1개의 비율로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우편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 20 조 (보안등)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단지안의 도로의 양측에는 서로 엇갈리게 하여 길이 50미터 이내마다 보안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80. 6. 2 개정)

제 21 조 (관리사무소)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단지에는 주택의 규모가 500세대 이하인 경우에는 30평방미터 이상, 500세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0평방미터에 500세대를 초과하는 500세대 이내마다 10평방미터의 비율로 가산한 면적 이상의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65평방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22 조 (유치원·탁아소) 단지안의 주택의 규모가 500세대 이상인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탁아소 또는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 희망자에게 분양하여야 하며, 그 확보된 대지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단지안의 다른 용도의 건축물안에 탁아소 또는 유치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3 조 (공공시설) 3,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단지에는 동사무소·파출소 및 우체국을 건축할 대지를 각각 150평방미터 이상씩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 의무자에게 분양하여야 한다.

제 24 조 (어린이 놀이터시설) 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단지에는 그 단지안의 주택의 규모가 100세대 이하인 경우에는 세대당 3.3평방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 이상, 100세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30평방미터에 100세대를 초과하는 3세대 이내마다 3.3평방미터의 비율로 가산한 면적 이상의 어린이 놀이터를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어린이놀이터는 1개소의 면적이 150평방미터 이상이고, 폭이 9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건축물의 거실이 있는 외벽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 떨어져 설치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 놀이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놀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어린이 놀이터의 주변에는 상륙수를 식재하여 차폐

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25 조 (의료시설) 주택을 건설하는 단지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시설용 건축물을 건축할 대지를 확보하여 의료시설의 설치 희망자에게 분양하거나 판매용 건축물의 건축 계획에 포함하여 건축하고 이를 의료시설의 설치 희망자에게 분양하여야 한다.

1. 주택의 규모가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약국 1개소 이상

2. 주택의 규모가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의원 1개소 이상. 다만, 단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위치에 의원 또는 병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6 조 (공중목욕탕) 냉온수를 공급하는 목욕시설을 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1,000세대 이상 건설하는 단지에는 공중목욕탕을 건설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 공중목욕탕의 설치 희망자에게 분양하여야 한다. 다만, 단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위치에 공중목욕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7 조 (체육시설) ①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단지에는 165평방미터에 500세대를 초과하는 300세대 이내마다 100평방미터의 비율로 가산한 면적 이상의 운동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위치에 학교 및 공공운동장(유료로 사용하는 운동장을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1,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단지에는 정구장(2면 이상의 것을 말한다)·배구장 또는 수영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운동장의 면적이 66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66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운동장에 정구장·배구장 또는 수영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 28 조 (집회소) ('81. 3. 10 삭제)

제 29 조 (비상저수시설) 주택을 건설하는 단지에는 세대당 1톤(비상저수 시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톤) 이상의 비상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 30 조 (녹지시설 등) 주택을 건설하는 단지에는 대지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 녹지시설을 하여야 하며, 주택의 규모가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지 안에 휴게시설을 하여야 한다.

('81. 3. 10 개정)

1. 주택의 규모가 1,000세대 이하인 경우에는 1개소, 1,000세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세대를 초과하는 1,000세대 이내마다 1개소의 비율로 가산한 휴게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2. 1개소의 휴게소에는 5인용 긴의자 5개 이상을 설치하고, 휴게소의 2분의 1 이상의 면적에 잔디 및 교목을 식재하여야 한다.

3. 단지안의 도로 또는 통로의 양측 및 휴게소에는 단

지면적 1,000평방미터 이내마다 1개소의 비율로 휴지통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 31 조 (텔레비전 공청시설) 공동주택에는 동별로 텔레비전 공청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 32 조 (공동저탄장) 연탄온돌 또는 연탄보일러식 난방 방식으로 건설하는 공동주택에는 동별 또는 층별로 세대별로 구획된 공동저탄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별 전용면적 안에 저탄용 창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3 조 (노인정) 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100세대 이내마다 10평방미터 비율로 산정한 면적 이상의 노인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330평방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노인정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25평방미터 이상의 오락실
2. 장기 및 바둑 등의 오락시설
3. 남·여용 각 1개소 이상의 변소 및 세면시설
4. 1개소 이상의 급수시설

제 34 조 (판매시설)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단지에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상가 및 슈퍼마켓 등의 판매시설을 당해 주택준공시까지 건설하여 주거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개설하여야 한다. 다만, 단지로부터 통행거리 300미터 이내에 별표 6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판매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0. 6. 2 단서신설)

② 제 1항의 판매시설은 식료품·의료품·문구류·다과류 및 운동기구 기타 생활필수품과 입주자의 생활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의 판매장·이미용원·약국 및 병·의원 등을 주된 용도로 하여야 하며 부동산 소개업·주점 및 유흥음식점의 용도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5 조 (안내표지)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을 건설한 때에는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규격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81. 3. 10 신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79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10조 및 제 12조의 규정은 1979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 17조 제 2항을 삭제한다.
2. 제 19조 중 제 3항 내지 제 8항을 각각 제 4항 내지 제 9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 2항의 주택건설사업 계획서에 기재할 주택건설사업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3. [별표 1]의 본표를 삭제하고, [부표 1]을 [별표 1]로

한다.

4. [별표 4]의 복리시설 중 “오물 및 진개의 수거시설”란을 삭제한다.

④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신청 중인 주택의 건설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 22조 제 1항 및 [별표 4]를 삭제한다.

③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주택건설사업 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서를 제출한 주택의 건설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주택건설사업 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한 주택의 건설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얻었거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한 주택에 대하여 제 3조 제 2항 및 제 1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별표 1]

단위평면계획기준

실 별	기 준
거 실 (거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1. (80. 6. 2 삭제) 2. 최소폭은 3.0미터 이상으로 한다.
침 실	1. 1실의 면적은 5.7평방미터 이상으로 한다. (80. 6. 2 개정) 2. 최소폭은 2.1미터 이상으로 한다.
부 일	1실의 면적은 4.5평방미터 이상으로 한다. (80. 6. 2 단서삭제)
욕 실 (변소겸용)	1실의 면적은 3.2평방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건설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표준 상세도에 의한 유니트바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 소	(80. 6. 2 삭제)
현 관	(81. 3. 10 삭제)
발 코 니 (발코니를 설치하는경 우에 한한 다.)	유효폭은 1.1미터 이상으로 한다.
창 고 (창고를 설 치하는 경 우에 한한 다.)	1실 또는 1개소의 면적은 3.0 평방미터 미만으로 한다.
기 타	설계도에 따른다.

[별표 2]

복도 및 계단의 기준

구 분	기 준
계단의 유효폭	1.2미터 이상
계단의 단너비	26센티미터 이상
계단의 단높이	18센티미터 이하
계단참의 유효폭	1.3미터 이상이고 계단의 유효 폭 이상
복도의 유효폭	1.4미터 이상

[별표 3]

다스트슈트의 규격 및 마감 등의 기준

구 분	마감규격 (밀리미터)			마 감 등
	폭	길이	높이	
슈 트	5층이하의 주 택	500 이상	600 이상	내부면은 진개 가 걸리지 아니 하도록 평탄하 게 마감하여야 한다.
	6층이하의 주 택	600 이상	700 이상	
저 장 소	5층이하의 주 택	1,400 이상	2,000 이상	벽과 바닥은 방 수리처 및 청소 용 급배수설비 를 하여야 한다.
	6층이하의 주 택	1,400 이상	3,000 이상	
진 입 투 개 구				건설부장관이정 하여 공고하는 표준 상세도에 의거하거나 기 타의 공법으로 약취가 주거내 부로 들어올 수 없도록 기밀하 게 시공하여야 한다.

[별표 4]

내부마감재료

다음 표의 재료 중에서 선택한다.

다만, 품질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재료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실 별	부 위	마 감 재 료
현 관	천 정	난연성보드류(건축법의 규정에 의 거 의무화된 경우에 한함) 합판 또는 평스레트위 벽지바름 모 르터위 페인트칠 다만, 거실의 천정과 연속된 경우 에는 거실에 준할 수 있다.
	벽 체	모르터위 페인트칠 다만, 거실과의 사이에 칸막이 벽 이 없는 경우에는 거실에 준할 수 있다.
	결레받이	합성수지 제품 모르터위 페인트칠
	바 닥	바닥용 타일 붙이기 인조석 현장갈기 아스타일 붙이기
거 실	천 정	난연성 보드류 합판 또는 평스레트 위 벽지바름 모르터 위 페인트 또는 벽지 바름
	벽 체	모르터 위 벽지 바름 모르터 위 페인트칠
	결레받이	목재널판 합성수지
	바 닥	무늬목 후로링보드 아스타일류 붙이기 모르터 마감(준공 후 입주자 부담으 로 비닐제품 또는 카펫트 깔기)
침 실	천 정	합판 또는 평스레트 위 천정지 바름 모르터 위 천정지 바름
	벽 체	모르터 위 벽지 바름
	결레받이	징두리벽 : 벽타일 붙이기 굽도리 돌림
	바 닥	모르터위 페인트칠 모르터 마감(준공 후 입주자 부담으 로 비닐제품 또는 카펫트 깔기)
부 욕	천 정	평스레트 위 페인트칠 모르터 위 페인트칠 다만, 식당겸용 또는 거실 겸용인 경우에는 거실에 준할 수 있다.
	벽 체	벽타일 붙이기 다만, 식당 겸용 또는 거실 겸용인 경우에는 거실에 준할 수 있다.

실 별	부 위	마 감 재 료
	결레반이	식당 부분은 거실에 준함.
	바 닥	바닥용 타일 붙이기 아스타일류 붙이기 다만, 식당 접용 또는 거실접용인 경우 식당 부분은 거실에 준할 수 있다.
욕 실 및 변 소	천 정	평스레트(알미늄 고정못을 사용하고 줄 눈조이너 시공한다) 위 페인트칠 선라이트
	벽 체	벽타일 붙이기 모르터 위 페인트칠 (장두리벽을 제외함)
계단실 및 복 도	바 닥	바닥용 타일 붙이기
	천 정	모르터 위 페인트칠
	벽 체	모르터 위 페인트칠
	결레반이	합성수지 제품 모르터 위 페인트칠
	디 담 관	인조석 현장갈기 모르터 마감
다용도 실	바 닥	인조석 현장갈기 모르터 마감
	천 정	모르터 위 페인트칠
	벽 체	모르터 위 페인트칠
	결레반이	모르터 위 페인트칠 합성수지
발코니	바 닥	바닥용 타일 붙이기 모르터 마감 하드너 마감 인조석 현장갈기
	천 정	모르터 위 페인트칠 재물치장 콘크리트 위 페인트칠
	결레반이	모르터 위 페인트칠
	바 닥	인조석 현장갈기 바닥용 타일 붙이기 모르터 마감 하드너 마감

- ※ 주) 1. 천정 및 벽체(결레반이틀 포함한다.)의 모르터는 석고프라스타로 갈음할 수 있다.
2. 욕실 및 변소의 경우 건설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표준 상세도에 의하여 유니트바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5]

놀이시설의 설치기준

시설의 종류	설 치 기 준
그 네	○ 단지안의 주택의 규모가 100세대 이하인 경우에는 1조(높이 2미터 이상인 3인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 ○ 단지안의 주택의 규모가 100세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조에 100세대를 초과하는 200세대 이내 마다 1조의 비율로 가산한 조수 이상
미 끄 럽 대	○ 단지안의 주택의 규모가 100세대 이하인 경우에는 1대(높이 2미터 이상, 상계판의 넓이 2평방미터 이상, 활주면의 너비 0.5미터 이상, 착지판의 길이 0.6미터 이상, 활주면 2개 이상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 ○ 단지안의 주택의 규모가 100세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대에 100세대를 초과하는 200세대 이내마다 1대의 비율로 가산한 대수 이상
철 봉	○ 단지안의 주택의 규모가 100세대 이하인 경우에는 1조(대, 중 및 소형의 철봉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 ○ 단지안의 주택의 규모가 100세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조에 100세대를 초과하는 200세대마다 1조의 비율로 가산한 조수 이상
모 래 판	○ 그네, 미끄럼대 및 철봉의 주변에는 두께 0.3미터 이상
세 이 소 오	○ 단지안의 주택의 규모 300세대마다 1조의 비율로 산정한 조수 이상
공 중 변 소	○ 어린이놀이터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위치에 수세식 공중변소(대변기 1개, 소변기 2개 및 세면기 1개 이상을 갖춘 것) 1개 이상
음 수 기	○ 1개소의 놀이터마다 음수기 1개 이상
긴 의 자	○ 1개소의 놀이터마다 5인용 긴의자 6개 이상

[별표 6]

판매시설의 설치기준

단 지 안 의 주택의 규모	판 매 시 설 의 종류	판 매 장 건축물의 규모	시 설 기 준
100세대 이상	가	세대당 2평방미터	시장법의

상 1,000 세대 미만		이상 4평방미터 이하로서 5층 이하, 다만, 판매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은 예외로 한다.	규정에 의한다.
1,000세대 이상, 5,000세대 미만	종합상가 (슈퍼마켓 또는 백화점)	연면적 2,000평방미터 이상 8,000평방미터 이하로서 5층 이하	시장법의 규정에 의한다.
5,000세대 이상	소매시장	연면적 3,000 평방미터 이상 15,000평방미터 이하로서 5층 이하의 소매시장. 다만, 연면적 5,000 평방미터 이하의 상가 또는 종합상가를 설치할 수 있다.	

[별표 7]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

종 류	설 치 기 준
지구안내판	5개 이상의 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공동주택단지의 경우에는 당해 공동주택 단지와 연결되거나 이를 통과하는 간선도로 변마다 설치한다.
단지방향 안내판	10개동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인 경우에는 단지입구와 연결된 간선도로 변에 설치한다.
단지안내판	10개동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인 경우에는 단지입구마다 설치한다.
동호안내판	10개동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안에서는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한다.

(81. 3. 10 신설)

* * * * * 건축가들과 자라온 20여년 * * * * *

기술 문화 사 도서 안내

- ★ 주택계획과 디자인 ₩ 15,000
 - 최우수입선 작품 400여작품, 대지계획, 각 방향의중개축
 - 평면도, 투시도, 코스트 계획
- ★ 건축설비의 기본계획 ① 설계면 ₩ 7,000 ② 계획면 ₩ 10,000
 - ① 설계면 : 사무소, 호텔, 병원, 집합주택, 연구소, 단지계획· 각종 건축설비의 실례
 - ② 계획면 : 건물, 인간, 환경, 급수, 에너지, 수송, 열처리 건축인 필수설비편
- ★ 구조계획과 알기쉬운역학 상·하 각 3,500
 - ⑤ 보, 기둥면 ⑥ 가구, 내진요소, 바닥, 코스트편
- ★ 최신건축공사 표준상세도 ₩ 8,000
 - 바닥, 벽, 천장, 창호, 실벽상세
- ★ 건축 시공의 급소^강허중오 ₩ 4,000
 - 초보자를 위한 현장 유의사항



기술 문화 사
 중구 을지로5가 77-1 무궁화BD205호
 TEL : 266-7348 (울지전화국 옆)

謝 過 말 씀

삼가 全會員任계 謝罪의 말씀드립니다. 지난 三月号(通卷144号) 發刊이 遲延되어 會員任계 本意아닌 累를 끼쳐드려 大端히 悚懼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지 辯明말씀을 드리자면 P.O.O의 記事作成上 誤謬와 編輯上의 蹉跎로 因하여 再印刷過程을 거쳤기 때문인데 다 음호부터는 絶對로 이러한 前轍을 犯지않도록 格別히 留意하겠사오니 會員여러분의 깊은 理解와 倍前의 協助를 懇曲히 付託드립니다.

(出版事業部)

質疑 · 応答

(건축관계 법령에 대한 회원의 질의와 건설부 및 본 협회의 답변요지)

(질의 1) : 국가 기술 자격법에 의하여 취득한 열관리기사는 건축사법 제 2 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보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 (경남회원)

(답변 1) : 국가 기술 자격법에 의하여 취득한 열관리기사는 건축사법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로 신고할 자격이 없습니다. (건설부)

(질의 2) : 상업지역내의 3 층 건축물로서 1, 2 층은 상업용 건축물이고 3 층을 주택으로 건립코저 할때 전폐율을 전체 60%로 적용해야 하는지의 여부 또는 2 층 건축물로서 1 층은 상업용 건축물이고 2 층을 주택으로 건립할시 전폐율의 적용 여부 (경기회원)

(답변 2) : 건축법 제 39 조 ① 항의 적용이 타당할것입니다. (건설부)

(질의 3) : 상업용 건축물과 주거용 건축물의 병용 건축물을 건립할시 단독 건축사의 업무한계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할수있으면 상업용 건축물의 차지하는 규모의 범위. (경기회원)

(답변 3) : 상업용 건축물의 과반수 이상이면 단독 건축사 사무소의 업무 범위에 속함. (건설부)

(질의 4) : 미준공 건축물의 양성화에 따른 적용에 있어서 ① 1975년 건축한 건축물로서 전폐율 초과로 준공검사를 득하지 못하였던바 1979년 도시계획 결정고시로 인하여 도시계획가로망선에 저촉되어 있던차 금번 미준공 건축물 양성화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② 건축허가를 득하였을시 당시에는 용도지역 지정이 없었는데 용도지역 결정으로 인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되어 대지 최소면적이 위배되는 경우, 위법의 한계를 어디에 기준을 두어야 하는지의 여부. (경기회원)

(답변 4) : ①에 대하여는 준공미필기준 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80. 1. 4) 제 4 조 ① 항에 의거 도시계획 결정고시로 인하여 가로망선에 저촉되는 범위내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②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 5 조에 의거 건축허가를 득하고 동법 시행령 제 8 조 규정에 의거 진행중에 지역결정이 되

었을 경우 건축허가를 득할 당시의 법이 효력이 있다고사료됩니다. (건설부)

(질의 5) : 상업지역과 존주거지역내에서 전폐율 10분의 6 을 초과한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주거용이나 공업용 건축물을 증축(수직이나 수평으로)코저할 경우 주거용이나 공업용 면적이 기준과 증축을 합하여 과반수 미달이면 건축법 제 39 조 3 항의 10분의 6 에 불구하고 동시행령 제 1 항에 의하여 10분의 7 건축이 가능한지의 여부 (경남회원)

(답변 5) : 건축법 제 39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전폐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 건축물에 주거용 또는 공업용과 타용도가 겸용 되었을 경우에는 주거 또는 공업용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의 2 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동조 3 항을 적용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건설부)

(질의 6) : 상업지역 방화지구 내에 주거용 및 상업용 건축물을 건축코저 하는바 다음과 같은 복합용도일 경우 법정 전폐율 제 39 조 1 항 10분의 8 등 제 3 항 10분의 5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대수 산정 방법에 있어 초과 대수와 미달수의 대수 산입여부. (경남회원)

용도	연면적(m ²)	주차대수
업무 시설(사무실)	152m ²	
근린 운동시설(탁구장)	190m ²	
근린 생활시설(점포)	170m ²	
주택(2세대)	530m ²	
계	1,042m ²	

(답변 6) : 주차장법 시행령 제 6 조 제 1 항 제 1 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지역내에서 연면적 1000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로서 업무시설등으로 쓰이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의 연면적 150평방미터마다 주차대수 1 대의 비율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사무실에 대한 주차 대수는 2 대로 이하하여야 하며 기타 근린 생활시설(탁구장, 점포) 또는 주택(단독주택에 한함)에 한하여는 주차장 면적의 확보를 요하지 아니하다. 주차장 정비 지구내에서는 동 조제의 규정에도 적용하여야할 것입니다. (건설부)

(질의 7) : 건축법 시행령 제 134 조의(비상조명장치) ① 항에 의하여 5 층이상 또는 특수건물 3 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거실 및이로부터 지상에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기타의 통로에 비상용의 조명장치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대하여,

① 소방법상에 규정된 유도등 또는 발신기(위치표시 등이 있음) 등이 있을시에도 별도의 비상용 조명장치를 또 달아야 하는지 여부?

소방법상에 의한 위설비가 없을시에만 달아야 하는지의 여부?

② 또 건축법에 의한 비상조명장치를 한다면 그 위치가 벽인지 또는 천정인지, 또 한개만 설치하는지 극장통로처럼 여러개를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서울회원)

(답변 7) : ① 건축법 시행령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조명 장치는 화재시의 안전한 탈출을 유도 하기 위하여 설치토록 하는 것이므로 소방법의 규정에 의한 유도등으로서 조건을 충족 시킨다면 점용이 가능하며

② 비상조명장치는 그 위치, 개수, 광도등을 설계자가 판단 설계하여 건축법시행령 제134조 제 2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바닥면에서 1룩스 이상의 조도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건설부)

(질의 8) : 허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하지 않고 시공하여 현재 준공단계에 있는 건축물로서 감독관청으로부터 무허가 건물로 적발되어 사직당국에 고발조치 벌금형을 받고 벌금을 납부하였을때 합법적인 추진허가가 가능한지의 여부.

단. (가) 현재 시공한 건물이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없을경우, (나) 현재 시공한 건축물이 이격거리 및 전폐율을 위배 하여 시공되었을 경우. (강원회원)

(답변 8) : 무허가 건물을 축조하다 적발, 벌금형을 받고 벌금을 납부한 사실은 불법 행위에 대한 조치이지 합법화하는 과정이라 볼 수 없으며 질의한 건에 대한 사후처리는 허가청의 업무 소관으로 가부는 곤란합니다. (본협회)

(질의 9) : 건축법 제41조 4항 및 동령 제167조 2항에 의거 상업방화 지구내 건축물을 신축함에 있어 지상 4층을 건축코자할시 높이 12m 이상이 되므로 높이 12m 이하의 건물(3층까지)은 이격거리없이 설계하고 높이 이상(4층부분)은 이격거리를 계산하여 설계할 경우 적법 여부, 또한 높이 12m 라함은 최고 처마높이를 말하는 것인지 최저높이를 말하는 것인지의 여부. (경남회원)

(답변 9) : 지상 4층으로 건축할시 높이 12m 이상이 되면 전체층에 대하여 소정거리를 확보하여야 되며 또한 높이 12m 라함은 최고 높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협회)

(질의 10) : 구획정리지구내 환지 결정고시를 하면서 시장부지(용도지역 : 주거지역)로 확보되어 개인 약70명 앞으로 이전등기가 된 땅에 지상 1, 2층은 시장으로 설계하고 지상 3, 4, 5층은(세대당 전용면적 약 13평형, 전체 세대수 약 30세대)아파트로 설계할 경우의 적법여부. (경남회원)

(답변 10) :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상에는 따로 규제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본협회)

(질의 11) : 건축사법 제19조(업무내용)의 업무라함은 건축사 사무소 등록을 한자의 영업행위인 업무를 말하는지의 여부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주택 사업주체, 개인 기업체 등에서 건축사를 정식고용하여 건

축사법 제 4 조에 의거 자가 건축물의 건축 설계 및 감리를 할 경우 동법 제19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에 관한 법령에 의한 절차이행 대리등을 동법 제22조(설계도서의 신고)와 관계없이 건축사협회의 승인신청이나 건축허가 신청을 허가청에 바로 제출할 수 있는지의 여부 또한 인원수 등 요건만 구비하던 법 제23조(등록)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등록없이 단독, 합동, 종합, 업무도 가능한지의 여부. (경남회원)

(답변 11) : 건축사는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하여 개업등록을 한 경우가 아니면 면허소지자라 할지라도 본인주택 이외의 어떤 형태도 설계 영업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본협회)

(질의 12) : 종합건축사 사무소의 공사감리 전담업무에 속하는 공동주택 및 국민주택의 최소 규모인 연면적, 세대수, 층수등 규정이 없으므로 주택건설 촉진법 제 3조 동령 제 2 조를 준용하는지, 이 최소규모 미만의 공동주택등 설계, 감리는 종합여부에 관계없이 설계, 감리가 가능한지의 여부. (경남회원)

(답변 12) : 공동주택은 연면적, 세대수, 층수등에 관계없이 종합건축사 사무소가 아니면 감리업무를 행 할 수 없으며 주택건설 촉진법 제 3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역시 종합 건축사 사무소가 아니면 감리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본협회)

(질의 13) : 건설부령 제279호로 (80.12.22) 개정된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 1 호 서식중 감리자와 시공자란이 없는바 이는 착공신고시에 선정날인케하는 것인지의 여부. (경남회원)

(답변 13) : 감리자와 시공자는 착공신고시 착공신고서에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협회)

(질의 14) : 준공미필 대상건축물로서 공사완공후에 도시계획도로가 책정됨으로인하여 건축물과반이 도로에 저촉되었으나 도시계획사업 시행예정인 수년내로 확정되지 아니할경우 준공미필 신고가 가능한지의 여부. (경남회원)

(답변 14) : 준공미필 건축물로 도시계획 도로에 저촉된다면 신고가 불가능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본협회)

(질의 15) : 준공미필 건축물로서 연면적 85m² 또는 165m² 이하라 함은 일단의 대지내의 주택용도로써 증축이나 다동(多棟)일 경우 기존건축물과 준공미필 신고 건축물을 합한 총연면적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별 연면적(기존 부분과 준공미필 신고부분을 합한것)을 말하는지 또한 준공미필 신고 연면적만을 말하는지의 여부. (경남회원)

(답변 15) : 준공미필 건축물에서 연면적은 건축법의 규정에 위배된 부분을 포함한 동당 연면적을 말합니다. (본협회)

(질의 16) : 현재 주거지역내 공장 가동(설유봉제공장)을 하고 있는데 ①주거지역 내 후생복지 시설(오락시설, 실내체육시설, 도서실)은 가능한지의 여부, ② 대지 경계선에서(북지시설인 경우) 각 방향의 이격거리는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의 여부, ③ 지하실 설치는 건축면적의 1/8 공지가 있어도 설치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④ 관계 기관에서는 비공해 공장에 대한 공문 지시가 있어야 하는데 건축허가를 득할 방법이 있는지의 여부.

(충남회원)

(답변 16) : 주거지역 안에서는 공장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으며 상공부장과 협의하여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비공해공장(공업배치법 시행령 별표 2에 해당)에 대해서만 가능토록 되어 있으므로 비공해 공장으로서의 증빙이 선행되어야 건축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협회)

(질의 17) : 대통령령 제 1062 호(80. 11. 12)로 공포시행중인 건축법 시행령중 개정령 제 6 조 3 항에 의하면 "미관지구, 특정가구정비지구, 아파트지구 및 법 제 8 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 수립구역안의 건축물과 제 6 조의 3 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요하는 건축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허가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제주도에서는도 건축 미관심의 지침을 제정하고 모든 건축물과 시설물에 대하여 시, 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하므로써 법령에 규정하는 이외의 모든 건축물까지도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제주도 건축 미관심의 지침내용 중 심의의 대상을 모든 건축물로 지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조치라고 사료되는바 건설부의 견해를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회원)

(답변 17) : 현재 당부에서 인허가제도 개선 방안으로서 일선 행정기관의 건축 행정규제실태를 조사중에 있으므로 동건에 대하여도 이에 따라 현황을 조사후 조치할 계획이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부)

(질의 18) : ① 세대당 면적이 42.54m²이고 4 세대 연립면적 170.16m² 인 연립주택을 설계할 경우 연립주택은 세대당 85m² 미만의 아파트로 간주하여 2 종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② 연립주택은 실질적인 내용면으로 보아서 아파트와는 달리 영세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세대당 85m²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연면적에 불구하고 단독주택에 준하여 1 종으로 적용해야 하며 세대당 면적이 85m² 미만인 경우에는 2 종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회시를 바랍니다.

(제주회원)

(답변 18) : 공동주택의 종별 적용은 실적회비 산출기준표 "주 9"에 명시된 바에 따라 세대당 85m² 미만은 2 종 85m² - 165m²는 3 종을 적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본협회)

(질의 19) : 주거지역에 시장시설지구로 고시된 지역의 폐울과 ② 주차장의 시설을 전폐울에 해당하는

공지내에 노외 주차장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의 여부, ③ 고도지구의 인접대지(상업지역)를 포함하여 시장 시설이 가능한지의 여부. (강원회원)

(답변 19) : ① 건축법 시행령 제 142 조와 도시계획법 제 18 조에는 위질의 내용과 같은 명문규정이 없는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② 건축법 제 39 조의 규정에 의한 전폐울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여위 공지에 필요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면 가능할 것이며 ③ 건축법 시행령 제 146 조 ④ 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협회)

(질의 20) : 건축사업 및 보수기준 별표 "1"의 건축물 종류 분류에 의하면 "아조관"에 대하여 종별 분류가 해당년이 없는바 동 "아조관"은 공원시설내 설치되는 것으로 5 종에 적용될 것으로 사료되는지의 그 여부 (서울지부)

(답변 20) : "아조관"에 대한 종별 적용은 공원시설내 부수되는 일종의 건물로서 건축사 업무보수기준 별표 "1"의 제 5 종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협회)

(질의 21) : 국민주택 채권 매입대상에 있어서 ①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령 부표 8 (건축허가) 단독주택으로서 지하실에 방 2 개, 거실 1, 욕실 1로서 1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이면 지하실도 채권매입을 해야 하는지 여부, ②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령 별표 3 (국민주택채권매입 대상자와 매입기준) 동법시행령 별표 3 나항 1 호에서 종교용(사찰) 건축물로서 문교부 사회단체 등록증에는 총본원 지주 앞으로 되어 있으나 건축주명의는 경남 지주 명의로 건축할때의 채권매입 여부.

(경남회원)

(답변 21) : ① 지하실이라 하면 거주할 수 없는 일종의 대피호토써 채권매입 대상은 주거전용 면적을 말하며, ② 종교용 건축물로서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건축할 경우 주택채권 매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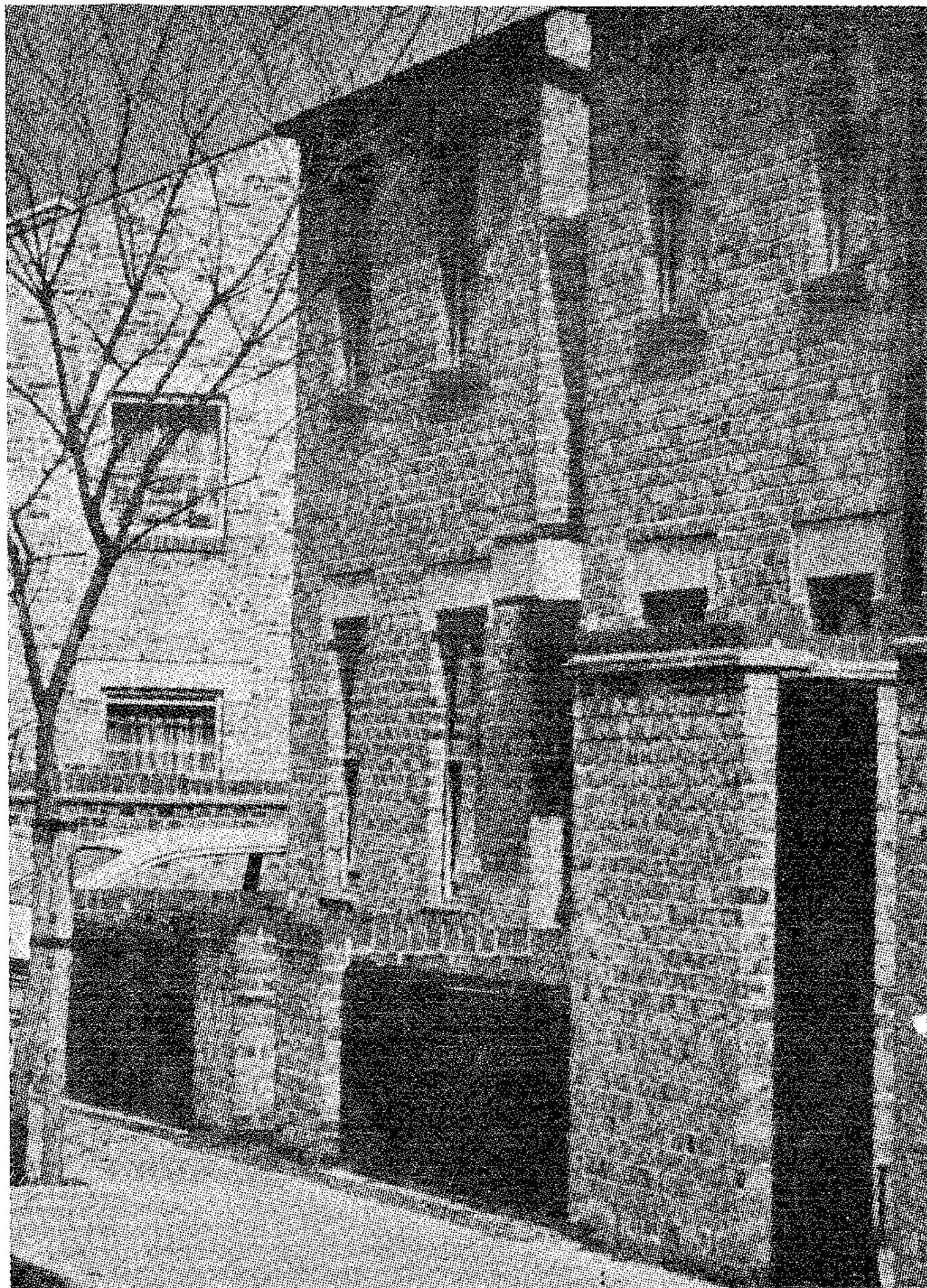
(본협회)

(질의 22) : 1979. 12. 27 서울 종로구 통인동 157-3 의 대지에 2 층, 지하 1 층, 연면적 1,301.28m² 의 규모로 건축허가를 득하고, 이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건축주의 대지 추가 매입으로 인하여 지상 2 층 지하 1 층, 연면적 1,775.45m² 의 새로운 배치, 평면, 구조, 설비의 설계로 건축주가 결정함으로써 모든 작업이 처음부터 다시 이루어지게 된 바 이에 대한 설계업무 보수율에 대한 적용 여부. (서울회원)

(답변 22) : 기허 일정규모 대지 안에 건축물의 설계를 완료 납품된 것으로 사료되며, 이미 실시한 실시 설계도서가 사용불가하고 새로운 설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면 건축사 업무 보수 기준(건설부고시 제 197 호) 제 17 조 5 항 규정에 불구하고 신 요율적용함이 타당합니다.

(본협회) ■

海外作品



Housing At Pomeroy Street

設 計 : Peter Moro & Partners
 開發 主 體 : London Borough of Southwark

構造 · 規模 : 벽돌造 2~3層建, 81
 戶 (239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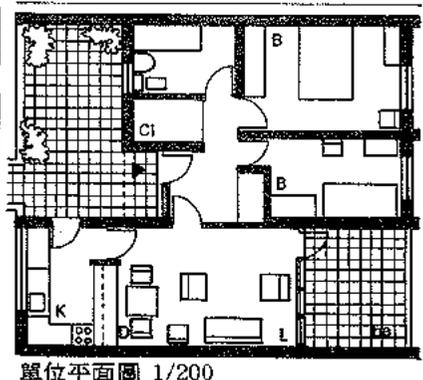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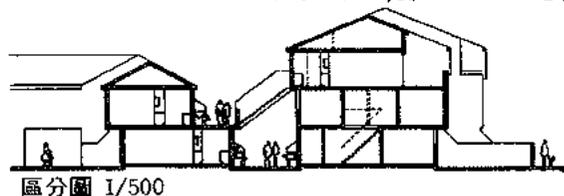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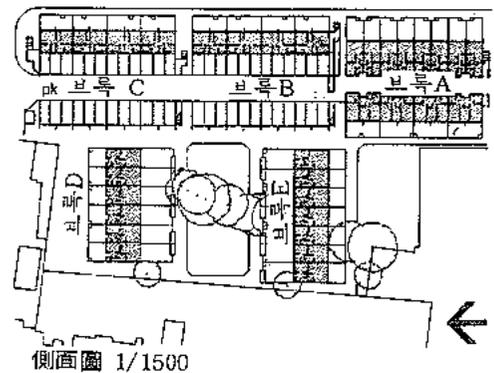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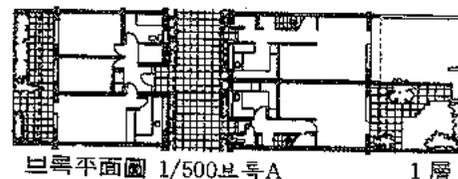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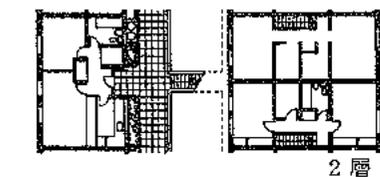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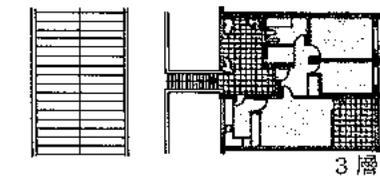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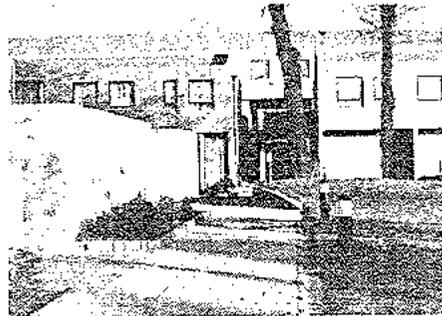
敷 地 : 約 1ha
 所 在 地 : Southwark, London,
 England

옛부터 2, 3層建物의 마을住宅에 並列된 敷地는 그 機能이 郊外의 高層住宅과 工場, 作業場 등으로 分割되게끔 되어 있다. 이번 計劃에는 새로운 集合住宅에 옛부터의 街路에 沿해서 세우는 建築의 優秀한 點을 導入한다는 意圖가 包含 되어 있다.

東側의 Pomeroy 街에 沿해서 에스넛트型의 住戶를 包含한 3層建의 리니아 的인 住棟이 있으며, 그 背後에는 이와 平行으로 프랫트型의 住戶를 갖는 2層建의 住棟이 配置되어 있다. 여기의 一部에는 1層에 48台分의 車庫가 만들어져 있다.

또한 이들과 直角으로 13戶의 2層建 테라스·하우스가 2개의 住棟으로 나누어 놓여 있다. 街路에 並列한 리니아 的인 住棟의 各戶는 基本적으로는 兩者의 中間을 取한 出入空間을 向하고 있다.

이곳은 1層의 出入路와 2層의 出入甲板부터 되며, 兩者는 階段, 또는 斜路로 連結되어 있다. 이곳에서 작은 綠色前庭을 사이에 두고 名戶에 가는 方法은 從來 테라스 것을 連想시킨다. 街路에 沿하여 連續한 壁面의 壓迫感을 줄이기 爲하여, 住棟은 2個所에서 切斷되어 있으나, 이것은 또한 背後의 테라스·하우스의 出入路로도 되어 있다. 뒤로 돌린 最上層과 큰 切妻壁이 空中도약에 큰 리듬을 주고 있다.



Housing at Fitzjohn's Avenue

構造·規模: RC造, 5層, 15戶
 敷地: 0.41ha

設計: Neylan & Ungl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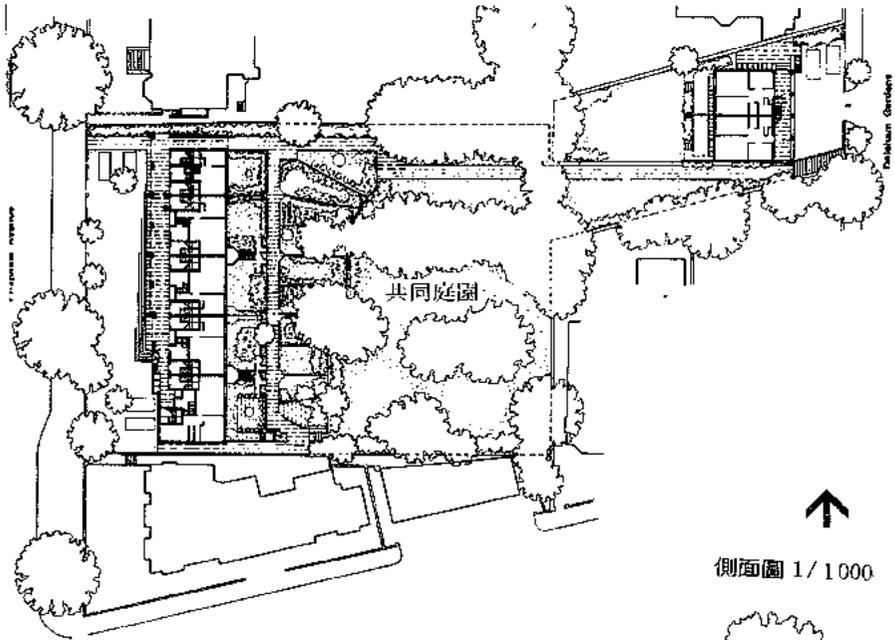
開發主体: London Borough of Camden

Neylan & Ungless의 계획은 스스로開發한 어휘를 個個의 계획과狀況에 對하여 適切한 形으로 對應시킨다는 特徵을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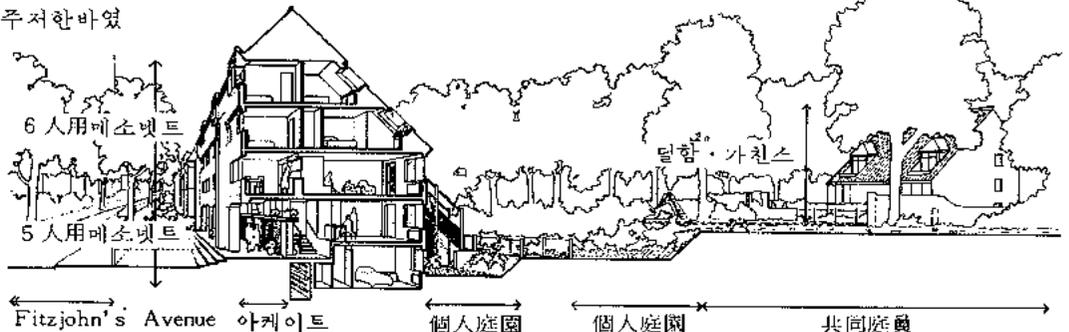
Fitzjohn街는 빅토리아樣式의 住宅에 둘러싸인 綠陰이 짙은 넓은 街路로서, 環境의 惠澤이 있음과 同時에 傾斜진 土地에 旧建物의 基礎等이 埋込되어 있어서 地價와 開發費가 모두 高價이다. 設計者는 이 成熟한 綠陰을 保存하면서 街路邊에 나란히 應答하는 集合住宅을 計劃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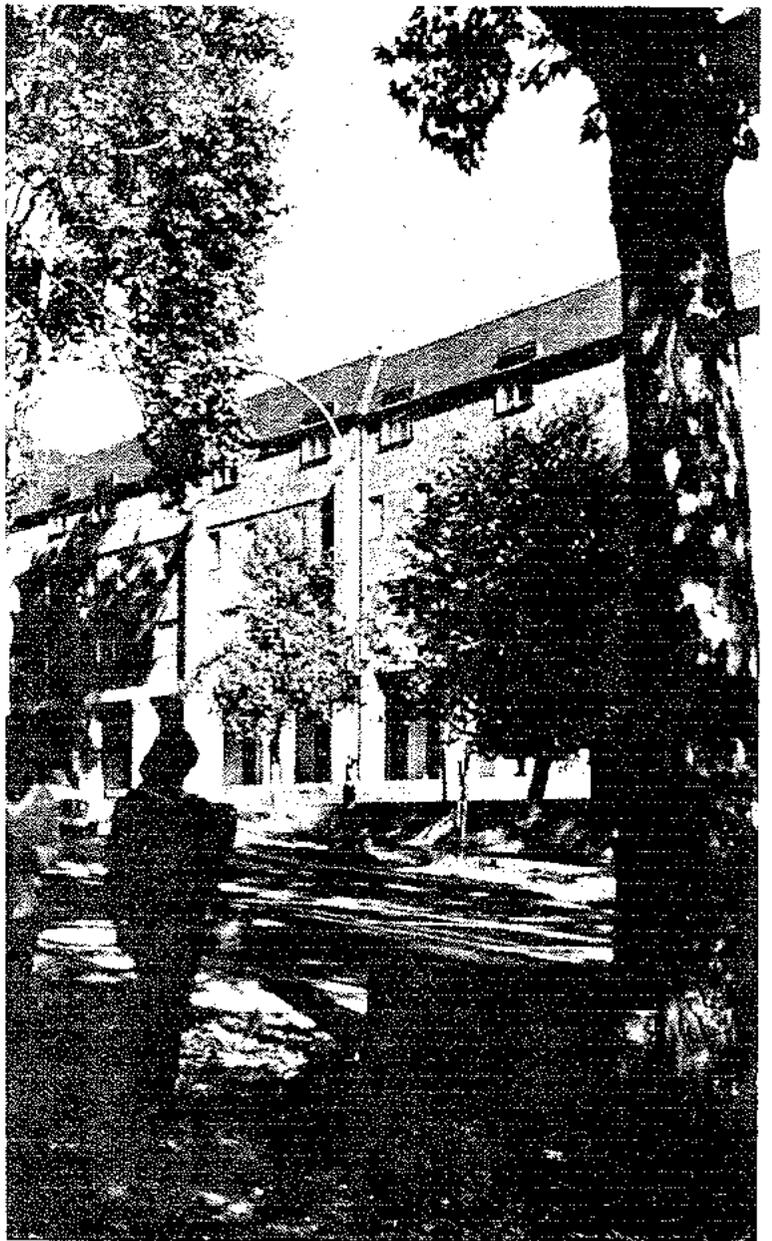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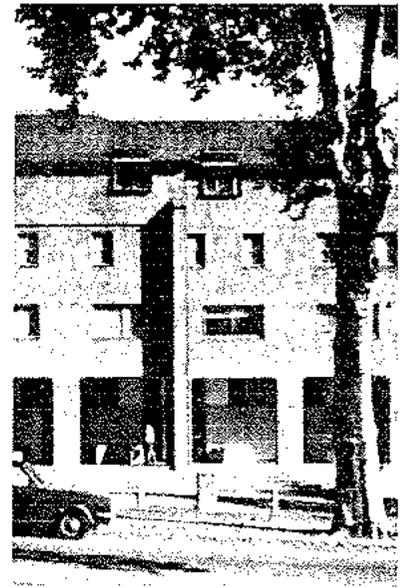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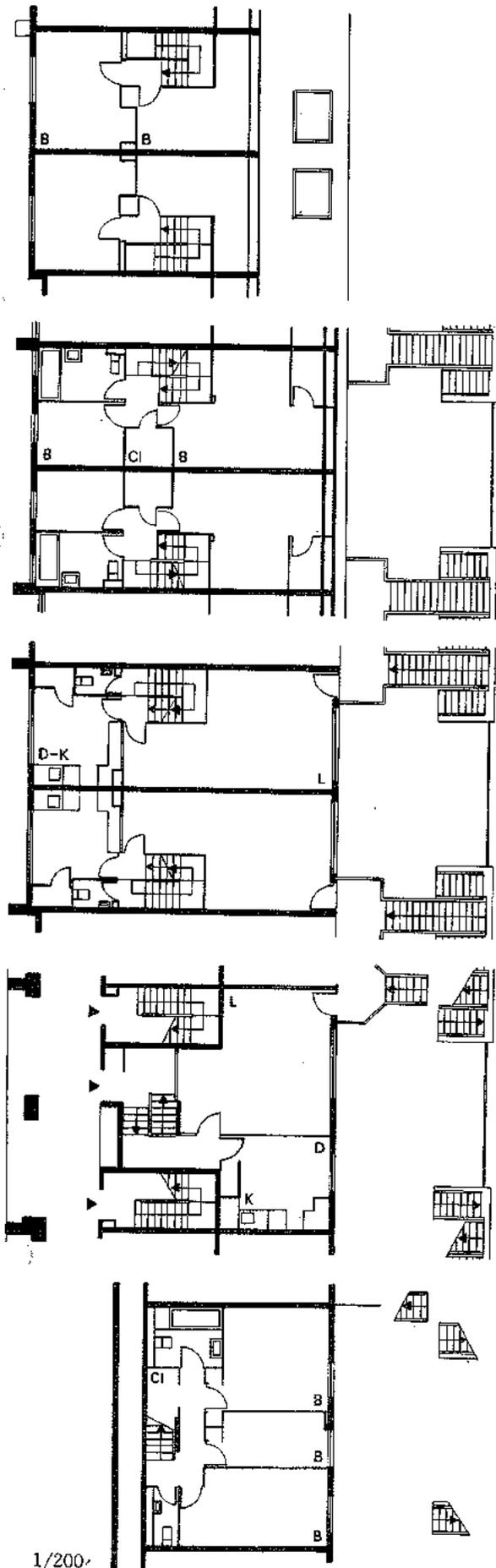
住戶는 5人用메소넛트 5戶가 建物의 아래 2層을 點하고 6人用 메소넛트 10戶가 위 3層을 點하고 있다. 이中, 아래의 住戶는 個人庭園과 直接連結되어 있고, 위의 住戶는 外部階段을 通하여 그보다 若干 水準이 높은 곳에 떨어져 만든 庭園으로 居住者가 갈 수 있게 하더니 그 背後에는 共用庭園이 펼쳐있다. 또한 部分圖에서 圖示한바와 같이 上層의 天井안의 큰 三角形의 内部는 火災時 橫方向에의 避難路가 된다.

街路側은 1層半 높이의 아케이드를 가진 大規模의 形態處理에, 따라서 形式的인 表情이나 集團의 特徵을 갖추고 있다. 한편, 庭園側은 더욱 親密한 規模로 還光한 形式에서 벗어난 表情을 지니 후 아사트를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正面과 背後의 變化나, 街路와 良好한 關係를 갖는 5層이라고 하는 規模感은 設計者가 주저한바였다고 한다. 또한 共有庭園을 사이에 두고 세운 빌합 가친스는 2人用 플랫폼 6戶를 갖춘 老人用 集合住宅이다.



側面圖 1/1000





Danby Court Housing

景觀設計 : Borough Architect's Department

開發主体 : London Borough of Enfield

設計 : Neylan & Ungl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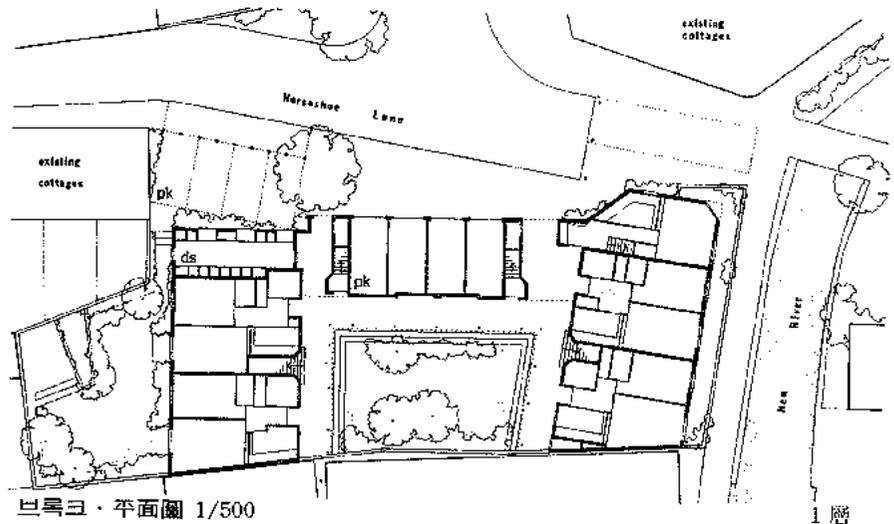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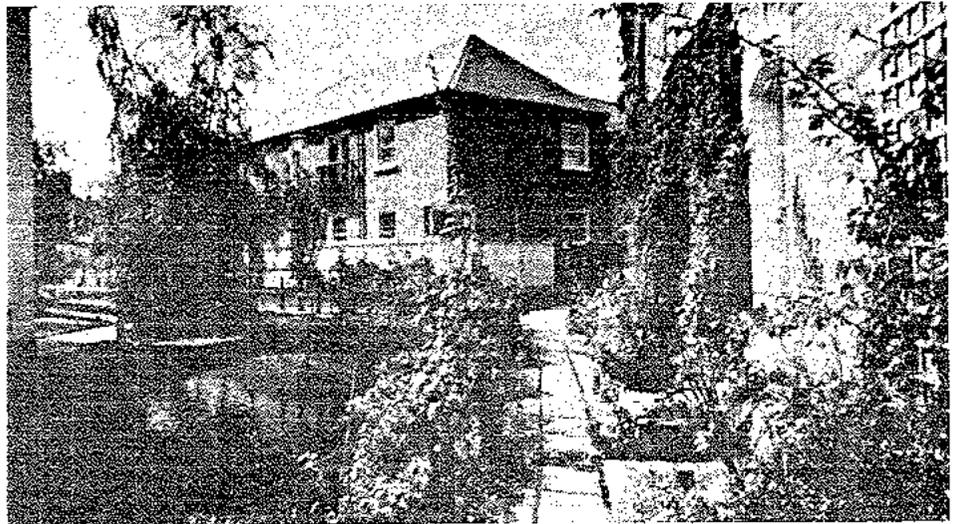
構造 · 規模 : 2層, 11戶

敷地 : 0.083ha

Danby Court의 敷地는 Horseshoe Lane의 袋小路의 端部에 位置함과 同時에, “뉴리바” 에도 隣接하여 있다. “뉴리바”는 런던에 남은 옛 用水路의 하나로서, 이 附近 景觀에 있어서 大端히 重要な 要素이다. 이 計劃의 整然으로서 空地, 親密한 規模를 갖는 傳統的 集合住宅의 樣式; 添加해서 연분홍과 紫色의 多色벽돌에 彩色된 外觀이 隣近과 잘 어울리는 調和를 이루는 것은, 그렇게한 景觀의 構造와 生々한 對應을 하기 때문이라고 生覺된다.

住戶는, 2人用프래트가 9戶, 3人用프래트, 메소프래트가 1戶씩인 構造로서, 中央에 만들어진 작은 方形의 中庭을 둘러있는 房에 連結된 廊下에서 全戶에 出入이 된다. 이 中庭은 設計者의 課題의 하나로서, 이것까지 몇개가의 계획에 있어서도 試圖된 것이었으나, 共同性의 集點이 되도록 만들어진 空間이다. 시멘트 스투트의 房의 處理는 視線을 跨의 水準에 맞추는데 하나의 役割을 하지만, 이러한 美學的으로 精巧한 處理가 오히려 이 中庭을 使用한다고 하느니 보다는 보는 對象으로, 말 할나위 없이 觀賞用의 것으로서 된 傾向이 있으며, 廻廊式의 廊下도 動線空間이 되어버려, 當初의 目的은 充分히 達成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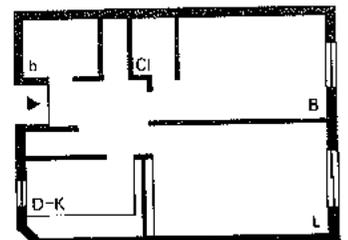
密度는 ha當 289名이다.



브록크 · 平面圖 1/500



部分圖 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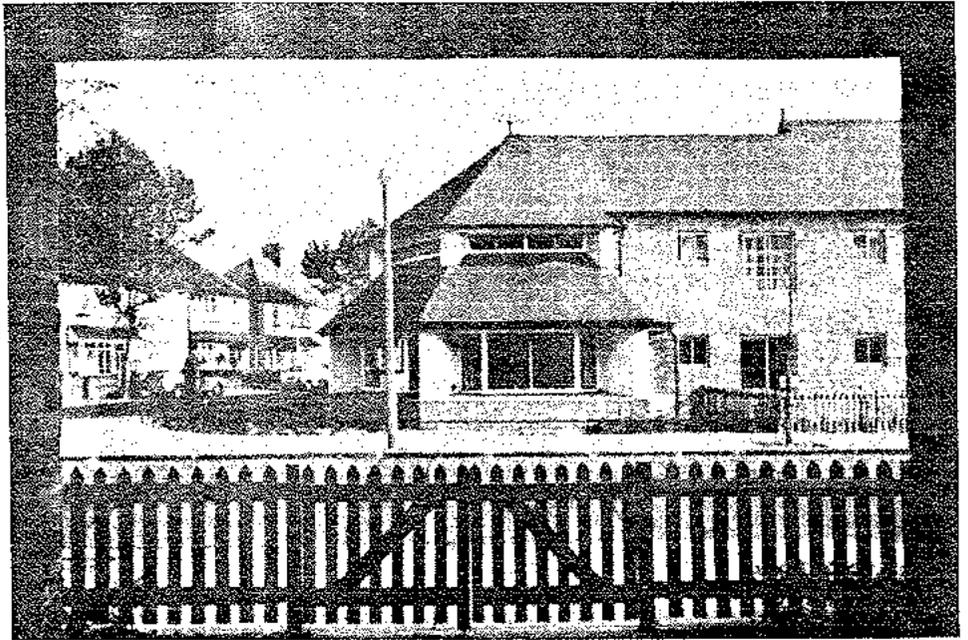


單位平面圖 1/200

Housing at Town Road

景觀設計: Borough Architect's Department

開發主体: London Borough of Enfield
 設計: Neylan & Ungless
 構造·規模: 2層, 71戶
 敷地: 0.67ha
 所在地: Town Road, Enfield London, Engl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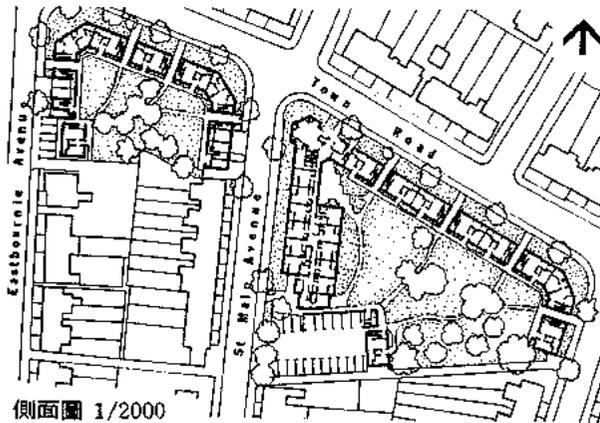


Neylan & Ungless의 敷地計劃은 單純하지만, 周圍의 環境과 照應한 모양을 갖고 있어서 効果的이다. 또한 住戶計劃도 地질에 이르기까지 優아한 感覺으로 充滿된 것이 적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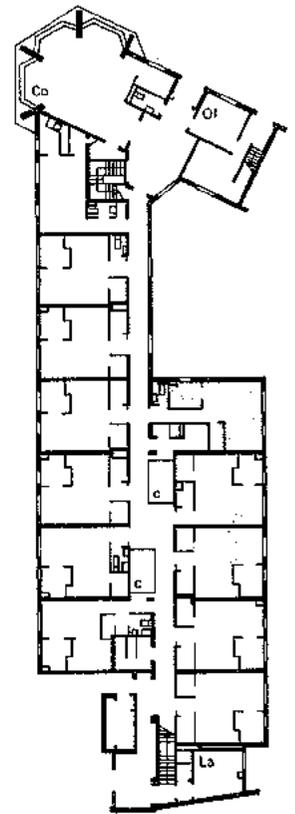
Town Road의 集合住宅은 戰前戰後에 建立된 테라스·하우스가 많은 環境中에 計劃되었다. 住棟 블록은 "세토마크"街에서 크게 二分되어, 옛 街路의 築造線이나 높이를 그대로 한채, 밖으로 달고, 안으로 여는 構成을 取하고 있다.

住戶는 한결같이 2人用 아파트나, 24戶는 老人用이다. 一般住戶의 出入은 2層이 街路와 中庭을 連結하는 通路脇의 附設, 1層이 中庭에 面하여 取해 있다. 한편 老人用 블록에서는 中廊下를 사이에 두고 單位가 配置되어 있다. 이 廊下는 計劃의 特徵을 이루는 空間으로서, 屋內의 公共空間의 配色이 짙으며, 블록 북端의 談話室, 管理人 住戶와 南端의 洗濯室을 連結하여, Z字形의 待期室을 만들고 中央部에 있는 2個의 "라이드웨이" 이 効果적인 "아이스트롭"을 演出하고 있다. 또한 談話室은 그 큰 勾配의 房과 獨特한 表情을 지닌 外觀에 依하여 街路의 모퉁이를 形成하고 새로운 상징을 取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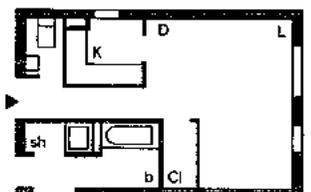
密度는 ha當 179名이다.



側面圖 1/2000



블록平面圖 1/500



單位平面圖 1/200



Housing at Truro Road

設 計 : Dixon Haryett Partners
Partnersh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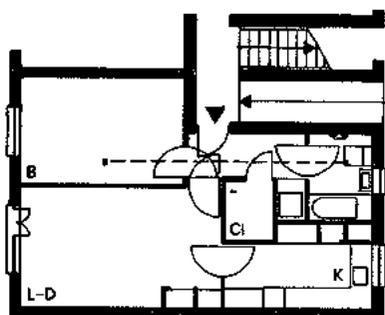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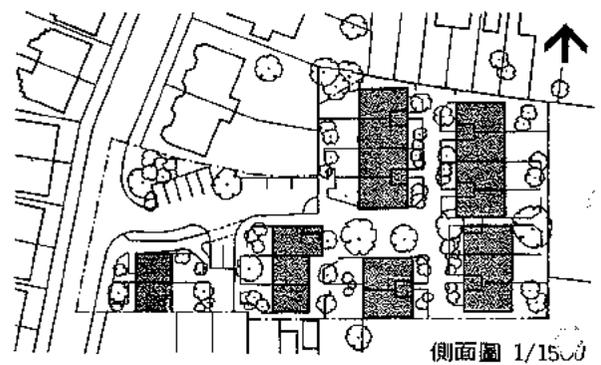
所 在 地 : Truro Road, Haingey, London, England
開 發 主 體 :

構 造 · 規 模 : 벽돌造, 2~3層 36戶
敷 地 : 約 0.36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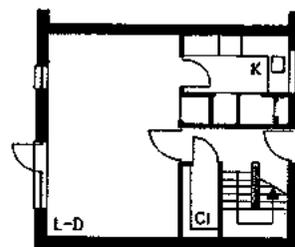
傳 統 的 인 材 料 나 디 자 인 을 목 的 하 였 으 나, 新 鮮 하 게 使 用 하 는 點 에 서 親 近 感 이 充 滿 한 環 境 을 創 出 하 며 이 計 劃 으 로 는 이 러 한 特 徵 이 聯 立 되 어 있 는 것 같 다.

敷 地 는 런던 北 部 의 “하 링 게 이” 區 에 있 으 며, 西 側 을 幹 線 道 路 와 接 하 고 袋 小 路 의 形 을 하 고 있 다. 戶 數 의 8 割 이 상 을 點 하 는 30 戶 가 2 人 用 1 寢 室 型 Unit, 4 戶 가 4 人 用 2 寢 室 型 世 帯 Unit 2 戶 가 身 體 障 碍 者 用 Unit 이 다. 計 劃 은 뜰 을 기 진 世 帯 Unit 를 敷 地 端 部 에, 管 理 人 의 住 戶 를 中 央 에 身 體 障 碍 者 用 Unit 를 地 上 層 에 配 慮 하 여 均 衡 이 잡 힌 共 同 體 를 이 루 는 데 成 功 하 고 있 다. 또 한 보 기 좋 은 히 마 라 야 杉 를 包 含 한 樹 木 이 나 芝 生 의 領 域 도, 設 計 者 의 保 存 努 力 의 結 果 아 님 한 雰 圍 氣 을 住 宅 地 에 부 여 하 는 役 割 을 하 고 있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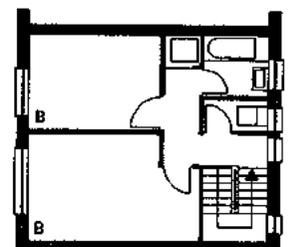
住 棟 에 는 全 體 的 으 로 機 瓦 의 勾 配 를 한 房 이 連 結 되 어 單 調 하 게 되 기 취 은 外 壁 에 는 裝 飾 的 인 “디 질” 을 갖 춘 赤 벽 돌 의 “고 니 스 風” 이 取 해 져 있 다. 또 한 外 觀 상 큰 要 素 가 되 는 階 段 室 은 通 常 의 壁 面 에 서 튀 어 나 온 身 振 을 보 이 면 서 建 築 形 態 의 리듬 을 支 配 하 고 있 으 나, 여 기 에 는 구멍 이 뚫 려 진 벽 돌 의 “바 라 벳 드” 나 開 口 部 를 赤 벽 돌 로 裝 飾 한 破 風 端 部 에 서 巧 妙 히 通 風 을 取 하 는 研 究 가 되 어 있 다.



身 體 障 碍 者 Unit 平 面 圖 1/200 1 層



2 寢 室 型 Unit 1 層



2 層

Sheltered Housing at Banim Street

構造・規模 : RC, PC造, 2層 35戶
 敷地 : 0.32ha

設計 : Owais Hasin J.S. Cambell

開發主体 : London Borough of Hammersmi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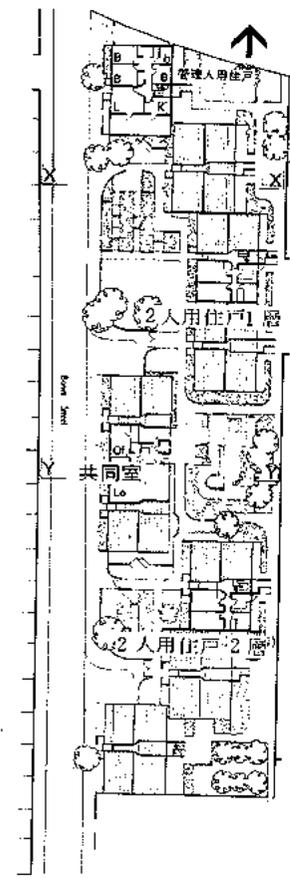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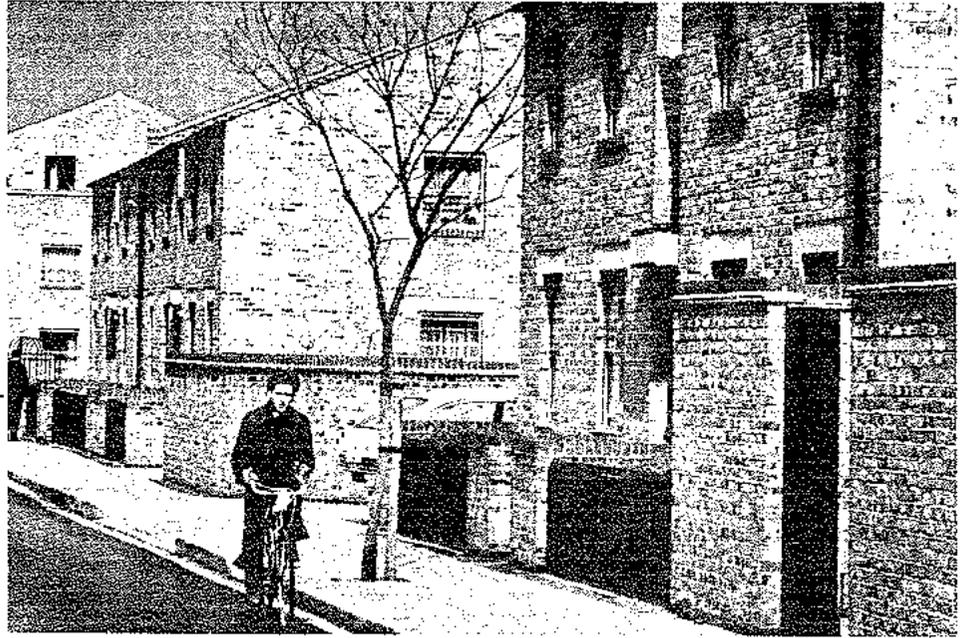
所在地 : Banim Street, Hammersmith, London, England

最近의 Hammersmith 自治區는 集合住宅 政策의 實踐으로 이루어 졌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렇게 되어 있는 것을 設計, 計劃 運營間의 調整의 實現이나 거기에는 自治水準에서 알기 쉬운 建設 過程의 具體化, 쓸모없거나 非能率을 排除한 서비스 體制의 確立, 建設過程을 公的으로 責任있는 것으로라는 構造의 創出이라고 하는 副次的 效果도 크게 期待된다. 여기서는 DLO (Direct Labour Organisations)의 協同으로서, 將來 計劃體制를 包含하는 計劃이 實現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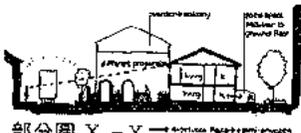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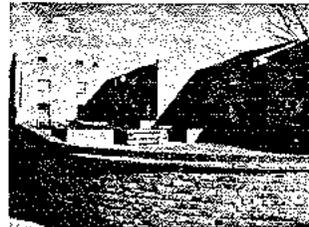
敷地는 빅토리아期의 倉庫群이 支配하는 風景의 안에 있다. 西側의 既存 테라스·하우스의 規模에 알맞는 開發, 덧붙여서 步行者路를 供給하는 일이 主된 要請事項 이었으나, 이것과 同時에, 設計者는 性格과 規格을 다르게 한 5種의 中庭모양의 廣場을 만들었다. 여기에는, 居住者가 生覺한 花草로 꾸며 따사로운 氛圍氣의 場所가 되고 있다.

住戶는 管理人的 4人用 프랫트를 除하고는 全體的으로 2人用 프랫트로서 ha當 250室의 密度가 되고 있다. 부엌을 여유있게 한 空間으로 할 것, 住戶와 들을 分離하지 않은 것, 地表層水準은 外部도 包含하여 車椅子로 出入可能할 것 등이 居住者의 要望이었으나, 작은 交通空間이라든가 私生活의 確保도 合해서 實現되었다. 老人用 住居의 設計는, 老人이 共同体中에서 自立한 生活을 하기 爲한 環境을 準備하는 것이라고 設計者는 말 하고 있다.

또한 寫眞의 廣場은 敷地에 오래된 倉庫의 基礎를 다시 利用한 것으로서 이 住宅地의 中心的 空間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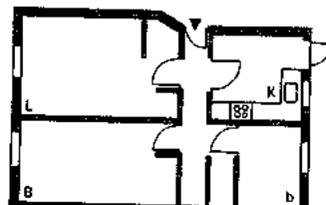
側面圖 1/1000



部分圖 X-X — Artificial Terrace & entry porch



部分圖 Y-Y with ground level raised 1st floor



單位平面圖 1/200 2人用住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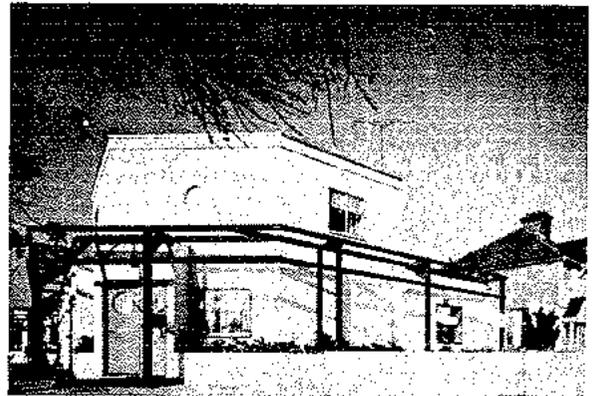


Cranford Court Housing

設 計 : Edward Jones
 構造 · 規模 : 벽돌造, 平屋 및 2
 層建, 14戶
 敷 地 : 約1,800m²
 所 在 地 : Hounslow, London,
 Engl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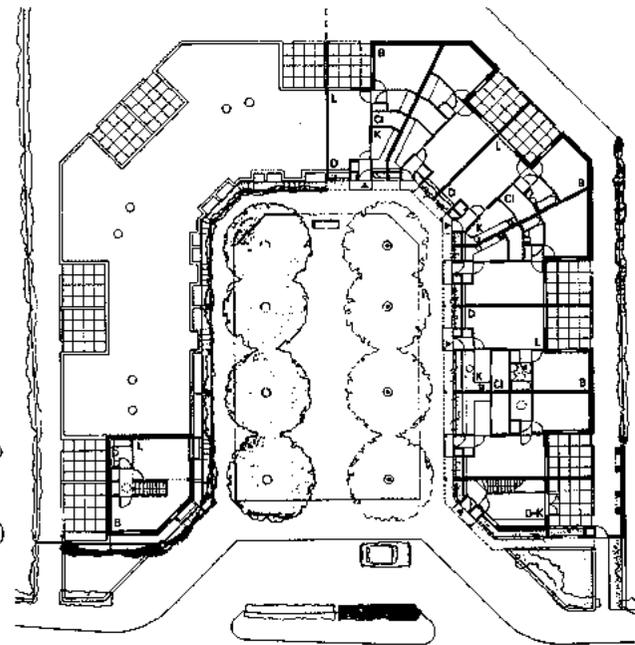


特異한 表情을 가진 이 老人集
 合住宅은 옛날의 救貧院 또는 빅
 토리아期의 法院의 形態를 踏襲하
 면서, 새로운 建築言語를 보인것
 같은 點에서 重要하다. 이것은 傳
 統的인 court house 가 <公>과 <私>
 의 空間의 巧妙한 統合이라는 點
 에서 成功하고 있다고 評價될수
 있기때문이다. ㄷ字型의 住棟에
 둘러싸여, 南側의 道路에 열린 中
 庭에는 그것을 덮으려듯, 規則바
 르게 2列의 앵두나무가 심어져있
 고 住戶의 外壁에는 甕들의 “빠고
 라” 와 “쁘란다” 가 設置
 되어 있다. 이 中庭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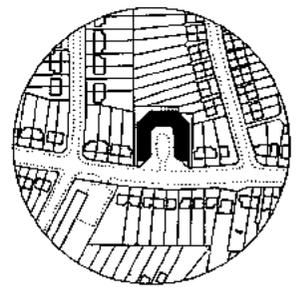


良好한 隣近關係의 創出과 各戶의
 安全維持에 寄與하고 있다. 또한
 “빠고라”와 “쁘란다”는 連續된 單
 調한 壁面에 對해서 <또 하나의 새
 로운 “휘사도”로서의 役割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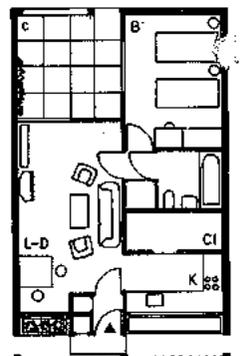
住戶는 傳統的인
 “가진”코트가 되어 間口의 좁은
 면이지만, 居室은 <公>的인 共通
 의 中庭과 <私>的인 작은 甕들의 2
 面に 開放되어 있다. 中庭으로의
 入口에 位置하는 住戶는 2層建이
 되어 있어, 이것은 集合住宅에 있
 어서의 入口을 意味하고 있다. <公>
 的인 中庭에 面한 壁에는 (석회·찰
 흙을 풀가사리의 액체에 반죽한것)
 塗裝되어 있으나, 背面은 벽돌壁.



側面圖 1/500



위치 1/5000



單位平面圖 1/200

Cluster Blocks at Wayland

所在地: Wayland Close, Bracknell, Berkshire, Engl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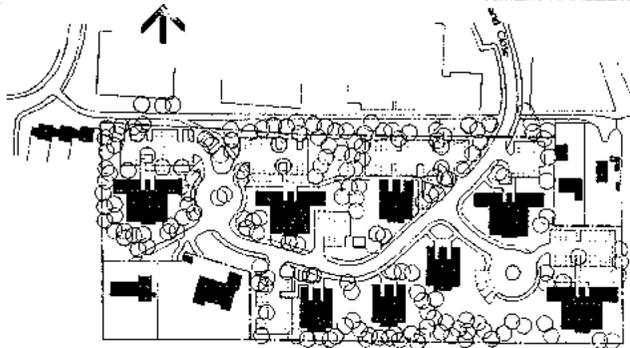
設計計: Prippen, Randall & Parkes

構造・規模: 벽돌造, 4層建, 112戸(268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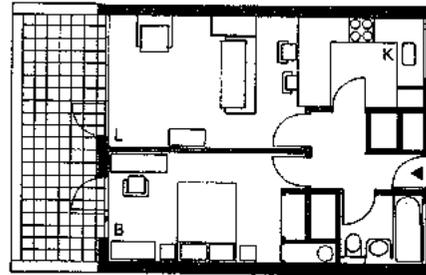
敷地: 2.06ha



敷地는 bracknell New Town의 가장 자리에 위치하고 赤松이나 白樺 등의 樹木이 茂盛하나, 設計者는 오랫동안 포인트 블록形式의 集合住宅의 設計를 하지 않았으나 많은 樹木을 그대로 두기 위하여, 다시 이 形式을 採用하였다. 말할나위없이 住戶를 포인트 形式의 棟으로 集約하는 것으로서 建築面積을 줄이지 않고 伐採할 樹木의 數를 줄이려하는 意圖이다. 이 때 環境을 破壞(파괴)하지 않는 範圍로 最大限의 駐車空間(200%)을 만드는 것, 또한 바닥面積의 작은 플랫폼을 導入하는 것으로서 最大限의 戶數를 確保하는 일이 生發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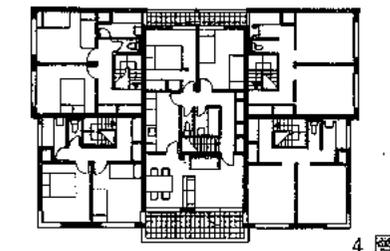


側面圖 1 / 3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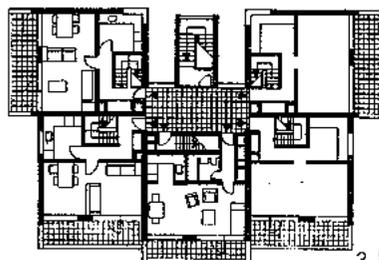


單位平面圖 1 /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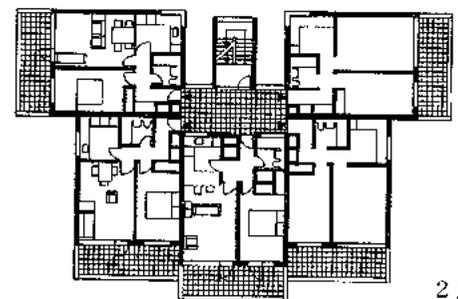
住棟은 A, B型이 設置되어, 어느 것이나 4層建으로서 에네베이터는 없다. A型에서는 全體의 住戶가 南向이고, B型(圖示)에서는 兩翼의 住戶가 東 또는 西側에 開放되어 있다. 兩型 모두 1, 2層이 플랫폼 形式(바닥面積은 30m²以上)으로서 얼마간의 變化가 있으며, 3, 4層은 "메소넷트"形式(바닥面積은 最高 75m²)이다. 外壁의 벽돌은 目的地와 共히 어두운 色으로서 窓枠은 規格部材를 組立한 鋼製이나, 可動部分은 木製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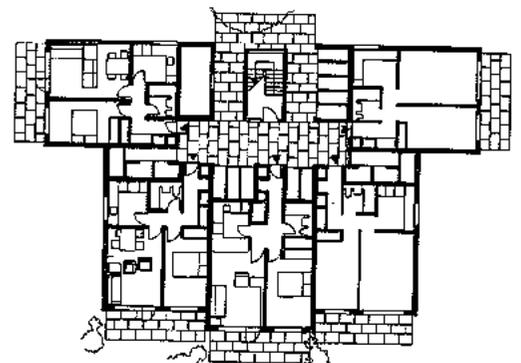
4層



3層



2層



B型 平面圖 1 / 500

B型 1層

Hamlet Fat Martlesham Heath Village

所在地: East Street, Sudbury, Suffolk, England

設計: Christopher Chesnut

景觀設計: Robert Whitfield

開發主体: Babergh District Council

構造·規模: 벽돌造, 2層, 28戶
敷地面積: 約 0.25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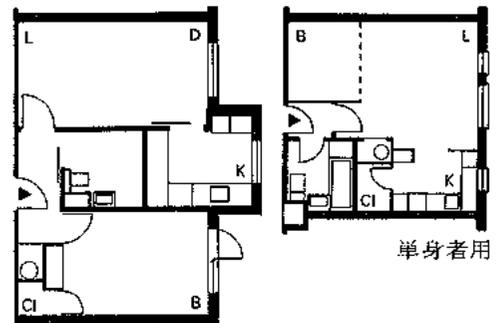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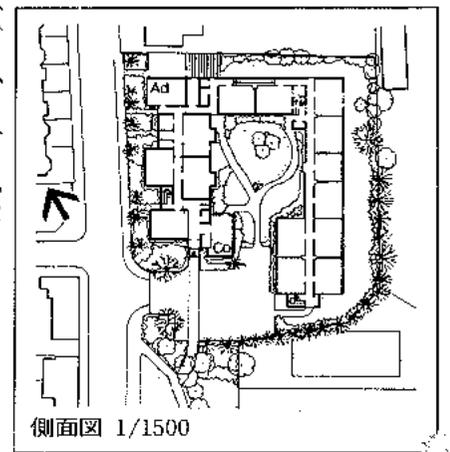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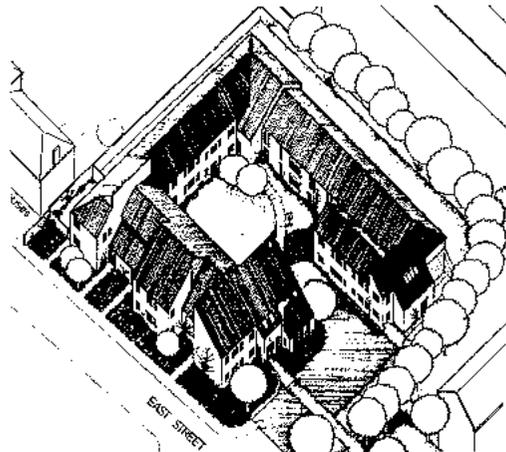


이計劃이 노린것은 <集合部落>의 發見에 있다고 한다. 所謂New town의인 發想이 아니고, 오히려 自然發生的인 콘콕트로서“카오스”의인 모습을 具現하고 있으나, 이것은 市場도 있는 反面, 管理体制를 包含하여, 他的 民間集合住宅과는 顯著히 性格을 달리하고 있는 点이다.

年令과 收入層의 多様な 混在化를 許容하고 넓은 窓口를 갖는 居住者層의 印象 地方色의 質은 材料나 靚을 使用하더라도 形態狀으로는 一貫하지 않은 建築的 處理, 最善을 다한 緻密한 住戶의 集結 등이 여기서는 具現되었으나 그 中에서도 알뜰을 갖는 住戶와 綠地의 關係가 巧妙하다.

住戶型은 全部 9種이고 1寢室型에서 5寢室型까지의 規模, 프랜트, “메소네프트”, “파치오”, “데닷치드·하우스”, 또한 “샤레”風의 別荘形式에 이르는 住戶形式에 依하여 形成되어 있다. 圖示한 圖面은 2寢室型 “파치오”形式의 것이다.

敷地는 11의 地區(Hamlet A~I) 中에서도 比較的 部落中心에 隣接하고, 出入路는 모두 東側을 달리는 幹線에서 되어진다. 全體的으로는 平凡한 立地 計劃이므로 急勾配의 지붕을 가진 “루푸스케프”가 部落의 凝集性을 表現하고 있다.



單位平面圖 1/200 身體障險者用

Queensway Single-Persons Housing

構造・規模：벽돌, 콘크리트 블록
 造, 3層建, 79戶(192名)

敷地：約 1.8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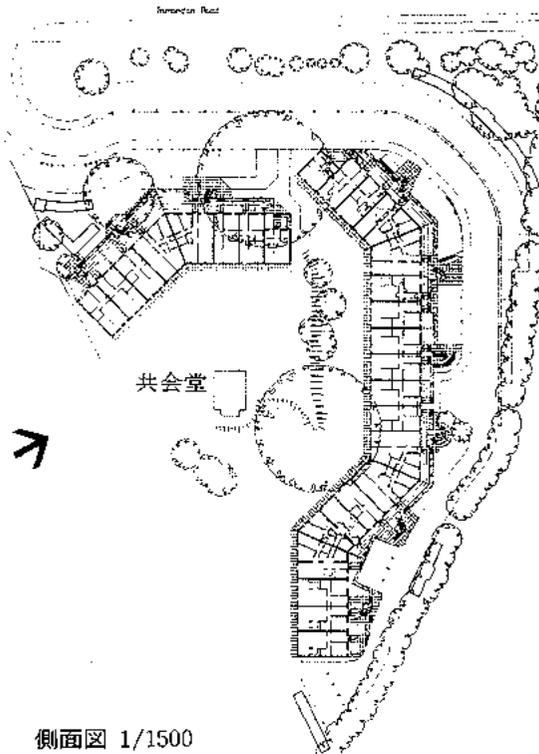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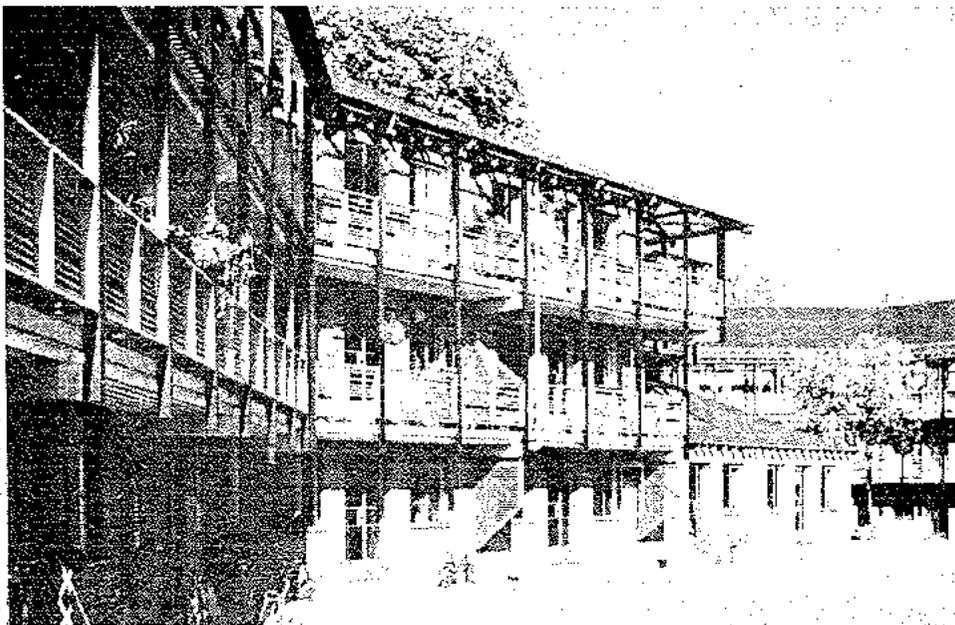
設計：Cambridge Design

所在地：Trumpington Road, Cambridge, Engl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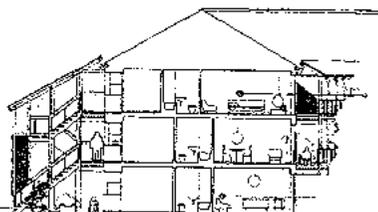
Granta 住宅協會에서는, 当初 프래트를 段狀으로 쌓아 올려서 駐車場을 建物內에 두는 案을 進行하다가, 그后 法規의 變化에 따라, 駐車場이 달린 隣接道路를 背後에 그대로 둔, 單純한 3層建(1~4人用 프래트) 案으로 變更되었다. 그때, 住棟을 길게 連續하여 幹線道路에서나는 騒音을 막을 것이 考慮되었으나 敷地中央에 있는 옛부터의 當球場을 改築한 共同社會에의 隣接確保와 既存의 큰 樹木의 保存때문에, 住棟은 2分되어 折曲되어 있다.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것은 “아스킨”의 “바이가”를 聯想케 하는 木製의 발코니가 住棟의 兩側에 連續되어 있는 點이다. 이것은 “코스트-야드스택크”에 關聯된 產物이지만, 한편은 避難路를 兼한 出入用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私生活的인 발코니로서 利用된다. 出入用 발코니에는 壁戶마다 階段이 設置되어 이것이 各戶의 앞뜰이나 玄關에 이은 大門의 役割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幹線道路에서 道行者路를 지나서 各戶에 이르는 空間의 “히에라루기”가 構成되어 있다. 또한 그것에 따라 床材에도 變化가 加해지고 있다. 벽돌의 壁과 “에다니트”의 지붕은 傳統的인 것이나, 프라스틱의 지붕을 가진 本製助骨의 발코니는 異質的이다. 그러나 이들 材料는 集合住宅의 規模에 맞추어 쓰여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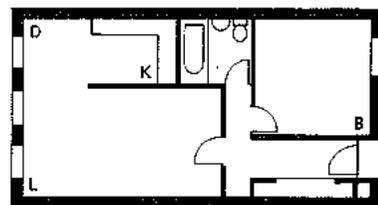
주로 短期滞在者를 對象으로 한 住戶單位는 最少限의 寸法으로 內裝은 居住者의 希望을 쉽게 反映할 수 있는 平均의 水準의 것이 되어 있다.



側面圖 1/1500



部分圖 1/400



單位平面圖 1/200 2人用住戶

全国建築許可統計

用途別許可統計

단위 : 평방미터

용도별	원년적	2 월			1~2 월		
		'80	'81	대비(%)	'80	'81	대비(%)
주거용	동 수	4,506	2,354	52.2	8,707	3,700	42.5
	연면적	910,173	476,918	52.4	1,934,719	781,454	40.4
산업용	동 수	1,254	735	58.6	2,405	1,404	58.4
	연면적	581,810	287,321	49.4	997,497	532,986	53.4
공업용	동 수	182	138	75.8	385	227	59.0
	연면적	146,531	124,208	84.8	297,787	251,301	87.7
문고 사회용	동 수	114	101	88.6	237	157	66.2
	연면적	131,439	87,068	66.2	300,803	194,583	64.7
기타	동 수	288	208	72.2	608	412	67.8
	연면적	81,832	65,453	80.0	167,677	114,091	68.0
계	동 수	6,344	3,536	55.7	12,342	5,900	47.8
	연면적	1,851,785	1,040,968	56.2	3,698,483	1,884,415	51.0

月別建築許可統計

월	'80		'81		전년대비 (%)
	동 수	연면적	동 수	연면적	
1	5,998	1,846,698	2,364	843,447	45.7
2	6,344	1,851,785	3,536	1,040,968	56.2
계	12,342	3,698,483	5,900	1,884,415	5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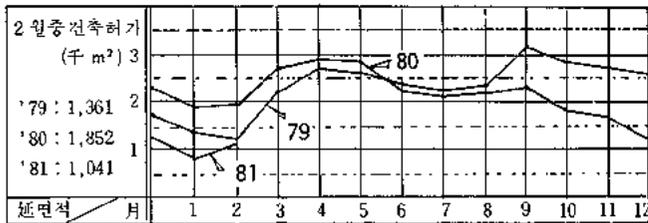
市道別 許可統計

단위 : 평방미터

시도별	원년적	2 월			1~2 월		
		'80	'81	대비(%)	'80	'81	대비(%)
서울	동 수	1,094	591	54.0	1,971	984	49.9
	연면적	528,117	284,107	53.8	930,969	485,840	52.2
부산	동 수	717	315	43.9	1,407	518	36.8
	연면적	312,927	99,895	31.8	537,002	172,310	32.1
경기	동 수	914	515	56.7	1,774	830	46.8
	연면적	242,474	157,402	64.9	536,147	275,322	51.4
강원	동 수	179	137	76.5	363	247	68.0
	연면적	43,677	43,480	99.5	81,348	70,830	87.1
충북	동 수	217	128	59.0	430	214	49.8
	연면적	56,038	35,857	64.0	93,585	59,336	63.4
충남	동 수	553	326	59.0	994	463	46.6
	연면적	117,723	47,526	40.4	281,559	143,453	50.9
전북	동 수	378	135	35.7	700	236	33.7
	연면적	72,748	30,310	41.7	194,905	39,279	20.2
전남	동 수	544	334	61.4	1,122	554	49.4
	연면적	105,956	59,304	56.0	209,008	106,920	51.2
경북	동 수	750	454	60.5	1,627	847	52.1
	연면적	177,515	127,113	71.6	442,900	209,934	47.4
경남	동 수	705	425	60.3	1,436	740	51.5
	연면적	156,382	91,015	58.2	321,155	238,376	74.2
제주	동 수	293	176	60.1	518	267	51.5
	연면적	38,228	64,959	69.9	69,962	82,815	118.4
계	동 수	6,344	3,536	55.7	12,342	5,900	47.8
	연면적	1,851,785	1,040,968	56.2	3,698,483	1,884,415	51.0

建築許可前年対備圖表

(百万 m²)



構造別許可統計

구조별	원년적	2 월			1~2 월		
		'80	'81	대비(%)	'80	'81	대비(%)
철근	동 수	1,781	791	54.5	3,527	1,734	49.2
	연면적	1,280,411	757,423	59.2	2,572,834	1,427,784	55.5
조적조	동 수	4,367	2,442	55.9	8,410	3,895	46.3
	연면적	554,930	275,588	49.7	1,079,497	434,297	40.2
목조	동 수	104	58	55.8	261	150	57.5
	연면적	6,682	3,338	50.0	21,336	10,570	49.5
기타	동 수	92	65	70.7	144	121	84.0
	연면적	9,762	4,609	47.2	24,816	11,764	47.4
계	동 수	6,344	3,536	55.7	12,342	5,900	47.8
	연면적	1,851,785	1,040,968	56.2	3,698,483	1,884,415	51.0

※會員參考事項

미국 상공부 주관으로 오는 5월 25일부터 29일까지 시내 Hyatt HOTEL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에서 미국 시설 자재 분석전시회가 개최됩니다.

기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최되는 이 전시는 미국 시설 자재 제조업자가 이번 전시회를 통하여 한국 대리점을 찾기도 하는데 한국 시장에서는 전혀 새로운 물건들로 초현대적인 기술자재 액체인쇄기, 전위계, 전기검진기, 전자계산기, 열량기, 분광계 등입니다. 많은 참석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의처 TEL. 72-2601 / 4261 / 4361

Mr. Harold Bromel